

# 교리와 장정

2017-2021

역사

헌법

통치기구

성례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 MANUAL / 2017-2021

CHURCH OF THE NAZARENE  
KOREAN EDITION

Copyright 2017  
나사렛출판사

2017년 6월 25일-29일

미국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개최된  
제29차 국제총회의 권한으로 출판함.

## 편집위원

딘 블레빈스(DEAN G. BLEVINS)  
스탠리 로즈(STANLEY J. RODES)  
테리 소우든(TERRY S. SOWDEN)  
제임스 스피어(JAMES W. SPEAR)  
데이비드 윌슨(DAVID P. WILSON)

## 한국어 판 번역 및 감수위원

전 광 돈  
전 익 범  
김 은 엽  
오 원 근  
하 영 진



## 머 리 말

나사렛성결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 삼는 것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핵심가치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성결한 사람,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7개의 특징들로는 의미있는 예배, 신학적 일관성, 열정적 복음전도, 의도적인 제자화, 교회 성장, 변혁적 리더십과 목적있는 구제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최우선의 목적은 성경에 명백히 규정된 대로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전파하고 보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있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을 비롯하여,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 죄인들의 회개, 신자들의 온전 성결, 거룩함의 도모, 초대교회 안에 충만했던 영적인 능력과 삶의 단순성이 있게 하는 것’이다.” (19)

나사렛성결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존재한다. 우리의 분명한 과업은 성경에 명백히 규정된 대로, 죄인을 회개하도록 하고, 믿음을 잃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며, 신자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영적인 것으로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 28:19, 요 20:21, 막 16:15 참조)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있다. 이 목표가 믿음의 신조들과 오랜 시간을 거쳐 오며 확정된 윤리 규범과 바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본 2017-2021년판 장정은 본 교단의 연혁을 간략히 소개할 뿐만 아니라, 신조와 교회의 개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일반 규약 그리고 조직과 치리의 원칙들을 포함하는 교회 헌법을 담고 있으며, 현 사회의 중요 사안들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을 신고 있다. 아울러 개교회와 총회 그리고 국제총회 조직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된 정책들을 수록하고 있다.

국제총회는 나사렛성결교회의 법과 교리를 제정하는 최고의 결기관이다. 본 장정은 2017년 6월 25일~29일에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제29차 국제총회에 파견된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행되어야 하는 공적 권위를 지닌다. 장정은 나사렛성결교회의 믿음의 내용과 실천 방법들에 대한 공식 선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나사렛성결교회 교인들은 여기에 있는 교리적 가르침과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 것을 서약한 후에, 장정의 규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참모습을 손상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으로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되며 나아가 나사렛성결교회 교인들의 교제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치리는 독특한 방식을 지닌다. 정치의 형태로 볼 때, 그것은 순전히 감독 집권제도 아니며 그렇다고 전적으로 회중 집권제도 아닌 대의정치를 표방한다. 이는 평신도와 교역자가 교회의 입법과정의 심의와 결정에 동등한 권위를 가짐으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신도와 교역자 모두에게 교회의 일에 대한 참여와 봉사의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진다.

헌신과 분명한 목적은 중요하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합의된 실무와 절차들을 준행하는 명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신속하게 확장시키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의 사역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정의 내용을 습득함으로써 교단의 역사와 교리 및 교의, 그리고 바람직한 윤리 행위에 대하여 익히 아는 일은 나사렛성결교회 교인들의 의무이다. 누구든지 여기에 실린 여러 가지 권고들을 성실히 따른다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충성심과 성실함이 더욱 신장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 노력의 능률과 효율성도 강화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최고의 안내자로 삼고, 본 교단의 공식적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장정을 믿음과 행함, 그리고 치리 절차의 지침서로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기쁨 가운데 다가올 4년의 기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

하는 바이다.

**국제총회감독회**

EUGÉNIO R. DUARTE  
GUSTAVO A. CROCKER  
DAVID W. GRAVES  
FILIMÃO M. CHAMBO  
DAVID A. BUSIC  
CARLA D. SUNBERG



## 목 차

머리말	5
제1부 역사적 진술	17
역사적 진술	19
제2부 교회 헌법	33
헌법서문	35
제1장 신조	35
제2장 교회	48
제3장 조직과 통치기구	53
제4장 수정	56
제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	59
제1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61
제2장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	68
제3장 인간의 성생활과 결혼	73
제4장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	80
제5장 교회 직분자	83
제6장 회의 절차	83
제7장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 수정	84

제4부 통치 기구	85
서 문	87
제1장 개교회 행정체제	89
제 1 절 개교회 조직, 명칭, 법인설립, 재산, 제한, 통합, 해산	89
제 2 절 개교회 회원권	96
제 3 절 개교회 전도및교회회원권위원회	99
제 4 절 개교회 회원권 이동	100
제 5 절 개교회 회원권 종료	100
제 6 절 개교회 회의	101
제 7 절 개교회 연도	105
제 8 절 목회자 청빙	106
제 9 절 개교회와 담임목회자의 관계	112
제10절 개교회와 목회자의 관계갱신	113
제11절 개교회 실행제직회	117
제12절 개교회의 청지기	127
제13절 개교회의 이사	129
제14절 개교회의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130
제15절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NYI)	138
제16절 개교회의 나사렛 탁아소/학교들	138
제17절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NMI)	139
제18절 개교회를 위한 재정모금 금지	140
제19절 개교회 명칭 사용	141
제20절 교회 후원 단체	141

제21절 개교회 직원 .....	142
<b>제2장 총회 행정체제 .....</b>	<b>145</b>
제 1 절 총회의 구역 및 명칭 .....	145
제 2 절 총회연차회의의 대의원과 시기 .....	151
제 3 절 총회연차회의의 업무 .....	153
제 4 절 총회연차회의의 회의록 .....	160
제 5 절 총회감독 .....	161
제 6 절 총회총무 .....	170
제 7 절 총회재무 .....	172
제 8 절 총회고문회 .....	172
제 9 절 총회목회심의부 .....	179
제10절 총회목회연구부 .....	181
제11절 총회전도부 또는 전도부장 .....	184
제12절 총회교회재산관리부 .....	184
제13절 총회재정위원회 .....	186
제14절 총회자문위원회 .....	186
제15절 총회 기관목회디렉터 .....	187
제16절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 .....	187
제17절 총회 나사렛국제청년회 .....	191
제18절 총회 나사렛국제선교회 .....	191
제19절 총회 유급직원 .....	192
제20절 총회 해체 .....	192

제3장	국제총회 행정체제	194
제 1 절	국제총회의 기능 및 조직	194
제 2 절	국제총회 회원권	194
제 3 절	국제총회 회기 및 장소	196
제 4 절	국제총회의 특별회의	197
제 5 절	국제총회 준비위원회	197
제 6 절	국제총회 업무	198
제 7 절	국제총회감독	200
제 8 절	명예 및 은퇴 국제총회감독	203
제 9 절	국제총회감독회	203
제10절	국제총회총무	206
제11절	국제총회재무	208
제12절	국제총회이사회	210
제13절	은급계획	220
제14절	나사렛성결교회 법인의 산하기관 법인체	220
제15절	나사렛출판사	222
제16절	국제총회기독교실천위원회	223
제17절	소명받은 부흥사복지위원회	224
제18절	국제교육과정자문위원회	224
제19절	나사렛국제청년회	225
제20절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	226
제21절	국가위원회	227
제22절	지구	228


<b>제5부</b>	<b>고등 교육</b>	233
제1장	교회와 신학교/신학대학	235
제2장	세계 나사렛교육컨소시엄	237
제3장	국제교육이사회	237
<b>제6부</b>	<b>사역과 기독교 봉사</b>	241
제1장	사역자의 소명과 자격	243
제2장	사역자의 구분과 역할	246
제1절	평신도 사역	246
제2절	성직자 사역	248
제3절	사역의 역할	249
제3장	성직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261
제1절	안수목사를 위한 기본교육과정	261
제2절	안수목사를 위한 기본교육과정의 문화적 적용	265
제4장	인증서와 사역 규정	267
제1절	개교회 전도인	267
제2절	인정교역자	268
제3절	사역목사	274
제4절	장로목사	276
제5절	타 교단 안수목사 인준	278
제6절	은퇴교역자	279

제 7 절	교역자의 이적	280
제 8 절	일반규정	281
제 9 절	교역자 인증서의 반납, 포기 또는 취소	290
제10절	성직자회원의 회원권 회복	295
<b>제7부</b>	<b>사법행정</b>	<b>303</b>
제 1 장	과실일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교회의 징계 절차	305
제 2 장	과실일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조치	306
제 3 장	신뢰나 권위를 부여받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과실에 대한 조치	308
제 4 장	평신도 항소절차	311
제 5 장	목회자 항소 절차	313
제 6 장	절차 규약	318
제 7 장	총회소청부	318
제 8 장	국제총회소청부	319
제 9 장	지구소청부	320
제10장	권리 보장	320
<b>제8부</b>	<b>성 려</b>	<b>323</b>
제1장	성례전	325

성찬식 .....	325
세례식 .....	328
유아, 어린이 세례 .....	329
<b>제2장 예 식 .....</b>	<b>332</b>
헌아식 .....	332
정회원 입회식 .....	334
결혼식 .....	337
장례식 .....	342
임직식 .....	346
교회조직 .....	350
성전 봉헌식 .....	353
<b>제9부 기관의 헌장, 사역방안 및 규칙 .....</b>	<b>355</b>
제1장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NYI) .....	357
제2장 나사렛국제선교회(NMI) .....	404
제3장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SDMI) .....	427
<b>제10부 서류양식 .....</b>	<b>441</b>
제1장 개교회 .....	443
제2장 총 회 .....	449
제3장 기소장 .....	449

제11부	부 록	451
제1장	국제총회 임원	453
제2장	행정위원회, 협의회, 교육 기관	454
제3장	운영정책	464
제4장	현행 도덕 및 사회 문제	469





제 1 부  
역사적 진술



## 역사적 진술

나사렛성결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임을 고백한다. 우리는 신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와 시대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모두 표현된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수용한다. 나사렛성결교회는 기독교 역사 초기 5세기 동안의 일련의 초교파적 기독교 신조들을 적절한 신앙의 표현들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믿음과 실행을 강조하는 사도적인 사역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삶과 섬김의 도를 가르치는 전통적인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한다. 우리 교단은 거룩한 삶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촉구하는 성경적인 요청에 귀를 기울이며, 완전성결 신학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한다.

우리의 기독교 유산은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과 18세기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통하여 영향을 받았다. 173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 내에서 넓은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주로 영국 교회의 성직자였던 요한 웨슬리와 그의 형제 찰스 웨슬리 그리고 죠지 휘필드의 지도하에 생겨났다. 그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 부흥운동의 특징으로서, 평신도들의 복음 전파, 간증, 훈육, 그리고 열심있는 제자들의 각종 모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Societies,’ ‘classes,’ ‘band’ 등이 있었다. 웨슬리의 위대한 부흥운동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거듭나는 중생(칭의), 역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또는 성결(성화), 그리고 은혜의 확증에 대한 성령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요한 웨슬리의 고유한 업적 가운데 하나로서 이 땅 위에서 완전성결에 대한 강조점을 들 수 있는데, 웨슬리는 이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준비한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웨슬리의 신학적 강조점들이 영국 감리교회의 초기 선교 활동에 의해 세계 전역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북미대륙에는 “대륙을 개혁하고 대륙 온 땅에 성경이 가르치는 성결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을 띠고 1784년 감리교 회중교회가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강조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고조되어 미국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지침서”(Guide to Christian Perfection)의 최초 편집자인 티모티 메리트(Timothy Merritt)가 성결 운동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운동의 중심인물은 뉴욕의 피비 팔머(Phoebe Palmer)로서, 그녀는 성결 운동의 촉진을 위한 화요일 기도 모임의 인도자였고, 대중 집회의 연사, 저술가, 편집자로 활동하였다. 1867년 감리교회의 목사인 존 우드(John A. Wood)와 존 인스킵(John Inskip) 그리고 그 외 몇몇 사람들이 뉴저지 주의 바인랜드(Vineland)에서 오래 지속된 전국적 캠프집회를 시작하였고, 그 당시 성결을 장려하기 위한 전국 캠프 집회 연합체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주로 전국 성결연합회로 알려져

왔다. 성결운동을 주창한 사람들의 주장은 웨슬리 감리교회와 자유 감리교회, 그리고 영국의 구세군 등을 창설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복음 전도자들은 이 운동을 독일, 영국, 스칸디나비아, 인도 및 호주로 가져갔다. ‘하나님의 교회’(미국 인디애나주 앤더슨)를 포함하여 새로운 성결교회들이 생겨났다. 이 노력으로 성결교회, 도시선교 및 선교 협의회들이 성장했다. 이들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의 성결교회로 연합하기를 소원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의 나사렛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 성결 그룹의 연합

프레드 힐러리(Fred Hillery)는 1887년에 백성복음교회(People's Evangelical Church)를 미국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 주에서 조직하였고 그 이듬해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의 린(Lynn)에서 선교교회(The Mission Church)가 조직되었다. 1890년에 이 교회들과 다른 8개의 뉴잉글랜드 회중교회는 ‘복음주의 중앙성결연합회’(The Central Evangelical Holines Association)를 조직하였다. 1892년 복음주의 연합회는 안나 한스콧(Anna S. Hanscome)을 안수하였는데, 그녀는 나사렛교단의 모체 연합회에서 안수받은 최초의 여성 목사였다. 1894~1895년에는 윌리엄 후플(William Howard Hoople)이 미국 뉴욕 주 브룩클린(Brooklyn)에 3개의 성결 회중교회를 설립하였고, 이는 미국 오순절교회연합회(The Association of Pentecostal Churches of America)를 형성하였다. “오순절” 명칭은

이들과 다른 나사렛교단 창시자들에게는 “성결”과 동의어였다. 힐러리(Hillery)와 후플(Hoople)의 그룹은 1896년에 합병하여 인도(1899)와 카보베르데 공화국(1901)에 사역을 설립했으며, 선교 책임자였던 히람 레이놀드(Hiram Reynolds)는 1902년 캐나다에 회중교회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1907년에는 캐나다 노바 스코샤(Nova Scotia)에서 미국 아이오와(Iowa)까지 이르게 된다.

로버트 해리스(Robert Lee Harris)는 1894년 미국 테네시 주 밀란에서 ‘그리스도의신약교회’(The New Testament Church of Christ)를 조직하였다. 그 후 해리스 목사의 미망인이었던 매리 케이글(Mary Lee Cagle) 여사가 이 사역들을 서부 텍사스에 전하였다. 찰스 저니간(Charles B. Jernigan) 목사에 의해 1901년 텍사스 주 반알스타인(Van Alstyne)에 최초의 독립성결교회(The First Independent Holiness Church)가 조직되었다. 1904년 그리스도 신약교회와 독립성결교회의 대표들이 텍사스 주의 라이싱 스타(Rising Star)에 모여 통합원칙에 합의하였고, ‘그리스도성결교회’(the Holiness Church of Christ)를 형성하게 된다. 1908년 그리스도성결교회는 미국 조지아에서 미국 뉴 멕시코까지 확장되었고, 고아와 미혼모들을 지원하며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한 인도와 일본에서 사역하는 자들을 도왔다.

1895년 피니어스 브리지(Phineas F. Bresee) 목사와 조셉 위드니(Joseph P. Widney)가 10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 나사렛성결교회를 창립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못 영혼들의 구원과 궁핍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나사렛성결교회는 주로 미 서부 해안을 끼고 퍼져 나갔고, 로키산맥의 동부로부터 일리노이(Illinos) 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교회들이 있었고 그들은 인도 캘커타(Calcutta)의 원주민 선교를 후원하였다.

1907년 10월, 미국 일리노이(Illinois) 주 시카고(Chicago)에서 미국 오순절교회연합회(The Association of Pentecostal Churches of America)와 나사렛성결교회(The Church of the Nazarene)가 공동으로 소집되어 감독의 권한과 개교회의 독립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교회의 치리형태에 합의를 보았다. 총회감독들은 기존 교회를 육성하고 보살피며 새로운 교회들을 조직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권한은 결코 자립 교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성결교회(Holiness Church of Christ)의 대의원들이 참관자로 참석하였다. 첫 번째 국제총회는 양 단체의 이름을 따서 교단의 명칭을 ‘오순절 나사렛성결교회’(The Pentecostal Church of the Nazarene)라고 하였다. 초대 국제총회감독으로는 피니어스 브리지(Phineas F. Bresee) 목사와 히람 레이놀즈(Hiram F. Reynolds) 목사가 피선되었다.

1908년 9월에는 그리스도성결교회(The Holiness Christian Church)의 펜실베이니아 총회가 트럼보(H. G. Trumbaur) 목사의 인도 하에 오순절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하였다.

오순절 나사렛성결교회의 제2차 국제총회는 텍사스 주 파일럿 포인트(Pilot Point, Texas)에서 1908년 10월 8일~14일까지 그리스도성결교회의 중앙협의회와 연합회의로 모였다.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두 교회의 통합을 이제 완성하기로 하자”는 안에 대해 밋참(R. B. Mitchum)이 동의하였고 루쓰(C. W. Ruth)가 제청하였으며, 브리지(Phineas Bresee) 목사가 이 동의안의 가결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오전 10시 40분경에 열의에 찬 분위기 하에 만장일치의 기립투표로 채택되었다.

1898년 맥클러칸(J. O. McClurkan)이 테네시 주와 인접한 주에서 온 성결교인들을 한데 묶어 ‘오순절선교회’(The Pentecostal Mission)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쿠바, 과테말라, 멕시코, 인도 등지에 파송하였다. 1906년 스코트랜드 글라스고(Glasgow)에 있는 파크헤드 회중교회(Parkhead Congregational Church)의 조지 샤프(George Sharpe) 목사는 웨슬리의 성결교리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목회지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그는 파크헤드 오순절교회(The Parkhead Pentecostal Church)를 세웠고, 이와 함께 다른 교회들도 조직되어 1909년에 스코틀랜드 오순절교회(The Pentecostal Church of Scotland)가 설립된다. 이 오순절선교회와 스코틀랜드 오순절교회가 1915년에 오순절 나사렛성결교회와 통합을 이루었다.

1919년 제5차 국제총회는 교단의 공식명칭을 ‘나사렛성결교회’(The Church of the Nazarene)로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는 ‘오순절’(Pentecostal)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새로운 의미들 때문이었다.



## 세계적 교회로 지향

나사렛성결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은 1915년까지 연합된 초기 교회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특성에는 국제적인 차원이 있었다. 교단은 미합중국, 인도, 카보베르데 공화국, 쿠바,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일본, 아르헨티나, 영국, 스와질란드, 중국 및 페루에서 완전히 조직된 교회를 지원했다. 1930년까지 나사렛성결교회는 남아프리카, 시리아, 팔레스타인, 모잠비크, 바베이도스 및 트리니다드에 이르게 되었다. 총회감독이었던 산틴(V. G. Santin-멕시코), 키타가와 히로시(Kitagawa Hiroshi-일본), 사무엘 부즈발(Samuel Bhujbal-인도)과 같은 국가 지도자들이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특성은 새로운 가입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1922년, 모리슨(J. G. Morrison)은 미국의 미네소타, 다코다, 몬태나 주에 있는 1,000명 이상의 교인들과 많은 평신도성결협회(Layman's Holiness Association) 임원들을 나사렛성결교회로 이끌었다. 부흥사인 정남수 목사는 한국 목회자들과 회중들을 나사렛성결교회로 이끌었고 이에 1948년도에 공식으로 조직되었다. 버그(A. E. Berg)의 지도 가운데 있던 호주의 교회들은 1945년 연합되었다. 알프레도 델 로소(Alfredo del Rosso)는 1948년 이탈리아 교회들을 나사렛성결교회로 이끌었다. 험시바믿음선교협회의 남아프리카 사역과 미국 아이오와 주 타보르에 있던 이 협회의 본부는 1950년경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하였다.

1907년 데이비드 토마스(David Thomas)가 영국 런던에서 설립한 국제성결선교회(The International Holiness Mission)는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에 의해 광범위한 사역을 발전시켰다. 1952년 영국의 맥클래건(J. B. Maclagan)의 지도하에 있던 영국에 있는 이 교회들과 아프리카의 사역 단체들은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하였다. 메이나드 제임스(Maynard James)와 잭 포드(Jack Ford)는 1934년 영국에서 갈보리성결교회(The Calvary Holiness Church)를 결성하고 1955년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했다. 1918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 프랭크 고프(Frank Goff)가 조직한 복음사역자교회(The Gospel Workers Church)는 1958년 나사렛성결교회에 가입하였다. 나이지리아인들은 1940년대에 토착 나사렛성결교회를 설립했고 예레미야 U. 카이템(Jeremiah U. Ekaidem)의 지도아래 1988년 국제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하였다.

나사렛성결교회는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개신교들의 규범과 다른 양식의 교회 모델을 개발해왔다. 1976년에 교단의 미래 모습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80년에 보고된 보고서에는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화를 권장했다. 첫째, 나사렛성결교회에 속한 개교회와 연회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문화적 상황과 함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성도들의 전세계적 교제”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둘째, 국제화는 “나사렛성결교회의 독특한 사명” 즉, “나사렛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협상할 수 없는 핵심 요소

로서의 성경적 성결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공통의 결의를 확인했다.

1980년 국제총회는 신조를 중심으로 “국제 신학적 통일성”을 받아들였으며, 모든 목회자들에게 신학 훈련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전세계 각 지역에 있는 신학 교육 기관의 적절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선언을 통해서 나사렛사람들은 하나의 연결 틀 안에서 국제적인 성결한 공동체로서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요청받았다. 이는 “강자와 약자, 기부자와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사람과 나라를 평가한 식민지적 세계관 대신에 “세계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 즉 모든 파트너는 평등하고, 각각의 강점을 갖고 있음을 인정함”을 취한 것이다.

[참고: 나사렛성결교회 제20차 국제총회 회의록(1980), 232. 프랭클린 쿡(Franklin Cook, 국제적 차원(The International Dimension) (1984), 49.]

나사렛성결교회는 개신교 속에서 독특한 성장 패턴을 갖고 있다. 1998년에 이르러 나사렛성결교회의 교인의 절반은 더 이상 미국과 캐나다에 살지 않고 있고, 2001년 세계총회 대의원의 41%가 영어를 제2외국어로 말하거나 전혀 말하지 못했다. 카보베르데공화국 출신의 아프리카인 유지니오 듀아르테(Eugénio Duarte)는 2009년에 국제총회감독 중 한명으로 선출되었다. 2013년 중앙 아메리카의 과테말라 태생인 구스타보 크로커(Gustavo Crocker)가 국제총회감독으로 선출되었다. 2017년 모잠비크 출신인 또 다른 아프리카인 필리마오 참보(Filimão Chambo)도 국제총회감독으로 선출되었으며, 처음으로 국제총회감독의 절반 이상이 북미 이외의 지

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2017년에 나사렛성결교회는 전세계 160여국에 471개의 총회와 250만 명의 정회원을 가지게 되었다. 나사렛인의 28%는 아프리카인이며, 29%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에 살고 있으며 약 1/4은 미국과 캐나다에 산다. 유럽 지역에 설립된 나사렛성결교회는 동유럽으로의 새로운 개척활동을 지원했고, 한국, 일본, 인도를 전통적 기점으로 자리 잡았던 아시아 지역에서의 나사렛성결교회는 동남아시아로 활동 영역을 점점 넓혀갔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가장 큰 세 개의 총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으며,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세 개의 교회는 남미와 카리브 해에 있다.

## 국제적인 사역의 독특성

나사렛의 전략적 사역들은 역사적으로 전도, 사회(구제)사역 및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사역들은 각 문화 내에서 웨슬리의 원칙을 토착화한 선교사들과 수많은 현지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번성한다.

**전도:** 히람 레이놀즈(Hiram F. Reynolds)는 나사렛의 타문화 사역을 수립하는데 있어 전략가적인 인물이었다. 국제총회감독으로서의 25년 동안, 그의 끊임없는 지지와 옹호는 선교를 높은 교단적 우선순위로 두는데 도움이 되었다. 1915년 이래 나사렛국제선교회(본래 여선교회)는 전 세계 교회들에서 기금을 모으고 개교회 내

선교 교육을 장려해 왔다. 국내선교는 북미 복음화의 핵심적 부분이었으며, 현지인 선교사인 존 디아즈(John Diaz-카보베르데 공화국), 산토스 엘리존도(Santos Elizondo-멕시코), 사무엘 크리코리안(Samuel Krikorian-팔레스타인), 나가마쓰(J. I. Nagamatsu-일본), 정남수(한국)는 각 나라별 선교 개척자들이었다. 20세기 중반 영혼을 위한 대전도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복음화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했다. 북미 지역에서 자국선교가 확장되었고 다른 대륙에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렸다.

1970년대에 교회는 도시를 일차사역의 장소로 재발견하게 되었다. 새로운 유형의 도시선교 사역들이 개발되었고, 나사렛성결교회는 1980년대에 국제적인 “도시집중전도대회”에 착수했다. 나사렛성결교회는 1990년대 동유럽에 들어갔다. 나사렛 사람들은 동아프리카 부흥에 참여하고 방글라데시처럼 다양화된 국가들에서도 사역을 시작했다. 2010년 3월 24일 방글라데시에서는 기독교 역사상 주목할 만한 사건인 193명이 장로목사로 동시에 안수받는 일이 있었다.

**구제:** 초기 나사렛 사람들은 인도의 기근구호를 지원하고 고아원, 미혼모 소녀와 여성을 위한 출산 수용시설, 중독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도시 선교회를 설립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다. 1920년대에 중국과 스와질란드에 병원이 세워지고 나중에 인도와 파푸아 뉴기니에 병원이 세워지면서 교회의 사회 사역 우선순위는 의학으로 변화되었다. 나사렛 의료전문가들은 병든 환자들을 돌보

고, 수술을 시행하고, 간호사를 훈련시키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동 가능한 진료소를 후원했다. 아프리카의 나병 진료소와 같은 전문 클리닉이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사회사역의 범위를 더 넓힘으로써 아동후원, 재난 구호,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고아 지원, 수자원 프로젝트 및 식량 배급을 포함하여 오늘날 지속되는 광범위한 사회 구제사역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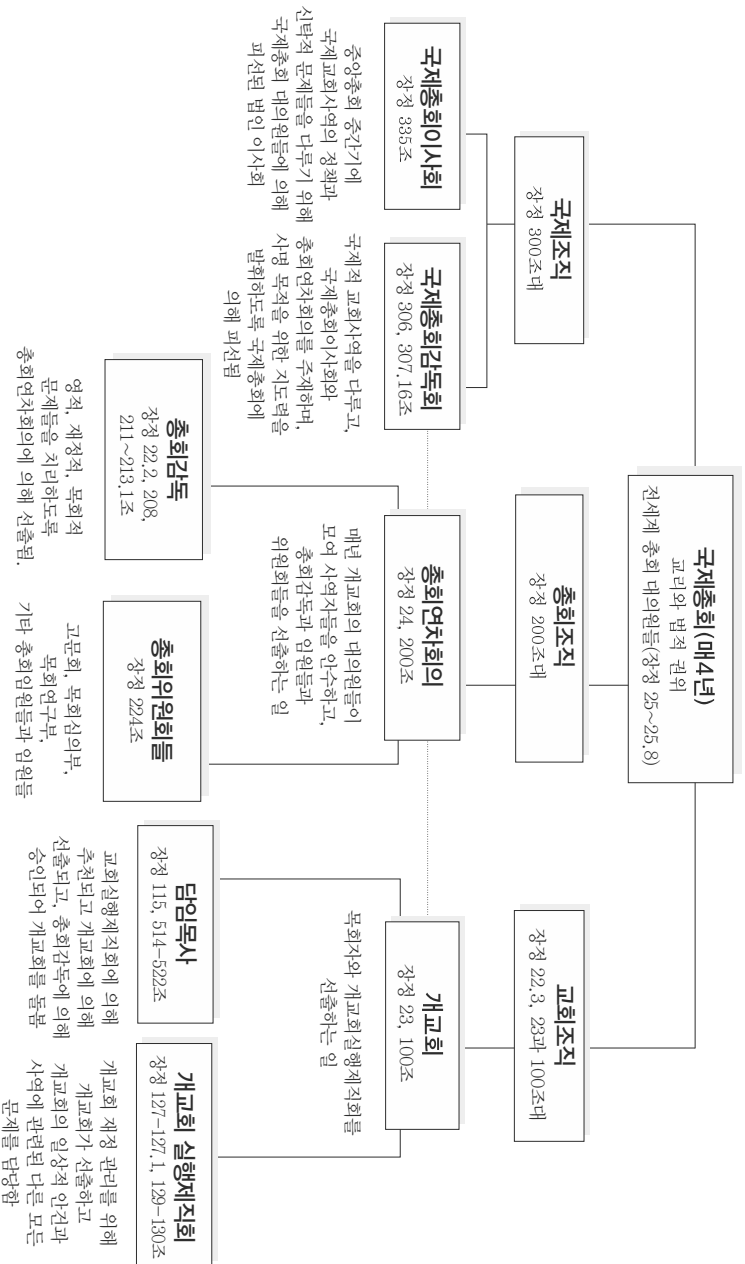
**교육:** 나사렛 주일학교와 성경공부는 항상 교회 생활의 일부였으며,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나사렛성결교회는 1905년에 캘커타에 설립된 소녀희망학교의 초창기부터 기초교육과 문맹퇴치 운동에 투자해 왔다. 나사렛학교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회, 경제 및 종교 생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미국의 초기 나사렛대학에는 대부분 20세기 중반까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부속되어 있었다. 나사렛성결교회 설립자들은 목회자와 다른 기독교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평신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믿으며 고등교육에 크게 투자했다. 국제 교육이사회에는 아프리카, 캐나다, 한국, 스와질란드, 트라니다드 및 미국에 있는 일반 대학 및 대학교, 30개의 신학대학, 인도와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간호학교, 호주와 코스타리카, 영국, 필리핀 및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53개의 나사렛 고등교육기관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사렛성결교회는 전세계 각처에 있는 하나의 교회에서 믿는

자들의 하나된 세계적 공동체를 향해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웨슬리 전통에 근거하여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며, 성결한 사람들이며, 사명의 사람들임을 이해하고, 그들의 사명선언,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 삼는 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 나사넷 통치기구 조직도

- 세계 나사넷교회
- 통치기구에 관한 헌법과 법조항 - 장정 22~27조





# 제 2 부

# 교 회 헌 법

헌법서문

제 1 장 신조

제 2 장 교회

제 3 장 조직과 통치기구

제 4 장 수정



## 헌법서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 특히 은혜의 두 번째 역사인 온전 성결교리와 체험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타교파와 효과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우리 나사렛성결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들은 우리들 가운데 수립된 헌법 제정의 원리에 입각하여 나사렛성결교회의 기본법 또는 헌법으로서 신조와 그리스도인의 인성 규약, 그리고 조직 및 치리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채택하여 공포한다.

### 제 1 장 신 조

(주: 성경구절은 신조를 뒷받침하며 1976년 국제총회의 결정으로 삽입되었다.  
그러나 교회헌법의 본문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 제1절 삼위일체의 하나님

1. 우리는 한 분의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우주의 주권적 창조자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홀로 하나님이시며 그의 본성과 속성, 그리고 목적하심에 있어서 거룩하심을 믿는다. 거룩한 사랑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은 본질상 삼위일체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창 1; 레 19:2; 신 6:4-5; 사 5:16; 6:1-7; 40:18-31; 마 3:16-17; 28:19-20; 요 14:6-27; 고전 8:6; 고후 13:14; 갈 4: 4-6; 엡 2:13-18; 요 일 1:5; 4:8)

## 제2절 예수 그리스도

2.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성부와 더불어 영원히 계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두 완전한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신 참 하나님이지요, 참 인간으로서 신인이 되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진정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의 완전한 본성에 해당 되는 모든 것을 갖추신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는다.

(마 1:20-25; 16:15-16; 눅 1:26-35; 요 1:1-18; 행 2:22-36; 롬 8:3, 32-34; 갈 4:4-5; 빌 2:5-11; 골 1:12-22; 딤후 6:14-16; 히 1:1-5; 7:22-28; 9:24-28; 요일 1:1-3; 4:2-3, 15)

## 제3절 성령

3.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격이신 성령을 믿는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 언제나 계시며 능률적으로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신자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심을 믿는다.

(요 7:39; 14:15-18, 26; 16:7-15; 행 2:33; 15:8-9; 롬 8:1-27; 갈 3:1-14; 4:6; 엡 3:14-21; 살전 4:7-8; 살후 2:13; 벧전 1:2; 요일 3:24; 4:13)

## 제4절 성 경

4. 우리는 성경의 완전영감을 믿는다. 이로써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오류없이 계시해 주시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어느 것도 신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눅 24:44-47; 요 10:35; 고전 15:3-4; 딤후 3:15-17; 벧전 1:10-12; 벧후 1:20-21)

## 제5절 원죄와 자범죄

5. 우리는 죄가 인류 시조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에 의해 사망이 들어왔음을 믿는다. 죄에는 두 종류 즉 원죄 또는 부패성과 실제적 죄 곧 자범죄가 있음을 믿는다.

5.1. 우리는 원죄 혹은 부패성이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처음 조상이 창조되었을 때의 본래의 의로운 상태 곧 순결한 상태에서 매우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을 혐오하고, 영적 생명을 상실하여, 악으로 치우치며, 그런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나아가서 성령 세례에 의하여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중생한 자의 새 생명 속에 원죄가 계속 남아있음을 믿는다.

5.2. 우리는 원죄가 실제적 죄를 범하게 하는 유전된 경향성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치유역사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실제적 죄와

다르다는 것을 믿는다.

**5.3.** 우리는 실제적 혹은 개인적 죄란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알려진 법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실제적 죄는 시조 타락의 후유적 결과 곧 본의 아닌 불가피한 결합, 연약성, 과오, 실수, 실패, 또는 완전한 행위의 표준에서 벗어난 기타 행위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러한 무고한 결과는 영적인 죄라고 합당하게 불릴 수 있는 자세나 태도 곧 그리스도의 영에 대치되는 자세나 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적인 죄는 우선적이고 본질적으로 사랑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죄는 불신앙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믿는다.

(원죄: 창 3: 6:5; 욥 15:14; 시 51:5; 렘 17:9-10; 막 7:21-23; 롬 1:18-25; 5:12-14; 7:1-8:9; 고전 3:1-4; 갈 5:16-25; 요일 1:7-8)

(자범죄: 마 22:36-40(요일 3:4 포함) ; 요 8:34-36; 16:8-9; 롬 3:23; 6:15-23; 8:18-24; 14:23; 요일 1:9-2:4; 3:7-10)

## 제6절 속 죄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것과, 이 속죄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며 모든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임을 믿는다. 이 속죄는 도덕적 책임의 능력이 없는 자와 죄에 대한 분별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은혜에 의해 유효하나 책임 연령에 도달한 자는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때에만 유효함을 믿는다.

(사 53:5-6, 11; 막 10:45; 눅 24:46-48; 요 1:29; 3:14-17; 행 4:10-

12; 롬 3:21-26; 4:17-25; 5:6-21; 고전 6:20; 고후 5:14-21; 갈 1:3-4; 3:13-14; 골 1:19-23; 딤펢전 2:2-6; 딤펢 2:11-14; 히 2:9; 9:11-14; 13:12; 벵전 1:18-21; 2:19-25; 요일 2:1-2)

## 제7절 선행은총

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켜 의에 이르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받으실만한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있게 됨을 믿는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류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그래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창조되었음을 믿는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부패되었으므로 자신의 자연적 힘이나 공로로 스스로 돌이키고 준비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형상 및 도덕적 책임: 창 1:26-27; 2:16-17; 신 28:1-2; 30:19; 수 24:15; 시 8:3-5; 사 1:8-10; 렘 31:29-30; 겔 18:1-4; 미 6:8; 롬 1:19-20; 2:1-16; 14:7-12; 갈 6:7-8)

(본연의 무능력: 욥 14:4; 15:14; 시 14:1-4; 51:5; 요 3:6a; 롬 3:10-12; 5:12-14, 20a; 7:14-25)

(무상은총 및 믿음의 역사: 겔 18:25-26; 요 1:12-13; 3:6b; 행 5:31; 롬 5:6-8, 18; 6:15-16, 23; 10:6-8; 11:22; 고전 2:9-14; 10:1-12; 고후 5:18-19; 갈5:6; 엡 2:8-10; 빌 2:12-13 골 1:21-23; 딤펢후 4:10a; 딤펢 2:11-14; 히 2:1-3; 3:12-15; 6:4-6; 10:26-31; 약 2:18-22; 벵후 1:10-11; 2:20-22)

## 제8절 회개

8. 하나님의 영은 회개하려는 모든 사람을 은혜로 도와 마음의 참회를 하게 하고 자비의 소망을 갖게 하여, 용서와 영적 생명을 믿을 수 있게 함을 믿는다. 회개는 죄에 대한 진실하고 철저한 마음의 변화로서 인격적으로 죄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며, 행위로나 혹은 의지로 하나님을 거슬러 죄인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어진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은혜에서 떨어져 믿음을 저버릴 수 있으며, 소망없이 영원히 버려질 수 있다고 믿는다. 중생한 성도는 다시 죄 가운데로 가지 않아야 하며,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지지 않는 교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는다.

(대하 7:14; 시 32:5-6; 51:1-17; 사 55:6-7; 렘 3:12-14; 겔 18:30-32; 33:14-16; 막 1:14-15; 눅 3:1-14; 13:1-5; 18:9-14; 행 2:38; 3:19; 5:31; 17:30-31; 26:16-17; 롬 2:4; 고후 7:8-11; 살전 1:9; 벧후 3:9)

## 제9절 칭의, 중생, 양자

9. 우리는 칭의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며 사법적인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전적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이 범한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며, 의롭다고 용납해 주시는 것임을 믿는다.



**9.1.** 중생 혹은 신생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회개한 신자의 도덕적 본성이 영적으로 소생하여 뚜렷한 영적인 생명을 얻어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믿는다.

**9.2.** 우리는 양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의롭게 되고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임을 믿는다.

**9.3.** 우리는 칭의, 중생, 양자됨이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체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회개 후 믿음의 조건하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은혜의 상태와 역사는 성령께서 증거하심을 믿는다.

(눅 18:14; 요 1:12-13; 3:3-8; 5:24; 행 13:39; 롬 1:17; 3:21-26, 28; 4:4-9, 17-25; 5:1, 16-19; 6:4; 7:6; 8:1, 15-17; 고전 1:30; 6:11; 고후 5:17-21; 갈 2:16-21; 3:1-14, 26; 4:4-7; 엡 1:6-7; 2:1, 4-5; 빌 3:3-9; 골 2:13; 딤후 3:4-7; 벧전 1:23; 요일 1:9; 3:1-2, 9; 4:7; 5:1, 9-13, 18)

## **제10절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온전 성결**

**10.** 우리는 성결이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는다. 그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초기성결 혹은 중생(칭의와 동시에) 그리고 온전 성결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영화에서 정점을 이루는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온전 성결은 중생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로 인해서 신자는 원죄 또는 부패성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상태에 들어가고, 또 사랑의 거룩한 순종이 완전

해지는 것을 믿는다.

온전 성결이란 성령세례 혹은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죄에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임재체험을 하게 되며 믿는 자에게 그의 생활과 봉사를 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온전 성결은 예수의 보혈에 의해 제공되며 완전한 헌신이 있을 후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은혜의 역사와 상태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이 체험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한 사랑, 마음의 순수성,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 충만케 하심, 복의 충만, 또는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같은 여러 용어로 불리며 각각 다른 면을 나타낸다.

**10.1.** 우리는 정결한 마음과 성숙한 인격에는 뚜렷한 구별이 있음을 믿는다. 전자는 온전 성결의 결과로써 순간적으로 얻어지며, 후자는 은혜 속의 성장의 결과이다.

우리는 온전 성결의 은혜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성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동적 의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이 역동적 의지는 의식적으로 양육되어야 하며, 인격이나 성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 및 개선의 필수 조건과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와 같은 의도적 노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손상되고 은혜 자체가 좌절되어 마침내 잃어 버려진다.

은혜의 수단, 특히 친교, 훈련, 교회의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신자는 은혜 안에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

(렘 31:31-34; 겔 36:25-27; 말 3:2-3; 마 3:11-12; 눅 3:16-17; 요 7:37-39; 14:15-23; 17:6-20; 행 1:5; 2:1-4; 15:8-9; 롬 6:11-13, 19; 8:1-4, 8-14; 12:1-2; 고후 6:14-7:1; 갈 2:20; 5:16-25; 엡 3:14-21; 5:17-18, 25-27; 빌 3:10-15; 골 3:1-17; 살전 5:23-24; 히 4:9-11; 10:10-17; 12:1-2; 13:12; 요일 1:7,9)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한 사랑”: 신 30:6; 마 5:43-48; 22:37-40; 롬 12:9-21; 13:8-10; 고전 13; 빌 3:10-15; 히 6:1; 요일 4:17-18

“마음의 순수성”: 마 5:8; 행 15:8-9; 벧전 1:22; 요일 3:3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충만케 하심”: 렘 31:31-34; 겔 36:25-27; 말 3:2-3; 마 3:11-12; 눅 3:16-17; 행 1:5; 2:1-4; 15:8-9)

“복의 충만”: 롬 15:29

“그리스도인의 거룩”: 마 5:1-7:29; 요 15:1-11; 롬 12:1-15:3; 고후 7:1; 엡 4:17-5:20; 빌 1:9-11; 3:12-15; 골 2:20-3:17; 살전 3:13; 4:7-8; 5:23; 딤후 2:19-22; 히 10:19-25; 12:14; 13:20-21; 벧전 1:15-16; 벧후 1:1-11; 3:18; 유 20-21)

## 제11절 교회

**1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 함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믿는다.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 성령 안에서의 일치와 교제, 말씀 전파와 성례전 집례 및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삶과 상호 책임 이행을 통하여 그 생활을 나타내도록 하신다.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화해 사역을 하는 것이다. 교회는 전도, 교육, 박애봉사, 정의를 위한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활동함을 통해 제자를 만들고 이로써 그 목적을 이룬다.

교회는 역사적 실체로서 문화적 조건에 맞추어 조직되고 개교회와 보편적 교회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들을 구별하여 특별 사역에 임하게 한다.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그의 통치 하에 생활하도록 부르신다.

(출 19:3; 렘 31:33; 마 8:11; 10:7; 16:13-19,24; 18:15-20; 28:19-20; 요 17:14-26; 20:21-23; 행 1:7-8; 2:32-47; 6:1-2; 13:1; 14:23; 롬 2:28-29; 4:16; 10:9-15; 11:13-32; 12:1-8; 15:1-3; 고전 3:5-9; 7:17; 11:1, 17-33; 12:3,12-31; 14:26-40; 고후 5:11-6:1; 갈 5:6, 13-14; 6:1-5,15; 엡 4:1-17; 5:25-27; 빌 2:1-16; 살전 4:1-12; 딤펢전 4:13; 히 10:19-25; 벧전 1:1-2,13; 2:4-12,21; 4:1-2,10-11; 요일 4:17; 유 24; 계 5:9-10)

## 제12절 세례

**12.**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그리스도인의 세례가 속죄의 은총을 받아들임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함을 표하는 성례라고 믿는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 세례는 성결과 의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할 의지를 고백하는 성도에게 베풀어져야 한다.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어린 아이와 도덕적으로 순결한 자\*는 부모나 보호

자의 요청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교회는 지속적인 기독교적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세례는 점수례, 주수례, 침수례로 베풀어 질 수 있다.

(마 3:1-7; 28:16-20; 행 2:37-41; 8:35-39; 10:44-48; 16:29-34; 19:1-6; 롬 6:3-4; 갈 3:26-28; 골 2:12; 벧전 3:18-22)

### 제13절 성찬식

**13.** 우리 주요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은 그의 삶과, 수난과,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성례이다. 성찬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생명과 구원 그리고 교회와의 연합으로 새롭게 되도록 초청받는다. 모두는 성찬의 중요성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로 나아와야 하며 성찬을 받음으로써, 주의 죽으심을 그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자라면 가능한 자주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께 초청받는다.

(출 12:1-14; 마 26:26-29; 막 14:22-25; 눅 22:17-20; 요 6:28-58; 고전 10:14-21; 11:23-32)

---

\* 한국어판 주: '도덕적으로 순결한 자'는 지적장애인 등과 같은 종류의 용어로 이해될 수 있다.

## 제14절 신 유

14. 우리는 성경 교리로서 신유를 믿으며, 병자의 치유를 위해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도해 줄 것을 권면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의료과학의 수단을 통하여 병자들을 치유하심을 믿는다.

(왕하 5:1-19; 시 103:1-5; 마 4:23-24; 9:18-35; 요 4:46-54; 행 5:12-16; 9:32-42; 14:8-15; 고전 12:4-11; 고후 12:7-10; 약 5:13-16)

## 제15절 그리스도의 재림

15.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분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잠자고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는 못하나,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들리어 주를 만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을 믿는다.

(마 25:31-46; 요 14:1-3; 행 1:9-11; 빌 3:20-21; 살전 4:13-18; 딤후 2:11-14; 히 9:26-28; 벨후 3:3-15; 계 1:7-8; 22:7-20)

## 제16절 부활, 심판, 운명

16.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 즉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의 몸이 부활하여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믿는다.

16.1.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이생에서 행한 그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될 장래의 심판을 믿는다.

**16.2.**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모든 자에게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창 18:25; 삼상 2:10; 시 50:6; 사 26:19; 단 12:2-3; 마 25:31-46; 막 9:43-48; 눅 16:19-31; 20:27-38; 요 3:16-18; 5:25-29; 11:21-27; 행 17:30-31; 롬 2:1-16; 14:7-12; 고전 15:12-58; 고후 5:10; 살후 1:5-10; 계 20:11-15; 22:1-15)

## 제 2 장 교 회

### 제1절 보편적 교회

17.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영적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 제2절 개교회

18. 각각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교제와 사역을 위해 함께 연합된다.

### 제3절 나사렛성결교회\*

19. 나사렛성결교회는 교회의 교리와 제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함께 연합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인의 회개와 신자의 온전 성결과 거룩함의 도모와 초대 신약교회 속에 있었던 단순함과 영적 능력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

\* 한국어판 주: 본래의 교단 명칭은 나사렛교회(Church of the Nazarene)이나 한국에서는 국제 본부의 승인을 얻어 1974년 7월 29일에 나사렛성결교회로 개명, 공포하였다.



#### **제4절 신앙 공동선언**

**20.** 교회회원으로의 권리와 특전은 그가 중생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경험만을 신앙고백으로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간략한 신앙선언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0.1.**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20.2.**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는다.

**20.3.** 사람은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러므로 악에 기울어져 있고, 그 상태가 계속된다고 믿는다.

**20.4.**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없이 영원히 버려진다는 것을 믿는다.

**20.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하심을 받고 거듭나게 되며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20.6.** 믿는 사람은 중생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성결하게 됨을 믿는다.

**20.7.** 거듭남과 믿는 자의 완전 성결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심을 믿는다.

**20.8.** 우리 주께서 재림하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다.

## 제5절 그리스도인의 인성규약

21.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복된 특권이며 거룩한 의무이다.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하고 우리의 교제에 함께 하게 되는 모든 사람은 경건한 생활과 활기찬 신앙심으로 죄에서 구원된 증거를 보여주고 모든 내주하는 죄악에서 깨끗해졌거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함을 증명해야 한다.

21.1.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고 있는 믿음과 실행의 규칙으로 다음의 사항을 지킨다.

- (1)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출 20:3-6; 레 19:17-18; 신 5:7-10; 6:4-5; 막 12:28-31; 롬 13:8-10)
- (2)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힘쓰고, 그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일.  
(마 28:19-20; 행 1:8; 롬 1:14-16; 고후 5:18-20)
- (3)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일.  
(엡 4:32; 딤후 3:2; 벴전 2:17; 요일 3:18)
- (4) 같은 믿음을 나누고 있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돕는 일.  
(롬 12:13; 갈 6:2,10; 골 3:12-14)

- (5) 타인의 육신이나 영혼을 위해 선행을 추구하는 일. 주어진 기회와 능력을 따라서 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와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며 또한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일.

(마 25:35-36; 고후 9:8-10; 갈 2:10; 약 2:15-16; 요일 3:17-18)

- (6)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돕기 위해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일.

(말 3:10; 눅 6:38; 고전 9:14; 16:2; 고후 9:6-10; 빌 4:15-19)

- (7)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히 10:25), 말씀 사역(행 2:42), 성찬 예식(고전 11:23-30), 성경 탐구와 묵상(행 17:11; 딤후 2:15; 3:14-16), 가정예배와 개인 경건 시간(신 6:6-7; 마 6:6) 등을 포함하는 모든 성례와 은혜의 수단에 성실히 참석하는 일.

## **21.2. 둘째, 다음에 열거한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한다.**

- (1)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

(출 20:7; 레 19:12; 약 5:12)

- (2) 불필요한 세속적인 활동에 가담함으로써 주일을 모독하고 주일의 거룩성을 부인하는 행위에 몰두하는 일.

(출 20:8-11; 사 58:13-14; 막 2:27-28; 행 20:7; 계 1:10)

- (3) 결혼 전, 결혼 외, 또는 동성간의 관계 등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 혹은 타락 그리고 부적절한 행위.

(창 19:4-11; 출 20:14; 레 18:22; 20:13; 마 5:27-32; 롬 1:26-27; 고전 6:9-11; 갈 5:19; 살전 4:3-7; 딤후 1:10)

- (4) 신체와 정신 건강에 해로운 버릇이나 습관: 그리스도인은 그들 자신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해야 한다.

(잠 20:1; 23:1-3; 고전 6:17-20; 고후 7:1; 엡 5:18)

(5) 말다툼, 악을 악으로 갚는 일, 험담, 중상, 억측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

(고후 12:20; 갈 5:15; 엡 4:30-32; 약 3:5-18; 벰전 3:9-10)

(6) 부정직, 매매에 있어서 부당한 이득, 거짓 증거, 그리고 어  
둠의 일들.

(레 19:10-11; 롬 12:17; 고전 6:7-10)

(7) 의상이나 행위를 자랑으로 여기는 일: 우리는 그리스도인  
의 거룩함에 맞는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

(잠 29:23; 딤펴전 2:8-10; 약 4:6; 벰전 3:3-4; 요일 2:15-17)

(8)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음악, 문학 및 오락.

(고전 10:31; 고후 6:14-17; 약 4:4)

**21.3. 셋째, 교회와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면서, 교회의 교리  
와 전통을 비방하지 않고 전적으로 지지하며, 전도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엡 2:18-22; 4:1-3, 11-16; 빌 2:1-8; 벰전 2:9-10)

## 제 3 장 조직과 통치기구

### 제1절 정치형태

**22.** 나사렛성결교회는 대의제도(代議制度)의 정치형태를 가지고 있다.

**22.1.** 우리는 나사렛성결교회의 구조에 개교회, 총회, 국제총회의 3개의 입법기구를 두는 것을 합의한다. 각 지구는 선교 전략과 수행을 위한 행정기구로 섬긴다.

**22.2.** 우리는 개교회가 그 사명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하고 돕는 감독직제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감독의 직무는 사기를 북돋고, 동기를 부여해 주며, 관리와 운영에 도움을 제공하고 곳곳에 새로운 교회와 선교활동을 조직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22.3.** 우리는 감독에게 부여된 권한이 완전히 조직된 교회의 독립적인 활동에 간섭할 수 없음을 동의한다. 국제총회가 지혜로운 길이라고 승인한 제도의 범주 안에서 개교회는 개교회가 원하는 목회자를 청빙하는 권한을 누린다. 각 교회는 각종 회의에 파송하는 대표를 선출하며 독자적인 재정 관리와 개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계되는 그 밖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

### 제2절 개교회

**23.** 개교회의 회원은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하나의 교회로 조직된 사람들로서, 구원의 체험과 우리의 교리를 믿고 우리의 정치체제에 순종하겠다는 자신의 의향을 표

명한 후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이에 의하여 공적으로 받아들여진 모든 사람들로서 구성된다. (100-107)

### **제3절 총회연차회의**

**24.** 국제총회는 회원교회를 묶어 총회연차회의들을 구성한다. 국제총회는 공평하고 정당한 모습으로 평신도와 목회자 대의원을 세우기 위해 이들의 선출 자격을 결정한다. 단, 모든 현직에 있는 안수목사는 소속된 총회연차회의의 회원이 된다.

### **제4절 국제총회**

**25. 구성:** 국제총회는 나사렛성결교회 각 총회연차회의에서 선출된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들과 임기 중에 있는 당연직 회원들과 국제총회에서 지정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25.1. 대의원 선출:** 각 총회연차회의에서는 국제총회가 열리기 16개월 이내, 여행비자나 기타 특별 준비를 요하는 지역에서는 24개월 이내에 국제총회에 보낼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를 최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이때에 교역자 대표는 나사렛성결교회의 재직 중인 안수목사여야 한다. 각 3단계의 총회는 최소한 1명의 교역자 대표와 1명의 평신도 대표를 파송할 수 있으며 국제총회에서 결정한 교회 회원 수에 비례한 기준에 따라 추가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각 총회에서는 정 대의원의 2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의 후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여행비자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총회는 총회의 고문회에서 추가 후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203.23, 301-301.1)

**25.2. 확인증:** 각 총회의 총무는 국제총회에 파송할 정 대의원과 후보 대의인에게 각각 대의원 피선증서를 발부하고 총회가 끝나는 즉시로 나사렛성결교회 국제총회총무에게 대의원 피선증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5.3. 정족수:** 국제총회 기간 중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총회 장소에서 국제총회심의위원회에 등록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의 과반수로 한다. 일단 성회가 되어서 개회가 되면, 적은 수의 대의원으로도 승인되지 않은 회의기록을 승인하고 휴회할 수 있다.

**25.4. 국제총회감독:** 국제총회는 나사렛성결교회 장로목사 중에서 여섯 명의 국제총회감독을 투표로 선출하고, 그들에 의해 국제총회감독회가 구성된다. 국제총회 사이에 국제총회감독직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나사렛성결교회의 국제총회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총원한다. (305.2, 316)

**25.5. 국제총회의장:** 국제총회감독회에서 지명된 국제총회감독이 국제총회의 매일 회의를 사회한다. 그러나 만일 국제총회감독이 지명되지 않았거나 부재중일 때는 국제총회에서 총회대의원 중의 한 사람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한다. (300.1)

**25.6. 회의 구성의 방법:** 국제총회는 회의 구성의 방법, 의사 진행 절차, 위원회, 그리고 기타 질서있는 의사 처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회의 진행 규칙을 채택한다. 국제총회는 국제총회 대의원의 선출과 자격을 판단한다. (300.2-0.3)

**25.7. 국제총회 소청위원회:** 국제총회는 나사렛성결교회 회

원 중에서 국제총회 소청위원을 선출하며, 그 재판 관할과 권한을 규정한다. (305.7)

### **25.8. 권리와 한계**

(1) 국제총회는 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나사렛성결교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고, 또한 나사렛성결교회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거나 소속된 모든 부서들을 위한 규칙과 규범을 제정한다. (300, 305-305.8)

(2) 국제총회가 지혜로운 길이라고 승인한 제도의 범주 안에서 개교회는 개교회가 원하는 목회자를 청빙하는 권한을 빼앗기지 않는다. (115)

(3) 모든 개교회 직분자들과 교역자 그리고 평신도들은 항상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 **제 4 장 수 정**

**26.** 본 교회의 헌법의 조항들은 국제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동의와 나사렛성결교회의 모든 3단계와 2단계 총회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 폐기 또는 수정할 수 있다. 각 헌법 조항의 개정안의 채택은 2단계, 3단계 각각의 총회에서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국제총회든지 3단계, 2단계 각 총회는 누구나 먼저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수정안이 여기에 제시된 방법을 따라 채택되면, 국제총회감독회 명의로 곧 바로 그 투표



결과를 공고해야 하며, 그 즉시 수정안은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된다.

**27.** 신조(1-16,2조항) 수정 결의안은 국제총회 결의로 연구위원회의 검토를 위해서 국제총회감독회에 상정된다. 세계화된 나사렛성결교회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연구위원회에는 국제총회감독회가 임명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포함된다.

연구위원회는 권고안이나 결의안을 담은 보고서를 국제총회감독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제총회감독회는 다음 국제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 3 부

#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

제 1 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 2 장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

제 3 장 인간의 성생활과 결혼

제 4 장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

제 5 장 교회 직분자

제 6 장 회의 절차

제 7 장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 수정



## 제 1 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28.** 교회는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 즉 옛 사람의 육적인 생각과 삶의 습관들”을 벗고, “새 사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입는다. (엡 4:17-24)

**28.1.** 나사렛성결교회는 많은 나라들과 다양한 문화권 속에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규약을 전하고 설명함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의 원칙들을 현대 사회에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신약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재확인되었고, 지상명령과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완전하고 명료하게 표현된 십계명이 기독교 윤리의 근간을 이룬다고 믿는다.

**28.2.** 또한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함 속에서 갖는 집단적인 양심이 정당한 개념임을 인정한다.

세계화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나사렛성결교회는 기독교인이 삶 속에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인도되도록 상황에 맞는 특성화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교회의 역사적 윤리 규범이 부분적으로 다음 항목들에서 기록되어 있다. 이 규범들은 거룩한 삶의 길잡이와 도움을 주는 규정들로 신중하고 양심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교회의 양심을 위반하는 자들은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되며 교회의 증언에 손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문화적 상황에 따른 규범 적용은 국제총회감독회에 회부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3.** 나사렛성결교회는 이 새롭고 성결한 삶의 길이 우리 이 옷들의 혼, 마음 및 몸을 위해 기피해야 할 일들과 성취해야 할 대속적인 사랑의 행위들을 수반한다고 믿는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의 한 영역은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 예수님의 교회는 첫째로, 부와 사치를 강조하는 데서 자유롭고, 검소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며 쉼터를 제공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모범 속에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고, 사회에서 자신을 옹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 내시고 도우신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연대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구제 사역이 자선행위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 평등, 정의를 주기 위해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가난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을 찾아가는 모든 믿는 자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결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역과 분리될 수 없다고 믿는다. 성결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개인적 온전함을 넘어서서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와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한다.

성결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경제적 필요

를 외면케 하지 않는다. 성결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원을 사용 하여 그 같은 궁핍을 완화하며 우리의 욕구를 다른 사람들의 필요 를 고려해 조절하도록 만든다.

(출 23:11; 신 15:7; 시 41:1; 82:3; 잠 19:17; 21:13; 22:9; 렘 22:16; 마 19:21; 눅 12:33; 행 20:35; 고후 9:6; 갈 2:10)

**28.4.** 피해야 할 행위들을 수록함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포괄적일지라도 어떠한 목록도 이 세상의 모든 형태의 악을 다 포함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각 사람은 성실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서 단순히 문자로 기록된 규범 범위 밖의 악에 대한 민감성을 배양함이 꼭 필요하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1-22)는 훈계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28.5.** 우리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 교단의 정기간행물과 강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기본적인 성경 진리를 강하게 강조해야 한다.

**28.6.** 교육은 사회의 사회적 및 영적 복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일학교, 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 어린이집, 성인/노인돌봄 센터, 대학, 그리고 신학교, 신학대학원 등 나사렛 교육 기관들은 유년, 청년, 그리고 장년들에게 우리의 신조로 만들어진 성경적 원리와 윤리 규범을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공공 교육기관을 대신하거나 혹은 그것에 추가해서 되어질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교육은 가정에서의 성결 교육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으로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도록 공공 교육기관 내에서 또는 협력하여 일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마 5:13-14)

**29.** 다음에 특별히 열거한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

**29.1. 기독교 윤리에 위배되는 오락 행위:** 나사렛성결교회 교인들은 개인적 삶과 가정 안에서 다음 3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는 기독교 청지기적 정신으로 여가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도덕 기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덕적 대 혼란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 시대의 죄악된 것들 -세속문학,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와 인터넷 등- 이 우리의 성역인 가정을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우리 가정을 세속화와 세상적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가장 엄격한 안전책을 고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장려하고, 성경적 가치를 확인하며, 결혼 서약의 신성함과 유일성을 지지하는 연예활동은 지지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특별히 청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대중 매체와 예술을 통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문화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격려한다.

셋째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모독하는 다양한 모양의 상업적 연예산업들이 만들어내는 폭력, 호색, 음화, 신성모독과 주술같은 사회악들에 대하여 증거하여야 한다. 또 이런 종류의 연예산업들의 공급자들이 무너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은



세속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세상 철학과 마음과 생활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약화시키는 폭력, 음란, 음화, 신성모독과 주술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고, 조장하고, 퍼뜨리는 모든 종류의 연예오락 매체와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도덕적 규범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여 성결한 삶에 이르는 높은 차원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 강단이나 정기 간행물들을 통해 각종 대중매체에 나타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을 개발시켜 주는 기본적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요한 웨슬리가 그의 어머니에게서 전수 받은 표준, 즉 “무엇이든 너의 이성을 약화시키고, 양심의 민감성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모호하게 만들고, 영적인 일들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키고,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현상을 증가시키는 모든 것은 곧 너를 위해 죄로 여겨라”라는 가르침을 이 분별력에 관한 교훈을 만드는 기초로 제시한다. (28.2-28.4, 926-931)

(롬 14:7-13; 고전 10:31-33; 엠 5:1-18; 빌 4:8-9; 벧전 1:13-17; 뱀후 1:3-11)

**29.2. 합법적이건 비합법적이건 간에 복권 및 다른 형태의 도박:**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해로운 일이 된다.

(마 6:24-34; 살후 3:6-13; 딤후 6:6-11; 히 13:5-6; 요일 2:15-17)

**29.3. 프리메이슨과 같은 단체를 포함해서 비밀 서약을 통해**

**결성된 단체와 조직의 회원:** 그러한 조직체들이 갖는 유사 종교적 성격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퇴색시키고, 그들의 비밀스러움은 그리스도인의 공개적인 증인됨에 위배된다. 이 문제는 교회 정회원에 관한 112.1항과 연계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고전 1:26-31; 고후 6:14-7:1; 엡 5:11-16; 약 4:4; 요일 2:15-17)

**29.4. 성도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며 적절한 도덕성의 함양 및 그 자제력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형태의 사교춤.**

(마 22:36-39; 롬 12:1-2; 고전 10:31-33; 빌 1:9-11; 골 3:1-17)

**29.5. 주류를 음료로 사용하거나 주류 유통, 주류 판매 허가를 위해 영향력을 주거나 찬성 투표하는 행위, 불법 마약의 사용 혹은 유통 행위, 모든 형태의 담배 사용 및 유통 행위:** 술을 음료로 사용함에 따른 파괴적인 결과에 관한 인간 경험과 성경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한 술과 담배가 몸과 마음에 주는 해로운 영향에 관한 의학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로 헌신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입장과 관습은 절제가 아닌 금지이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모든 해로운 것들을 완전히 금해야 한다.

또한, 술과 담배의 사용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허락된 합법적이고 적절한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이다. 온 세계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술의 남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있는 우리에게 구체적 입장을 표방할 것을 요구한다. (929-931)

(잠 20:1; 23:29-24:2; 호 4:10-11; 합 2:5; 롬 13:8; 14:15-21; 15:1-2; 고전 3:16-17; 6:9-12,19-20; 10:31-33; 갈 5:13-14,21; 엡 5:18)

(발효되지 않은 술만이 성찬 예식에 사용되어야 한다.) (515.4, 532.7, 533.2, 534.1, 700)

**29.6. 적절한 의학적 돌봄과 치료를 위한 것 외에 흥분제, 진정제, 환각제 등 기타 중독성 약물의 사용:** 이러한 약물들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인 증거들과,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제어 하도록 깨어있으라는 성경적 교훈들을 근거로, 이런 약품들의 법적 허용 여부나 구매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절한 의학적 돌봄과 치료를 위한 것 외에 흥분제, 진정제, 환각제 등 기타 향정신중독성 약물의 사용을 금한다.

(마 22:37-39; 27:34; 롬 12:1-2; 고전 6:19-20; 9:24-27)

## 제 2 장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

30. 나사렛성결교회는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을 믿으며, 유산, 배아 줄기세포 연구, 안락사를 반대하며,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합당한 의료적 보살핌을 중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30.1. 인공 유산:** 나사렛성결교회는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것임을 인정하며, 그러한 성스러움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포함한다고 믿는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태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양육되고 보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잉태의 순간부터 아이는 인간 생명의 모든 특성들을 갖고 성장하고 있는 인간이다. 이 생명은 계속된 성장을 위해 어머니에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생명이 잉태의 순간부터 존중되고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개인적 편의나 인구 억제책으로 시행되는 낙태시술을 반대한다. 우리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에 반대한다. 우리는 드물지만 의학적으로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산모나 태아 혹은 모두의 생명의 위험을 일으키는 실질적인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경우이라도 임신을 종식시키는 결정은 바른 의학적이고 기독교적인 상담을 통해서 내려져야 한다.

낙태에 대한 책임있는 반대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모자(母子)를 돌보는 데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의 제정과 후원에 전력해야 한다. 뜻밖의 임신을 한 사람이 생기면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각별한 애정을 기울이며 기도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은 상담소, 입산부가 머물 수 있는 집, 기독교 입양관련단체의 설립과 운영 등을 통해서 제공될 수도 있다.

나사렛성결교회는 성적 책임에 대한 기독교적 표준이 간과된 나머지, 원치않는 임신을 중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낙태를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윤리를 실천할 것과 우리의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데 지침이 되는 성경적 원칙의 큰 틀 안에서 낙태와 관련된 문제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창 2:7, 9:6; 출 20:13; 21:12-16,22-25; 레 18:21; 욕 31:15; 시 22:9; 139:3-16; 사 44:2, 24; 49:5; 렘 1:5; 눅 1:15, 23-25,36-45; 롬 12:1-2; 고전 6:16; 7:1 이하; 살전 4:3-6)

나사렛성결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낙태의 비극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각 교회와 성도 개개인은 낙태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힘써야 한다. 개 교회 회중은 낙태로 인한 육체적, 감정적, 영적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과 소망의 공동체이다. (롬 3:22-24; 갈 6:1)

**30.2. 유전 공학과 유전자 치료:** 나사렛성결교회는 유전자 치료를 달성하기 위한 유전 공학의 사용을 지지한다. 우리는 유전자 치료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으며 해부학적, 정신적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사회적 불공평

을 조장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또는 인종적, 지적, 사회적 우월성(우생학)을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그 어떤 유전 공학의 이용을 반대한다. 우리는 정상 출산을 대신하기 위하여, 인위적 유산을 장려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DNA 연구를 반대한다. 어떤 경우에도 존엄함, 침해될 수 없는 인간생명의 존엄함,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평등함, 자비와 정의를 수호함이 유전 공학과 유전자 치료를 관장해야 한다. (미 6:8)

**30.3. 수태 이후의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인간 배아 줄기 세포 연구와 다른 의학적, 과학적 시도들:** 나사렛성결교회는 성인의 조직, 자궁, 제대혈, 동물, 기타 인간의 것이 아닌 배아 물질로부터 얻은 것으로 줄기 세포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과학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것은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을 침해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려는 의로운 목적을 갖고 있다.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인간 배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사람이라는 우리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구나 치료적 개입이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인간 배아들로부터 만들어진 줄기 세포들의 사용에 반대한다.

미래의 과학적 발전이 만들어 낼 새로운 기술이 인간 생명의 성스러움이나 다른 도덕적, 성경적 법들을 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연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수태 이후의 인간의 생명을 취하여 그 어떤 목적이나 형태의 연구를 위해 인간 배아들을 파괴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우리는 유산된 태아에게서 나온 조직의 사용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건

반대한다.

**30.4. 인간 복제:** 우리는 인간의 복제를 반대한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에 귀한 것이다. 인간의 복제는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다룬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30.5. 안락사(의사의 도움으로 행해진 자살을 포함함):** 우리는 안락사(말기 환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는 것 또는 환자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죽음이 임박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몸과 마음이 약화되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가 기독교적 믿음에 합치되지 않음을 믿는다. 이것은 안락사가 말기 환자에 의해 요청 또는 동의된 경우(자의적 안락사)와 말기 환자가 동의하기 위한 정신적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타의적 안락사)에도 해당된다. 우리는 교회에 의해서 안락사가 역사적으로 거부된 것이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신앙고백의 중요한 내용임을 믿는다.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인간 자신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기독교적 확신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인간 생명과 공동체 위에 부여한 가치를 훼손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통을 종결시키는데만 너무 많은 의의를 둔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운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적 오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모든 노력에 반대하기를 촉구한다.

**30.6. 죽음의 허용:** 우리는 인간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기독교적 믿음과 관습의 범주 안에서 인위적 생명 유지 기구를 환자에게서 떼어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입장은 계속된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생명 연장을 위한 특별한 수단의 적용이 그 환자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 희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우리는 기독교적 믿음은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죽음의 과정이 인위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죽음이 이기는 것을 빼앗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죽음을 수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제 3 장 인간의 성생활과 결혼

31. 나사렛성결교회는 인간의 성생활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믿는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성생활이 관능적인 경험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의 육체적, 관계적 창조성을 반영하도록 계획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사렛성결교회는 인간의 몸이 하나님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확신한다.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성결하게 되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감각, 성적인 욕구, 기쁨을 누리려는 우리의 능력,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부터 빚어진 것이다. 우리의 몸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거룩한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삼위일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것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중심엔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지음을 받았다. 이러한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세계와, 또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언약의 관계에서 살 때 궁극적으로 성취된다.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자 하

는 역량과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로 지어진다.

이 공동체 안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실한 지체로서 살도록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독신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풍성한 나눔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소중함이 드러나고 유지된다. 독신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공동체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함께 하며, 기쁨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충성된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자들은 결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고 믿는다. 창세기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고 정의한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반영하는 결혼 서약은 배타적인 성적 정절과 이타적인 섬김, 그리고 사회적 증거가 된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모습의 증인으로 공적으로 그들 자신을 서로에게 헌신하게 된다. 부부 간의 친밀함은 신비로운 은혜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반영하도록 의도되었다. 또한 성스러운 이 연합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성적 친밀함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이러한 친밀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며 언약 공동체의 돌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은 영성 형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결혼 전 상담과 교육을 통해 결혼의 신성함을 가르쳐서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성경엔 인간이 스스로를 높여 자신이 왕이 되고, 타인을 상하게 하며 물질적 대상으로 만들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어둠에 들어가게 된 아담의 타락으로 깨어진 인간 욕망의 슬픈 이야기가 실려 있다.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악을 경험한다. 타락한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세들은 우리의 성에 대한 거짓으로 우리를 오염시켰다. 우리의 욕구는 죄로 인해 왜곡되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살면서, 피조 세계의 파괴를 초래해 왔다.

성생활의 영역에서 우리의 타락은 우리 자신의 선택 때문이든지 혹은 우리 삶에 들어온 타락한 세상 때문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죄를 자백하게 하고, 변화시켜, 우리의 삶 안에서 성화를 경험하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죄의 타락 위에 더해지기를 거부하고, 우리 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래와 같은 행위로 부터 떠날 수 있고 또 떠나야 한다고 믿는다 :

● **혼전 성관계와 모든 종류의 부적절한 성적 결합:** 우리의 성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연합적 연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기에,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이런 행동

들이 종종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물질적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곤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행위들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지닌 아름다움과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능력을 해칠 수 있다.

● **동성 간의 성 행위:** 우리의 성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언약적 연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기에, 우리는 동성 간의 성적 친밀함을 표현하는 행위는 인간의 성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믿는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동성 혹은 양성 간에 일어나는 성적 충동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성적인 순결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따르는 대가도 크겠지만, 이 부르심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충분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함과 격려와 변화와 책임을 제공할 수 있는 환영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공동의 책임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있음을 인정한다.

● **혼외 성관계:**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맺은 서약을 깨뜨리는 것임을 믿기에, 간음은 이기적인 행위이며, 가정을 파괴하는 선택이며, 우리를 순전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된다.

● **이혼:** 결혼은 일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헌신이기 때문에, 결혼 서약의 파기는 그것이 스스로 먼저한 것이든지, 혹은 배우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최선의 의도에 미치지 못한 것이 된다. 교회는 가능한 한 지혜롭게 결혼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돌봐야 하며, 이혼으로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도 상담과 은혜를 베풀

어야 한다.

● **일부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은 일부일처제의 남편과 아내의 헌신적 관계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은 가정을 통해 계획된 유일하고도 배타적인 신의를 저버리게 한다고 믿는다.

성적인 죄와 타락은 개인에게 뿐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과 구조 속에 만연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지닌 아름다움과 독특함의 실재를 증거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아래의 행위에서 떠날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이 옳지 않다고 주장해야 한다 :

● **모든 형태의 음란물은 빛나간 욕망이다.** 이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을 물리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은 누군가를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파괴한다.

● **강간, 성폭행, 성적인 괴롭힘, 폭언, 가정 폭력, 근친상간, 성을 위한 인신 매매, 강제결혼, 여성할례, 수단, 성희롱, 그리고 미성년이나 취약자에 대한 성적인 남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 성적인 폭력을 자행하는 개인이나 조직과 관습은 모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언제든지 성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당해 왔거나, 계속해서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보호와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미성년이라 함은,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국가의 법령에 의거하여 성인의 지위를 얻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남녀를 의미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비록 죄의 영향력이 보편적이고 총체적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효력 또한 보편적이고 총체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비록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 지더라도,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타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는 유효하다.

● **인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사랑으로 특징지어 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덕목들에 우선하여 사랑으로 옷 입은 자들이어야 함을 확신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깨지고 상한 자를 환영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관대함은 개인적인 불순종에 대한 구실을 주거나, 타락의 원인을 분별하는 구원의 노력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회복하는 일에는 고백과 용서와 변화를 위한 행함과 성화와 경건한 조언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라는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깨지고 상한 사람을 영접하고 사랑으로 환영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죄와 타락에 대해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지고 상한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치유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세계적인 교회인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있다. 이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선언들을 충실하게 지켜가는 일은 복합적이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용기와 분별력을 갖고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 제 4 장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

**32. 청지기직의 의미:**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물질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청지기 직분을 수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이심과 우리가 청지기임을 보여준다. 모든 것을 체계적이고 질서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실히 십일조를 드리고, 복음을 위해 헌금을 드림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헌금제도를 만드셨다. (140)

(말 3:8-12; 마 6:24-34; 25:31-46; 막 10:17-31; 눅 12:13-24; 19:11-27; 요 15:1-17; 롬 12:1-13; 고전 9:7-14; 고후 8:1-15; 9:6-15; 딤후 6:6-19; 히 7:8; 약 1:27; 요일 3:16-18)

**32.1. 공간에 들이는 십일조:** 공간에 들이는 십일조란 성도가 소속한 교회에 성심껏 그리고 정규적으로 십일조를 드리는 것으로서 성경적이며 실천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교회 재정은 이 십일조 계획에 근거하며, 개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의 십일조를 두는 공간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일원인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최소의 재정적인 의무로서 그들의 수입 중 십분의 일을 성실하게 드릴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심에 따라 개교회, 총회, 교육 기관, 그리고 국제총회 등 온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 십일조에 추가하여 자유롭게 헌금할 것을 권한다. 나사렛성결교회는 개교회에 드리는 십일조가 온 교회를 후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충



성된 청지기들의 마음에 주셔서 드리게 하는 모든 헌금들 중에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32.2. 기금 모금 및 분배:** 십일조를 드리는 것과 복음 및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비추어서, 어떤 개별 나사렛 교회도 이 원칙에서 멀어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의 명성을 더럽히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교인들의 노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의 기금모금을 해서는 안 된다.

나사렛성결교회의 개교회, 총회, 교육 기관 그리고 국제총회 프로그램의 요구에 맞는 재정 지출을 위해 개교회들은 재정 항목별 분배 계획을 채택, 시행할 것과 국제총회, 교육 기관 그리고 총회 분담금을 매월 지불할 것을 권장한다. (130, 153, 154-154.2, 516.13)

**32.3. 목회 후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전 9:14)는 말씀에 입각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교회의 방침에 따라 전적으로 목회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인들이 이 거룩한 일을 위해 매주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사역을 후원하고 목회자에게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지불할 것을 권한다. (115.4, 115.6, 129.8)

**32.4. 유산기부 계획과 증여와 신탁:**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청지기로서 일생동안 수입 및 소유 재산을 관리하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나사렛성결

교회는 신실한 청지기직 수행은 일생동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유산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부, 증여와 신탁을 통해 기독교 청지기직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사렛성결교회 기금을 만들었다. 민법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유산분배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유언이나 유언장을 신중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가 개교회, 총회, 교육기관 및 국제총회 차원에서 행하는 다양한 사역들인 선교, 복음전도, 교육 및 자선사업을 염두해 두고 작성할 것을 추천한다.

**32.5 교단의 사역을 위한 공동책임:** 나사렛성결교회의 통치는 대의제이다. 개교회의 회중은 국제총회에 의해 규정되고 국제총회감독회의 지도로 세워진 세계 복음화, 교육사업, 사역지원 및 총회 사역을 후원한다.

국제총회감독회와 국제총회이사회는 세계전도기금의 모금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정하고 유지할 뿐 아니라, 각 총회를 통해 개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금의 목표와 책임을 수립하고 승인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장정 337.1조에 의거하여 국가위원회 그리고 혹은 지구자문협의회는 그 지구의 은퇴사역자 기금마련 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 같은 계획의 보고는 장정 337.2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32.5조의 규정은 미국의 연금복지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위원회들과 그리고/혹은 지구자문협의체들은 그들의 고등교육기관들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위임받는다.

각 총회는 총회재정위원회를 통해 개교회가 총회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책임 목표액을 수립하고 승인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238.1, 317.10, 345, 346.3)

## 제 5 장 교회 직분자


**33.** 우리는 개교회 직분자들은 완전성결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제도 및 실천 사항들을 따르며, 또한 성실히 모임에 출석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 십일조와 헌금으로 개교회를 신실하게 뒷받침하는 개교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할 것을 지시한다. 직분자들은 “열방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113.11, 127, 145-147)

## 제 6 장 회의 절차

**34.**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의 개교회, 총회, 국제총회, 법인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진행은 현지의 적용되는 법과 장정에 명시된 법인 정관과 치리 규정을 따르고, 새로 개정된 로버트의 회의법(Newly Revised Roberts Rules of Order: 최신판)의 의사진행 규정을 준수한다. (113, 203, 300.3)

## 제 7 장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 수정

35.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의 규정들은 해당 국제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폐기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제 4 부

# 통 치 기 구

서 문

제 1 장 개교회 행정체제

제 2 장 총회 행정체제

제 3 장 국제총회 행정체제



## 서 문

나사렛성결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시며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과 믿는 자들이 교제와 지체(회중)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과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여(가르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신앙 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은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골 1:28)

구원의 역사와 온전하게 하는 일, 그리고 가르침과 위임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개교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개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이다. 개교회들은 행정상 총회와 지구에 속한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연합의 근간이 되는 것은 나사렛성결교회의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신조, 정책, 정의들 그리고 절차이다.

연합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장정의 신조에 선언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지역과 언어로 이 신조를 번역하고, 널리 배포하고, 우리의 교인들에게 가르칠 것을 권한다. 이 신조는 우리 모두를 나사렛 사람으로, 나사렛사람답게 행동하도록 하나의 모습으로 엮는 황금 줄이다.

우리의 한 몸인 모습은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형성, 법규제정, 그리고 선출권을 갖고 있는 최고 기구인 국제총회를 통해 보여 진다.

두 번째의 가시적 형태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국제총회이사회이다.

세 번째는 장정 해석과 문화적 적용 승인 그리고 안수하여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국제총회감독회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치리 구조는 대의제로, 한편으로는 지나친 감독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무제한적인 회중중심제의 양 극단을 모두 지양한다.

나사렛성결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문화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 장정 4부 1장, 2장 그리고 3장에 있는 개교회, 총회, 지구 조직과 절차의 내용 중에 필요한 문화적 적용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모든 문화적용에 대한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되어 국제총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0)



## 제 1 장 개교회 행정체제

### 제1절 개교회 조직, 명칭, 법인설립, 재산, 제한, 통합, 해산

**100.** 조직: 개교회는 총회감독 혹은 관할 국제총회감독 또는 이들이 위임한 장로목사에 의하여 조직된다. 새로 조직된 교회의 공식 보고문은 해당 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총회총무에게 제출해야 한다. (23, 107, 211.1, 538.15)

**100.1. 개척교회:** 장정 100조에 의거, 아직 조직화 되지 않은 새로운 회중의 모임은 새로운 사역지가 소속된 총회감독의 승인 하에 개척교회로서 국제총회총무에 의해 등록될 수 있다. 담임 혹은 부교역자로서(장정 160)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직자회원은 총회감독의 승인 하에 재직 교역자로 여겨져야 한다. 개척교회는 장정 102조에 따라 법인체로 조직될 수 있고 정회원을 받고 보고할 수 있다. (100..2, 107.2, 138.1, 159, 211.6)

**100.2. 멀티회중 교회:** 조직된 개 교회는 교회의 시설물을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로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어 그들의 사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성경공부 모임들은 개척교회나 조직교회로 발전될 수 있다. 이것은 총회감독의 승인 하에 하나의 교회 명칭 아래 한 회중 이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멀티회중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개개의 회중이 조직교회가 아닌 경우, 총회고문회는 총회감독과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승인을 받아 아래의 조건을 따라 개개의 회중에게 조직교회의 권리와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이 회중들은 조직된 개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법인을 구성

할 수 없다.

- (2) 이 회중들은 조직된 개교회 내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따로 가질 수 없다.
- (3) 이 회중들은 총회감독과 조직된 개교회의 실행제직회 그리고 총회고문회의 승인없이 채무를 갖지 못한다.
- (4) 이 회중들은 총회감독이 조직된 개교회 담임목회자와 상의를 하면서 명백하게 허락을 한 경우가 아니면 조직된 개교회로부터 한 단체로 분리되거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100-100.1)

**101. 명칭:** 새로 조직된 교회의 명칭은 총회감독과 협의하고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받아 개교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102.4)

**101.1. 명칭 변경:** 나사렛성결교회의 개교회의 명칭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교회 실행제직회가 총회감독에게 변경안을 제출하고 총회감독은 총회고문회의 서면 승인을 얻는다.
- (2) 정기 혹은 특별 연차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회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표결한다.
- (3) 해당 총회고문회가 변경을 총회연차회의에 보고하며 총회연차회의는 그 변경의 승인을 투표로 정한다. (102.4)

**102. 법인 설립:** 법률이 허락하는 모든 지역에서의 이사들은 교회를 법인화하고, 그 이사들과 그들의 후임자들이 그 법인체의

이사가 된다. 민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 정관은 법인의 권한을 규정하며, 해당 법인은 나사렛성결교회 국제총회에 의해 때때로 승인되고 선포되는 본 교회 장정 안에 있는 나사렛성결교회의 체제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이 법인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개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들이 관리 및 관장한다.

**102.1.** 총회고문회가 개교회 또는 새로 시작하는 교회를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개발했다라도 총회고문회가 투자한 금액을 개교회가 상환할 경우 총회고문회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개교회에게 양도할 것을 권한다.

**102.2.** 개교회가 법인체로 조직되면 모든 취득한 재산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등기하여 교회에 직접 양도해야 한다. (102.6)

**102.3.** 목회자와 교회실행제직회 서기는 법인화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교회 대표와 서기가 되며 장정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나 장정 104-104.3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모든 부동산 거래, 저당설정, 저당해제, 계약서와 다른 법률서류에 서명하고 계약을 맺는다.

**102.4.** 각 개교회의 법인 설립 조항은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법인 명칭은 반드시 “나사렛성결교회(나사렛성결회)”라는 어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 (2) 법인체의 규정은 나사렛성결교회의 장정이 된다.

- (3) 법인정관에는 해당 지역의 개교회에 주어지는 면세혜택을 못 받게 하는 어떤 규정도 포함해서는 안된다.
- (4) 법인체가 해산되면 법인의 재산은 총회고문회에 귀속되어야 한다.

법인정관에는 현지 법에 맞는 추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개교회의 재산을 나사렛성결교회로부터 다른 곳으로 전이시키는 규정은 절대로 포함할 수 없다. (101-101.1, 104.3, 106.1-106.3)

**102.5.** 하나 이상의 조직교회가 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회중교회에서는, 현지 법이 허락한다면 합자법인을 세울 수 있다.

**102.6.**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서, 부동산 등기권과 신탁증서 뿐 아니라 모든 법적 서류에는 교회명칭에 “나사렛성결교회(나사렛성결회)”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102.2)

**103. 부동산:** 개교회가 부동산을 매입 혹은 매각하거나, 교회 건물 또는 교회에 속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규모 수리를 하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건물을 임대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감독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 총회감독과 총회 교회재산위원회의 의견, 총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매입과 건축 혹은 대규모 수리를 할 때에 총회감독과 총회 교회재산위원회의 서면 승인없이 저당 잡히거나 안 잡히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부채도 질 수 없다. 개교회는 공사기간 중 상기 위원회에 매분기마다 재정과 진행상태에 관

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36-237.5)

**103.1. 교회실행제직회와 총회감독 및 총회교회재산위원회** 사이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국제총회감독에게 그 문제를 제기하여 그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개교회 또는 총회감독 중 누구나 그 결정에 대해 국제총회감독회에 상고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구할 수 있다. 모든 상고나 상고의 반증 또는 관련된 논증은 관할 국제총회감독에게든지 국제총회감독회에든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행제직회나 총회감독은 상고나 상고의 반증 또는 관련된 논증의 사본을 상대방에게도 보내야 한다. 상고를 위한 실행제직회 회의록에는 채택된 상고결의안, 뒷받침하는 근거 논리, 투표결과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04. 제한:** 연차회의나 이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소집된 특별연차회의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승인받지 못하면 개교회는 부동산을 매입, 임대, 매각, 저당, 담보, 추가로 빚을 내는 재용자, 교환,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 부동산을 저당잡히거나 처분할 수 없다. 만일 개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차환하고자 할 때, 차환조정으로 인해 교회의 부채가 증가하지 않고 교회의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저당설정이 없다면, 차환의 승인은 실행제직회의 3분의 2의 투표로 되며, 별도로 전체 회원의 투표는 요구되지 않는다. 교회실행제직회는 개교회 자금조달을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기증된 재산의 처리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득표로 승인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총회감독과 총회교회재산위원회의 서

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3-113.4, 113.7-113.8, 237.3-237.4)

**104.1.** 개교회의 부동산을 당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담보하여 대출할 수 없다.

**104.2.** 개교회는 담보대출을 하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부동산에 대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그 수익금은 오직 부동산의 구입이나 부동산의 가치 개선, 새로운 교회의 개척이나 다른 부동산의 부채를 갚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그 수입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104.3.** 이사 그리고/또는 개교회는 부동산을 나사렛성결교회의 사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113-113.1)

**104.4. 교회 탈퇴:** 국제총회의 규정과 합의된 조건 및 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개교회가 한 단체로서 나사렛성결교회에서 탈퇴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 (106.2-106.3)

**105. 통합:** 둘 혹은 그 이상의 교회들은 해당 교회들이 소집한 특별회의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교인들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통합할 수 있다. 통합 절차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통합은 각 해당 교회의 실행제직회의 전 회원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을 받아야 하고, 총회감독, 총회고문회 그리고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회제직을 선출하고 목회자 청빙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집된 특별회의에서 새 회원들에 의해 통합의 매듭이 지어진다. 이 특별회의의 사회는 총회감독 또는 총회감독이 지명한 인수목사가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는 이전 각 교회들과 각 교회에 속한 부서들의 회원들로 구성되고, 총회감독, 총회고문회, 그리고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승인을 조건으로 각 교회의 일부 혹은 모든 자산과 부채도 합쳐야 한다. 국제총회, 교육기관, 총회 분담금도 함께 통합된다.

총회감독에게 통보를 받으면 국제총회총무에게는 교회 명부에서 활동이 중지된 교회 이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106. 교회활동 중지 또는 해산 선언:** 교회들은 공식적으로 해산, 재개, 또는 재조직 되기 전에 총회고문회의 의결에 의해 과도기 동안 활동이 중지될 수 있다.

**106.1.** 개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해산될 수 있다.

- (1) 총회감독의 추천
- (2)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확답
- (3) 총회고문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106.2.** 개교회가 활동 중지, 해산된 경우 또는 나사렛성결교회로부터 탈퇴했거나, 하려고 한 경우(총회고문회에 의해서 확인된 대로), 교회의 기존 모든 부동산도 어떤 식으로든 다른 목적을 위해 전용될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은 나사렛성결교회(교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총회의 대리인인 총회고문회나, 총회가 임명한다

른 대리인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활동 중지 또는 해산된 개교회의 재산을 위탁받은 개교회 이사들은,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서면 승인을 받고, 오직 총회고문회 혹은 총회에서 임명한 대리인의 명령 혹은 지시 하에 동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총회연차회의와 총회고문회의의 지시를 따라 부동산의 양도 또는 매각 대금을 전달해야 한다. (104.4, 106, 225.23)

**106.3.** 활동 중지된 교회나, 해산된 교회 또는 나사렛성결교회를 탈퇴 또는 탈퇴를 시도하는 교회의 어떤 이사나 이사들도 그 교회의 부동산을 나사렛성결교회를 위한 목적 이외의 것으로 전용할 수 없다. (104.4, 141-144, 225.23)

**106.4.** 공식적으로 해산된 교회들에 한해서 국제총회총무의 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

**106.5.** 개교회의 활동중지가 선언되면, 교회의 모든 자금 및 유가 증권의 서명권자들은 모든 현금성 자산을 총회고문회에 이전하여 예입해야 한다. 이에 따르기를 거절할 경우에는 법률이 허용하면 총회고문회의의 의결을 통해 모든 구좌를 해지하고 모든 자산의 관리권을 맡을 권한을 갖게 된다.

## 제2절 개교회 회원권

**107. 정회원:** 개교회의 정회원은 장정에 의해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 목회자나 총회감독 또는 국제총회감독에 의해 공중 앞에서 구원의 체험과 나사렛성결교회 교리에 대한 신뢰와 나사렛성결교회의 제도에 순종할 것을 표현한 후에 개교회의 구성원으로 입회된



모든 자들로 이루어진다. 개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이 봉사사역과 돌봄 및 도움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3, 107.2, 111, 113.1, 516.1, 520, 532.8, 538.8-538.9)

**107.1.**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원할 때, 교회 회원의 특권과 책임, 신조, 그리스도인의 일반규약 및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의 요구 사항,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설명해야 한다.

목회자는 전도및교회회원권위원회와 상의한 후에 유자격 후보자를 공중 모임에서 규정된 입회식문을 사용하여 교회회원으로 입회시킨다. (21, 28-33, 110-110.4, 228, 704)

**107.2. 개척교회 회원:** 조직교회가 되지 못한 개척교회는 107조와 107.1조의 규정대로 교회 정회원을 받고 연차 통계에 보고하여야 한다.

**107.3. 투표와 직분:** 개교회의 활동 정회원으로 만 15세에 이른 자만이 현지 법이 허락하는 경우 교회의 직분을 맡거나, 연차회의 또는 특별회에서 투표하거나, 총회 대의원으로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

**108. 준회원:** 총회가 규정을 둔 곳에서는 개교회가 준회원을 둘 수 있다. 준회원은 투표권과 교회 직분을 제외한 교회 회원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205.24)

**108.1.** 준회원은 언제든지 목회자와 전도및교회회원권위원회의 재량에 의하여 정회원으로 접수될 수 있고 또한 제명될 수 있다.

**109. 비활동 회원:** 개교회는 109.1조와 109.2조의 이유에 해당하는 자들을 비활동회원으로 정할 수 있다. (112.3, 133)

**109.1.**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소속되어 있는 개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교인에게는 이사 간 곳에 있는 나사렛성결교회에 출석할 것과 그 교회로 회원권 이전을 청원할 것을 권면해야 한다.

**109.2.** 만일 교인 중에 누구든지 가능한 한 교회에 나와 정상적인 교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도록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실행제직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이유없이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예배와 모임에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회원권은 전도및교회회원권위원회의 추천과 교회실행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정지될 수 있다. 목회자는 실행제직회의 결의 후 일주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회복을 권고하는 편지를 보내어 알려야 한다. 실행제직회에서 그 같은 조치를 취하고 나면 목회자는 회원 명부에 “실행제직회의 결의에 의해 비활동 회원 명부로 옮김(년 월 일)”이라고 기록하여 회원권 명부를 수정한다.

**109.3.** 비활동 회원도 활동회원과 함께 정회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단, 총회에 보고 시에는 (1) 활동회원과 (2) 비활동회원을 따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109.4.** 비활동 회원은 연차회의나 교회 특별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직분을 맡을 수 없다.

**109.5.** 비활동회원은 실행제직회가 자신의 이름을 교회의 활동 회원 명부에 올려주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

은 회원서약의 재확인과 개교회 예배활동에 새로 참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실행제직회는 이 요청에 6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런 사람의 정회원 권리는 전도및교회회원권위원회의 추천과 실행제직회의 동의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

### **제3절 개교회 전도및교회회원권위원회**

**110.** 교회실행제직회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도및교회회원권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목회자가 그 의장이 되며 위원은 목회자의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 (138.3)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10.1.** 개교회의 복음전도를 촉진하며 전도의 열매를 보존하려고 힘쓰는 일. (107-107.1, 129.24)

**110.2.** 교회의 모든 활동 속에 전도를 강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교회실행제직회와 기관들에 건의하는 일.

**110.3.** 국제총회 및 총회의 교단 전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개교회 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일.

**110.4.** 신앙고백을 통해 정회원으로 받는 것이 전도의 열매를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여, 새로 회심한 자들에게 꾸준한 경건생활과 개인적으로 혹은 목회자가 인도하는 회원준비반에 참여해서 성경과 장정을 공부하여 교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권하는 일. (20-21)

**110.5.** 새 회원들을 완전한 성도의 교제 및 교회 봉사 활동에 참가하도록 힘쓰는 일.

**110.6.** 목회자를 도와서 새 회원의 영적인 지도를 위한 연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

**110.7.** 목회자의 추천을 받아서 개교회 부흥회를 위한 부흥사를 교회실행제직회에 추천하는 일.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임명, 등록 또는 재직 중인 부흥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가질 것을 권장한다.

**110.8.** 목회자가 먼저 전도및교회회원권위원회와 해당자의 회원입회에 관해서 상의할 때까지 누구도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없다. (107.1)

#### **제4절 개교회 회원권 이동**

**111. 이명:** 목회자는 회원이 요청할 때에 다른 나사렛성결교회로 회원 이명증서(817)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이명증서는 3개월 간만 효력을 가진다. 새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접수하면 이전 교회의 회원권은 상실된다. (818)

**111.1. 추천서:** 목회자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른 복음주의 교회로 추천서(813.3 양식)를 써 줄 수 있으며 추천서의 발부와 동시에 당 교회로부터 그의 회원권은 상실된다. (112.2)

#### **제5절 개교회 회원권 종료**

**112. 교역자:** 인정전도사나 안수목사가 나사렛성결교회 외의 다른 교단과 연합하여 회원권을 갖거나 사역을 할 때에는 그 교역자가 회원권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즉시로 해당 총회의 목회심의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목회심의부는 성직자회원의

로서의 지위를 심의하여 확정한다. 만일 총회 목회심의부에서 해당 성직자회원을 교역자 명부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교회의 목회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교회의 정회원 명부에서 제명하여야 하며, “다른 교회, 교단, 사역과 연합하였으므로 제명”이라고 교회 회원권 명부에 쓰고 회원권 명부의 기록을 수정한다. (530.9, 536.10-536.11)

**112.1. 평신도:** 개교회의 평신도 회원이 다른 종교 기관의 회원권, 교역자 인준 또는 안수를 받은 경우와, 또는 독립 교회나 선교사업에 동참할 경우에는, 본인이 회원으로 소속된 개교회의 실행 제직회로부터 해마다 서면승인과 그 교회가 속한 총회고문회로부터 해마다 서면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실 때문에 그의 개교회 회원권은 즉시 정지된다.

**112.2. 제적:** 회원이 요청할 때 목회자는 제적증서(816 양식)를 발부하며 이로써 그 사람의 회원권은 즉시로 끝나게 된다. (111.1, 112)

**112.3. 비활동 회원으로 선언된 날로부터 2년 후에는** 그 회원의 이름은 교회실행제직회 결의에 의하여 교회 명부에서 제적될 수 있다. 교회실행제직회의 그러한 결의 후에 목회자는 “교회실행제직회에 의해 제명(년 월 일)”이라고 교회 회원권 명부에 쓰고 회원권 명부의 기록을 수정한다. (109, 133)

## 제6절 개교회 회의

**113. 회의 및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모인 개교회 회원의 모임**

을 교회회의라고 부른다. 나사렛성결교회에 속한 개교회, 총회, 국제총회, 각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진행은 현지의 적용되는 법과 법인 정관과 장정에 있는 교회 조직의 규정을 따르면서, 새롭게 개정된 로버트 회의법(Newly Revised Roberts Rules of Order: 최신판)의 의사진행 규칙에 맞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35, 104, 113.7-113.8, 115, 517)

**113.1. 교회회의에서는** 활동 정회원으로서 만 15세 이상의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 (107.3, 109-109.4)

**113.2. 교회회의에는** 부재자 투표를 위한 조항이 없다.

**113.3. 사무처리:** 선거를 포함한 어떠한 의제도 교회의 정신과 질서에 입각하여 다른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교회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113.4. 민법 준수:** 교회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함에 있어 민법이 특별한 절차 규정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42)

**113.5. 사회자:** 직책상 개교회의 의장이 되는 목회자나 총회감독 혹은 관할국제총회감독, 아니면 총회감독이나 국제총회감독이 임명한 사람이 교회의 연차회의 또는 특별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210.1, 307.10, 515.15)

**113.6. 서기:** 교회실행제직회의 서기는 교회회의의 서기가 된다. 서기가 결석일 때는 임시 서기를 선출한다. (135.4)

**113.7. 연차회의:** 개교회의 연차회의는 총회연차회의가 열리기 전 9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고 동 회의의 개최는 적어도 2번의

주일예배의 강단에서 공고해야 한다. 이 연차회의는 교회실행제직회의 승인 하에 하루 이상 또는 한번 이상 회의를 할 수도 있다.

**113.8. 특별회의:** 특별회의는 담임목회자에 의해, 혹은 담임목회자 또는 총회감독 또는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은 후 실행제직회에 의해서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 특별회의의 소집은 적어도 2번 이상의 정규예배시간에 강단에서 공지되거나 혹은 민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104, 113.1, 115-115.1, 123, 137, 139, 142.1, 144)

**113.9. 보고:** 연차회의에서는 다음의 사람들이 보고를 해야 한다. 개교회의 목회자,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여성사역전도인, 개교회전도인, 실행제직회 서기와 재무. (135.2, 136.5, 146.6, 152.2, 508, 516.7, 531.1)

**113.10.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다른 방법으로 추천이 없는, 임원과 실행제직회원 그리고 총회대의원들을 추천하는 일을 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수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3명에서 7명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추천위원회는 매년 목회자에 의해 지명되며 실행제직회에 의해 승인된다. 목회자는 추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받은 자들은 모두가 장정 33조에 밝힌 대로 교회 직분자에 요하는 자격을 완비하였음이 확실해야 한다.

**113.11. 선거:** 연차회의에서는 개교회의 청지기와 이사,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 그리고 교육위원들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해야 하며 이들은 차기 교회 연도 동안 봉사하고 그들의 후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추기 때까지 시무한다. 법률이 허락하고 출석한 교회 회원의 다수결 투표로 승인되는 경우, 모든 선출직은 2년 임기로 선출될 수도 있다. 모든 선출된 자들은 나사렛성결교회 개교회의 활동회원이어야 한다. 우리는 개교회 직분자들은 완전성결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제도 및 실천 사항들을 따르며, 또한 성실히 모임에 출석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 십일조와 헌금으로 개교회를 신실하게 뒷받침하는 개교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할 것을 지시한다. 직분자들은 “모든 민족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33, 127, 137, 141, 142.1, 145-147)

**113.12.** 법률이 허락하고 정식으로 소집된 연차회의에 출석한 교회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서 절차와 피선 숫자를 승인받아 실행제직회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실행제직회원 중에서 137조와 141조에 맞도록 적절한 수의 청지기회원과 이사회원을 배정한다. 교회의 실행제직회원이 이와 같은 절차대로 선출되면, 실행제직회는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는 위원회들을 스스로 조직한다. 만일 교회가 실행제직회의 일부로 145조에 일치하여 교육위원회를 선출했다면 그 위원회는 교회실행제직회의 교육위원회를 형성한다. (145-145.10) 개 교회가 스스로의 사역과 선교활동을 위해 다른 형태의 실행제직회와 위원회 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것들은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구조가 민법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113.13.** 법률이 허락하고, 총회감독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 합법적으로 소집된 연차회의에서 출석한 교회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서 절차를 승인받은 교회에서는 교회실행제직회 회원의 2분의 1을 2년 직으로 선출하거나 또는 3분의 1을 3년 직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매년 그 동수의 인원만을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실행제직회 회원의 숫자 중 청지기회원과 이사회원 숫자는 137조 및 141조를 따라야 한다.

**113.14.** 교회의 연차회의에서는 국제총회가 채택한 규정 201-201.3조에 따라 총회에 파송할 평신도 대의원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거나, 혹은 연차회의에서 교회회원의 다수결 투표로 승인된다면, 대의원들은 목회자의 추천을 받고 개교회 실행제직회의 승인으로 선출될 수 있다. 대의원으로 선출된 모든 자들은 동 나사렛 성결교회 개교회의 활동회원이어야 한다. (107.3, 113.11)

**113.15.** 개척교회의 총회 대의원은 34조, 201.1조, 그리고 201.2조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서 개척교회 목회자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개척교회 목회자는 나사렛국제선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 국제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규약과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대의원도 지명할 수 있다.

## 제7절 개교회 연도

**114.** 교회 행정연도는 개교회의 회계연도와 같아야 하고, 교회연도가 된다.

**114.1.** 회계연도는 총회연차회의가 열리기 전 90일 이내에 끝나며 새 통계연도는 전 통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정확한 회계연도의 시작과 마치는 날은 이 기간 내에서 총회의 고문회에 의해서 정해진다. (225,1)

### **제8절 목회자 청빙**

**115.** 안수목사 또는 인정전도사(안수목사 과정)는 정식으로 소집된 개교회의 연차회의 혹은 특별회의에서 투표연령에 달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개교회의 목회자로 청빙된다.

청빙절차는 아래의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1. 먼저 총회감독의 인준을 받아서 추천한다.
2. 추천된 사람이 같은 개교회의 회원이거나 그 개교회의 유급 혹은 무급 부교역자일 경우에는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추천된 사람은 교회실행제직회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로 교회에 추천이 된다.

목회자 청빙은 이하 관계조항에 나타난 규정에 따라 갱신 및 연장되어야 한다. (119, 122-125.5, 129.2, 159.8, 211.10, 225.16, 514, 532, 533.4, 534.3)

**115.1.** 교역자는 청빙을 투표한 교회회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목회자 청빙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고해야 한다.

**115.2.** 교회실행제직회와 목회자는 서로 그들의 목표와 기대

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 (122, 129.3-129.4)

**115.3.** 목회자가 정식 시무에 들어간 후 되도록이면 빨리 목회자와 회중은 목회자 취임 혹은 서약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되어 나아감을 축하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총회감독이 예배를 인도한다.

**115.4.** 목회자를 청빙하면 개교회는 제안된 보수를 세밀하게 밝혀야 한다. 이 보수액은 교회실행제직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보수에 관하여 개교회 혹은 실행제직회와 목회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목회자의 보수 전액 지출은 개교회의 도덕적 의무로 간주한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합의한 보수를 계속 지출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러한 지급불능 또는 실패가 목회자로 하여금 교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고려될 수 없다. 별도로 지정된 기금이 없다면 교회나 총회고문회는 목회자가 실제로 시무한 기간에 모금된 현금액 그 이상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 만약 현직 목회자나 전임 목회자가 교회나 총회고문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총회는 해당 교역자의 인준증서를 회수하는 절차를 밟은 후 해당 교역자를 교역자 명부에서 제명시킬 수 있다.

개교회는 또한 목회자의 여비와 이사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 (32-32.3, 129.8-129.9)

**115.5.** 목회자의 보수는 그가 개교회에 공식적으로 사역하는 첫 주일 전의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115.6.** 개교회는 그가 속한 총회와 협의하여 목회자 재정적

지원에 관한 대체 안을 고려할 수 있다. (32.3, 129.8)

**116.** 가정의 소중함과 하나되어 화목하게 사는 목회자의 모범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개교회는 목회자와 부교역자들을 위한 출산휴가를 배려해야 한다. 총회감독은 개교회들로 하여금 여자 또는 남자의 출산 휴가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이 개발되도록 지원한다. 이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함될 수 있다:

1. 여자나 남자의 출산휴가의 시기와 기간은 출산 예정일이나 입양 예정일 이전에 목회자와 교회실행제직회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2. 여자나 남자의 출산휴가는 휴가와는 별도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3. 개교회는 여자나 남자의 출산휴가 중에 사역할 임시 목회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목회자와 총회감독과 상의해야 한다.
4. 목회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목회자의 사례비와 수당이 지급된다. 추가로 조정되는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목회자와 교회실행제직회의 서기와 총회감독의 서명을 받는다.

**117.** 개교회가 조직되어 5년이 되지 않았거나 전년도 교회연합회의에서 투표를 행한 회원이 35명 미만인 경우, 또는 총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재정 보조를 받는 교회의 목회자는 관할 국제총회감독 및 총회고문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감독이 임명 또는 재임명할

수 있다. (211.17)

**117.1.** 교회가 투표권 회원 수가 35명이 초과하거나 조직된 지 5년이 경과하고, 담임 목회자가 임명되어 적어도 2년이 경과됐으면, “목회자 파송 대상 교회”에서 청빙 자격을 갖는 교회가 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 같은 과정은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점검, 출석 실행제직회원의 과반수 찬성 투표, 총회감독의 승인 그리고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포함한다. 정기적으로 4년마다 갖는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점검을 하는 날짜는 총회로부터 마지막 승인을 받은 날이 된다.

**118.** 목회자 선정에 관하여 실행제직회와 총회감독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에는 실행제직회나 혹은 총회감독이 관할 국제총회 감독에게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결정이 있는 후에도 실행제직회나 총회감독은 국제총회감독회에 그러한 결정을 상고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상고나 상고의 반증, 혹은 거기에 따르는 모든 논증은 관할 국제총회감독 혹은 국제총회감독회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 교회실행제직회나 총회감독은 상고나 상고의 반증 또는 관련된 논증의 사본을 개입된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상고를 위한 실행제직회 회의록에는 채택된 상고결의안, 근거 논리, 투표결과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고려 중에 있는 교역자가 사임하거나 후보 교역자가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면 상고 진행은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총회감독과 교회실행제직회는 목회자 선정을 다시 계속한다.

**119.** 목회자로 청빙을 받은 인정교역자가 교역자 인정 허가  
가 갱신되지 않을 시 총회 폐회와 함께 그의 목회 청빙은 종료된다.

**120.** 목회임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목회자는

1. 우선 총회감독과 상의해야 한다.
2. 목회직 종료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 사직서를 실행제직회  
에 제출한다.
3. 사본 1부를 총회감독에게 제출한다.

사직서가 실행제직회에서 수용되고 총회감독에 의해서 서면으  
로 승인이 되면 30일 이내에 종료일이 결정되어야 한다.

**120.1.** 사임하는 목회자는 실행제직회 서기의 협조를 얻어 정  
확한 교회 회원 명단을 현 주소와 함께 작성해야 한다. 이 명단은  
마지막으로 출간된 총회 회의록과 숫자상 일치하되 현 연도의 탈락  
및 추가분을 명시해야 한다.

**121.** 교회실행제직회의 추천과 총회감독의 승인으로, 회중은  
공동목회자들(co-pastors)을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  
은 규례가 적용된다.

- (1) 공동목회자들은 공유한 책임과 권위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  
기 위하여 총회감독의 지휘 아래, 교회 실행제직회와 함께  
일해야 한다.
- (2) 공동목회자들은 직분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러나 만약 법  
적으로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교회실행제직회에 의해서

공식적 의장으로 지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법인의 대표와 실행제직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 (3) 목회자 재심과정은 교리와장정 123-123.7조에 규정된 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점검은 123-123.7조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 (4) 임명되어 파송된 목회자가 아닌 담임목회자가 최소한 2년 이상 사역을 한 후에 개교회는 장정 115조에 따라서 1명 혹은 그 이상의 교역자들을 공동목회자들로 청빙할 수 있다. 총회감독의 승인과 교회 실행제직회 투표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교회는 공동목회자 추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공동목회자로 승인되기 위해서 공동 목회 후보자는 회중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를 받아야 한다.
- (5) 필요한 3분의 2의 투표를 얻으면 각 목회자는 2년 임기를 동시에 시작하게 된다. 정기적인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점검은 공동목회자들이 사역을 시작한지 2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갖도록 계획할 수 있다. (115, 123-123.7)

**121.1.** 한 명의 공동목회자가 사임하거나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총회감독이나 지명된 대리인은 60일 이내에 123-123.7조에 규정된대로 정기적인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점검을 실시한다. 개교회 실행제직회가 더 이상 공동목회자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은 총회감독의 승인과 개교회 정회원 투표에서 3분의 2를 득표하여야 한다.

## 제9절 개교회와 담임목회자의 관계

**122.** 해마다 목회자와 실행제직회는 교회와 목회자의 기대와 목표를 갱신하기 위한 계획 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교회와 목회자 간에 양해되어진 목표와 계획과 목적들에 관한 서면기록 내용들이 새롭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 서면기록은 총회감독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15.2, 129.4)

**122.1.** 목회자와 회중은 쌍방의 기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분명히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서로의 차이점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은 성경의 원칙들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는 협력과 화해의 정신으로 아래와 같이 행한다.

1. 회중의 개인이나 집단은 목회자와 또는 실행제직회원 중 한 명과 신중하게 대면하여 그 차이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실행제직회의 개별회원이나 몇몇 회원이 함께 목회자와 대면하여 차이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 만약 앞에 말한 2개의 대면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면 문제를 가진 자는 그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중이나 교회 실행제직회원 중 영적으로 성숙한 회원 한 두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3. 그러한 소그룹의 노력에 참가했던 개인은 대면 토론과 소그룹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후에야 그 차이점을 전체 교회실행제직회에 제출해야 한다. 교회실행제직회가 그러한 요구를 받게 되면, 교회실행제직회는 사랑, 수용, 용서의 정



신과 교회 규율에 따라서 그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123-125,2, 129,1)

## **제10절 개교회와 목회자의 관계갱신**

**123. 교회와 목회자의 정기 관계점검:** 목회자가 시무를 시작  
한지 2년이 되는 날 60일 전에 교회실행제직회는 총회감독, 혹은  
총회감독이 임명한 안수목사나 평신도 대리인과 함께 교회와 목회  
자의 관계점검을 위한 회의를 한다. 이후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점  
검은 매 4년마다 한다.

관계점검 시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  
문도 다루어져야 한다. 회의의 취지는 공식적인 교회실행제직회의  
투표없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123.1.** 총회감독, 혹은 총회감독이 임명한 안수목사나 평신도  
는 교회실행제직회와 가질 관계점검 회의 일정과 진행에 대한 책임  
을 진다. 총회감독이 평가 방법을 결정한다. 이 점검회의의 일정은  
목회자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점검 회의(들)는 비공  
개(목회자가 참석하는 교회실행제직회)로 진행해야 한다. 총회감독  
의 재량으로 관계점검 일부분은 목회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질 수 있다. 목회자의 배우자가 실행제직회의 회원인 경우, 목회자  
의 배우자는 관계점검에 참가할 수 없다. 더하여, 목회자의 다른 가  
까운 친인척들은 총회감독이나 지명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관계점  
검회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123.2.** 이 정기 관계점검을 위한 교회실행제직회와의 모임의

취지를 설명해 줄 공식적인 광고 인쇄물이 교회실행제직회와 총회 감독이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점검을 위해 만나기 전 주일에 회중들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123.3.** 만일 교회실행제직회가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문제를 교회회원들에게 제기하기로 투표하지 않으면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는 유지된다.

**123.4.** 교회실행제직회는 투표로 결정하여 목회자와의 청빙 관계유지에 대한 질문을 교회 회원들에게 제안할 수 있다. 실행제직회는 무기명 투표로 행해지며 출석한 전체 실행제직회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된다.

**123.5.** 만일 교회실행제직회가 교회 회원들에게 목회 지속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제안하기로 결정했으면 표결 후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소집된 교회회의에 이 안건을 제시한다. 안건은 “현재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이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행하여지며 해당 국가의 민법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통과를 위해 3분의 2 찬성을 요구한다.

**123.6.** 만일 교회 회원들이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지속하기로 표결하면,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는 그러한 투표가 없었던 것처럼 유지한다. 반대일 경우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는 투표 후 30일에서 180일 사이에 총회감독에 의해 정해진 날에 종료된다. 목회자가 회중 투표의 절차를 계속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혹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목회자는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관계점검 진행이나 회중 투표를 원하지 않는 목회자의

결정으로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는 이 날부터 30일에서 180일 사이에 총회감독이 정한 날에 종료된다. (120)

**123.7.** 정기 관계점검 일부로서, 개교회 목회자와 교회실행 제직회는 선교, 비전 그리고 교회의 핵심 가치들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총회감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124.** 투개표 위원장은 목회점검 투표 결과를 공고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목회자에게 알려야 한다.

**125. 교회와 목회자 특별 관계점검:** 정기 관계점검 중간에 모인 개교회 실행제직회는 총회감독, 혹은 총회감독이 임명한 장로목사의 사회로 모인 회의에서 선출된 전체 교회실행제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해서만 공식 특별 관계점검이 된다.

**125.1.** 교회와 목회자의 특별 관계점검 회의는 비공개(목회자가 참석하는 실행제직회)로 진행되어야 한다. 총회감독의 판단에 따라, 관계점검의 일부를 목회자 부재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다. 목회자 배우자가 실행제직회의 선출된 위원일 경우 그는 관계점검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추가로, 총회감독 혹은 지명된 대리인은 가까운 친족들을 관계점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5.2** 만일 총회감독과 개교회 실행제직회가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질문을 교회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면, 총회감독과 개교회 실행제직회는 실행제직회원 전체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교회가 있는 나라의 민법상 다른 요

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질문을 개교회 특별연차회의에 제출하여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출된다: “현재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125.3.** 해당 나라의 민법이 달리 요구하는 외에는 만일 투표 연령에 달한 정회원들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3분의 2이상의 찬성 투표로 교회가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지속하도록 결정했을 경우, 그러한 투표가 없었던 것처럼 목회자의 임기는 계속 유지된다.

**125.4.** 그러나 교회가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목회자의 임기는 투표 이후 180일 이내에 총회감독이 정한 날로 종료된다.

**125.5.** 목회자가 회중 투표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목회자는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럴 경우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는 관계점검 진행이나 회중 투표를 원하지 않는 목회자의 결정일로부터 30일에서 180일 사이에 총회감독이 정한 날에 종료된다. (113.8, 123-124)

**126. 개교회 위기 상태:** 개교회가 위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총회감독은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고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할 권한을 갖는다. 이 위원회는 2명의 총회고문회의원인 안수목사와 2명의 평신도 총회고문회의원과 의장의 역할을 할 총회감독으로 구성된다. (211.3)

**126.1.**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판단으로 개교회가 재정이나 윤리상의 문제, 혹은 다른 어떤 문제로 위기 상태에 처해있고 이 위기 상태가 교회의 안정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여겨질 경우,

(a)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질문을 총회감독 혹은 총회감독이 임명한 총회고문회 위원에 의해 마치 교회 제직회가 장정 123-123.7조항에 의하여 표결해서 요청한 것처럼 개교회 회중에게 제안할 수 있다. 또는

(b) 목회자, 그리고 교회실행제직회의 임기는 총회고문회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해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승인을 얻어 종료될 수 있다. 총회감독은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얻어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명된 교회의 실행제직회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총회고문회의 조치는 30일 이내에 관할 국제총회감독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11.3)

**126.2.** 총회감독의 판단으로, 126.1항에 합치하여 위기로 선언된 개교회가 적합한 조정을 마치고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사역을 재개할 준비가 되면 개교회는 총회고문회의 과반수의 찬성 투표에 의해서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선언될 수 있다. 관할 국제총회감독은 총회고문회의 조치를 30일 이내에 통보받아야 한다. (211.4)

### **제11절 개교회 실행제직회**

**127. 회원:** 모든 개교회는 목회자,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SDMI), 나사렛국제청년회(NYI) 회장, 나사렛국제선교회(NMI) 회

장, 청지기회원, 이사, 그리고 교회연차회의에서 실행제직회의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들로 구성된 교회실행제직회를 둔다. 만일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이 목회자의 배우자로서 실행제직회원이 되는 것을 사양하면 부회장이 실행제직이 된다. 그러나 목회자의 배우자인 회장이 실행제직회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면, 목회자의 배우자인 실행제직회원은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점검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교회실행제직회원의 수는 25명 이하로 한다. 담임목회자와 총회감독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수목사나 총회 인정교역자, 그리고 개교회 유급직원은 개교회 실행제직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담임목회자와 교회실행제직회의 추천이 있을시, 총회감독은 목회자 안수과정이나 나사렛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인정교역자로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는 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교역자는 실행제직회의 인정교역자 갱신 추천을 위한 실행제직회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는 개교회 직분자들은 완전성결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제도 및 실천 사항들을 따르며, 또한 성실히 모임에 출석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 십일조와 헌금으로 개교회를 신실하게 뒷받침하는 개교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할 것을 지시한다. 직분자들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33, 113.11, 137, 141, 145-147, 152.2, 159.4)

**127.1.** 개교회의 연차회의가 목회자 이동시기에 열리게 되면 총회감독이 주관하는 개교회 추천위원회가 총회감독의 승인으로 현 실행제직회를 차기 교회연도에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결의안을 연차회의 전 30일 이내에 회중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은 합법적으로 소집된 교회의 특별연차회의에서 출석한 투표연령 회원의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될 수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실행제직회는 예년처럼 연차회의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128. 회의:** 교회실행제직회는 회계연도 시작에 맞추어 업무를 시작하고 적어도 2개월에 한 번 정기 실행제직회의를 가지며 특별회의는 목회자나 총회감독 혹은 반드시 목회자의 승인 하에 교회실행제직회 서기에 의해 소집되며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총회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표를 포함한 교회실행제직회 모임은 전자 기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모임과 투표는 한 장소에서 실행제직회원들이 모여 행한 투표와 동일한 권한과 효력을 가진다. 연차회의와 회계연도 시작 사이에는 새로 선출된 실행제직회가 조직을 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규정에 따라 교회실행제직회 서기와 재무 및 자신들에게 선출할 권한이 있는 다른 직책의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 (129.19-130)

**129. 업무:** 개교회 실행제직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29.1.**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목회자와 협조하여 교회의 관심

분야와 사업을 돌보는 일. (155, 518)

**129.2.** 총회감독과 협의하여 목회자로 적합한 안수목사나 인정전도사(안수목사 과정)를 교회에 추천하는 일. 단, 이러한 추천은 장정 1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준을 얻어야 한다. (115, 159.8, 211.10, 225.16)

**129.3.** 새로 부임하는 목회자와 협력하여 교회의 목표와 기대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일. (115.2)

**129.4.** 해마다 1회씩 교회의 기대와 목표, 계획 및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갱신하기 위해 목회자와 함께 계획회의를 갖는 일. (122)

**129.5.** 개교회에 의하여 목회자가 정식으로 청빙될 때까지 총회감독의 승인 하에 임시목회자를 주선하는 일. (212, 524)

**129.6.**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교회와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SDMI), 나사렛국제청년회(NYI), 나사렛국제선교회(NMI),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연간 예산안을 초안하고 채택하는 일.

**129.7.** 실행제직회의 다음의 의무를 갖고 있는 분과위원회를 임명하는 일:

- (1) 교회 예산을 점검하는 일.
- (2) 교회의 재정 상황 및 관련된 내용을 실행제직회에 보고하는 일.

**129.8.** 목회자가 받는 퇴직금을 포함한 보수와 수당을 결정하는 일과 최소한 1년에 한 번 목회자의 보수를 검토하는 일. (32.3,



115.4, 115.6, 123-123.7)

**129.9.** 담임목회자, 협력목회자, 혹은 기타 교회 유급직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담임목회자와 협력목회자들의 평생 교육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열기를 북돋우는 일. (115.4)

**129.10.** 교회실행제직회는 목회자의 건강한 목회사역과 강한 영적 생활을 격려하기 위하여 총회감독의 자문을 얻어, 한 교회에서 7년을 계속해서 사역한 목회자에게 안식 기간을 제공한다. 때와 기간은 목회자와 교회실행제직회와 총회감독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목회자의 급여는 계속해서 전액을 지불할 것을 강하게 권한다. 교회실행제직회는 안식 기간 동안에 강단에 필요한 대체 설교자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제안은 사역 2년째와 다시 6년째에 갖는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점검에서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가 유지될 때, 총회감독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안식년 제도의 계획과 실행을 위하여 세계목회개발부에서는 개교회 회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배포해야 한다. 실행제직회의 판단으로 이 프로그램은 협력목회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129.11.** 부흥사에게 줄 보수와 숙소비를 결정하는 일, 그리고 초청되었을 때에 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통지하는 일.

**129.12.** 목회자에 의해 추천된 1) 개교회 전도인, 혹은 2) 평신도 전도인을 임명하거나 갱신하는 일. (503.3-503.5, 531.1-531.3, 813.)

**129.13.** 목회자의 추천이 있으면 재량껏, 장정에 의해 요구

되는 개교회 영역 밖의 사역을 인정받기 원하는 평신도나 교역/평신도사역 후보자를 포함하여 사역 활동의 인증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총회연차회의에 추천하는 일.

**129.14.** 목회자의 추천이 있으면 재량껏, 총회 인정전도사 임명이나 갱신을 지망하는 사람을 총회연차회의에 추천하는 일. (531.5, 532.1)

**129.15.** 목회자의 추천이 있으면 재량껏, 508조에 따라서 여성사역전도인의 자격 갱신을 총회연차회의에 추천하는 일.

**129.16.**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추천과 목회자의 승인 하에 아동부디렉터, 그리고 장년부디렉터를 선출하는 일. (145,6)

**129.17.**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칙에 따라 개교회 청년회에서 선출된 청년회장을 승인하는 일.

**129.18.** 나사렛 기독교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교장을 승인하는 일. (151, 159.1, 211.13, 516.10)

**129.19.** 장정 33조에 명확히 밝힌 교회 직분자로서의 자질을 가진 교회 회원 중에서 서기를 선출하는 일. 이 선출은 새로운 실행 제직회의 첫 번째 모임에서 해야 한다. 선출된 사람의 임기는 교회 회기연도 말까지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얻을 때까지이다. 그리고 투표권은 정식으로 소집된 교회회의에서 회중들에 의해 교회실행제직회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만 갖게 된다. (33, 113.6-113.8, 113.11, 128, 135.1-135.7)

**129.20.** 장정 33조에 명확히 밝힌 교회 직분자로서의 자질을 가진 교회 회원 중에서 재무를 선출하는 일. 이 선출은 새로운 실행

제직회의 첫 번째 모임에서 해야 한다. 선출된 사람의 임기는 교회 회기 연도 말까지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얻을 때까지이다. 그리고 투표권은 정식으로 소집된 교회회의에서 회중들에 의해 교회실행제직회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만 갖게 된다. 목회자의 친인척은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승인이 없이는 개교회의 재무가 될 수 없다. 목회자의 친인척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남매, 부모를 말한다. (33, 113.7-113.8, 113.11, 128, 136.1-136.6)

**129.21.**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과 주일학교 및제자사역부(SDMI), 나사렛국제청년회(NYI), 나사렛국제선교회(NMI)을 포함하여 개교회의 모든 금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확한 회계 기록을 남기는 일과 그것을 정기 월례회의와 개교회의 연차회의에 보고하는 일. (136.3-136.5)

**129.22.** 개교회 수입의 모든 금전을 계산하고 기록하는 2명 이상으로 된 위원을 임명하는 일.

**129.23.** 개교회 재무의 재정 장부와 나사렛국제청년회와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와 나사렛 기독교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과 기타 개교회의 재정 장부를, 국가나 주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면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거나 다른 전문적 표준에 근거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감사나 검토를 받도록 감사하는 위원회나 혹은 검토할 독립된 위원들을 혹은 그 같은 자격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임명하는 일. 목회자는 개교회의 모든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129.24.** 3명 이상의 전도및교회회원권위원회를 임명하는 일.

(110)

**129.25.** 바람직하다면 회원 75명 이하의 개교회에서 주일학교 및 제자사역부 역할을 하는 일. (145)

**129.26.** 교회 회원에 대하여 서면 고소가 제출되었을 때 5명으로 된 재판위원회를 임명하는 일. (605)

**129.27.** 총회감독의 서면 승인과 목회자의 추천을 얻어 개교회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선출하는 일. (151, 159-159.1, 211.13)

**129.28.** 매년 총회감독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서 개교회 전도인 혹은 인정전도사를 무보수 부교역자로 선출하는 일. (115.6)

**129.29.** 직권상 목회자를 의장으로 하는 개교회의 장기계획 수립위원회를 지명하는 일.

**129.30.** 교회 내에 권위를 갖고 있는 직분을 맡은 자가 그 신뢰와 권위의 위치를 남용하여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일. 개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교회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30.** 교회실행제직회는 목회자와 함께 국제총회감독회와 국제총회이사회가 채택한 개교회가 부담해야 할 세계전도기금과 총회사업비를 국제총회재무와 총회재무에게 각각 정기적으로 송금한다. (317.10, 335.7)

**131. 청기기직의 의미:** 장정 제32-32.5. 참조

**132.** 새로 조직된 개교회에서는 주일학교부및제자사역부가 정식으로 선출될 때까지 교회실행제직회가 그 부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145)

**132.1.** 새로 조직된 교회의 실행제직회와 목회자는 언제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을 선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129,25, 145, 146)

**133.** 교회실행제직회는 교인이 비활동 회원이라고 선언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비활동 회원의 이름을 회원 명부에서 제명할 수 있다. (109-109,4, 112,3)

**134.** 교회실행제직회는 개교회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의 자격 인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35. 교회서기:** 교회실행제직회의 서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35.1.** 모든 교회회의 또는 실행제직회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충실히 보관하고 기타 서기직에 관한 일체의 직무를 수행한다. 실행제직회 회의록은 정족수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모든 투표 위원의 출석 혹은 결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20.1, 129,19)

**135.2.** 교회연차회의에서 교세 보고를 포함하여 교회 주요 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113.9)

**135.3.** 등기, 인쇄물, 대여증, 교회 회원 명부, 교회 연혁, 교

회실행정직회 회의록, 법인 서류를 포함하여 개교회에 관한 공식 서류와 기록, 그리고 법적 서류 등이 개교회 구내에 화재 방지 혹은 안전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일,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유사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금고에 넣어 보관한다. 목회자와 교회재무는 항상 서류가 보관된 곳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교회서기 후임자가 임직되면 즉시 그러한 서류의 관리 책임을 인계해야 한다.

**135.4.** 정기연차회의나 특별연차회의의 서기가 되며 이 정기연차회의 또는 특별연차회의의 회의록이나 기타 서류의 보관자가 된다. (113.6)

**135.5.** 목회자 청빙,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 지속 여부에 관한 투표의 결과를 총회감독에게 서면으로 인증하는 일. 이 문서는 투표 후 1주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135.6.** 개교회에 목회자가 없을 경우 모든 교회회의나, 실행제직회의 회의록을 복사하여 회의 후 3일 이내에 총회감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135.7.** 목회자와 함께 부동산양도, 저당증서, 저당권 해제, 계약과 관련된 서류, 그리고 별도로 장정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은 기타 법적 서류에 서명한다. (102.3, 103-104.2)

**136. 교회재무:** 교회실행제직회 재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36.1.**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교회의 금전을 수납하고 교회실행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지출한다. (129.21)

**136.2.**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총회 부담금을 총회재무에게, 해당 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총회 부담금을 국제총회재무에게 송금한다. (516.9)

**136.3.** 모든 금전 출납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129.21)

**136.4.** 교회실행제직회에 매월 상세한 재정 결산 보고를 한다. (129.21)

**136.5.** 교회연차회의에 연간 재정 보고를 한다. (113.9, 129.21)

**136.6.** 재무 직분이 정지될 때에는 전체 회계 기록을 교회실행제직회에 인도해야 한다.

## **제12절 개교회의 청지기**

**137.** 교회 청지기는 3명 이상 13명 이하여야 한다. 청지기는 교회 회원 중에서 정기연차회의 또는 특별연차회의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다음 교회 연도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권한이 부여될 때까지 봉사한다. (33, 113.7, 113.11, 127)

**138.** 청지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38.1.** 별다른 직책이 주어지지 않는 한 구제활동이나 전도, 그리고 개척교회를 위해 후원하는 일을 포함한 교회 확장 등과 같은 책임을 갖는, 목회자가 의장인 교회성장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한다.

**138.2.**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돕고 후원한다. 성경적 평신

도 지도자의 역할은 실제적으로 섬기는 분야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롬 12:6-8) 그러므로 청지기는 봉사, 관리, 격려, 긍휼, 심방, 그리고 기타 사역을 이행하는데 시간과 영적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138.3.** 교회실행제직회의 재량에 의해 110-110.8조에 약속된 대로 전도및교회회원권위원회로서 봉사한다.

**138.4.** 모든 교회 회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조직화한다. 특별히 인접한 지역의 다른 문화와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한 사역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138.5.** 지역사회에 있어서 기독교 활동 및 봉사 단체와 접촉하여 봉사한다.

**138.6.** 개교회의 공적 예배와 그리스도인 양육을 위해 목회자를 돕는다.

**138.7.**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며 목회자의 요청이 있을 때 분찬의 업무를 담당하여 목회자를 돕는다. (29.5, 515.4)

**139.** 청지기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정식으로 소집된 교회회의에서 충원할 수 있다. (113.8)

**140.** 청지기들로 구성되는 청지기위원회의 임무는 목회자와 국제총회청지기사역부와 협력하여 개교회 내에서 삶의 모든 자원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정신을 장려하는 것이다. (32-32.5)



### 제13절 개교회의 이사\*

**141.** 교회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며 교회 회원 중에서 선출되어 다음 교회 회기년도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권한이 주어질 때까지 봉사한다. (33, 113.11, 127)

**142.** 교회 이사 선출에 관한 민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엄격히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113.4)

**142.1.** 민법상 선출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는 연차회의나 그 목적을 위해 정식으로 소집된 특별연차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113.7, 113.11)

**143.**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43.1.** 교회 법인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민법이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이유로 총회감독이나 총회고문회가 가장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102-104.4조에 명시된 지침 및 제한사항에 따라 개교회 재산의 권리증서를 간직하고 개교회의 이사로서 이를 유지, 관리하는 일.

**143.2.** 교회실행제직회의 다른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교회의

---

\* “장로” 명칭에 관한 중앙감독회의 승인.

장정의 명칭인 “이사”란 명칭보다는 “장로”란 명칭을 사용하자는 한국 나사렛성결교회에서 제안된 안전에 대해서 중앙감독회는 신중한 협의를 한 후에, 몇 가지 조건과 총회의 결의를 전제로 승인하였는데, 1977년 3월에 중부연회와 남부연회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시설 계획과 재정 계획을 지도하는 일.

**144.** 이사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정식으로 소집된 교회회의에서 충원할 수 있다. (113,8)

#### **제14절 개교회의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145.** 개교회는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를 교회실행제직회의 한 분과로 교회연차회의에서 세워 교회의 기독교교육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 회원 75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교회실행제직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직책상의 위원들인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 목회자, 국제선교회장, 청년회장, 아동부장, 장년부장들과 교회연차회의에서 교회 회원 가운데 선출된 3명 내지 9명의 위원들.

위원들은 처음에는 1년과 2년의 임기를 가진 2종류로 선출하고 그 후 매년 필요한 수만큼 2년 임기로 선출한다.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교회 회기년도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권한이 주어질 때까지 봉사한다. 피선된 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정식으로 소집된 교회회의에서 충원할 수 있다. 만일 교회가 실행제직회원의 일부로 교육위원들을 선출한 경우에는, 교회는 장정에 규정된 청지기와 이사의 최소 인원수를 고려해서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당연직중 일부는 실행제직회원이 안될지라도 위원회 위원이 된다.

우리는 개교회 직분자들은 완전성결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삶

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제도 및 실천 사항들을 따르며, 또한 성실히 모임에 출석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 십일조와 헌금으로 개교회를 신실하게 뒷받침하는 개교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할 것을 지시한다. 직분자들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33, 137, 141, 146)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45.1.** 개교회 기독교 교육의 사역을 계획, 조직, 추진 및 실행하는 일. 이 일은 목회자의 직접적인 보살핌과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의 지도 및 개교회 실행제직회의 방침에 따라 행해지되 국제 총회이사회에 의해 설정되고 세계선교위원회 및 장년부, 나사렛국제청년회, 아동부를 통해 추진된 목표와 표준에 일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각종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중심적인 사역들이 포함된다. 주일학교/성경공부/소그룹 모임은 설교사역과 함께 교회 사역의 핵심이라 할 성경공부 및 교리공부 등을 제공한다.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과 수련회나 여름(겨울)성경학교, 독신자를 위한 성경공부반과 같은 연간 그리고 특별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적 교리가 신자들의 삶 속에 실천되고 융화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516,15)

**145.2.**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

로 가르치고, 믿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 기독교 신앙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자세, 습관을 계발시키며, 기독교 가정을 형성하도록 돕고, 신자들을 준비시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여 적절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임하게 한다.

**145.3.** 성경공부와 교리적 해석의 기본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나사렛성결교회의 자료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사역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일.

**145.4.** 주일학교및제자사역 준칙에 일치하게 개교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 전체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일. (812)

**145.5.**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 후보로 1명 또는 그 이상을 목회자의 승인을 받아 교회연차회의에 추천하는 일. 단 후보자 추천회의에는 현직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이 참석해서는 안 된다.

**145.6.** 목회자의 승인을 얻어 아동부디렉터 및 장년부디렉터로 일할 사람들을 교회실행제직회에 추천하는 일.

**145.7.** 목회자와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의 승인 하에 아동부 및 장년부디렉터들의 추천을 받아 아동부 및 장년부 임원들을 선출하는 일

**145.8.** 모든 연령층의 주일학교/성경공부모임/소그룹모임의 지도자들, 교사들, 그리고 직원들을 선출하는 일.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삶에 있어 모범적이고,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정책을 완전히 따르는 사람이어야 하며, 나사렛국제청년회장과 아동부와 장년부의 디렉터에 의해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추천받은 사람은 목회자와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145.9.** 주일학교및제자사역 사역자들과 교회 전체 회원에게 정규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직하고 추진하며 관리하는 개교회 평신도 평생교육 디렉터를 선출하는 일.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는 평신도 평생교육 디렉터를 직무상 위원으로 지명할 선택권이 있다.

**145.10.** 정기 회의를 소집하는 일과, 교회 회기년도(114)와 같은 주일학교및제자사역 회기년도를 시작할 때 서기와 필요한 다른 임원들을 선출하여 조직하는 일. 목회자 또는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은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46.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 교회연차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에 의하여 1년간 시무, 또는 그의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시무할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을 선출한다.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는 목회자의 승인을 얻어 현직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을 “찬”, “반”의 신임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의 결원은 정식으로 소집된 교회회의에서 충원되어야 한다. 신임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은 직책상 총회연차회의 대의원과, 개교회 실행제직회 및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집행위원이 된다.

우리는 개교회 직분자들은 완전성결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제도 및 실천 사항들을 따르며, 또한 성실히 모임에 출석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 십일조와 헌금으로 개교회를 신실하게 뒷받침하는 개교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할 것을 지시한다. 직분자들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33, 113.11, 127, 145, 145.5, 201)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46.1.** 개교회의 모든 주일학교및제자사역 활동의 총괄책임자가 되는 일.

**146.2.** 주일학교및제자사역 준칙(812)에 일치하여 주일학교 및제자사역을 관장하는 일.

**146.3.** 등록 및 출석 증가와 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일.

**146.4.**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 또는 교회실행제직회 산하 교육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사회하고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를 지도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

**146.5.** 교회실행제직회에 주일학교및제자사역의 연간 예산을 제출하는 일.

**146.6.** 교회실행제직회에 월례 보고하는 일과 교회연차회의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일.

**147. 아동/장년 협의회와 디렉터들:** 주일학교및제자사역을 위한 가장 좋은 조직은 아동, 청년, 장년의 연령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다. 각 연령 그룹에는 그 일을 조직하고 책임지는 협의회를 둔다. 그러한 협의회는 해당 연령 그룹의 디렉터, 주일학교/성경공부 모임/소그룹모임의 대표들, 그리고 교회가 그 연령 그룹을 위해 만든 다른 부서들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협회의 임무는 해당 연령 그룹 디렉터와 협의하여 그 연령 그룹의 활동을 계획하고 그 계획의 달성을 위한 방안을 세우는 일이다. 아동부 및 장년부협의회는 모든 활동은 그룹 디렉터와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령 그룹 디렉터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47.1.** 연령별 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본인이 지도하는 협의회를 조직하고 장려하면서, 전체 주일학교및제자사역 활동과 조화를 이루게 조정하는 일.

**147.2.**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개교회의 아동과 청년과 장년들의 등록 및 출석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연령별 주일학교및제자사역을 이끌어가는 일.

**147.3.** 본인이 대표하는 연령 그룹을 위한 추가 주일,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 연례 혹은 특별 사역들과 전도 및 친교 활동을 이끌어가는 일.

**147.4.** 본인에게 맡겨진 연령 그룹의 여러 활동을 위해 주일학교/성경공부반/소그룹모임의 지도자, 교사, 그리고 임원들을 포함하여 여러 지도자들을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에 추천하는 일. 다만 청소년 주일학교/성경공부반/소그룹모임 지도자와 교사, 임원을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나사렛국제청년회는 예외로 한다. 추천된 자들은 목회자와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

**147.5.** 보충 커리큘럼을 사용하기 전에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일.

**147.6.**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와 평신도 평생 교육 디렉터와 협력하여 연령 그룹의 사역자들을 위해 지도자 양성교육을 제공하는 일.

**147.7.**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와 실행제직회, 또는 그 어느 한 쪽에 연간 예산을 청구하며 예산 승인 목적에 맞게 자금을 관리하는 일.

**147.8.** 개교회에서 본인의 지도하에 있는 연령별 그룹의 다양한 사역활동에 대한 모든 보고를 접수하는 일. 모든 교육사역(주일학교/책임을 맡은 확장 사역들/제자훈련/성경공부반)에 대한 보고는 매월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에게 제출한다.

**147.9.** 개교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의 전반적인 사역과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3개월마다 본인의 연령 그룹 활동 계획을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일.

**148. 아동부협의회:** 아동부협의회는 출생으로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개교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의 전반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책임을 진다. 협의회는 최소한 1명의 주일학교/성경공부반/소그룹모임의 대표자와 개교회가 제공하는 다른 아동 활동의 디렉



터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어린이 교회학교, 수련회, 여름(겨울) 성경 학교, 성경퀴즈대회, 선교 교육, 영아반,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의 디렉터들을 말한다.

협의회는 크기는 필요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으면 개교회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사역의 수에 따라 다르다.

아동부디렉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48.1.** 장정 147.1조부터 147.9조에 명시한 모든 연령별 그룹의 디렉터들에게 맡겨진 임무들을 수행하는 일.

**148.2.**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 실행위원회와 협력하여 아동선교디렉터를 임명하는 일. 임명받은 사람은 나사렛국제선교회와 아동부협회의 회원이 된다. 이 보직을 위한 피추천인은 목회자와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9. 장년부협의회:** 장년부협의회는 장년을 위한 개교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의 전반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책임을 진다. 협의회는 최소한 1명의 주일학교/성경공부반/소그룹모임의 대표자와 개교회가 제공하는 다른 장년 활동의 디렉터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결혼 및 가정생활반, 노년반, 독신 장년반, 평신도 사역반, 여자 사역반, 남자 사역반,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의 디렉터들을 말한다.

협의회는 크기는 필요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으면 개교회 장년들에게 제공되는 사역의 수에 따라 다르다.

장년부디렉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49.1.** 장정 147.1조부터 147.9조에 명시한 모든 연령별 그룹의 디렉터들에게 맡겨진 임무들을 수행하는 일.

### **제15절 개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NYI)**

**150.** 나사렛 청년사역은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후원아래 개교회에서 조직된다. 개교회 청년회는 개교회 실행제직회의 권위와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회칙 아래 조직된다.

**150.1.** 개교회 청년회는 개교회 청년회 사역 계획에 따라 구성되며(810.100-810.118)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칙 및 나사렛성결교회 장정에 따라서 개교회 청년사역의 필요에 맞춰서 조정될 수 있다. (810.103 참조)

### **제16절 개교회의 나사렛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

**151.** 나사렛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은 총회 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받아 세계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아동부 규정에 따라 개교회 실행제직회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학교장과 학교이사회는 개교회 실행제직회에 책임을 지고,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9.18, 211.13-211.14, 225.14, 516.15, 517)

**151.1. 폐교:** 개교회가 탁아소/학교(들) (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운영을 중지할 필요를 느끼면,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와 상의하고 재정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폐교할 수 있다.

## **제17절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NMI)**

**152.** 세계 NMI연합대회와 국제총회이사회 세계선교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칙에 따라서,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는 교회실행제직회의 승인 아래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를 어느 연령별 단위로라도 조직할 수 있다. (811)

**152.1.** 개교회 국제선교회는 개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담임목회자와 교회실행제직회의 감독을 받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516)

**152.2.** 개교회 국제선교회 회장은 담임목회자에 의해 임명된 3명에서 7명의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목회자는 이 추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 추천위원회는 교회실행제직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 후보자를 1명 또는 그 이상 추천한다. 회장은 출석회원(준회원을 제외한)의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회장은 그 국제선교회가 속한 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그는 직책상 교회실행제직회의 일원이며, (만일 회장이 목회자의 배우자일 경우 부회장이 대신하여 실행제직회원이 될 수 있다.) 본인의 임기 직전에 개최되는 총회연차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회장은 교회연차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113.9, 114, 123, 127, 201)

**153.** 개교회 국제선교회에서 나사렛성결교회의 국제적 활동을 위해 모은 기금은 세계전도기금의 일부가 된다. 단, 국제총회 십일조위원회(Ten Percent committee)에 의해서 인준된 특별한 선교

계획들은 여기서 제외된다.

**153.1.** 우선적으로 세계전도기금을 고려한 후에 “승인된 특별 선교사역”을 통해 다른 세계선교사역을 후원하도록 개교회에 권고한다.

**154.** 국제적 사역을 후원하기 위한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모은다.

**154.1.** 세계 전도기금 또는 국제적 업무를 위해 드러진 지정 현금.

**154.2.** 부활절과 감사헌금과 같은 특별헌금.

**154.3.** 이상의 기금은 개교회나 총회의 경비 혹은 기타 자선 목적으로 조금도 사용할 수 없다.

### **제18절 개교회를 위한 재정모금 금지**

**155.** 개교회나 그 임원 또는 회원이 그 교회의 경제적 필요나 특별 행사를 위해 다른 교회 임원 또는 회원에게 모금을 요청하거나 재정적 원조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서면 승인이 있을 경우 해당 총회 안에 있는 개교회나 회원에게 모금을 요청할 수 있다.

**156.** 국제총회이사회 또는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은 개교회의 회중이나 회원에게 세계전도기금 외에 선교사나 그와 유사한 활동을 위한 기금을 요청할 수

없다.

### 제19절 개교회 명칭 사용

**157.** 나사렛성결교회의 명칭 즉, 어느 개교회 혹은 나사렛성결교회와 부속되어 있거나 결연되어 있는 법인 혹은 기관의 명칭 또는 그 명칭의 일부는 사전에 나사렛성결교회 국제총회이사회나 국제총회감독회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개인이든 그 이상이든 어떤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이라도, 그리고 어떤 법인, 조합, 조직, 연맹, 그룹 혹은 다른 어떤 단체라도 상업적, 사회적, 교육적, 자선적 혹은 그 외의 다른 성격을 띤 어떠한 활동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다. 단, 본 규정은 나사렛성결교회 장정에 따라 인정된 공식 나사렛성결교회의 제 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20절 교회 후원 단체

**158.**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와 국제총회감독회의 명확한 서면 동의없이 어느 개교회, 개교회 실행제직회, 총회 소속의 법인, 총회의 위원회 또는 위의 명시된 곳에 소속된 2명 또는 그 이상의 회원이 개인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나사렛성결교회 회원들만을 위한 혹은 나사렛성결교회 회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나 서비스를, 그것이 상업적, 사회적, 교육적, 자선적 또는 다른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후원하거나 운영할 목적을 갖고 나사렛성결교회 회원들을 잠재적 참여자, 고객, 임차인, 의뢰인, 회원, 또는 협조자로 권유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추구

하는 어느 법인, 연맹, 조합, 그룹 혹은 기타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일원이 될 수 없다.

## 제21절 개교회 직원

**159.** 교회에서 시간제 혹은 전임으로 어떤 중요한 평신도 봉사를 위해 자신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교회는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의 직무를 인정하지만 교회란 기본적으로 자발적 집단이므로 능력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회원들의 의무와 특권이다. 개교회나 개교회의 어떤 부속 또는 관계기관에 더 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역자 또는 평신도 유급 직원이 필요할 때 그것이 모든 교인들의 자발적인 봉사의 정신을 해치지 않고, 모든 재정항목을 지불하는 것이 교회 재원을 세 금부과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위한 청원은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심사를 위해 서면 제출해야 한다. (129.27)

**159.1.** 교회 내에서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교장을 포함하는 모든 개교회의 특수사역에 봉사하며, 직업이 된 사역 관계로 들어간 유급 혹은 무급직원들은 담임목회자의 추천을 받아 교회실행제직회에서 선출한다. 모든 추천은 먼저 총회감독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총회감독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159.4, 211.13)

**159.2.** 개교회 직원의 고용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갱신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추천과 총회감독의 사전 서면 승인과 교회

실행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담임목회자는 교회 각 직원의 활동에 대해 매년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실행제 직회와 상의하여 직원 개발 및 활동 사항에 대한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임기 종료(교회 회기년도의 종료) 이전에 직원들을 해고하려면 담임목회자의 추천과 총회감독의 승인, 그리고 교회실행제 직회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해고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 고용 임기의 만료가 되기 최소한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공지해야 한다. (129.27)

**159.3.** 개교회 직원의 임무와 봉사 내용은 담임목회자가 결정하고 감독한다. 각 교회에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한지 30일 이내에 볼 수 있도록 명료한 업무 규정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159.4.** 교회의 유급직원은 그 교회의 실행제직으로 선출될 수 없다. 만일 교회실행제직회 회원이 교회의 유급직원이 되어야만 할 경우 그는 실행제직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159.5.** 목회자의 이동시에, 개교회의 통일성과 안정성 그리고 지속적 사역이 중요하다. 따라서 총회감독(또는 총회감독에 위해 지명된 대리인)은 개교회 실행제직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음의 단계를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개교회가 적어도 일정한 시간 동안 일부 또는 전체 직원을 현재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신임목회자가 원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동역자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3) 그리고 새로 부임하는 사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및 직업적으로 조정하고 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준다.

첫째, 목회자가 사임하거나 은퇴할 때 모든 부교역자는 목회자

와 같은 날 사임하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개교회 실행제 직회는 총회감독에게 일부 또는 전체 부교역자들이 사역을 지속하는 것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승인되면 새로운 목회자가 취임한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혹은 새로 오는 목회자가 장정 159조에 근거하여 다음 해를 위해 자신의 유급보조자를 임명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책임자들은 신임 목회자가 부임하는 해의 학교 연도가 마치는 날부터 유효한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교회의 모든 부속 또는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은 계약 기간 중에 신임 목회자가 부임하면 시무 계약 기간 말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 부임한 목회자는 이 전에 고용된 직원들을 재고용하도록 추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159.6.** 목회자 변경 시 직원들에 대한 장정 159.5조의 규정을 교회 직원들과 실행제직회, 그리고 교회 회중과 소통하는 것이 총회감독의 책임이다. (211.13)

**159.7.** 장정 100.2조에 의해 개교회로서 인정받은 회중의 담임목회자는 교회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59.8.** 유급직원으로 시무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승인없이 그가 회원권을 두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받을 자격이 없다. (115, 129.2, 211.10, 225.16)



## 제 2 장 총회 행정체제\*

### 제1절 총회의 구역 및 명칭

**200.** 국제총회는 회원인 개교회를 총회로 나누어 조직한다.

총회는 상호 의존하는 개교회들로 구성된 독립 단체이다. 상호 지지와 자원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개교회들이 용이하게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다.

총회의 명칭 및 구역은 국제총회의 경계위원회에 의해 선포된 원안 그대로를 갖고 투표하여 해당 총회(들)의 과반수 찬성투표로 승인된다.

하나 이상의 교육지구들에 속한 총회들이 하나의 총회로 합병할 것을 검토할 경우, 관할 국제총회감독들과 협의하여 국제총회경계위원회는 새로운 총회가 속하게 될 교육지구를 결정한다.

**200.1. 신규 총회 조직:** 나사렛성결교회의 신규 총회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새로 조직될 수 있다.

1. 한 총회가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총회의 3분의 2 득표를 요함)

---

\* 한국어판 주: 기존의 교리와 장정은 “연회”라는 명칭으로 기재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우 5개 연회가 하나로 통합(2002. 3. 28)된 이후 “총회”로 활동하며 공식적으로 “총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판 교리와 장정 감수위원회는 심도있고 종합적인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2014년 12월 11일에 “연회”에서 “총회”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2. 둘 이상의 총회를 묶어서 다른 구성 형태의 총회들을 만들  
게 되는 경우
3. 현존하는 총회 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운 총회가  
설립되는 경우
4. 두 개 이상의 총회가 통합되는 경우
5. 신규 총회를 설립하기 위한 제안은 관할 국제총회감독  
(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총회감독(들)과 총회고문회(들)  
또는 국가위원회(들)는 관할 국제총회감독(들)과 국제총회  
감독회의 승인을 얻어 이 안건을 표결하기 위해 총회/총회  
들에 상정할 수 있다. (24, 200, 200.4)

**200.2.** 나사렛성결교회 내의 사역은 개척 지역으로 시작해서  
신규 총회를 설립하고 총회 구역을 설정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가  
능한 빨리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3단계 총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1단계** - 전략적인 발전과 복음 전도를 위한 지침에 따라 새로  
운 지역으로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에 1단계 총회로 지정된  
다. 지구장이나, 지구자문협의회와 협의를 통한 한 총회가, 혹은 총  
회의 설립을 지원하는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가 함께 혹은 따로 관  
할 국제총회감독(들)과 국제총회감독회의 최종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단계 총회감독은 세계선교국장과 협의하여 지구장이 관할 국  
제총회감독에게 추천하고, 관할 국제총회감독이 임명한다. 해당 지

구에서는 1단계 총회의 발전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후원하는 총회들이 있는 경우 관할 국제총회 감독은 1단계 총회를 후원하는 총회의 감독(들)과 총회고문회(들)와 상의하여 총회감독을 임명한다.

필드전략코디네이터와 지구장의 판단에 1단계 총회가 재정적, 도덕적, 혹은 다른 이유로 위기 상황이고 이로 인해 심각하게 총회의 안정성과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될 때, 지구장은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승인과 세계선교국장과 협의하여 총회가 위기라고 선언할 수 있다.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승인을 받아 지구장은 계획된 다음 총회연차회의 때까지, 기존에 있던 모든 위원회들 대신 총회의 관리를 위해 임시고문회를 임명할 수 있다.

**2단계** - 2단계 총회의 지위로의 승격은 충분한 수의 조직교회와 안수목사들, 그리고 충분히 성숙한 총회 기본구조가 갖추어진 경우에 가능하다.

총회지위 변경은 관할 국제총회감독이 선교국장과 지구장, 그리고 해당 총회감독의 임명에 관여했던 개인들과 위원회들과의 협의를 하여서 제안하고 국제총회감독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2단계 총회감독은 선출될 수도 있고 임명될 수도 있다. 2단계 총회의 설립에 필요한 숫자적 요건은 최소한 10개의 조직교회와 500명의 정회원, 그리고 5명의 안수목사와, 총회 승격 시 적어도 총회 운영 비용의 50%는 총회의 활동기금에서 충당되고 있어야 한다. 총회고문회나 국가위원회는 관할 국제총회감독에게 이 같은 규정에 대한 예

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필드전략코디네이터와 지구장의 판단에 2단계 총회가 재정적, 도덕적, 혹은 다른 이유로 위기 상황이고 이로 인해 심각하게 총회의 안정성과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될 때, 지구장은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승인을 받아 총회가 위기라고 선언할 수 있다.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승인을 받아 지구장은 계획된 다음 총회연차회의 때까지, 기존에 있던 모든 위원회들 대신 총회의 관리를 위해 임시고문회를 임명할 수 있다.

**3단계** - 충분한 수의 조직교회들과 안수목사들, 그리고 정회원들이 있어서 3단계 총회자격을 갖추게 되면 3단계의 총회로 선포될 수 있다. 지도력과 기본구조, 재정적 책임, 그리고 교리적 건전성들이 검증되어야 한다. 3단계 총회는 이러한 책임들을 감당하면서, 국제적인 교회의 세계를 향한 비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상 명령의 도전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 선포는 관할 국제총회감독이 선교국장과 지구장, 그리고 해당 총회감독의 임명에 관여했던 개인들과 위원회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안하고 국제총회감독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총회감독은 장정 규칙에 의해서 선출된다.

3단계 총회의 설립에 필요한 숫자적 요건은 최소한 20개의 조직교회와 1,000명의 정회원, 그리고 10명의 안수목사이다. 총회고문회나 국가위원회는 관할 국제총회감독에게 이같은 규정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3단계 총회는 총회 행정에 관한 한 100% 자립해야 한다. 3단계 총회들은 총회들이 속한 지구를 구성하는 필수적 지체들이다. 지구장과 관할 국제총회감독은 총회의 소통과 관리를 위해 지구장의 협력자를 세울 수 있다.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판단에 총회가 재정적, 도덕적, 혹은 다른 이유로 위기 상황이고 이로 인해 심각하게 총회의 안정성과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될 때, 국제총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가 위기라고 선언할 수 있다.

관할 국제총회감독은 국제총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 아래의 조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취할 수 있다:

- (1) 총회감독을 해임한다.
- (2) 지금 있는 모든 위원회 대신 계획된 다음 총회연차회의를 관리할 임시위원회를 임명한다.
- (3) 총회의 건전성과 효율적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회복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조치들을 시작한다. (200.1, 205.12, 206.2, 209.1, 307.9, 322)

### **200.3. 총회 구분 및 총회 구역 변경 기준**

총회 발전이나 총회 구역 변경을 위한 제안은 지구 사무국이나 국가위원회, 또는 총회고문회가 관할 국제총회감독에게 제출한다. 이 제안에는 다음 내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1. 신규 총회 또는 재편성되는 총회가 총회의 설립 혹은 재편성을 정당화할 만한 인구 중심지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

2. 총회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 줄 교통 및 통신 시설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
3. 총회의 활동에 필요한 성숙한 안수목사 및 평신도 지도자의 숫자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의 여부.
4. 후원받던 총회들이 3단계 총회 형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총회사역기금의 수입, 충분한 수의 정회원과 조직교회를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200.4. 통합:** 두 개나 그 이상의 3단계 총회는 각 총회의 참석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통합할 수 있다:

통합은 각 총회(와 국가위원회)의 고문회의 추천을 받고,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합과 그에 관련된 모든 절차는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총회가 지정한 시간,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마무리한다. 관련된 각 총회의 재산과 부채는 이렇게 세워진 총회로 통합된다.

1단계 총회와 2단계 총회는 장정 200.2조의 신규 총회 형성을 위한 규정에 따라 통합될 수 있다. (200.1)

**200.5.** 통합에 참여한 총회들이 통합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총회들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 해당 총회고문회의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요청이 있으면, 차기 국제총회에 통합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0.6.** 총회감독은 다음과 같은 일의 도움을 얻기 위해 구역 선교책임자들이나 지방장들을 활용할 수 있다:

1. 그 지방회나 선교지의 목회자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과 동지

애를 구축하는 일.

2. 목회 발전, 교회 성장, 전도, 교회의 개혁과 재개를 격려하고 전략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뜻을 장려하는 일.
3.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를 대신하여 특정된 사역들을 실행하는 일.
4. 개교회들과 총회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일.

## 제2절 총회연차회의의 대의원과 시기

**201. 회원권:** 총회연차회의는 사역 중인 모든 장로목사, 사역 중인 모든 사역목사, 사역 중인 모든 인정 교역자, 모든 사역 중 은퇴한 교역자, 총회총무, 총회재무, 총회에 보고하는 총회 상임위원장들, 그 총회의 개교회 회원으로 있는 나사렛고등교육기관의 평신도 총학장들, 총회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 총회연령별 디렉터들(아동부, 장년부), 총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 총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각 개교회의 새로 선출된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부장, 각 개교회의 새로 선출된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 또는 부회장, 각 개교회의 새로 선출된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또는 부회장, 혹은 나사렛국제선교회, 나사렛국제청년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선출된 후보 대의원이 대신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사역하고 있는 자, 총회고문회의 평신도 대표들, 그 총회의 개교회 회원으로 있는 사역 중인 평신도 선교사들, 퇴직할 당시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현재 해당 총회의 개교회 회원으로 있는 모든 은퇴한 평신도 선교사,

그리고 개교회와 미조직교회의 평신도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24, 113.14-113.15, 146, 152.2, 201.1-201.2, 219.2, 222.2, 224.4, 242.2, 244.2, 505-528.1, 532.8, 533-533.4, 534-534.3, 535-535.1, 536-536.2, 538.9)

**201.1.** 정회원 수 5,000명 미만의 총회 산하에 속한 개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대의원 수는 처음 정회원 50명까지는 2명, 이후 정회원 수 50명마다 1명을 추가하고, 50명 단위로 나누고 마지막에 남은 정회원 수가 50명의 과반수(25명) 이상이면 1명을 추가한다. (24, 113.14-113.15, 201)

**201.2.** 정회원 수 5,000명 이상을 가진 총회 산하에 속한 개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대의원 수는 처음 정회원 50명까지는 1명, 이후 정회원 수 50명마다 1명을 추가하고, 50명 단위로 나누고 마지막에 남은 정회원 수가 50명의 과반수(25명) 이상이면 1명을 추가한다. (24, 113.14-113.15, 201)

**202. 시기:** 총회연차회의는 해마다 개최하며 관할 국제총회감독이 지정하는 시기에 총회고문회가 정한 장소나 총회감독이 준비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203. 추천위원회:** 총회연차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총회감독은 총회고문회와 상의하여 추천위원들을 임명해서 연차회의를 위해 봉사하게 한다. 이 위원회는 연차회의 개최 전에 통상의 분과위원 및 임원 후보자 추천을 준비한다. (215.2)



**204.** 총회에 속한 모든 기관은 전자기기를 통해 회의를 할 수 있다. 투표방식은 총회고문회가 승인한다. 모든 필요한 연락과 투표는 전자기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제3절 총회연차회의의 업무**

**205. 회의법:**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의 개교회, 총회, 국제총회, 각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진행은 현지의 적용되는 법과 장정에 명시된 법인정관과 치리 규정을 따르고, 새로 개정된 로버트 회의법(Newly Revised Roberts Rules of Order: 최신판)의 의사진행 규정을 준수한다. (34)

**205.1.** 총회연차회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05.2.** 새로 조직된 교회들을 포함하는 총회의 사역을 요약한 총회감독의 연례 보고를 청취하고 접수하는 일.

**205.3.** 목회자 혹은 임명부흥사로 봉직하는 모든 안수및 인정 교역자들로부터 보고서를 청취 혹은 접수하는 일. 모든 장로목사, 사역목사, 여성사역전도인의 인품을 살피는 일. 사역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다른 모든 장로목사, 사역목사, 여성사역전도인, 인정교역자, 그리고 505-528.2조의 사역을 위한 총회 인증서를 소지한 사람들의 구두 보고를 대신하여 총회총무에게 제출된 서면 보고를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접수할 수 있다. (521, 532.8, 538.9)

**205.4.** 개교회 실행제직회 또는 총회고문회에서 신중히 심의한 후에 추천받은 자로, 소명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총회 목회심의부나 목회부에서 추천, 승인이 된 경우 인정교역자로 인정하거나

인정을 갱신하는 일. (129.14, 531.5, 532.1, 532.3)

**205.5.** 개교회 실행제직회에서 신중히 심의한 후에 여성사역 전도인 직에 소명을 받았다고 확인되어 추천받은 사람을, 목회심의 부나 목회부의 추천 및 승인이 된 경우, 여성사역전도인으로서의 자격을 갱신하는 일. (129.15)

**205.6.** 목회심의부나 목회부에서 자격에 합당한 모든 요구 조건을 구비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추천, 승인이 된 경우 안수목사나 사역목사로 선출하는 일. (533.3, 534.3)

**205.7.**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에서 타 교단으로부터 전입해 온 자가 합당한 자격이 있고 나사렛성결교회에 입회할 만하다고 인정받아 추천, 승인이 된 경우 교역자 자격과 인증서를 인정하는 일. (532.2, 535-535.2)

**205.8.** 타 총회로부터 전입하려는 자들로서, 사역자의 인증서를 소지한 자들, 성직자회원들, 특정 사역에 임직되어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받은 임시 전입자들을 목회심의부나 목회부에서 총회의 회원으로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 추천, 승인이 된 경우 총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일. (231.9-231.10, 505, 508-511.1, 537-537.2)

**205.9.**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의 추천, 승인이 된 경우 타 총회로 이적을 희망하는 교역자들, 특정 사역에 임직되어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받은 임시 전입자들에게 이적 서류를 발급하는 일. (505, 508-511.1, 231.9-231.10, 537-537.1)

**205.10.**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의 추천, 승인이 된 경우 장정 505-528.2조 규정에 따라 명시된 사역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1년 연한부로 임명 또는 등록시키는 일.

**205.11.**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장로목사 한 사람을 총회감독으로 선출하여 두번째 총회연차회의가 끝난 뒤 30일까지 그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하게 하는 일. 현직 총회감독의 재선 여부는 “가”, “부”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징계 조치로 인해 인증을 반납한 적이 있는 장로목사는 총회감독 직에 선출될 수 없다. 누구든지 만 70세가 넘게 되면 총회감독 직에 선출되거나 재선될 수 없다.

**205.12.** 3단계 총회 혹은 2단계 총회의 감독(200.2)이 최소 2년 동안 총회를 위해 봉직한 후면 총회연차회의는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승인을 받아 4년의 임기로 그를 재선출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을 위한 선거의 절차는 “가”, “부”의 무기명 투표 결과 3분의 2이상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200.2)

**205.13.** 국제총회감독과 총회자문위원회가 총회감독이 더 이상 시무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총회자문위원회는 그 의사를 총회연차회의의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의안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출한다. “현 총회감독이 금년 총회 후에도 계속 감독 직을 수행해야 할까요?”

만일 총회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감독의 임직을 계속하도록 결의하면 그러한 투표가 없었던 것과

같이 시무를 계속한다. 그러나 투표에 의해서 총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총회감독의 임무는 그 총회의 종료와 함께 30-180일 이내에 끝나며, 그 날짜는 관할 국제총회감독이 총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결정한다. (206.2, 208, 239)

**205.14.** 총회가 정한 기간, 최대 4년을 넘지 않는 동안 시무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총회고문회를 위해 시무하게 될 3명의 사역 중인 장로목사와 3명의 평신도 대표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일.

하지만 총회의 총 회원수가 5,000명을 초과할 때에는 이 후 정회원 수 2,500명마다 1명의 장로목사와 평신도 대표를 추가하고, 2,500명 단위로 나누고 마지막에 남은 정회원수가 2,500명의 과반수(1,250명) 이상이면 각 1명씩을 추가한다. (224)

**205.15.** 4년간 시무하고,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하게 될 적어도 5명 이상의 사역 중인 안수목사를 총회목회심의회에 선출하는 일. 그들 중 두 명은 안수목사인 경우 총회감독과 총회총무가 된다. 총회총무가 평신도일 경우 총회목회심의회 투표권이 없는 부원이 된다. 총회목회심의회는 총회연차회의 개최 전 그 권한에 속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모임 가능한 한 총회연차회의 개최 전에 그 임무를 완료한다. (229-231,10)

**205.16.** 4년간 시무하고,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하게 될 적어도 5명 이상의 사역 중인 안수목사를 총회목회연구부에 선출하는 일. (232)

**205.17.** 목사 안수 대상자들이 안수를 위해 준비하도록 돕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교역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연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회는 목회심의부와 목회연구부에서 종사할 사람들을 해당 수별로 모두 선출하고 그 모두로 총회목회부를 구성할 수 있다. 선출된 교역자들의 임기는 4년이다.

총회목회부는 직무상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총회감독과 함께, 목회심의부와 목회연구부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회부 조직을 편성한다. (216, 229-234.4)

**205.18.** 장정 236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재산관리부 부원을 선출하는 일. (206.1)

**205.19.** 다음 중의 하나 또는 모두를 재량껏 선출하는 일.

- (1) 총회감독을 포함하는 6명 이상의 전도부원.
- (2) 총회전도부장.

선출된 자들은 다음 총회연차회의가 끝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시무하게 된다. (206.1, 215)

**205.20.** 장정 241조의 절차에 따라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을 선출하여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하게 하는 일. (206.1, 215)

**205.21.** 총회가 정한 기간, 최대 4년을 넘지 않는 동안 시무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총회재정위원회를 위해 시무하게 될 동수의 사역 중인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는 일. 총회감독과 총회재무는 직책상 위원이 된다. (238-238.3)

**205.22.** 총회가 정한 기간, 최대 4년을 넘지 않는 동안 시무

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총회 소청위원회를 위해 시무하게 될 3명의 사역 중인 안수목사와 2명의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는 일. (610)

**205.23.** 국제총회 개회 16개월 전, 또는 여행 비자나 기타 특별 준비를 요하는 지역에서는 국제총회 개회 전 24개월 이내에 개최된 총회에서 모든 평신도 대의원과 총회감독을 제외한 모든 교역자 대의원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일.

모든 3단계 총회는 국제총회에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의원을 파송한다. 각 총회의 총회감독은 임기 중에 열리는 국제총회에 참석하는 교역자 대표의 한 사람이 되며, 나머지 교역자 대표는 안수목사여야 한다. 총회감독의 참석이 불가능하거나 새 총회감독이 임명되지 않고 공석일 경우 합법적으로 선출된 후보 대의원이 총회감독의 의석을 차지한다. 추천위원회는 해당 총회로부터 선출될 수 있는 교역자와 평신도 대의원수의 최저 6배의 인원을 추천해야 한다.

이 후보자들 중에서 투표지에 올리는 이름의 수는 선출될 사람의 수의 3배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허락된 수의 정대의원과 후보대의원을 다수투표로 장정 301.1-301.3조에 따라 선출한다.

총회연차회의에서 정대의원 수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여행 비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총회연차회의가 총회고문회에 추가 후보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선출된 대의원은 불가항력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종 충실히 모든 국제총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5-25.2, 301.1-301.3, 303, 332.1)

**205.24.** 총회의 재량으로 개교회를 위해 준회원 제도를 확립하는 일. (준회원은 대의원 파송을 위한 목적으로 정회원으로 계수되어서는 안 된다). (108)

**205.25.** 모든 총회재무의 장부를 총회고문회에 의해 선출된 총회 회계감사위원회 혹은 회계감사원이나 공인 회계사로 하여금 국가법에 의해 요구된 최소한의 표준이나 또는 다른 공인된 전문적 표준에 부합하게 매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225.24)

**205.26.** 총회총무로 하여금 과거 4년간의 총회 연차회의록을 국제총회에 보존, 비치하도록 제출하게 하는 일. (207.3-207.4, 220.7)

**205.27.** 총회 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의 추천에 따라 은퇴 교역자 신분을 부여하는 일. 어떤 변화가 있을시, 총회 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의 추천을 받아 총회연차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1.8, 536)

**205.28.** 총회 내의 모든 나사렛성결교회 사업을 검토하고 살펴보는 일.

**205.29.** 나사렛성결교회의 정신과 질서를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는 사업들을 처리하는 일.

## **206. 기타 총회규약**

민법이 허락하면 총회는 총회고문회를 법인화할 수 있다. 총회

고문회가 법인화 된 후에는 총회고문회의 자체 결의로 법인의 목적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동산 및 사유 재산의 구매, 소유, 판매, 교환, 담보, 신용 대부, 저당, 임대, 재산 양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다. (225.6)

**206.1.** 장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가능하면 총회의 모든 위원회나 부서는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206.2.** 1단계 총회와 2단계 총회의 감독들은 장정 200.2조에 의해 선정된다. 2단계 총회는 2단계 총회의 조건을 갖추게 될 때까지는 다시 1단계 총회가 될 수 있다.

**206.3.** 총회의 의장이 사무 처리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계속 개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총회 개최를 연기, 취소하거나 총회를 휴회하려면 국제총회감독회와 협의를 통해, 관할 국제총회감독이 총회의 휴회 전에 선출되지 못한 모든 총회 임원들을 임명하여 1년간 시무하게 한다.

#### **제4절 총회연차회의 회의록**

**207.** 총회연차회의 회의록은 총회연차회의의 정규 의사진행을 기록한 것이다.

**207.1.** 이 회의록은 국제총회총무에 의해 허용된 양식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복사본을 인쇄할 수 있다.

**207.2.** 업무 항목별로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

**207.3.** 이 회의록은 국제총회에서 검토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편집해야 한다. (205.26, 220.7)



**207.4.** 매 4년마다 제작되는 전체 공식 회의록은 총회와 국제 총회에 보존, 비치한다. (220.5, 220.7)

**207.5.** 회의록은 국제총회감독회와 협의 후에 국제총회총무가 마련한 목차에 가능한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목차는 총회연차회의 개최 전에 총회총무에게 전달한다.

**207.6.** 회의록에는 각각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 뿐 아니라, 해당 총회가 참여하고 있고, 연금과 보험금을 지불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연금위원회에 혜택을 신청하면 고려 대상이 되는, 교단과 연관된 어떤 종류의 사역에든지 종사하고 있는,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역자와 평신도 회원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역과 특별한 사역들이 수록되어야 한다. (115)

## **제5절 총회감독**

**208.** 총회연차회의에서 선출된 총회감독 직의 첫 임기는 연차회의 종료 후 30일부터 시작된다. 첫 임기는 선출된 지 2년째 되는 정기 연차회의 종료 후 30일까지 계속된다. 선출 후 2년째 되는 연차회의에서 총회감독은 재임되거나, 그의 후임자가 선출되거나 임명되어 자격을 부여받는다. 관할 국제총회감독이 임명한 총회감독의 첫 임기는 총회감독이 임명받은 즉시 시작되어서 임명 당시의 교회 회기년도의 남은 기간과 그 후 2년의 교회 회기년도 동안 계속된다. 감독의 임기는 만 2년이 되는 해에 열리는 연차회의 폐회 후 30일에 끝난다. 상기 연차회의에서 총회감독은 투표에 의해 재임되거나, 후임자가 선출되거나 임명되어 자격을 부여받게 될 수

있다. 총회 사무국에 의해 고용된 장로목사는 누구도, 총회고문회와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허락없이 총회감독 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없다. (115조에 준하여) (205.11-205.13)

**209.** 어떠한 이유로든지 연차회의 사이에 공석이 생기면 전체 혹은 몇몇의 국제총회감독들이 총회고문회와 협의하여 공석을 채울 수 있다. 이 협의는 관할 국제총회감독이 제안하는 후보자들에 추가하여 후보자로 고려할 사람들의 이름을 총회고문회 전체의 의견을 모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239, 307.7)

**209.1.** 1단계 또는 2단계 총회의 총회감독 직은 관할 국제총회감독이 요청하면 그 이유로 공석으로 선언되어질 수 있다. 3단계 총회의 총회감독 직은 총회고문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공석임이 선언되어질 수 있다. (239, 321)

**209.2.** 현직 총회감독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할 국제총회감독은 총회고문회와의 협의하에 자격있는 장로목사를 임시 총회감독으로 지명할 수 있다. 총회감독의 자격 상실에 관한 질의는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에 의해 결정된다. (307.8)

**209.3.** 총회감독의 사임 또는 임기만료 시 유급 또는 무급의 비서, 감독보조자와 같은 총회사무국의 직원들, 총회 부속기관과 연계된 법인의 책임자들은 총회감독 직의 종료 일자에 맞추어 함께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들 중의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임직원은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서면 승인을 받아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새 감독의 임직 시행 전까지만 시무한다. (245.3)

**209.4.** 새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총회감독은 총회고문회의와 상의한 후,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승인으로 이전에 고용되었던 직원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 (245.3)

**210.** 총회감독의 역할은 총회의 목회자들과 개교회를 감독하고 영적 지도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일을 수행한다:

-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는 삶의 모범이 됨.
- 총회에 속한 성직자들에게 성경적 목회신학과 실천을 촉진함.
- 총회 내의 모든 회원에게 웨슬리안 성결신학과 실천을 촉진함.
- 총회에 전도와 교회 개척의 비전을 제시함.
- 총회에 속한 회중들이 건강한 유기적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211.** 총회감독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11.1.**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담당 총회 내에서 교회를 조직, 승인, 그리고 감독하는 일. (100, 538,15)

**211.2.**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담당 총회 내의 개교회 실행제직회를 만나서 영적인 문제나, 재정 및 목회자와 관

런된 사항의 상담에 응하고, 총회감독으로서 해야 할 유익한 권면과 도움을 주는 일.

**211.3.** 총회감독이 교회가 약하고 쇠퇴하는 상황에 있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회의 활력과 교회의 선교 효율성이 위협받는다 고 결정을 내리면 총회감독은 목회자 혹은 목회자와 교회 실행 제직회와 접촉해서 그 상황을 검토할 수 있다. 선교 효과성을 방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회자와 교회실행 제직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목회자 혹은 실행제직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 후에도, 총회감독의 관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총회감독은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들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1. 목회자 해임.
2. 교회실행제직회 해체.
3. 건강한 교회와 선교의 효율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조치들의 시행.

조직교회의 재산은 장정 106.5조에 의해 활동 중지 또는 장정 106.1조에 의거하여 해체로 선언되지 않는 한, 법인화 된 개교회의 통제 하에 있게 된다. 관할 국제총회감독에게 30일 내에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211.4.** 총회감독의 의견으로, 장정 126.1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있음이 선언된 개교회가 시행된 조치들을 마무리하고 정상적 상

황 속에서 목회를 재개할 준비가 된 경우, 그 개교회는 총회고문회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위기에서 벗어났음이 선언될 수 있다. 총회감독은 관할 국제총회감독에게 30일 안에 통보하여야 한다.

**211.5.** 장정 123-123.7조에 따라 개교회 실행제직회와 함께 정기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점검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일.

총회감독은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점검을 시행한 자료 기록을 매년 총회고문회와 관할 국제총회감독에게 제공한다.

**211.6.** 자신이 관할하는 총회 구역 내에 있는 나사렛성결교회의 모든 개척교회를 특별 관리하는 일.

**211.7.** 총회총무 직에 공석이 생길 때에는 총회고문회에 후임자를 추천하는 일. (219.1)

**211.8.** 총회재무 직에 공석이 생길 때에는 총회고문회에 후임자를 추천하는 일. (222.1)

**211.9.** 특성화된 기관사역을 통해 성결의 복음을 증진하고 확장하기 위해 총회의 기관목회디렉터를 임명하는 일. (240)

**211.10.** 교회실행제직회와 협의하여 개교회의 목회자로 장로목사 또는 인정 교역자(안수목사 과정)를 추천하는 일과, 장정 115조 규정을 따라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받아, 이 추천안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일. (129.2, 159.8, 225.16)

**211.11.** 개교회 실행제직회가 교회와 목회자 특별 관계점검을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점검을 위한 일정을 만드는 일. (125)

**211.12.** 장로목사를 담임목회자로 하고 있지 않은 개교회 실

행제직회에서 개교회 전도인이 되고자 하는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의 개교회 전도인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요청할 때 그것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일. (531.1, 531.3)

**211.13.** 목회자와 개교회 실행제직회에서 신청한 무급 부교역자들이나, 유급 기독교 교육, 아동부, 청년부, 장년부, 음악 목회자 혹은 디렉터,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교장 등과 같은 임명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일. 유급직원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의 기준은 개교회와 총회, 그리고 국제총회 차원의 의무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자발성과 개교회가 개교회, 총회, 국제총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교역자들의 자질을 검토하여 선출하는 일은 목회자의 책임이며, 총회감독은 다만 추천된 사람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권을 지닐 뿐이다. (129.27, 159-159.8)

**211.14.** 개교회가 기독교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 사역 실시를 요청할 때 총회고문회와 함께 이것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일. (151, 225.14, 517)

**211.15.** 총회고문회 서기와 함께 총회의 모든 법적인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일. (225.6)

**211.16.** 총회의 모든 유급직원을 총회고문회에 추천하고 감독하는 일. (245)

**211.17.** 장정 117조에 따라 목회자를 임명하는 일.

**211.18.** 만일 교회가 조직된 지 5년 미만이거나, 전년도 개교회 정기총회 때 투표한 수가 35명 미만이었거나, 총회로부터 정

기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나, 또는 교회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감독이 교회실행제직회 회원(청지기위원들, 이사들), 주일학교 및제자사역부장, 그리고 다른 교회 임원들(서기, 재무)을 임명할 수 있다. 총 실행제직회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117, 126)

**211.19.** 담당 총회 내의 교역자에 대한 고소 내용을 장정 606-606.3조에 의거하여 조사하게 하는 일.

**211.20.** 교역자의 적절치 못한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총회고문회와 협의하여 자격을 갖춘 성직자와 평신도를 회복팀으로 임명하고, 이들로 해당 교역자나 그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에게 적절한 시기에 회복을 위한 대응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총회감독은 총회의 준비된 계획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회복팀을 파견한다. (225.5, 540.1)

**211.21.** 총회감독은 장정 510.4조에 따라 종신 재직 중인 부흥사와 협의하여 자체 평가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한다.

**211.22.** 총회 지도자들과 함께 각각의 개교회가 국제총회, 총회 그리고 교육 기금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일.

**212.** 총회감독은 목회자가 공석 중인 교회에 교회실행제직회의 동의를 얻어 임시 교역자를 파송하여 다음 총회연차회의 때까지 직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교회실행제직회나 개교회 측에서 만족한

목회자로 신임을 받지 못할 때는 총회감독이 그 목회자의 파송을 취소할 수 있다. (129.5, 524, 531.6)

**212.1.** 총회감독은 교회실행제직회와 총회고문회의 동의를 얻어, 공식중인 목회지에 정규 교역자가 청빙될 수 있을 때까지 임시 목회자를 임명할 수 있다. 총회감독은 또한 필요할 경우 교회실행제직회와 협의하여 임시 목회자의 사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임시 목회자는 목회자의 모든 책임을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임시 목회자는 또한 그가 임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회가 속한 총회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교회의 총회연차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재직 중인 임시 목회자는 항상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권위에 따라야 한다. 또한 임시 목회자는 총회감독이 교회실행제직회와 협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526)

**213.** 총회감독은 목회자나 임시 목회자가 없는 총회 구역 내의 모든 교회에서 목회자의 모든 기능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514)

**213.1.** 총회감독은 개교회 연차회의 또는 특별연차회의를 사회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113.5)

**214.** 관할 국제총회감독이 어떤 사유로 총회연차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대리자를 임명하지 못했을 때 총회감독은 총회연차회의에서 별도 대책을 세울 때까지 총회연차회의를 개최하고 의장



직을 수행한다. (307.5)

**215.** 총회감독은 아래의 위원회의 공석을 충원할 수 있다.

1. 총회 재정위원회
2. 총회 감사위원회
3. 총회 목회부(혹은 목회심의부와 목회연구부)
4. 총회 전도부 혹은 총회 전도부장
5. 총회 교회재산관리부
6.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
7. 총회 소청부

8. 장정에 또는 총회연차회의 의결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 총회부서와 위원회들의 공석이 있을 때 이를 충원하는 일. (205.21, 205.25, 229.1, 232.1, 235, 236, 241, 610)

**215.1.** 장정이나 총회연차회의 결의가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총회부서와 위원회의 모든 위원장들과 서기들과 위원들을 임명하는 일.

**215.2.** 총회감독은 총회고문회와 상의하여, 다음 총회연차회의에 앞서 통상적인 위원회나 부서를 위한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203)

**216.** 직책상 총회고문회,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의 의장이 된다. (224.2, 230.1)

**216.1.** 직책상 총회감독은 자신이 시무하는 총회의 모든 상

임 부서와 선출된 위원회의 위원이다. (205.20-205.21, 237, 241, 810, 811)

**217.** 총회감독은 총회를 위하여 총회고문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위임되고 지시되지 않은 한 재정적인 채무를 지거나 재정을 계수하거나 총회기금을 지출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때에는 총회고문회의 의사록에 정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받은 내부 통제를 위해 명확하게 기록된 규정이 없이는, 어떤 총회감독이나 그 직계가족도 총회의 계좌나 자산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 직계가족은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또는 부모를 포함한다. (218, 222-223.2)

**218.** 총회감독의 모든 공식 활동은 총회연차회의에 의해 재심, 수정 대상이 되고, 소청의 대상이 된다.

**218.1.** 총회감독은 목회자들의 인사나 총회감독의 임무에 관계되는 여타 사안들에 관해 항상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국제총회감독회의 조언을 존중해야 한다.

## **제6절 총회총무**

**219.** 총회총무는 총회고문회에서 선출되며 다음 총회연차회의가 끝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1년에서 3년 동안 시무한다. (225.22)

**219.1.** 총회총무가 어떠한 이유로든 총회연차회의의 회기 사이

에 사임하면 총회감독의 추천을 받아 총회고문회가 그 후임자를 선출한다. (211.7)

**219.2.** 총회총무는 직책상 총회연차회의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201)

**220.** 총회총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20.1.** 총회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성실하게 보관하는 일.

**220.2.** 총회의 모든 통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

**220.3.** 모든 통계 자료를 국제총회총무에게 발송하여 공식 회의록으로 발간되기 전에 감사받게 하는 일. (326.6)

**220.4.** 모든 총회 관계 서류를 보관하며 후임자에게 즉시 이관하는 일.

**220.5.** 4년마다 모든 공식 회의록을 철하여 보존하는 일. (207.4)

**220.6.** 매 총회연차회의의 인쇄된 회의록 사본의 충분한 부수를 나사렛성결교회 국제총회 본부 임원들에게 배부되도록 국제총회 본부에 발송하는 일.

**220.7.** 철하여 보존된 이전 4년간의 모든 공식 회의록을 국제총회에 제출하는 일. (205.26, 207.3-207.4)

**220.8.** 총무 직책과 관계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일.

**220.9.** 임기 중 자신에게 전달되는 모든 일들을 해당 총회 위원회나 상임부서에 회부하는 일.

**221.** 총회총무는 총회연차회의에서 선출하는 수만큼의 협동총무를 둘 수 있다.

### **제7절 총회재무**

**222.** 총회고문회에 의해 선출된 총회재무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1년에서 3년 동안 시무한다. (225.21)

**222.1.** 총회재무가 어떠한 이유로든 총회연차회의 회기 사이에 사임할 경우 총회고문회는 총회감독의 추천을 받아 후임자를 선출한다. (211.8)

**222.2.** 총회재무는 직책상 총회연차회의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201)

**223.** 총회재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23.1.** 국제총회나 총회연차회의 혹은 총회고문회에서 지정되었거나, 또는 나사렛성결교회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수입금을 수납하고, 그 수익금을 총회연차회의 및 총회고문회의의 지시와 정책에 따라 지출하는 일.

**223.2.** 정확하게 재정 출납을 기록하고, 월별 보고서를 총회감독에게 제출하여 총회고문회에 보고되게 하고, 자신이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총회연차회의에 연례보고를 하는 일.

### **제8절 총회고문회**

**224.** 총회고문회는 당연직인 총회감독과 총회연차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3명의 시무 중인 안수목사와 3명의 평신도로 구성되며 다음 정기연차회의가 끝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시무한다. 매년 고문회의의 일부만을 선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임기의 차이를 두고 선출할 수 있다.

총회의 회원수가 5,000명 이상이 되면, 이 후 매 2,500명마다 각 1명의 안수목사와 1명의 평신도를 추가한다. 마지막에 남은 회원수가 2,500명의 과반수(1,250명) 이상이면 각 1명의 안수목사와 1명의 평신도를 추가 선출한다. (205.14)

**224.1.** 총회고문회에 공석이 생기면 나머지 총회고문회 위원들에 의해서 충원된다.

**224.2.** 총회감독은 직책상 총회고문회의 의장이 된다.

**224.3.** 총회고문회는 그 위원들 중에서 서기를 선출해야 하며, 그는 동 위원회의 모든 결정들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의 후임자에게 신속히 인계해야 한다.

**224.4.** 총회고문회의의 평신도 고문은 직책상 총회연차회의, 총회주일학교와제자사역부 연합대회, 총회국제선교연합회 연합대회, 총회청년연합회 연합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01, 224)

**225.** 총회고문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25.1.** 장정 114.1조의 규정에 따라서 통계 연도의 시작일과 마감일을 정하는 일.

**225.2.** 총회감독에게 총회의 개교회와 목회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상의하는 일. (115.6, 519)

**225.3.** 성직자회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3명 또는 그 이상의 재직 중인 안수목사들과 최소한 2명의 평신도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임명하는 일. (606-606.3)

**225.4.** 성직자회원에 대한 고소가 인정되어 기소된 경우 징계위원회를 선정하는 일. (606.5-606.6)

**225.5.** 교역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관여한 교역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회중들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충분히 공감할 만하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대응을 제공하는, 장정과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계획서를 만들고 해마다 이를 평가하는 것. (538.20, 539-539.13)

**225.6.** 민법이 허용하고 총회연차회의가 승인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는 일. 상기 규정에 의거, 법인이 설립되면 총회고문회는 총회의 사업 수행 목적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동산 및 사유 재산의 구매, 소유, 판매, 교환, 담보, 신용 대부, 저당, 임대, 재산 양도 등을 자체 결의에 의해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 서기 그리고 총회고문회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법인 설립이 되었건 아니 되었건 간에 부동산의 양도, 저당, 저당 해소, 계약 및 기타 총회고문회의 법적 서류를 집행하고 서명해야 한다. (206)

**225.7.** 총회고문회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과 세칙 혹은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문서를 통해 해당 법인이 나사렛 성결교회의 장정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이 규정에는 법인을 해산하거나 혹은 나사렛성결교회에서 이탈하고자

할 때, 관할 국제총회감독이 추천하면, 법인의 자산은 나사렛성결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총회 법인이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추천으로 국제총회감독 회의의 승인을 얻으면, 제안된 법인 정관은 검토와 보관을 위해 국제총회총무에게 보내져야 하며, 102.4조와 유사한 규정들이 해당 정관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225.6)

**225.8.** 민법이 이러한 법인 설립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나 지역에서는 총회연차회의가 총회의 사업 수행 목적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동산 및 사유 재산의 구매, 소유, 판매, 교환, 담보, 신용 대부, 저당, 임대, 재산 양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이사회로 총회고문회를 세울 수 있다. (102.6, 106.2, 225.6)

**225.9.** 개교회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나라나 지역에 있는 총회고문회는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에 적합한 법인화 절차를 위한 규범을 준비해서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인화 규범은 항상 102-102.5조의 규정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25.10.** 해당 총회의 모든 위원회, 부서 그리고 기관들을 감독하는 총회감독에게 자문자격으로 보좌하는 일.

**225.11.** 총회고문회는 총회감독의 건강한 감독 직과 강한 영적 생활을 격려하기 위하여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자문을 얻어 재직 기간 7년 중, 또는 매 7년 마다 안식 기간을 제공한다. 안식 기간 중에도 총회감독의 급여와 혜택은 모두 유지되어야 한다. 총회감독은 기간, 개인발전계획과 안식년 동안 필수적인 임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포함된 안식년 제안서를 총회고문회와 함께 작성한다.

**225.12.** 국제총회감독회에 총회본부 설립계획을 제출하는 일. 이러한 계획안은 실제 운영하기 전에 국제총회감독회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9)

**225.13.** 목회자로 사역하는 인정교역자에게 처음 자격을 부여하거나, 그 자격 갱신을 추천하는 일. (532.5)

**225.14.** 정규 기독교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을 운영하겠다는 개교회의 요청을 승인 혹은 불승인하는 일.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재량으로 총회 기독교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개교회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에 적용할 정책과 절차 그리고 방침을 총회고문회에 추천하고, 탁아소/학교들(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설립과 지원 그리고 감독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151, 211.14, 517)

**225.15.** 구제사역센터를 지구의 확립된 지침에 따라 해마다 승인하는 일. 총회에 의해 승인된 구제사역센터만 153.1조의 규정에 있는 “승인된 선교를 위한 특별헌금”의 기부목적에 부합된다.

**225.16.** 개교회 실행제직회가 그 교회의 정회원, 혹은 그 교회에서 유급 또는 무급 부교역자로 일하는 장로목사나 인정전도사(장로목사 과정)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요구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일. 그 결정은 총회감독의 조언을 얻어 행해진다. (115, 129.2, 159.8, 211.10)

**225.17.** 나사렛성결교회의 지도아래에 있지 않은 독립적인



교회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거나 독립적인 선교 또는 허락되지 않은 교회 활동, 또한 독립 교회 또는 기타 종교 단체나 교단에서 직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목회자로부터의 요청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일. 그러한 요청은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18.** 총회에 고용되어 있는 유급직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일. (245-245.1)

**225.19.** 회기 사이에 필요시 총회감독과 상의하여 운영 예산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재정위원회로 활동하고, 이것을 총회연차회의에 보고하는 일. (223.1)

**225.20.**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는 모든 총회재산 및 그 소유권을 나사렛성결교회 이외의 어떤 개인이나 법인체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보호, 방지하는 일. (102.4, 106.5, 206)

**225.21.**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1년에서 3년 동안 활동할 총회재무를 선출하는 일. (222)

**225.22.**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1년에서 3년 동안 활동할 총회총무를 선출하는 일. (219)

**225.23.** 장정 106.2조의 규정대로, 부동산 권리증서의 이양을 위해서, 개교회가 나사렛성결교회로부터 탈퇴하거나 탈퇴하려고 한 사실을 인증하는 일.

**225.24.** 장정 205.25조에 규정대로, 필요한 경우 다음 총회연차회의의 폐회 때까지 활동하는 총회 감사위원회를 선출하는 일. (205.25)

**225.25.** 소집된 회의 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을 요약하여

매년 총회에 보고하는 일.

**226.** 총회고문회는 총회연차회의 개최에 앞서 해당 총회 산하의 인정교역자, 기독교교육 교역자, 혹은 여성사역전도인이 타 총회로 진출을 원하면 회원권 이명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들의 이명은 진출을 받아들이는 총회고문회에 의해 허락되고 이명이 허락된 자들에게 총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명을 받는 총회연차회의는 총회목회자심의부나 총회목회부의 찬성 추천을 받아 총회고문회가 허락한 이명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 (205.8-205.9, 231.9-231.10, 508, 511, 537-537.2)

**226.1.** 총회고문회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총회연차회의 회원에게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815)

**227.** 총회고문회는 개교회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교회의 실행제직회와 협의하고 본인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공정한 청문회를 가진 후 총회감독의 승인을 받아 총회인정 여성사역전도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28.** 총회연차회의 회기 사이에 나사렛성결교회에 입회를 원하는 다른 교단의 안수목사 또는 인정교역자로부터 지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총회고문회가 인증서를 검토 후, 총회고문회의 찬성 추천에 의해서만 개교회 회원으로 가입이 허락된다. (520,

### **제9절 총회목회심의부**

**229.** 총회목회심의부는 5명 이상 재직 중인 안수목사로 구성되며, 부원 중 2명은 총회감독과 총회총무가 안수목사인 경우에 부원이 된다. 총회총무가 평신도일 경우 투표권이 없는 부원이 된다. 이들은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4년간 시무한다. 그러나 처음 구성 시 부원의 임기를 다르게 선출하여 매년 임기를 마치는 수만큼 4년 임기로 총회연차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205.15)

**229.1.** 총회연차회의 회기 사이에 총회목회심의부에 공석이 생길 때에는 총회감독이 지명할 수 있다. (215)

**230.** 목회심의부의 선출을 마치면 총회감독은 목회심의부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230.1.** 총회감독은 직책상 목회심의부의 부장으로 시무하게 된다. 그러나 총회감독의 요청에 따라 목회심의부는 다음 총회연차회의 폐회 시까지 시무할 수 있는 부장 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216)

**230.2.** 목회심의부는 자체 부원들 중에서 상임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총회의 비용으로 적절한 기록제도를 마련하게 하며 그 기록은 총회의 소유가 된다. 이 서기는 목회심의부의 모든 활동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목회심의부에 관련된 다른 기록과 함께 성실히 보

존하고, 후임자에게 즉각 이양할 수 있어야 한다.

**231.** 목회심의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31.1.** 총회연차회의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적절한 절차를 따라 장로목사 직, 사역목사 직과 인정교역자 직 대상자들을 신중히 검토, 평가하는 일.

**231.2.** 개교회 밖의 사역과 그 외에 장정에 나오는 다른 모든 특별한 사역에 대해 인정서를 받고자 하는 모든 평신도와 후보 교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신중히 검토, 평가하는 일.

**231.3.** 각 후보자의 구원의 개인적 체험, 성령 세례에 의한 완전성결의 개인적 체험, 성경에 대한 지식, 교리, 그리스도인의 일반규약 및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 그리고 교회 치리 체제에 대한 완전한 수용, 은혜의 증거, 은사, 지적, 도덕적, 영적 자격, 그리고 그가 소명을 느끼는 종류의 사역에 대한 일반적 적합성에 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하는 일.

**231.4.** 각 후보자의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후보자가 하고 있는 일이나 처신하는 방식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후보자가 지원한 사역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주의깊게 조사하는 일.

**231.5.** 임시 목회자로 임명된 개교회 전도인이 그의 임명 후에 개최되는 총회연차회의 이후에도 그 직을 계속하려고 하는 경우 그의 재임명에 관한 승인을 심사하는 일. (531.6)

**231.6.** 안수목사가 2년간 계속해서 총회연차회의에 보고하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이름을 교역자 명부에 계속 기재

할 것인지에 대해 총회연차회의에 제청하는 일.

**231.7.** 안수목사로서 적절한 허가없이 다른 교적을 갖게 되었다든가, 다른 교파나 단체의 사역에 가입하였든지, 또는 독립적인 사역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조사하고, 교역자 명부에 해당자의 이름을 남겨둘 것인지 여부를 총회연차회의에 제청하는 일. (112, 538.13)

**231.8.** 나이나 혹은 장애로 사역 활동을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 교역자가 요청하는 은퇴교역자 신분을 총회연차회의에 제청하는 일. (205.27, 536)

**231.9.** 총회고문회의의 허락을 받은 임시 전출자들을 포함하여 타 총회로 전출하는 성직자회원, 또는 각종 인정교역자들을 총회연차회의에 제청하는 일. (205.9, 575-537.2)

**231.10.** 총회고문회의의 허락을 받은 임시 전입자들을 포함하여 타 총회로부터 전입하는 교역자 인증서를 소지한 사람들, 성직자회원들, 그리고 각종 인정교역자들을 총회연차회의에 제청하는 일. (205.8, 537-537.2)

## **제10절 총회목회연구부**

**232.** 총회목회연구부는 총회연차회의에서 선출된 5명 또는 그 이상의 재직 중인 안수목사로 구성되며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4년간 시무한다. 그러나 처음 구성 시 부원의 임기를 다르게 선출하여 매년 임기를 마치는 수만큼 4년 임기로 총회연차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205.16)

**232.1.** 총회연차회의의 회기 사이에 목회연구부에 공석이 생길 때에는 총회감독이 지명할 수 있다. (215)

**233.** 목회연구부를 선출한 총회연차회의가 폐회하기 전에 총회감독 혹은 총회총무는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업무 분담을 결정한다.

**233.1.** 목회연구부는 부원 중에서 부장을 선출한다. 부원인 안수목사 중에서 서기를 선출하고, 서기는 다른 부원들과 함께 교역자 후보생들을 정해진 안수를 위한 연수과정에 따라서 평가하고 진급시키는 임무를 갖는다. 목회연구부는 교역자 후보자들의 기록을 영구 보존한다. (233.5, 529.1-529.3)

**233.2.** 부장은 목회연구부의 각 부원들에게 목회 준비를 위해 정해진 연수과정에 등록된 후보생들을 할당하여서 책임지고 감독할 임무를 준다. 이 배정은 상호협약에 따른 변경이 없다면 담당 부원의 재임 기간 동안 후보생들이 계속 등록되어 있다면 유지된다.

**233.3.** 부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목회연구부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매년 목회연구부의 사업을 감독한다. 부장의 유고시엔 서기가 임시로 그의 일을 대행한다.

**233.4.** 서기는 총회의 비용으로 적절한 후보생들의 학업 기록을 마련하고, 그 기록은 총회의 소유가 되며, 안수지침서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된다.

**233.5.** 목회연구부의 다른 부원들은 목회연구부의 모든 회의에 충실히 출석하고, 모든 후보생들을 (1) 격려, 상담, 지도를 통해

감독하고; (2) 어떻게 성직자들이 성적 비행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례나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목회 윤리에 관하여 교육한다. (233.1)

**233.6.** 목회연구부는 나사렛대학교 혹은 신학대학원에서 정해진 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후보생들을 격려하고 도우며 지도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총회감독과 각각의 교육과정자문위원회(COSAC)를 통해서 세계목회발전부와 협력해야 한다.

**234.** 목회연구부는 인정교역자나 다른 후보들이 각종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는 것을 돕기 위해 강좌나 세미나를 열고, 필요한 경우 대출할 수 있는 서적을 구비한 중앙 도서관을, 총회에서 기금이 승인되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할 수 있다.

**234.1.** 총회목회연구부 부장과 서기는 총회감독과 상의하여 정해진 목회자교육과정에 후보생들을 등록시킬 권한이 있다. (233.1-233.2, 529.1-529.3)

**234.2.** 목회연구부는 공인된 안수지침서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234.3.** 목회연구부는 총회연차회의 전에 목회심의부에서 각각의 후보생들에 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후보생의 교육과정의 진전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적시에 목회심의부에 제출해야 한다. 총회목회연구부는 여러 교육과정에 따른 배치, 진급과 졸업을 연차회의에 추천해야 한다. 이런 배치나 진급과 졸업의 절차는 세계목회발전부가 각각의 교육과정자문위원회(COSAC)를 통해 제

공하는 안수지침서와 일치해야 한다.

**234.4.** 총회목회연구부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공인된 나사렛 교육기관과 각각의 교육과정자문위원회(COSAC)를 통하여 세계목회발전부서와 협력하여, 총회감독의 전반적인 지도하에 총회산하의 안수 교역자와 다른 직분을 맡고 있는 교역자들에 대한 평생 교육을 장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평생교육에는 어떻게 성직자 회원들이 성적 비행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성직자회원의 삶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

#### **제11절 총회전도부 또는 전도부장**

**235.** 총회연차회의는 총회전도부 또는 전도부장을 선출할 수 있다. 피선된 자들은 다음 총회가 끝나고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시무한다. (205,19)

**235.1.** 총회전도부 혹은 전도부장은 총회감독과 협력하여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회와 집회를 개최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부흥사들이 인도하는 교회 부흥회의 필요를 강조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최우선적인 역할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 총회에 영향을 끼침으로 성결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촉진하고 강화시키는 길을 모색한다.

#### **제12절 총회교회재산관리부**

**236.** 총회교회재산관리부는 직책상 부원이 되는 총회감독과



두 명 이상의 교역자와 두 명 이상의 평신도로 구성된다. 부원은 총회연차회의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되며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한다. 총회연차회의의 과반수 찬성투표에 의해서 총회고문회가 총회교회재산관리부의 기능을 대행할 수도 있다.

**237.** 총회교회재산관리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37.1.** 총회고문회와 협조하여 총회산하의 교회와 관계된 건물 건축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일.

**237.2.** 개교회 재산의 권리 증서를 확인, 보존하는 일.

**237.3.** 개교회가 제출한 부동산 구입이나 매도 혹은 교회 건축 혹은 사택 건축 등에 관한 제안을 고려하고, 제안에 대해 조언을 하는 일. (103-104)

**237.4.** 총회감독과 함께 개교회가 제출한 교회 건물 건축 계획안과 부동산 구입이나 건물 건축을 위해 발생하는 채무에 관한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일. 총회교회재산관리부는 다음의 지침들에 따라서 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다.

- (1) 개교회가 채무 증가 승인을 요청하기 전 2년 동안 모든 재정 분담금을 완불했을 경우.
- (2) 전체 채무액이 이전 3년간 매년 모든 명목으로 모금된 평균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3) 건물 구조 변경이나 건축의 세부 설계안이 총회교회재산관리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 (4) 채무액과 지불 기한이 교회의 영적 생활을 위태롭게 하

지 않을 경우.

단,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지 않은 요청을 총회교회재산관리부가 승인해 줄 때는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103-104)

**237.5.** 총회연차회의에서 개교회 재산에 관하여 지시하는 그 외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일.

### **제13절 총회재정위원회**

**238.** 총회재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38.1.** 총회연차회의 전에 모여 모든 예산항목과 항목별 예산액을 개교회 별 분담금으로 구분하여 총회연차회의에 제청하는 일. (32.5)

**238.2.** 총회연차회의에서 총회재정에 관한 일에 지시하는 그 외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일. (205.21)

**238.3.** 모든 수용된 예산 항목들을 위한 예산 토대(budget base)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방법과 적용된 배분율을 총회회의록에 공표하는 일.

### **제14절 총회자문위원회**

**239.** 총회자문위원회는 총회고문회,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부장, 총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총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 총회총무, 총회재무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만나며, 총회감독이나 관할 국제총회감독, 또는 총회감독이나 관할

국제총회 감독의 지명자가 의장을 맡는다. (209)

### **제15절 총회 기관목회디렉터**

**240.** 총회 기관목회디렉터는 총회감독에 의해 임명된다. 기관목회디렉터는 총회감독과 협의하여 특성화된 기관목회를 통해 성결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촉진하고 강화시키는 길을 모색한다. 기관목회디렉터는 사업장, 기관이나 단체, 학교와 군부대를 통한 전도의 기회들을 촉진하고 후원해야 한다. 특별히 국내외적으로 흩어져 있는 주둔지에 배치되어 있는 나사렛성결교회 교인인 군인들과 군무원들을 위해 주둔지 인근에 있는 전담 목회자들을 지정하고 도와서, 그리스도를 위해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그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와의 유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16절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

**241.**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는 총회감독과 총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총회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과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부장을 실행위원으로 하며 최소한 3명의 추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추가위원들은 총회연차회의 혹은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연합대회에서 3년의 임기기간이 다르게 선출하여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한다.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를 처음 조직할 때는 3명의 추가위원들이 6명의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출되는데, 그 3명의 임기는

3년 임기 1명, 2년 임기 1명, 1년 임기 1명이 된다.

그러나 총회의 총 회원수가 5,000명을 초과할 경우 추가위원과 추천되는 후보자의 수는 두 배가 될 수 있다. 가능하면 10명의 위원 중 최소 4명은 평신도이어야 한다. 총회연차회의 회기 사이에 생긴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의 결원은 총회감독이 임명하여 충원할 수 있다. (215)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41.1.** 선출 이후 일주일 내에 부서 조직을 위한 회의를 가져 직책상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당연직 집행위원이 될 서기, 회계, 장년부디렉터, 아동부디렉터, 평신도평생교육디렉터를 선출하는 일. 필요한 경우 다른 총회 디렉터들을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가 선출할 수 있다.

**241.2.** 총회의 주일학교 및 제자사역에 대한 모든 관심사를 관장하는 일.

**241.3.** 아동사역협의회 회원들을 선출하는 일. 협의회 회장은 총회 아동부디렉터가 되며 그 협의회 회원들은 다음 영역의 디렉터들이 된다: 소년 소녀 캠프, 수련회, 방학성경학교(VBS), 성경퀴즈, 어린이교회, 영아반,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람들.

참조: 아동부 및 장년부 협의회에 관한 보충사항에 대해서는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핸드북"을 참조

**241.4.** 장년사역협의회회원들을 선출하는 일. 협의회 회장은 총회 장년부디렉터가 되며 그 협의회 회원들은 다음 영역의 디렉터들이 된다: 결혼 및 가정생활반, 노년반, 독신장년반, 평신도수양

회, 소그룹 성경연구반, 여성사역팀, 남성사역팀,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람들.

**241.5.**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연합대회를 준비하는 일.  
(241)

**241.6.** 총회감독과 협의하여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부장 및 집행위원들을 총회에서 선출할 것인지 아니면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연합대회에서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

**241.7.** 모든 개교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부장과 연령 그룹 디렉터들 및 청년회장으로 하여금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연합대회에 참석하고, 기회가 부여되는 대로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일.

**241.8.** 총회를 지역별로 나누어 조직하고 지역책임자들을 임명하여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의 지시에 협조함으로써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

**241.9.** 총회 혹은 지방회의 평신도 평생교육과정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일.

**241.10.** 총회 및 개교회 주일학교 및 제자사역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세계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를 돕는 일.

**241.11.**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의 연간 예산을 총회 재정위원회에 제청하는 일.

**241.12.** 총회 평신도수양회를 주관하는 일. 총회 장년부디렉터는 직책상 총회 평신도수양회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241.13.** 총회연차회의에 제출해야 할 부장의 보고서를 승인

하는 일.

**241.14.**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의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인 책임수행을 위해 총회감독 혹은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부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빈번히 회의를 가지는 일.

**242.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부장:** 총회연차회의 혹은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연합대회에서는 총회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이상의 후보자 중에서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부장을 선출하여 1년 또는 2년간 시무하도록 한다.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가 추천하고 총회감독이 승인할 경우 현직 부장은 “가”, “부”의 신임 투표에 의해 재선될 수 있다. 단, 총회회기 중간에 생긴 결원은 장정 215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될 수 있다. (241.6)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부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242.1.** 아래와 같이 총회의 주일학교 및 제자사역에 책임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

1. 등록과 출석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일.
2. 아동부, 장년부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일.
3. 청년 주일학교/성경공부/소그룹을 위해 나사렛국제청년회와 협력하는 일.

**242.2.** 총회연차회의와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의 직책상 일원이 되는 일.

**242.3.** 총회연차회의 회의록을 위해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

역부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 **제17절 총회 나사렛국제청년회**

**243.** 나사렛 청년사역은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후원을 받아 나사렛국제청년회 현장 및 총회감독, 총회고문회 그리고 총회연차회의의 권한 하에서 조직된다. 총회 나사렛국제청년회는 회원들과 개교회 청년회들로 구성된다.

**243.1.** 총회 나사렛국제청년회는 나사렛국제청년회 현장 및 나사렛성결교회 장정에 의거하여 총회 청년사역의 필요(참조 810.203)에 맞춰 채택된 총회 나사렛청년회 회칙(810.200-810.219)에 따라 조직한다.

### **제18절 총회 나사렛국제선교회**

**244.** 총회 나사렛국제선교회는 총회산하의 개교회 국제선교회로 구성되며 총회사역에서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를 대표한다. (811)

**244.1.** 총회 나사렛국제선교회는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 연합대회와 국제총회이사회의 세계선교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칙을 따른다. 본 회의는 총회감독, 총회고문회, 총회연차회의, 그리고 총회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의 지시를 받는다. (811)

**244.2.** 총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은 무보수로 시무하며 직책상 총회연차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201)

## 제19절 총회 유급직원

**245.** 총회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급직원이 필요하게 되면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에 총회감독이 적합한 사람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추천하고 총회고문회에서 선출한다. 그러한 직원의 고용 임기는 1년 이상은 안 되나 총회감독의 추천과 총회고문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갱신될 수 있다. (211.16)

**245.1.** 임기 만료 전에 그러한 자를 해고할 때는 총회감독의 제청과 총회고문회의 과반수 득표를 필요로 한다. (225.16)

**245.2.** 그러한 총회 유급직원의 임무와 역할은 총회감독에 의해 결정되고 감독받는다.

**245.3.** 총회감독이 사임하거나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국가 노동법에 의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유급직원의 임기는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서면으로 얻어 한사람 혹은 그 이상의 직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단, 신임 감독이 업무를 개시하는 날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9.3-209.4)

**245.4.** 총회총무나 총회재무와 같은 별도의 총회 선출직 및 임명직에 봉사하면서도 총회 유급직원이 될 수 있다. 보수를 받는 총회 임원은 총회고문회에 포함될 수 없다.

## 제20절 총회 해체

**246.** 국제총회감독회가 판단할 때 총회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국제총회감독회의 제안을 국제총회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공개 발표함으로써 해체된다.  
(200)

**246.1.** 총회가 공식적으로 해체되면 기존의 어떤 교회의 재산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고, 국제총회의 지시대로 나사렛성결교회의 일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나사렛성결교회 법인의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이전되어야 한다.

해체된 총회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이사들이나 재산권을 갖고 있던 법인은 나사렛성결교회 법인에서 임명한 대리인의 지시와 지도를 따라서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대리인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106.2, 106.5, 225.6)

## 제 3 장 국제총회 행정체제

### 제1절 국제총회의 기능 및 조직

**300.** 국제총회는 교회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교리 제정, 입법 그리고 선출권이 있는 나사렛성결교회의 최고 기관이다. (25-25.8)

**300.1.** 국제총회는 국제총회감독들이 사회한다. (25.5, 307.3)

**300.2.** 국제총회는 임원들을 선출하며 사무처리를 위해 조직화한다. (25.6)

**300.3. 회의법:** 나사렛성결교회에 속한 개교회, 총회, 국제총회, 각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진행은 현지의 적용되는 법과 법인 정관과 장정에 있는 교회 조직의 규정을 따르면서, 새롭게 개정된 로버트 회의법(Newly Revised Roberts Rules of Order: 최신판)의 의사진행 규칙에 맞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34)

### 제2절 국제총회 회원권

**301.** 국제총회는 다음의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3단계 총회로부터 선출된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의원, 단 총회감독은 재직 중인 안수교역자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며, 총회에서 선출된 나머지 재직 중인 안수교역자 및 평신도 대의원들, 명예 및 은퇴 국제총회감독, 국제총회감독,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 의장, 국제총회이사회 전체회의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국제 사역을 담당하는 임원 및 디렉터들, 그 반수는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그 나머지 반은 투표권을 갖지

않은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각 지구별 국제교육이사회(IBOE)의 산하 총장들,(그 수와 선출방식은 IBOE에 의해 결정된다.) 각 지구에서 재직하고 있는 국제총회이사회 파송 선교사들에 의해 선출된 각 지구당 1인의 선교사 대의원 1명. (만약 지구에서 선출되지 않는 경우 선교사 대의원들은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선출된다.)

**301.1.** 3단계 총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대의원을 국제총회에 파송할 자격이 있다. 정회원 수 처음 6,000명까지는 2명의 재직 중인 안수교역자와 2명의 평신도 대의원을, 그 다음 정회원 수 4,000명까지는 1명의 재직 중인 안수교역자와 1명의 평신도 대의원을, 그 다음 정회원 수 5,000명마다 1명의 재직 중인 안수교역자와 1명의 평신도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안수교역자”는 장로목사나 사역목사를 뜻한다. (다음의 도표를 참조)

정회원 수에 따른 대의원 수

0-6,000	4 (2 평신도, 2 교역자)
6,001-10,000	6 (3 평신도, 3 교역자)
10,001-15,000	8 (4 평신도, 4 교역자)
15,001-20,000	10 (5 평신도, 5 교역자)
20,001-25,000	12 (6 평신도, 6 교역자)
25,001-30,000	14 (7 평신도, 7 교역자)
30,001-35,000	16 (8 평신도, 8 교역자)
35,001-40,000	18 (9 평신도, 9 교역자)

(40,000명 이상인 때에는 매 5,000명마다 평신도 대의원 1명과 교역자 대의원 1명씩 추가한다.)

**301.2.** 2단계 총회는 1명씩의 재직 중인 안수교역자와 평신도 대의원을 국제총회에 파송할 자격이 있다. 재직 중인 안수교역자 대표는 총회감독이 되며, 동수의 후보 대의원을 선출한다.

**301.3.** 1단계 총회는 선거권이 없는 1명의 대의원을 국제총회에 보낼 수 있다. 해당 총회의 회원자격을 갖고 있는 총회감독이 대의원이 된다. 만약 총회감독이 총회회원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총회의 회원 중 대체 대의원을 선출한다.

**301.4.** 재직 중인 안수교역자의 대의원권은 국제총회에 그를 대표로 파송하기 위해 선출한 총회로부터 국제총회 개회 이전에 다른 총회 산하의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거나, 재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나사렛성결교회의 사역을 떠날 경우에는 취소된다. 총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은퇴자격이 부여된 교역자는 국제총회 대의원이 될 수 없다.

**301.5.** 평신도의 대의원권은 국제총회에 파송하기 위해 선출한 총회를 떠나 국제총회 개회 전에 자신의 개교회 회원권을 다른 총회산하의 교회로 옮길 때에는 취소된다.

### **제3절 국제총회 회기 및 장소**

**302.** 국제총회는 매 4년마다 6월 중에 국제총회감독들과 국제총회감독회에 의해 선출될 동수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국제총회 특별위원회가 결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한다. 국제총회 특별위원회는 비상시 국제총회의 회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02.1.** 국제총회감독회는 국제총회이사회의 실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제총회를 분산하여 동시에 개최하는 장소들을 선택하는 권한이 있다. 그러한 분산된 동시 총회장소에서 투표는 주 총회장소에서의 대의원 투표와 같이 공식적인 투표로 인정된다.

**302.2.** 국제총회는 경건하고 영감있는 예배로 시작된다. 회무처리와 영감있는 다양한 순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만든다. 국제총회는 폐회시기를 정한다. (25.3)

#### **제4절 국제총회의 특별회의**

**303.** 국제총회감독회나, 혹은 전체 총회감독 3분의 2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 국제총회 특별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그 시기와 장소는 국제총회감독들과 국제총회감독회가 선출한 특별위원들이 정한다.

**303.1.** 국제총회 특별회의로 모이게 될 경우에는 직전 국제총회에 파송되었던 대의원, 후보 대의원 또는 정식으로 피선된 유자격 후임자들이 국제총회 특별회의의 대의원과 후보 대의원이 된다.

#### **제5절 국제총회 준비위원회**

**304.** 국제총회총무와 국제총회재무 그리고 국제총회감독회가 임명한 3명의 위원들이 적어도 국제총회 개최 1년 전에 국제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304.1.** 국제총회 준비위원회는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준비하

며 국제총회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304.2.** 국제총회 준비위원회는 국제총회감독들과 함께 국제총회의 여러 순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국제총회 기구의 각각의 관심분야와 성찬 예식 그리고 예배 순서가 포함된다. 단 이 모든 순서는 국제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 **제6절 국제총회 업무**

**305.** 나사렛성결교회 장정 25.8조에 준한 국제총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305.1.** 안건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보고, 그리고 기타 문서상 나타난 결의, 추천, 시행법 등의 검토를 위해 그것들을 정식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총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입법위원회 혹은 지구 대의원 회의에 상정하는 일. 안건심의위원회는 단지 특정한 지구(들)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한해서 해당지구의 국제총회 대의원들의 모임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장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안들은 반드시 국제총회의 전체 의결을 거쳐야 한다.

**305.2.**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로 차기 국제총회가 끝나고 30일까지, 그리고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할 6명의 국제총회감독들을 선출하는 일.

(1) 먼저 현직 국제총회감독들을 대상으로 “가”, “부”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2) 현직 국제총회감독들에 대한 투표가 마무리된 후에 남은

공석의 국제총회감독들이 선출되어 채워질 때까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국제총회감독 직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처음 무기명 투표에서 표를 받을 경우, 그의 이름은 선거 투표명단에서 삭제하고 그 처음 무기명 표결의 보고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국제총회감독 직에 자격이 없으므로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이름이 삭제되었음.”

징계 조치로 교역자 인증서를 박탈당한 적이 있는 장로목사는 국제총회감독 직에 피선될 자격이 없다. 선거 당시 35세 미만이거나 68세 이상된 사람은 국제총회감독 직에 피선될 수 없다. (25.4, 307.16, 900)

**305.3.** 권고할만하다고 판단될 때 국제총회감독을 명예감독으로 선출하는 일. 단, 이 때 해당 국제총회감독은 신체에 장애가 생겼거나 은퇴가 승인되었어야 한다. 명예감독 직은 종신직으로 이해한다. (314.1)

**305.4.** 국제총회감독이 은퇴를 요구했거나, 국제총회의 판단으로 신체 장애, 혹은 다른 결격사유로 인해 국제총회감독 직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를 은퇴감독으로 선출한다. 단 해당 국제총회감독은 적어도 한번은 온전히 국제감독직의 임기를 채웠어야 한다. 국제총회감독이 국제총회와 국제총회 사이의 기간 중에 은퇴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국제총회감독회의 추천에 의해 국제총회이사회가 그 요청을 허락할 수 있다. (314.1)

**305.5.** 각 은퇴 국제총회감독의 적절한 은퇴 연금을 결정하

는 일.

**305.6.** 장정 332.1-333.4조의 규정에 의해 차기 국제총회가 끝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할 국제총회 이사들을 선출하는 일. (331, 901)

**305.7.** 차기 국제총회가 끝나고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시무하게 할 5명의 재직 중인 안수목사로 구성되는 국제총회소청부를 선출하는 일. 의장과 총무는 국제총회감독회에서 선출한다. (25.7, 611, 902)

**305.8.** 나사렛성결교회의 헌법을 준수하면서, 나사렛성결교회의 보편적인 유익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의를 위한 지혜를 따라서,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 그 밖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일. (25.8)

## **제7절 국제총회감독**

**306.** 국제총회감독의 역할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도적이고 확실한 비전을 가진 영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이다.

- 사명을 선포하는 일.
- 비전을 제시하는 일.
- 성직자를 안수하는 일.
- 신학적 일치를 보급하는 일.
- 전체 교회를 위해 전반적인 행정 감독을 하는 일.

**307.** 국제총회감독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307.1.** 국제총회가 채택한 법과 규례에 따라 나사렛성결교회를 총괄하는 일.

**307.2.** 직책상 국제총회 대의원으로 시무하는 일. (301)

**307.3.** 나사렛성결교회의 국제총회와 국제총회이사회를 사회하는 일. (300.1, 335.3)

**307.4.** 장로목사 혹은 사역목사 대상으로 정식 선출된 사람들에게 안수하거나 다른 장로목사들을 임명하여 안수하는 일을 대리하게 하는 일. (320, 538.5-538.6)

**307.5.** 국제총회감도회의 일정에 따라 각 총회를 사회하는 일. 국제총회감도는 안수받은 장로목사를 의장으로 시무하도록 임명할 수 있다. (202, 214)

**307.6.** 총회를 사회하는 국제총회감도는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와 함께 개 교회로부터 온 대의원들과 합의하여 목회자를 청빙하지 못한 개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임명한다. (218.1)

**307.7.** 국제총회감독들은 총회연차회의와 총회연차회의사이의 기간에 총회감독 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총회고문회와 협의한 후 총회감독을 임명할 수 있다. 208조에 준하여 해당 총회의 장로목사들을 포함한, 자격을 갖춘 모든 장로목사들은 고려의 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다. (209, 239)

**307.8.** 현직 총회감독이 일시적 자격상실 상태인 경우 관할 국제총회감독은 총회고문회와 협의를 거쳐 자격있는 장로목사를 임시 총회감독으로 시무할 수 있도록 지명할 수 있다. 일시적 자격상실 상태 여부는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에서 결정한다.

(209.2)

**307.9.** 관할 국제총회감독은 3단계 총회의 위기 선언을 국제총회감독회에 추천할 수 있다. (200.2, 322)

**307.10.** 관할 국제총회감독은 개교회의 연차회이나 특별연차회의를 사회할 수 있고, 혹은 자신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113.5)

**307.11.** 국제총회감독은 그 이사회의 준칙에 의거하여 규정되지 않는 한, 국제총회감독회 이외에 나사렛성결교회의 어느 이사회에서도 투표권을 가진 회원이 되지 못한다. (307.12)

**307.12.** 국제총회감독은 재임 기간에 국제총회 내의 다른 직분을 겸할 수 없다. (307.11)

**307.13.** 국제총회감독의 모든 공식 행위는 국제총회의 검토와 수정의 대상이 된다.

**307.14.** 한 명의 국제총회감독의 공식 행위는 국제총회감독회의 다른 국제총회감독들의 만장일치 가결에 의해서 무효화가 될 수 있다.

**307.15.** 한사람의 국제총회감독 직분의 자격은 국제총회감독회의 다른 국제총회감독들의 만장일치 가결과 국제총회이사회의 3분의 2 찬성투표에 의해서 공식으로 선포될 수 있다.

**307.16.** 국제총회에서 선출된 국제총회감독들은 차기 국제총회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한다. (305.2)

## 제8절 명예 및 은퇴 국제총회감독

**314.** 모든 명예 및 은퇴 국제총회감독들은 직책상 국제총회 대의원이 된다. (301)

**314.1.** 명예 및 은퇴 신분에 선출된 국제총회감독들은 국제총회감독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직 국제총회감독 중에서 와병, 입원, 및 기타 불가피한 긴급 사태로 인하여 어떤 과업 수행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국제총회감독회 결의로 은퇴 국제총회감독 중 누구에게나 임시 과업을 부여할 수 있다. (305.3-305.5, 900.1)

## 제9절 국제총회감독회

**315.** 국제총회감독들은 감독회를 구성하고 감독회의 각 회원에게 특별관할권을 분배하고 시무하게 한다.

**316. 결원:** 국제총회와 국제총회 사이의 기간에 국제총회감독회에 결원이 생기면 공석 보선을 위해 선거를 요청하는 여부는 국제총회감독회가 결정한다. 국제총회감독회의 결정을 접수하는 즉시 국제총회총무는 모든 국제총회이사회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선거가 요청되면 국제총회이사회원들은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해 나사렛성결교회 장로목사 중에서 차기 국제총회가 끝난 후 30일까지, 그리고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공석을 채우고 그 임무를 수행할 국제총회감독을 선출한다. (25.4, 305.2)

**316.1.** 국제총회총무는 투표 결과를 국제총회감독회에 보고하고 국제총회감독회는 그 보고를 공고한다.

**317.** 국제총회감독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317.1.** 국제 나사렛성결교회의 모든 총회와 기관, 사역을 위해서, 지도력과 신학에 적절한 관심을 두면서, 전체 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일.

**317.2.** 세계선교국장장과 해당 국가의 행정 디렉터 그리고/또는 지구장들과 협의하고 국제총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구들의 임무 변경을 건의하는 일.

**317.3.** 교회의 정책과 계획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위를 가지며, 그 밖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 나사렛성결교회의 국제총회이사회, 위원회 그리고 모든 이사회에 권면할 권한을 갖는 일.

국제총회감독회는 국제총회이사회 및 국제총회 위원회들에 대하여 권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제청할 수 있다. 국제총회감독회는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선교사로서의 임명을 위해 국제총회이사회에 추천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을 허락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을 갖는다.

**317.4.** 국제총회이사회의 실행위원회와 함께 국제총회총무와 국제총회재무의 선출을 위해 1명 이상의 후보를 국제총회이사회에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일.

**317.5.** 3분의 2이상의 표결에 의해 국제총회총무, 국제총회재무, 혹은 부서 디렉터 직의 공석을 공포하는 일.

**317.6.** 국제총회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국제총회소청부 부원의 공석을 충원하고 소청부 부장과 총무를 선출하는 일. (305.7, 612, 902)

**317.7.** 국제총회 혹은 국제총회이사회 사이의 기간에 어떤 특별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에 발생된 공석을 충원하는 일.

**317.8.** 국제교육이사회에 소속된 고등 교육기관의 고문들로 봉사할 국제총회감독들을 임명하는 일. (905)

**317.9.** 세계목회개발부와 함께 평신도 혹은 교역자로서 사역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목회연수과정을 편성하는 일. (529-530)

**317.10.** 세계선교의 생명선인 세계전도기금 계획을 수립하고 보존하며 증진시키는 일. 국제총회감독회와 국제총회이사회는 개교회의 세계전도기금 목표와 책임을 수립하는 권한을 갖는다. (32.5, 130, 335.7)

**317.11.** 요청에 따라 과거 장로목사나 사역목사에게 서면으로 인증서 회복을 승인하는 일. (539.11, 540.8, 540.12)

**318.** 국제총회감독회는 국제총회에 상고를 전제로 하여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법규를 해석하며 장정의 조례들의 의미와 효력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는다.

**319.** 국제총회감독회는 총회본부 건물 계획을 검토, 승인한다. 계획은 먼저 국제총회감독회의 서면 승인없이 착수해서는 안 된다. (225.12)

**320.** 국제총회감독회는 임의의 재량으로 이혼자에게 안수할 수 있다. (307.4, 533.3, 534.3)

**321.** 국제총회감독회는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건의 하에 2단계 총회나 1단계 총회의 어느 총회감독 직의 자격 상실을 사유와 함께 선언할 수 있다. 아울러 3단계 총회의 감독 직에 대해서도 총회고문회의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해 그 공석을 선언할 수 있다. (209.1, 239)

**322.** 국제총회감독회는 3단계 총회가 위기임을 선언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200.2, 307.9)

**323.** 매 국제총회가 끝난 후, 개정된 나사렛 교리장정은 국제총회감독회가 공식적 발표 날짜를 발표하면, 모든 언어로 시행되어야 한다.

**324.** 국제총회감독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을 따르고, 교회의 일반적인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나사렛성결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제10절 국제총회총무**

**325.** 국제총회이사회 세칙 규정대로 국제총회이사회에서 선출된 국제총회총무는 다음 국제총회가 끝나고 그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혹은 장정 317.5조의 규정에 따라 해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900.2)

**325.1.** 국제총회총무는 직책상 국제총회의 대의원이 된다.

(301)

**325.2.** 만일 국제총회이사회 사이의 기간에 국제총회총무 직에 공석이 생기면 317.4의 규정대로 추천을 받아 국제총회이사회에 의해서 충원된다. (335,21)

**325.3.** 국제총회총무는 국제총회감독회와 국제총회이사회에 순종하여야 한다.

**326.** 국제총회총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326.1.** 나사렛성결교회 법인과 국제총회이사회와 4년마다 열리는 국제총회의 당연직 총무로 섬기며, 국제총회와 국제총회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존하는 일. (331.2)

**326.2.** 나사렛성결교회의 통계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

**326.3.** 국제총회에 속한 서류를 보관하고 후임자에게 양도하는 일.

**326.4.** 국제총회소청부의 모든 기록과 결정 사항을 영구 보존용으로 철하여 보관하는 일. (614)

**326.5.** 신청이나 징계조치 혹은 사임으로 입수된 교역자들의 인증서를 서류철에 보관하였다가 그들을 받아들인 총회에서 설정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송달해 주는 일. (539-539.3, 539.8)

**326.6.** 총회 통계표를 감수하는 일. (220.3)

**326.7.** 총회 목회자 인증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일.

**326.8.** 국제총회의 상세 내용들을 대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일.

**326.9.** 최신판 장정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일.

**326.10.**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외의 어떠한 업무도 성실히 실천하는 일.

**327.** 국제총회총무는 전체 교회에 속한 법적 서류들을 보관해야 한다.

**327.1.** 국제총회총무는 본 교단이 세워지고 발전하는 과정과 관련있는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권한이 있으며 상기 자료와 기록을 보관하는 책임자이다.

**327.2.** 국제총회총무는 913조에 의거하여 역사적 장소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328.** 국제총회총무는 국제총회감독들과 협력하여 국제총회 개최 전에 회의진행 규정을 위한 “장정” 수정 초안을 포함하는 필요한 양식과 국제총회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제총회 경비에서 지출한다.

**328.1.** 국제총회총무는 국제총회가 선출하거나 국제총회 사이의 기간에 국제총회감독회가 임명하는 수만큼의 보조자를 둘 수 있다.

### **제11절 국제총회재무**

**329.** 국제총회이사회의 세칙대로 국제총회이사회에서 선출된 국제총회재무는 다음 국제총회가 끝나고 그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혹은 장정 317.5조의 규정에 따라 해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900.3)

**329.1.** 국제총회재무는 직책상 국제총회의 대의원이 된다. (301)

**329.2.** 국제총회재무는 국제총회 본부의 재정 사무 관할 중앙 감독, 국제총회감독회와 국제총회이사회에 순종해야 한다.

**330.** 국제총회재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330.1.** 나사렛성결교회의 전체 공익에 속하는 기금을 보관하는 일.

**330.2.** 아래의 기금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일. 세계행정국과 재정위원회, 세계교육 및 목회개발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 기타 국제총회이사회 산하의 기금들, 또는 각 국의 소속 기금, 국제총회감독회 기금, 국제총회 예비비, 국제총회 경비, 국제총회 교회후생금, 나사렛국제청년회 기금, 그리고 나사렛국제선교회 기금. (331.3)

**330.3.** 의무 이행 보증금을 국제총회이사회가 지정하는 금융 보험 기관에 신탁하는 일.

**330.4.** 관리자로서 관장하고 있는 국제총회 각 기관의 재정 상황을 해당 기관에 보고하는 일.

**330.5.** 국제총회이사회에 매년 투자 재정을 포함해서 나사렛성결교회의 전체 재정 현황을 보고하는 일. (335.12)

**330.6.** 적절한 보험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된 연금용

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과 이와 같은 보험 계약들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일.

## **제12절 국제총회이사회**

**331.** 나사렛성결교회는 미국 미주리 주의 법규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체이다. 국제총회이사회는 장정 332.1-333.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들 가운데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국제총회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다. 교단의 각 지구를 대표하여 국제총회이사회 이사로 피선되려면 그 사람은 그 지구의 거주민이며, 해당 지구의 개교회 회원이어야 한다. (305.6, 334)

**331.1.** 나사렛성결교회의 고용인이나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나사렛성결교회의 재정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고용인은 국제총회이사회원으로 피선되거나 국제총회이사 직을 지속할 수 없다. 또한 국제총회본부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는 총회나 혹은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도 자격이 없다.

**331.2.** 국제총회총무는 직책상 나사렛성결교회와 국제총회이사회의 총무가 된다.

**331.3.** 국제총회재무는 직책상 나사렛성결교회, 국제총회이사회 그리고 그 산하 각국의 재무가 된다. (330.2)

**332.** 국제총회이사회 이사 추천 절차는 다음과 같다.

**332.1.** 국제총회 대의원들로 선출된 후, 각 3단계 총회의 선출된 국제총회 대의원단은 함께 모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제총

회이사회 이사 후보를 선출하여야 한다. 각 3단계 총회는 두 명의 재직 안수목사와 두 명의 평신도의 이름을 제출한다. 후보를 추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선정할 때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구 자문협의회가 있는 지구에서는 추천된 이름을 먼저 국가위원회에 보내고, 국가위원회는 지구 자문협의회로 보내어, 각 지구 대의원 회의(caucus)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각 대상 후보 숫자를 3명씩으로 줄인다. 이 명단은 국제총회 각 지구대의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용지가 준비되도록 즉시 국제총회총무에게 보내져야 한다.

**332.2.** 국제총회 각 지구의 대의원들은 상기 후보자 명단 중에서 다음과 같이 국제총회에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정회원 100,000명 이하의 각 지구는 1명의 재직 중인 안수목사와 1명의 평신도를 추천한다.

정회원 100,000명을 초과, 200,000명까지의 각 지구는 2명의 재직 중인 안수목사, 1명의 총회감독과 1명의 목회자 혹은 부흥사, 그리고 2명의 평신도를 추천한다.

정회원 200,000명을 초과하는 지구에서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1명의 평신도와 1명의 재직중인 안수목사를 추가 추천한다.

정회원 200,000명을 초과하는 지구에서 1명의 재직 중인 안수목사는 목회자 또는 부흥사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총회감독이 되며, 또 다른 재직 중인 안수목사 한 사람은 어떤 직분이라도 상관 없다.

어떤 총회도 2명 이상의 국제총회이사를 둘 수 없고, 어떤 지구도 6명 이상의 국제총회이사들을 둘 수 없다. (단, 기관의 대표자

들이나 나사렛국제선교회와 나사렛국제청년회 위원의 경우는 제외함.) 어떤 한 총회의 후보자들 중 2명 이상이 그 지구의 다른 총회들의 후보자들보다 많은 표를 얻을 경우 다른 총회의 차순 최고 득표자들이 그 지구의 후보로 피선된다.

각 지구에서 각 부류별로 최고 득표를 한 평신도(들), 목회자나 부흥사 그리고(혹은) 총회감독이 과반수 투표에 의해 국제총회이사회 후보로 국제총회에 추천된다. 6명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큰 지구의 경우, 평신도와 재직 중인 안수목사 중에서 각각 차순 최고 득표자들을 추가 후보로 추천한다.

지구자문협의회가 대부분의 선출된 대의원들이 국제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총회가 시작되기 6개월 내에 우편 또는 전자 수단을 통해 지구 대의원회의 투표가 실행되어질 수 있다. 국제총회이사회 임원들을 국제총회에 우편 또는 전자로 추천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지구자문협의회에 의해서 제안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시행되기 전 승인을 얻기 위해 국제총회총무 사무실로 상신되어야 한다. (305.6, 901)

**332.3.** 국제교육이사회(IBOE)는 교육 기관들에서 2명의 재직 중인 안수목사와 2명의 평신도로 구성된 4명의 후보자를 국제총회에 추천해야 한다. 국제총회는 재직 중인 안수목사 1명과 평신도 1명으로 하는 두 명의 대표를 국제총회이사회를 위해 선출한다. (331.1)

**332.4.**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협의회는 새로 선출된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의장을 국제총회에 추천한다.

새로 선출된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의장이 국제총회이사회에 봉사할 수 없는 경우,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협의회는 당 협의회의 위원 1명을 추천한다. (343.4)

**332.5.**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는 협의회원 가운데서 1명을 국제총회에 추천한다. 국제총회는 국제총회이사회를 위해 1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344.3)

**332.6.** 지구 주일학교및제자사역 코디네이터들과 세계 주일 학교및제자사역 디렉터는 1명을 국제총회에 추천한다. 국제총회는 국제총회이사회를 대표할 1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333.** 국제총회이사회 이사 선거는 하기 규정과 같다.

**333.1.** 각 지구에서 추천된 각 후보자는 국제총회의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표에 의해 당선된다.

**333.2.** 국제교육이사회(IBOE)에 의해 추천된 후보 중, 국제총회는 2명을 선출하되 그 중 1명은 안수목사이고 1명은 평신도이어야 한다.

**333.3.** 국제총회는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43.4, 903)

**333.4.** 국제총회는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44.3, 904)

**333.5.** 각 지구의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SDMI) 코디네이터와 국제 SDMI 디렉터가 추천한 사람을 과반의 찬성으로 국제총회에서 선출한다. (332.6)

**334.** 국제총회이사회 이사들은 다음 국제총회가 끝나고 그 후 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이 구비될 때까지 시무한다. 국제총회이사회 이사의 4년 임기 중에 그가 대표로 선출된 지구에서 교회 회원권이나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혹은 목회자가 그 직무에서 사임한 때에, 그리고 평신도가 총회 인정교역자 자격을 신청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그의 이사 자격은 즉시 종료된다. 그로 인해 생긴 결원은 신속히 충원되어야 한다. (331)

**334.1.** 국제총회이사회 및 그 산하의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국제총회감독회의 추천에 의해 국제총회총무에게 2명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의 성명을 제출하면 그 공석이 생긴 지구의 각 총회고문회 위원들이 과반수의 우편 투표로 1명을 선출하되 각 2단계와 3단계 총회고문회는 1표를 투표할 수 있다. 교육 대표의 경우는 추천된 후보들을 국제총회이사회에 제출하여 과반수의 투표로 1명을 선출하게 한다. 나사렛국제청년회의 경우는 추천된 후보들을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협의회에 제출하여 과반수의 투표로 1명을 선출하도록 한다. 나사렛국제선교회의 경우,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 의 실행위원회에서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자문을 받고 국제총회감독회의 승인을 얻어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 의 과반수의 투표로 1명을 선출한다.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경우, 추천된 후보들을 국제총회이사회에 제출하여 과반수 투표로 1명을 선출하도록 한다. (332.3-332.6)

**335. 국제총회이사회의 임무:** 국제총회이사회는 나사렛성결

교회의 이사회로서 봉사해야 하며, 비교회적 정책과 계획에 관하여, 즉 예산, 회계 감사, 재산관리와 법적 문제들과 같은 의제에 관하여 기본권한을 갖는다. 국제총회이사회는 모든 국가와 지구, 그리고 총회와 개교회 차원의 위원회들로 하여금 웨슬리적 전통에 입각한 열방에 그리스도 닮은 제자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증진시키며, 또한 각 나라와 지구 내에 세계적 교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촉구하며 용기를 북돋운다. 국제총회이사회는 국제총회가 지시하는 바를 전제로 해서 나사렛성결교회 법인의 모든 부서의 재정 및 실질상의 사업들을 증진시킨다. 국제총회이사회는 부서 사이의 계획과 활동을 조정, 연결 및 통일시키므로 나사렛성결교회 법인의 모든 활동에서 일치된 정책의 확립을 도모한다. 국제총회이사회는 나사렛성결교회의 부서들과 나사렛성결교회와 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단체와 기관들의 재정 감사를 명령할 권리를 소유하며 또한 나사렛성결교회 법인과 여러 국의 사업 행정은 물론 본 교단과 관련 또는 그 일부인 모든 조직체 및 기관의 사업이나 행정사무를 관할한다. 이러한 산하의 모든 국 및 모든 조직체 그리고 기관들은 국제총회이사회에 충고와 건의 사항에 대해서 합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335.1.** 국제총회이사회는 나사렛성결교회 법인의 부동산과 동산을 매입, 소유, 유지, 관리, 담보대출, 매각, 이전, 기부할 권한이 있다. 혹은 판매되고, 고안되고, 유증되고, 기증되고 그외 다른 방법으로 나사렛성결교회에 합법적인 절차로 위임된 부동산과 동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지고, 위임된 것을 집행한다. 또한 나사렛

성결교회의 적법한 목적에 따라 대출하거나 대부해주는 권한을 갖는다.

**335.2.** 국제총회이사회는 장정 316조와 305.2조에 의거 하여 공식 중인 국제총회감독을 충원한다.

**335.3.** 국제총회이사회는 국제총회 개최 전 혹은 폐회 직후에 회집하여 자체 조직을 위해 법인 정관 및 세칙에 따라 임원 및 분과 위원 그리고 부서위원 등을 선출하여 4년간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국제총회감독들은 국제총회이사회의 회의를 사회한다.

**335.4. 회의:** 국제총회이사회는 국제총회가 폐회되고 그 다음 국제총회가 열리기까지 최소한 3회의 회의를 갖되 동 법인체의 세칙에 따라 지정된 시기와 장소에서 갖거나, 국제총회이사회 및 위원회들의 최대 편의를 위해 정규 혹은 특별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에 의한 시간, 날짜 및 장소에서 갖는다.

**335.5. 특별회의:** 국제총회이사회의 특별 회의는 국제총회감독회, 의장, 혹은 총무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335.6. 세계전도기금:** 모든 나사렛성결교회는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삼는다”는 국제적인 노력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세계전도기금은 교단 전체의 활동을 보조, 유지, 그리고 선교와 이와 관련된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전 교단에 의해 거출되어야 할 모든 부서 예산 및 기타 기금의 총합계이다. 국제총회를 위한 연간 예산은 기부 추정치에 근거하여, 국제총회 부서와 단체들의 요청과 국제총회재무의 재정보고서를 고려하여 정한다. 각 부



서 할당 예산과 함께 세계전도기금이 결정되려면 국제총회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채택하기에 앞서 국제총회감독회에 그것을 제출하여 검토, 제안 및 수정을 받아야 한다.

**335.7.** 국제총회감독회와 국제총회이사회는 세계전도기금 목표액을 세우고 개교회별로 그 책임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130, 317.10)

**335.8.** 국제총회이사회는 어떤 부서 혹은 기금에서 요청한 금액을 증감할 권한이 있다. 국제총회에서 채택한 재정 지원 항목은 국제총회이사회에 회부되고 국제총회이사회는 세계교회의 전체 재정 수입 범위 내에서 교회의 어떤 기관 혹은 시설의 연간 할당액을 현존하는 경제 여건에 맞게 비율적으로 조정할 권한을 갖는다.

**335.9.** 국제총회이사회는 자금 사정이 허락되고 바람직한 일로 생각될 때는 세계전도기금 중에서 미국 나사렛신학대학원(NTS)과 미국 나사렛성서대학(NBC)을 위한 예산 책정을 승인한다.

**335.10.** 국제총회이사회는 국제총회 사이의 기간에 국제총회감독들에 대한 급여 및 연관된 후생 혜택을 매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335.11. 보고서:** 국제총회이사회는 정기회의에서 산하 각 국으로부터 재정 보고를 포함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 상황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접수한다. 산하의 각 국은 또한 다음 1년간의 지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35.12.** 국제총회재무는 매년 국제총회이사회에 지난 1년간 본인이 관리인으로서 신탁 기금 및 투자금을 포함해서 모든 자금을

수입, 지출하였던 재정 상황에 대해 세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보고는 나사렛성결교회 산하 국들의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1년간의 세밀한 지출 예산안을 첨부한다. 국제총회재무는 국제총회이사회를 위해 자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330.5)

**335.13.** 국제총회이사회는 국제총회 개회 전 혹은 폐회 직후에 회집하여 국제총회이사회 세칙에 따라 국제총회총무와 국제총회재무를 선출하여 다음 국제총회가 끝나고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335.14.** 국제총회이사회는 미국 지구대표 이사들은 미국 연금복지위원회를 선출하는데, 미국의 각 지구를 대표하는 1명씩의 위원과 전체 대표자 1명을 그 구성원으로 선출한다. 선거 후보자들은 미국 연금복지위원회의 세칙에 규정된 대로 국제총회감독회에 의해 추천된다. (337)

**335.15.** 국제총회이사회는 매 국제총회가 끝난 후 나사렛출판사이사회를 선출하여 다음 국제총회가 끝나고 그들의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335.16.** 특정 지구나 국가에 대해서만 영향을 끼치는 국제총회이사회는 상정안은 국제총회이사회 내의 실행위원회와 국제총회감독회의 의결에 의해 해당 지구의 국제총회이사 모임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을 수 있다.

**335.17.** 국제총회이사회는 국제총회 혹은 국제총회이사회에 의해 공인받은 상임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특정 국(들) 혹은 부서

에 연관시켜 전체를 이루게 하고 그 업무와 책임 그리고 예산을 책정해 주어야 한다.

**335.18. 디렉터:** 국제총회이사회는 국제총회이사회 세칙과 국제총회이사회 정책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나사렛성결교회의 여러 부서의 각 디렉터들을 선출하여, 해임되지 않는 한 다음 국제총회가 끝나고 그들의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317.5)

**335.19.** 이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추천된다: 현직 디렉터가 있을 경우 추천위원회는 “가”, “부”의 투표로 그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다수를 추천할 수 있다. 이 직무에 유능한 후보자들의 발탁은 국제총회이사회 세칙대로 인선위원회에 의해서 행해진다. 이 위원회는 그들의 추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성과 함께 2명 이상의 이름을 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6명의 국제총회감독과 국제총회이사회 산하 각 국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름을 국제총회이사회에 제출하여 국제총회이사회 세칙에 명기된 대로 선출한다.

**335.20. 실행임원 급여:** 국제총회이사회는 책임 수준 및 공로를 인정해 주는 급여 구조에 대비하여 각 국이나 부서의 디렉터들을 포함하는 “업무 평가” 및 봉급 급여 안을 설정, 서류화해야 한다.

국제총회이사회는 디렉터들, 나사렛출판사사장 그리고 기타 국제총회이사회에 의해 인정받아 선출된 임원들의 급여를 매년 검토하고 승인한다.

**335.21.** 국제총회이사회는 국제총회 혹은 국제총회이사회

회의 사이의 기간에 335.13조와 335.18조에 수록된 직무 및 국제총회나 국제총회이사회 혹은 그들이 선출한 위원회들에 의해서 설치된 기타 실행 직무에 공석이 생길 경우 국제총회이사회 세칙과 317.4조의 규정대로 추천을 받아 충원한다.

**336. 은퇴:** 장정 335.13조와 335.18조에 수록된 모든 임원 및 기타 기관장,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에 고용된 기타 기관장들의 은퇴는 그들이 만 70세가 된 후에 열리는 국제총회이사회 회의 때에 행해진다. 공석이 생길 경우 장정의 절차에 따라 충원한다.

### 제13절 은급계획

**337.** 각 교회와 관계된 은급계획의 신탁 책임을 갖는 은급위원회 혹은 동등 권위의 위원회를 둔다. 은급 계획은 국제총회이사회에 의해 인정받아 필요에 따라 조직, 개체 총회, 여러 총회, 국가, 개체 지구, 혹은 여러 지구의 수준에서 적용한다. (335.14)

**337.1.** 국제총회이사회는 자체가 인정한 세계 전역의 은급 계획에 관한 지침을 설정, 유지한다. 그 지침은 어떤 은급 계획안에 대한 국제총회이사회의 인준을 위한 기반이 된다. (32.5)

**337.2.** 모든 은급 계획은 국제은급복지국을 통해 소정 양식 및 형식에 따라 국제총회이사회에 연례 보고를 한다. (32.5)

### 제14절 나사렛성결교회 법인의 산하기관 법인체

**338.** 나사렛성결교회 법인의 산하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

에 의거하여 조직되고 운영되어진다.

a. 단일 소유주 (Sole Member)

I. 미국 내에서 설립된 모든 산하기관의 단일 소유주는 “나사렛성결교회 법인”이어야 한다.

b. 이사회 회원

I. 구성: 각 조직은 그 필요와 목적에 따라 몇 명의 이사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다. 최소한 다음의 인원은 확보한다:

1. 이사 중 한 명은 국제총회감독회에서 당연직으로 맡는다.
2. 국제총회이사회에서 임명한 교단의 중진이 또 한 자리를 맡는다.

II. 모든 이사들은 국제총회감독회가, 해당 법인의 다른 이사들과 협의하여 추천한다.

III. 모든 이사들은 단일 소유주의 역할을 대리하는 국제총회감독회에서 선출된다. 선출된 이사들은 다음 이사들이 선출되어 자격을 얻을 때까지 그 업무를 지속한다.

IV. 종료: 이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단일 소유주의 역할을 대리하는 국제총회감독회가 이를 위해 특별한 회의를 가지고 투표한 때에는 언제든지 그 직무가 종료될 수 있다.

c. 직원과 임원: 직원의 숫자와 직책은 각 법인의 세척에 따라 각 법인에서 결정한다.

d. 법인의 회의

I. 단일 소유주의 회의는 단일 소유주(나사렛성결교회 법

인)가 그 필요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 가질 수 있다.

II. 이사회들의 모임은 각 법인의 재량에 의해 가질 수 있다.

e. **법인의 임원:** 산하 법인의 세칙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f. **회계연도:** 모든 산하 법인은 나사렛성결교회 법인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를 채택한다.

g.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그에 속한 모든 자산은 단일 소유주에게 이관한다.

h. 법인의 정관과 세칙

I. 산하 법인은 단일 소유주의 국제총회이사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설립된다. 법인의 정관과 세칙은 단일 소유주의 국제총회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II. 법인의 이사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단일 소유주의 국제총회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절 나사렛출판사

**339.** 나사렛출판사의 사명은 나사렛성결교회와 나사렛성결교회의 사명을 공유하는 기독교 시장의 유익을 위해 지적재산의 출판 혹은 생산, 판매, 소유, 판권허가와 관리를 시행한다. 나사렛성결교회와 제휴기관에 의해 활용되는 미디어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나사렛성결교회는 나사렛출판사가 이러한 주무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한다.

## 제16절 국제총회기독교실천위원회

**340.** 국제총회 이후에 국제총회감독회는 국제총회기독교실천 위원회를 임명하고 그 중 한명은 국제총회총무로서 위원회의 활동을 국제총회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국제총회기독교실천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340.1.** 현 도덕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술, 담배, 마약 및 도박에 대한 건설적인 정보를 교회 교리와 조화있게 개발하도록 하는 일과 교단적인 대화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일.

**340.2.** 결혼의 신성함과 기독교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아울러 이혼의 문제점과 유해함을 강조하는 일.

특별히 결혼이란 전 생애에 걸친 언약으로서 죽음 이외의 것으로는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는 성경의 원칙을 부각시킨다.

**340.3.** 시민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일하는 단체의 지도자로서 활약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

**340.4.**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며, 비밀서약에 의한 비밀 결사 단체 가입, 기독교인의 윤리의식을 저하시키는 각종 오락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세속적인 활동을 경계하는 일. (29.1)

**340.5.** 각 총회로 하여금 기독교실천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조력하고 격려하며 각 총회 분과위원회에 현 시대의 도덕 문제 등에 관한 지식과 자료를 공급함으로써 각 교회에 그것이 보급되게 하는 일.

**340.6.** 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의적인 문제점들을 관측하고 성경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일.

### **제17절 소명받은 부흥사복지위원회**

**341.** 소명받은 부흥사들의 복지위원회는 직책상 위원장인 부흥코디네이터와 4명의 종신 부흥사들, 그리고 한 명의 목회자로 구성된다. 미국/캐나다 지구장은 부흥코디네이터의 자문을 얻어, 동 위원회의 후보위원들의 명단을 국제총회감독회에 제출함으로써 동의와 지명을 구한다. 동 위원회나 또는 지명된 자는 소속 총회에서 전업 부흥사로 위임된 부흥사들이 종신 부흥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면담한다. 아울러 동 위원회는 나사렛 교단 내의 순회 부흥사들의 상태를 조사하며 부흥사와 전도자들을 국제총회이사회 산하의 적절한 부서에 천거하는 일을 한다. 공석들은 부흥코디네이터의 자문을 얻어, 미국/캐나다 지구장으로부터 받은 추천을 근거로 국제총회감독회로부터 임명을 받아 채워진다. (317.7, 510.3)

### **제18절 국제교육과정자문위원회**

**342.** 국제총회가 끝난 후, 세계목회발전부장은 지구교육코디네이터의 자문을 얻어 국제교육과정자문위원회(ICOSAC)에서 일할 후보자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동 위원회를 위한 후보자들로는 목회자 대표, 행정 대표, 교육 대표와 평신도 대표들을 포함할 수 있다. ICOSAC의 구성은 본질적으로 범세계적 교회를 대표해야만 한다. 국제총회감독회는 4년 동안의 임기로 봉사하도록 국제교육과정자문위원들을 임명한다.

국제교육과정자문위원회는 2년에 한 번 이상 모임을 가지며, 장



소는 세계 목회발전부장에 의해 결정된다. (529.1-529.2, 529.5)

### **제19절 나사렛국제청년회**

**343.** 나사렛 청년사역은 나사렛국제청년회 헌장(NYI Charter)과 나사렛국제청년회 관할 국제총회감독 및 국제총회이사회의 권한 하에 나사렛국제청년회의 후원을 받아 세계적으로 조직된다.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는 세계 전역의 나사렛 개교회 및 총회의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원들로 구성된다.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는 국제총회가 승인한 나사렛국제청년회 헌장 및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칙(NYI Global Ministry Plan)에 따라 운영된다.

**343.1.** 4년마다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연합대회가 열리는데, 그것은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협의회와 상의하여 국제총회감독회가 정한 시기에 모인다. 4년마다 열리는 대회는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칙에서 지정된 회원들로 구성된다. (810).

**343.2.** 연합대회는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협의회 의장을 선출한다. 부의장은 국제총회 동안이나 이후에 열리는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협의회에서 선출한다. 그들은 직책상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협의회 회원이 되고 무보수로 봉사한다.

**343.3.**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칙이 지정한 각 지구별 대표들로 구성된다.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칙은 직책상 협의회의 일원이 된다. 협의회는 세계선교위원회를 통한 국제총회이사회와 나사렛국제청년회 관할 감독에게 책임이 있으며, 나사렛국제청년회 헌장 및 나사렛국제청

년회 회칙의 권위 하에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협의회는 다음 국제총회가 종료되고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추기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810)

**343.4.** 나사렛국제청년회는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협의회가 추천하고 국제총회가 선출한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협의회 의장을 나사렛성결교회 국제총회이사회에 파송한다. (332.4, 333.3)

**343.5.**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협의회 의장은 그(녀)의 임기 마지막 때에 나사렛국제청년회를 대표해 국제총회에 참석을 한다. (301).

## **제20절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

**344.**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는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나사렛국제선교회디렉터, 그리고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칙에 따라 선출된 회원들로 구성된다.

**344.1.** 세계협의회는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칙에 의해서 운영된다. 세계협의회는 국제총회이사회에 세계선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811)

**344.2.** 나사렛국제선교회 디렉터의 추천과 선출: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실행위원회와 관할 국제총회감독은 나사렛국제선교회 디렉터의 직무를 수행할 자질을 갖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최대 두 명의 후보의 이름을 국제총회이사회에 세계선교위원회에 제출한다.

국제총회이사회에 세계선교위원회는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함

게 추천된 후보들을 검토하고 국제총회감독회가 선출하도록 재가한다.

국제총회감독회는 국제총회이사회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나사렛국제선교회 디렉터를 투표로 선출한다.

나사렛국제선교회 디렉터는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 회원이 되고 세계선교국의 임원이 된다.

**344.3.**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는 국제총회이사회에 1명의 대의원을 파송하는데 이 대의원은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 회원의 후보 추천에 의해 국제총회에서 선출된다. (332.5, 333.4)

**344.4.**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는 주도 하에 매 4년마다 국제총회 직전에 연합대회를 갖는다. 이 대회에서 회칙에 따라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 회원을 선출한다. 본 대회에서는 또한 세계회장을 선출하며 그는 직책상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 회원이 된다. (811)

## 제21절 국가위원회(National Boards)

**345.** 국제총회감독회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서 교회의 선교와 전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국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가위원회는 소속된 지구의 지구장과 해당 국가의 3단계 총회 고문회(들)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이 있다면, 그 나라의 교회를 대표하여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해당 국가의 총회들과 협의하며 소속된 지구의 전략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위원회는 지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지구의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협의하여, 해

당 국가에서 나사렛성결교회의 법적 권위 기구로 등록될 수 있다. 선교를 수행하는데,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에 있어서 더 이상 국가 위원회가 필요 없을 경우, 국제총회감독회는 국가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각 국가위원회의 회원과 조직체계는 국제총회감독회가 승인한 방식을 따라야 된다.

그러한 국가위원회의 조직 혹은 법인에 관한 조항의 사본은 국제총회총무에 의해 즉시 보관되어져야 한다.

국제총회총무는 모든 변경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이 조항들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교회의 선교와 전략을 위해서 국가 위원회에서 처리되어지는 업무는 지구장과 협의되어야 한다. 국가 위원회의 연례회의 및 특별회의의 회의록은 국제총회이사회의 검토와 논평을 위해서 국제총회총무에게 제출되기 전에 지구자문협의회에 의해 검토된다. (32.5)

## 제22절 지구

**346. 기원과 목적:** 교회의 범세계적인 성장에 따라 몇 개의 총회조직을 지리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구’라는 명칭으로 집단화하였다. 나사렛교단의 국제총회의 제재를 받는 일단의 총회들로서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동질감을 갖는 경우 국제총회이사회의 추천과 국제총회감독회의 결의에 의해 동일한 행정 기구로 편성될 수 있다.

**346.1. 지구 정책:** 조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총

회감독회는 지구자문협회의회의 동의하에 지구의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다. 그 같은 구조 조정은 세부적인 필요성과 여러 가지의 잠재적인 문제점들, 현실적인 상황들, 그리고 해당 지구의 다양한 문화와 교육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제총회감독회는 교회의 신조, 성결교리와 성결한 삶의 방식의 고수, 그리고 포괄적인 선교 봉사 활동을 후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담고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46.2. 임무:** 지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척 지역이나 총회, 그리고 교육기관들을 통해 나사렛성결 교회의 임무를 증진시키는 일.
2. 지구 내의 각 총회 및 교육기관의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기도와 영감을 나누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구의 인식을 키우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따른 교재와 전략들을 개발하는 일.
3. 국제총회 및 연합대회에서 국제총회이사회에 피선될 후보들을 추천하는 일.
4. 장정의 규정대로 학교 및 대학, 그리고 다른 교육기관들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일.
5. 해당 지구로부터 정책에 따라 선교사를 선발하고 점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일. (346.3)
6. 지구자문협회의회의 모임과 지구컨퍼런스를 계획하는 일.
7. 장정 345조와 346.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위원회들

의 활동을 원활하게 돕는 일.

**346.3. 지구자문협의회:** 각 지구별로 지구자문협의회를 둘 수 있는데, 그 역할은 해당 지구에 대한 발전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지구장을 보조하며 국가위원회의 회의록을 국제총회총무 사무실로 보내기에 앞서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하여 보내며, 세계선교국에 추천할 선교사 후보들을 면접하며, 지구장과 필드전략코디네이터들과 사역코디네이터들의 보고를 접수한다.

지구자문협의회의 구성은 각 지구의 필요와 발전과 요구에 따라 지구별로 변동이 가능하다. 지구장은 지구자문협의회의 구성을 세계선교국장관과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승인을 받기 위해 추천한다. 직책상 회원은 지구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세계선교국장 그리고 의장으로 시무하는 지구장이 된다. 세계선교국 임원은 지구자문협의회를 위한 피선 후보자가 될 수 없으나 조력자로 봉사할 수는 있다. 지구자문협의회원들은 국제총회 지구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지구자문협의회는 국제총회 사이에 충원될 수 있다.

지구장은 지구자문협의회와 상의하여 필요에 따라 지구전도대회나 지구컨퍼런스를 소집할 수 있다. (32.5)

**346.4. 지구장:** 각 지구마다 국제총회감독회가 세계선교국장관의 동의와 국제총회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 지구장을 돕으로써 나사렛성결교회의 정책과 관습에 일치하는 활동을 통해 산하 총회와 개교회, 그리고 각 기관들이 나사렛교단의 선교 정책과 그 활동 방안들을 따르도록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구장의 재선에 앞서, 세계선교국장관과 관할 국제총회감독에 의해 지구자문협의회

의 자문을 얻어 재심이 행해져야 한다. 긍정적 평가는 재선을 위한 추천의 보증이 된다.

각 지구장들은 행정적으로 세계선교국과 국제총회이사회에 속하며, 관할권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총회감독회의 지시를 따른다.

**346.5. 필드전략코디네이터(FSC):**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구장은 그 지구에 필드 조직을 만들 수 있으며, 세계 선교정책과 장정 절차에 따라 필드전략코디네이터들의 임명을 세계선교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필드전략코디네이터는 지구장의 지시에 따른다.


**346.6. 지구 교육과정자문위원회:** 지구 교육과정자문위원회(RCOSAC)는 직책상 위원장이 될 지구 교육코디네이터와 지구장의 자문으로 선택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지구 교육과정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그 지구를 위한 목회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목회자, 행정가, 교육자, 평신도)

**346.7. 지구 교육과정자문위원회의 임무:** 지구 교육과정자문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그 지구내 안수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적 표준이 되는 ‘안수 지침서(Soucebook on ordination)’를 개발하는 일. 지구 안수지침서는 장정에 명시되어 있고 안수를 위한 발전 표준에 관한 국제 지침서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는 최소한의 표준을 반영해야만 한다.

- (2) 그 지구 목회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유효한 절차를 발전시키며 그 프로그램이 지구 교육과정자문위원회와 국제 교육과정자문위원회(ICOSAC)의 최소한의 표준에 맞는가를 검증하는 일.
- (3) 이 표준들을 목회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구 교육 기관들과 협력하는 일
- (4) 지구 지침서와 국제 지침서 표준의 준수를 위해 목회 교육 프로그램 제출물을 검토하는 일.
- (5) 지구 목회교육프로그램의 채택과 승인을 위해 국제 교육과정자문위원회에 동 프로그램을 상신하는 일.





## 제 5 부

# 고등 교육

제 1 장 교회와 신학교/대학교

제 2 장 세계 나사렛교육컨소시엄

제 3 장 국제교육이사회



## 제 1 장 교회와 신학교/대학교

400. 나사렛성결교회는 시작부터 고등교육에 헌신해 왔다. 교회는 대학을 위해 학생, 행정과 교육인력, 그리고 재정과 영적 후원을 제공한다. 대학은 교회의 청년들과 많은 장년들을 교육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종들을 세계로 내보낸다. 나사렛성결교회 대학은 개교회 회중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지체이고, 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나사렛성결교회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믿으며, 사람이 구원받고, 영적, 지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딤후 2:21)이 되게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개교회의 주요 활동과 전통적인 모습, 즉 복음전도, 신앙교육, 구제사역, 그리고 예배들은 교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개교회 차원의 청장년 기독교교육은 인간 성장의 여러 단계에서 복음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개교회들은 교회의 목적과 기능 안에 유아시기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정한 혹은 모든 단계에 맞는 탁아소/학교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제총회 차원에서는 고등교육과 사역준비 과정을 위한 교육기관을 제공해온 역사적인 관행을 유지한다. 그 기관들은 어느 곳에서 운영되든지 국제총회에서 제정되고 장정에 나타나 있는 나사렛성결교

회의 신학과 철학의 체계 안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400.1. 교육적 사명 선언:** 나사렛성결교회의 교육은 웨슬러주의와 성결운동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확신에 근거를 두고, 교단의 공포된 사명에 따라 책임을 갖고, 받아들여지고, 양육되고, 한결 같고 일관된 기독교적 이해로 사회생활과 개인의 삶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을 찾는 자들을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더하여서 그러한 고등교육기관들은 졸업생들을 여러 직종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되게 하는 커리큘럼과 양질의 교육과 그리고 학문적 성취의 증거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400.2. 학위수여 기관의 설립**은 국제교육이사회의 제청으로 국제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교육기관의 지위를 향상, 또는 개선하는 일은 국제총회이사회가 국제교육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인준할 수 있다. 어떤 개교회나 교회들의 연합체 또는 개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들의 그룹도 국제교육이사회의 추천에 의거하지 않는 한 대학 수준의 기관이나 교역자 양성의 기관들을 설립 또는 후원할 수 없다.

## 제 2 장 세계 나사렛교육컨소시엄

401. 나사렛성결교회의 국제교육이사회에 속한 학교의 총장, 교장, 원장, 혹은 책임자(혹은 특정한 대표)와 지구의 교육코디네이터, 교육커미셔너, 세계선교국장, 그리고 국제교육이사회 관할 국제총회감독으로 구성된 세계 나사렛교육컨소시엄을 둔다.

## 제 3 장 국제교육이사회

402. 국제교육이사회는 나사렛성결교회의 교육기관들을 위한 세계교회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 이 부서는 12명의 부원으로 구성된다. 국제총회이사회에서 선출한 8명과 다음의 직책상 위원들로 구성된다: 2명의 국제총회이사회 교육대표, 세계선교국장, 세계목회발전부장, 그리고 교육커미셔너이다. 교육커미셔너, 세계선교국장, 2명의 국제총회이사회 교육위원 그리고 국제교육이사회와 세계선교국 관할 국제총회감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국제총회감독회의 승인을 받은 8명의 후보자를 국제총회이사회에 추천하여 선출하게 한다.

교회가 있는 모든 지역의 포괄적인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명자를 추천한다:

1명의 지구 교육코디네이터, 3명의 평신도, 교육코디네이터가 지명되지 않은 세계 선교지구에 있는 2명의 안수목사, 2명의 전체 교회 회원을 대표하는 후보자. 어떠한 세계 선교지구에서도 각 지

구마다 대표자를 갖게 될 때까지 IBOE위원으로 2인 이상이 선출될 수 없다.

후보지명과 선출의 전체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다양한 문화적 관점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제교육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402.1.** 교육기관들이 해당 교육기관의 현장이나 법인 정관을 따르고, 나사렛성결교회 장정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법과 규정을 갖고 있는 이사회의 합법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일.

**402.2.** 나사렛 교육기관들의 이사회 이사들은 나사렛성결교회에 의무를 다하는 정회원들임을 확실하게 하는 일. 그들은 교회 장정에 명시된 완전성결교리와 나사렛성결교회의 관습을 포함하여 믿음의 신조에 완전히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가능한 한 고등교육 이사회는 같은 수의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되도록 한다.

**402.3.** 선물 및 유산 그리고 기증 등을 통해 교육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매년 국제총회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정책에 따라 각 교육기관에 이런 자금의 할당을 천거하는 일.

교육기관의 교육표준, 조직 계획, 그리고 재무 보고서를 국제교육이사회에 제출하지 않는 교육기관은 계속 정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402.4.** 국제교육이사회 산하 교육기관들로부터 제공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교육커미셔너로부터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 (1) 연간 통계 보고 (2) 연간 감사 보고 (3) 현재 회계 연도 예산

**402.5.** 국제교육이사회의 역할이 교육기관들의 자문을 하는

것이지만, 국제총회감독회와 국제총회이사회에 후원과 필요를 알리고 제청하는 일.

**402.6.** 교육기관과 전체 교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사렛 교육기관과 관련되는 일들로 교회를 섬기는 일.

**402.7.** 국제총회이사회에 적절한 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고 추천하는 일.

**403.** 모든 교육기관의 법과 규정에는 기관의 해산과 재산 처분에 관한 조항에 반드시 나사렛성결교회가 그 재산을 받아서 교회의 교육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 6 부

# 사역과 기독교 봉사

제 1 장 사역자의 소명과 자격

제 2 장 사역자의 구분과 역할

제 3 장 성직자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

제 4 장 인증서와 사역 규정



## 제 1 장 사역자의 소명과 자격

장정개정위원회는 제500조의 서론 부분이 지닌 타당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어휘들을 사용하려고 힘써왔다. 그런데 이 부분의 특성상 “교역자”란 전도사나 안수목사, 그리고 위임사역자의 인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호칭임을 밝혀둔다.

**500.** 나사렛성결교회는 모든 신자가 만민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12사도들을 택하시고 안수하셨던 것같이 어떤 남녀를 특별하고 공적인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교회가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그러한 신적 부르심을 인식하게 될 때, 교회는 그 사람이 평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일을 지지하고 돕는다.

**501. 사역에 있어서의 여성신학:** 나사렛성결교회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나사렛성결교회 내에서 장로목사와 사역목사를 포함한 지도자의 역할에 선출되고 임명되어 온 여성들의 역사적 권리를 확인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타락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후 5:17) 이러한 구속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회적 지위, 인종, 또는 성별 때문에 열등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갈 3:26-28)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와(딤후전 2:11-12) 고린도교회에 쓴 편지(고전 14:33-34)의 가르침으로 인해 생기는 모순성을 인정하면서, 이 구절들을 여성의 사역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에 여성의 참여를 명령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골 2:28-29; 행 2:17-28; 21:8-9; 롬 16:1, 3, 7; 빌 4:2-3) 그리고 웨슬리안 성결운동의 전통의 정신과 실천에 위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사역참여의 제한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

**502. 안수신학:** 모든 믿는 자들의 보편적 제사장 직과 사역에 대한 성경적 신조를 확실히 하면서, 안수는 하나님이 교회 내에서 특정한 남자와 여자들을 사역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성경적 믿음을 나타낸다. 안수는 하나님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청지기와 선포자로 사역의 지도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가 인증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안수는 온 교회와 세상 전체에 안수를 받는 자가 성결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적 사역을 위한 은사와 은혜를 소유하고 있고, 지식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건전한 교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거한다.

(행 13:1-3; 20:28; 롬 1:1-2; 딤후전 4:11-16; 5:22; 딤후 1:6-7)

**502.1. 나사렛성결교회는 사역자들의 영적 자질과 인격과 생**

활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538.17)

**502.2.** 나사렛성결교회의 복음 사역자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의 충만으로 온전한 성결함을 받아야 한다. 사역자는 불신자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믿으며 그들에 대해 깊은 사랑과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502.3.** 사역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시간 엄수, 사리분별, 근면, 열성, 깨끗함, 이해심, 오래참음, 자비함, 사랑과 진리에 있어서 교회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고후 6:6-7)

**502.4.** 사역자는 또한 신자들이 실생활 속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필요성”을 깊이 느껴야 한다. (빌 1:9) 나사렛성결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는 구원과 기독교 윤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502.5.** 사역자는 미래의 사역자들에게 조언을 하고 사역의 소명을 일깨워줄 기회가 주어질 때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502.6.** 사역자는 사역을 위한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역자는 지식,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갈증이 있어야 하고, 성경에 계시된 속죄와 구원에 관하여 바른 분별과 충분한 이해와 명백한 견해를 가져야 한다.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온전케 되고, 죄인들은 회개에 이른다. 또한 나사렛성결교회의 복음 사역자는 기도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 제 2 장 사역자의 구분과 역할

### 제1절 평신도 사역

**50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들에게 적절한 봉사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500)

**503.1.** 나사렛성결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인정한다. 평신도는 다양한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엡 4:11-12) 나사렛성결교회는 각 총회연차회의가 평신도들을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교사, 행정가, 기관사역자, 특별 섬김의 자리에 둘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봉사영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평신도 사역 훈련이 요구되고, 받을 것을 권한다. (605.3)

**503.2. 평신도사역자:**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으로서 교회 개척자나 겸직목회자, 교사, 평신도 부흥사, 평신도 음악사역자, 청지기사역자, 교회스텝사역자, 그리고/또는 교회 내 다른 특별 사역으로 부르심을 느끼지만 현재로서는 안수목사가 되는 특별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신도 사역 자격을 얻는 인증된 연수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503.3.** 담임목회자의 추천을 얻어서 개교회 실행제직회는 평신도사역자의 개인적 구원 체험, 효율적인 교회사역에 참여, 교회 업무에 대한 지식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503.4.** 개교회 실행제직회는 담임목회자와 교회실행제직회 서기가 서명한 증서를 각 평신도사역자 후보에게 발급할 수 있다.

**503.5.** 평신도사역자 증서는, 사역자가 평신도연장교육(Continuing Lay Training)에 규정된 평신도사역자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최소한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매년 담임목회자의 추천을 얻어 교회실행제직회에 의하여 갱신된다. 평신도사역자는 매년 실행제직회에 보고한다.

**503.6.** 총회의 임명을 받아 교회 개척자, 임시 목회자, 겸직 목회자, 혹은 기타 전문 사역자로 시무하는 평신도사역자는 유효한 연수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 서기가 서명 날인한 평신도사역자 인증서를 총회고문회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평신도사역자 인증서는 매년 총회감독의 추천을 받아 총회고문회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

**503.7.** 자신의 회원권을 두고 있는 개교회 밖에서 시무하려는 평신도사역자는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에 의해 임명되어 그들의 감독을 받고, 매년 그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회 임명기간이 끝날 때에는 평신도사역자가 회원권을 두고 있는 개교회를 통해 갱신 및 보고의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503.8.** 평신도사역자에게 요구되는 인증된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에 평신도사역자는 계속하여 평신도사역자 연장교육국(Continuing Lay Training Office)을 통하여 자신이 선택한 사역에 따라서 특성화된 과정에 중점을 두고 연수한다.

**503.9.** 평신도사역자는 세례와 성찬예식을 집례할 수 없으며 결혼을 주례해서도 안 된다.

## 제2절 성직자 사역

**504.** 나사렛성결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유일직제인 장로목사직을 인정한다. 또한 성직자가 다양한 역할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을 인정한다. (엡 4:11-12) 나사렛성결교회는 총회연차회의가 장로목사나 사역목사 혹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인정교역자를 파송시키는데 필요한 다음의 직분들을 인정한다. 교회 담임목회자, 부흥사, 선교사, 교사, 행정가, 기관목회자, 그리고 특별 사역자 등이다. “임직교역자”로서 이러한 사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역훈련과 안수가 요구되고, 받을 것을 권한다. “안수지침서”는 사역의 각 종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총회 부서들이 임직교역자로 고려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필요한 자격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직교역자들만이 총회의 투표 자격을 가진 대의원이 된다.

**504.1.**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임직한 모든 자들은 모두 해당 총회연차회의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04.2.**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임직한 모든 자들은 매년 자신이 재직 중인 총회로부터 총회감독과 총회총무가 서명한 사역 증명서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504.3.** 모든 특정한 사역에 임직한 자가 공인된 의료기관에 의해 장애가 있다고 판명되면 “임직 중 장애로 인한 사역 중단”으로 기록된다.



### 제3절 사역의 역할

505. 사역의 역할들은 아래와 같다.

**506. 행정사역자:** 행정사역자는 국제총회에서 국제총회 임원으로 피선된 장로목사나 사역목사, 혹은 세계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선출되거나 고용된 성직자이다. 행정사역자는 총회연차회의에서 총회감독으로 피선된 장로목사, 혹은 자신의 주요 임무가 총회사역을 위해 임명되고 고용된 성직자이다. 이러한 자는 임직교역자이다.

**507. 기관사역자:** 기관사역자는 군대, 기관, 혹은 산업체 안에서의 전문화된 사역으로 신성한 부르심을 느끼는 안수목사이다. 기관사역자로 섬기기를 추구하는 교역자들은 반드시 총회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수목사로 기관사역이 자신의 주요 사역인 자는 임직교역자이고, 총회연차회의에 해마다 보고해야 하며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의 조언과 충고에 합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 기관사역자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나사렛성결교회와 협의하여 나사렛성결교회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장정에 따른 성례전을 집행하고, 목회적 보살핌과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견책하고 격려하고, 죄인들의 회심, 신자의 성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519, 538.9, 538.13)

**508. 여성사역전도인:**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인 여성으로서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타 기독교 박애 사업에 종사할 신성한 사명을 느끼고 생활에서 그러한 능력과 은혜의 유용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 1985년 이전에 여성사역전도인으로 인정받아 헌신한 자는 계속 그 신분을 유지한다. 그러나 말씀 전파 외에 전임으로 사역에 부름받아 임직받은 여성들은 사역목사 직의 인수 요구 사항을 이수해야 한다. 구제사역 인증서를 원하는 여성들은 평신도사역자를 위한 요구사항을 필해야 한다. (113.9, 503.2-503.9)

**509. 교육사역자:** 교육사역자란 나사렛성결교회의 교육기관 중 한 곳에서 행정직원이나 교육자로 고용된 장로목사, 사역목사, 인정교역자를 말한다. 총회는 이런 사람의 임직사역 분야를 교육자로 지정한다.

**510. 부흥사:** 부흥사는 자신을 순회복음 전파에 헌신한 인정교역자나 장로목사로서 교회로부터 부흥회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다. 나사렛성결교회는 세 가지 형태의 순회 복음 전도를 인정하며 그에 따라서 교역자를 임명하는데, 등록부흥사, 위임부흥사, 그리고 중신부흥사 등이다. 개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로 복음 전도를 제일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헌신하는 교역자이며, 은퇴하지 않은 부흥사는 임직교역자이다.

**510.1. 등록부흥사는 장로목사나 총회 인정교역자로서 복음**

전도를 제일의 사명으로 여기며 그 같은 열심을 표명한 사람이다. 그러한 등록은 1년 기한으로 한다. 차기 총회연차회의에서는 그의 전년도 전도활동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평가한 것을 근거로 하여 갱신을 허락한다.

**510.2.** 위임부흥사는 장로목사로서 만 2년간 등록부흥사로서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위임 기간은 1년이며 계속해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차기 총회연차회의에서 갱신된다.

**510.3.** 종신부흥사는 직전 4년 연속 위임부흥사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로목사로서 총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의 추천을 거쳐 ‘신적 소명에 의한 부흥사권익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Interests of the God-Called Evangelist)와 국제총회감독회의의 의결에 따라 선정된다. 종신부흥사에 대한 이같은 역할 설정은 그가 위임부흥사로서의 요건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거나 은퇴 단계에 들어설 때까지 지속된다. (231.2, 536)

**510.4.** 종신부흥사로 선출된 후 매 4년마다 해당 부흥사와 총회감독이 함께 일종의 교회/목회자 점검과 같은 정기적인 자체 평가와 점검을 실시한다. 총회감독은 해당 부흥사와 협의하여 실시되 그 모임의 일정과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점검을 마치면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적 소명에 의한 부흥사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것에 따라 연임에 필요한 자질 요건을 평가하게 된다. (211.21)

**510.5.** 교회 또는 교회 어떤 부서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은퇴

신분을 유지하면서 부흥회나 전도집회를 통해 사역의 역할을 해내고자 하는 장로목사나 인정교역자는 ‘은퇴 후 전도 활동’을 위한 증서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 자격증은 1년 간 유효하며 총회감독의 추천을 받아 총회연차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되는데 총회연차회의 전년도의 복음 전도 실적에 따라 차기 총회연차회의에서 갱신될 수 있다.

**510.6.** 총회연차회의 사이의 기간에 부흥사로 사역하고자 원하는 장로목사나 인정교역자는 총회감독의 추천으로 세계목회발전부에서 인정한다. 등록 또는 위임은 총회감독의 추천에 의해 총회연차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510.7.** 부흥사 역할을 위한 증서의 지침과 절차에 대해서는 안수지침서에 나와 있다.

**511. 기독교교육 사역자:** 개교회의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사역을 위해 채용된 성직자는 기독교교육 사역자로 임직될 수 있다.

**511.1.** 1985년 이전에 기독교교육 사역자로 인정 혹은 임명 받은 자의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장래에 기독교교육 사역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역의 자격을 위해 사역목사의 규례에 준하는 안수 요구 사항을 필해야 한다.

**512. 음악사역자:** 나사렛성결교회의 정회원으로서 음악 목회 소명을 받은 사람은 총회연차회의에서 1년 동안 음악사역자 임명을 받을 수 있다. 단,

- (1) 회원권을 두고 있는 교회실행제직회로부터 그러한 일을 하도록 추천을 받고,
- (2) 은혜, 은사 그리고 유용성의 증거와,
- (3) 최소 1년간의 음악 사역의 경력을 가졌으며,
- (4) 자격있는 교수 밑에서 최소 1년간 성악 교육을 받았으며 음악사역자를 위해 설정된 인가된 연수 과정을 이수 중에 있거나 완료했고,
- (5) 음악사역자로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6) 교회 회원권을 두고 있는 총회의 지도하에 이 과업을 위한 지적 및 영적 자격과 아울러 일반 적합성에 관한 세밀한 검사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205.10)

**512.1.** 이 사역을 자신의 주요한 직책과 사명으로 알고 있으며, 교역자 인증서를 소지한 자만이 임직교역자로 인정된다.

**513. 선교사:** 선교사는 세계선교국(Global Mission)의 관리하에 사역하는 성직자나 평신도이다. 임명을 받고 교역자 인증서를 소지한 선교사는 임직교역자이다.

**514. 담임목회자:** 담임목회자는 장로목사나 인정전도사(장로 목사 과정)로서 하나님의 부름과 신자들의 초빙을 받아 개교회를 돌보는 자이다. 개교회 담임목회자는 임직교역자이다. (115, 213, 533.4)

**515.** 담임목회자의 핵심임무는 다음과 같다.

**515.1.** 기도하는 일.

**515.2.**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

**515.3.**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

**515.4.** 성찬식과 세례식을 집례하는 일. 적어도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집례해야 한다. 목회자는 이 은혜의 수단을 좀 더 자주 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장한다. 총회 인정교역자로서 장정 532.7조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한 상태라면 안수목사가 성례를 집례할 수 있게 준비한다. 개교회 전도인은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다. 외출이 제한된 상태인 사람에게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성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31.7, 700)

**515.5.** 목회 심방을 통하여 교인들을 돌보되 특히 병든 자와 어려운 자를 돌보는 일.

**515.6.**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일.

**515.7.** 오래 참음과 세심한 가르침으로 책망, 견책, 권유하는 일.

**515.8.** 죄인의 회개와 회개한 자의 완전성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 (19)

**515.9.** 결혼의 엄숙함과 관련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 담임목회자는 자신의 혼인 상태를 주의깊게 살피고 돌봄을 통해서, 모든 소통 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혼전 상담과 엄숙한 결혼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신성함을 전달해야 한다. (538.19)

**515.10.** 기독교적 사역에 대한 소명을 느끼는 사람들을 양육하며 지도하고, 목회를 위해 합당한 준비과정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

**515.11.**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교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 (538.18)

**515.12.** 사역의 헛수를 더해가면서 자신의 소명을 발전시켜 나가며,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개인적 경건의 삶을 유지하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관계의 온전함과 활력을 지키는 일.

**516.** 담임목회자의 행정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516.1.** 장정 107조와 107.1조에 의하여 개교회의 회원을 받아들이는 일.

**516.2.** 개교회의 모든 부서들을 돌보는 일.

**516.3.** 장정 145.8조에 따라 주일학교/성경공부/소그룹의 교사들을 임명하는 일.

**516.4.** 나사렛성결교회의 장정 1-21조, 28-33조의 교회 헌법 및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을 매해 회중에게 읽어 주거나 장정이 이 부분을 인쇄하여 매년 교회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일. (114)

**516.5.** 개교회 각 부서의 모든 통계 보고 작성을 검토한 후 즉시 모든 보고를 총회총무를 통하여 총회연차회의에 제출하는 일. (114.1)

**516.6.** 총회와 국제총회의 추진 목표와 계획에 일치시켜 개교회의 전도, 교육, 예배 그리고 확장 계획을 지도하는 일.

**516.7.** 개교회 및 각 부서의 현황 보고와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위한 연구와 수행이 필요한 것에 관한 개요를 포함한 보고서를 교회연차회의에 제출하는 일.

**516.8.** 교회 회원에 대하여 고소장이 제출되었을 경우 3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임명하는 일. (605)

**516.9.**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NMI)를 통해 조달된 모든 세계전도기금이 국제총회재무에게 정확히 송금되는지, 총회사업비를 위한 모든 재정이 총회재무에게 정확히 송금되는지를 확인하는 일. (136.2).

**516.10.** 개교회의 모든 유급직원을 실행제직회에 추천하고 감독하는 일. (159.1-159.3)

**516.11.** 부동산 양도, 담보 설정, 담보 양도, 계약 및 그 외 장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법정 서류에 교회 서기와 함께 서명하는 일. (102.3, 103-104.3)

**516.12.** 개교회 혹은 개교회 어떤 부서의 회원이나 교우가 같은 총회 안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교회와의 활발한 유대가 불가능할 경우 그가 이사 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목회자에게 그 회원 혹은 교우의 주소와 이름을 통보하는 일.

**516.13.** 개교회에 부과된 교단 목적기금, 세계전도기금, 총회사업비, 지구 혹은 국가위원회로부터 설립된 재정목표를 세우고 마련하는 일. (32.2, 130, 153)

**516.14.**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 교회 회원권 이명증명서, 추천서, 또는 전적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111-111.1, 112.2,



815-818)

**516.15.** 담임목회자는 직책상 개교회의 대표가 되며 교회실행제직회의 의장이 되고 모든 상임부서 및 위원회 회원이 된다. 담임목회자는 개교회의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127, 145, 150, 151, 152.1)

**517.** 담임목회자는 개교회의 각 부서 및 나사렛 탁아소/학교 (출생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디렉터를 추천함에 있어 발언권을 갖는다.

**518.** 담임목회자 직계가족은 재정적인 채무를 지거나 재정을 지출하거나 현금을 집계할 수 없다. 또한 교회계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다. 교회실행제직회 혹은 교회회의는 과반수 투표에 의하여 총회고문회와 총회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과반수가 예외를 승인하면, 총회감독은 예외를 승인한다는 서면 승인서를 교회서기에게 전달한다. 교회서기는 그 사실을 교회 회의록에 기록한다. 담임목사 직계가족은 배우자, 자녀, 형제 또는 부모를 포함한다. (129.1, 129.21-129.22)

**519.** 담임목회자는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일치된 권고를 언제나 존중해야 한다. (225.2, 538.2)

**520.** 다른 교파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인정교역자나 안수목사

가 총회연차회의 사이의 기간에 개교회 회원권을 신청했을 경우 담임목회자는 먼저 총회고문회의 찬성하는 추천이 없이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107, 228)

**521.** 담임목회자는 그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총회연차회의에 순응해야 하며, 매년 보고하고 그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간단히 간증한다. (205.3, 532.8, 538.9)

**522.** 담임목회자는 자동적으로 그가 시무하는 교회의 회원이 된다. 만일 두 교회 이상을 겸임할 때에는 그가 선택하는 교회의 회원이 된다. (538.8)

**523.** “목회활동”은 담임목회자 또는 부교역자 및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인정된 특수목회에 종사하는 협동목회자를 포함하는데, 교회에 관련된 이 목회 활동 중 어느 한 분야에 부름을 받은 목회자는 임직교역자로 인정된다.

**524. 임시목회자:** 총회감독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임시 담임목회자를 임명, 시무하게 할 권한이 있다.

- (1) 임시 담임목회자는 다른 사역에 시무 중인 나사렛성결교회의 성직자회원, 또는 나사렛성결교회의 개교회 전도인, 평신도 사역자, 다른 교파로부터 전입 수속 중이거나 다른 교파 소속 목회자가 될 수 있다.

- (2) 임시 담임목회자는 임시로 임명받아 영적 사역을 하지만 어떤 다른 근거에 의해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한 성례전을 시행하거나 결혼을 주례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총회감독의 인정이 없이는 보고를 철하는 것 외에는 담임목회자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 (3) 임시 담임목회자의 교회 회원권은 그(녀)가 시무하는 교회에 자동적으로 전입된다.
- (4) 임시 담임목회자는 어떤 다른 권리에 의해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총회연차회의의 투표 자격 소지의 대의원이 아니다.
- (5) 임시 담임목회자는 총회감독에 의해 아무 때라도 해직 혹은 교체될 수 있다.

**525. 모교회 연결(PAC) 목회자:** 모교회와 연결된 회중을 인도하는 장로목사나 총회 인정교역자는 임직교역자가 되고 총회로부터 “PAC pastor”로 임명된다.

**526. 대리목사:** 장로목사는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의 추천으로 총회연차회의에서 총회 재직 대리목사(DIA)로 승인될 수 있으며, 총회감독과 개교회 실행제직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시무할 수 있다. (212.1)

**527. 성가부흥사:**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녀)의 대

부분의 시간을 성가를 통한 전도 사업에 바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인증서를 소지하고 전도 사업을 제일의 임무로 하여 활동하는 성가 부흥사로서 교회나 교회의 어느 부서 혹은 어느 기관에서 은퇴신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임직교역자이다.

**527.1.** 성가부흥사 역할을 위한 증서의 지침과 절차에 관하여는 안수지침서에 나와 있다.

**528. 특별 사역:** 현역에 종사하는 인정교역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가 승인하는 특별 사역에 임명될 수 있고 총회는 그(녀)를 임직교역자로 기록한다. 특별사역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총회고문회, 총회목회심의부, 총회목회연구부에 해마다 서면보고를 통하여 나사렛성결교회와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528.1.** 교회에 기여하는 교회 관계 기관의 임원으로 채용되어 사역하거나 소속 총회고문회와 총회의 신중한 평가를 거쳐 교회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교육기관이나 전도기관 혹은 선교기관에서 섬기는 교역자는 538.13조에 의거하여 특별 사역으로 지명될 수 있다.

**528.2.** 사역 중간에 잠시 쉬고 있거나 휴직 상태인 성직자회원은 총회감독의 제청을 받아서 총회고문회에 의해 특별(임시) 사역에 임명될 수 있다.

## 제 3 장 성직자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

### 제1절 안수목사를 위한 기본교육과정

**529.** 사역자 교육과정은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성결메세지의 확산과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의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19-20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에게 명하신 말씀에 근거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삼으라”는 우리의 사명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많은 부분은 나사렛성결교회의 사역자로 안수 자격을 갖추도록 주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총회목회연구부는 인증된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각 교육생들의 이행단계를 결정하고 진행상황을 평가한다.

**529.1.** 나사렛성결교회는 전 세계에 많은 교육 기관이 있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지구에 따라서는 사역자 양성을 위하여 한가지 이상의 기본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허락하고 있다. 각 교육생들은 각자가 속해 있는 세계 지역의 나사렛성결교회에서 제공하는 가장 적합한 인증된 교과과정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교회는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활용해야 한다. 교육생은 총회산하 목회연구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인증된 교육과정이나, 나사렛 고등교육 기관에 의해 개발되고 제공되는 프로그

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각각의 인증된 교육과정의 내용은 안수를 위한 표준 교과과정개발 국제 지침서와 지구별 안수지침서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표준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529.2.** 인정교역자가 인증된 교과과정을 충족하고 이수하였을 때, 교육제공자는 인정교역자에게 수료증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인정교역자는 인증 교육과정 수료자로 총회연차회의에 추천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는 총회목회연구부에 수료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529.3.** 사역 준비를 위한 일반 교과과정: “교과과정”이라는 말은 종종 학문적 프로그램이나 과정의 내용을 뜻하는 말로 들리지만, 그 개념은 훨씬 광범위하다. 교사의 성품, 교육생과 교사와의 관계, 교육 환경, 교육생들의 지나온 경험들이 교육과정의 내용들과 연결되어 완성된 교과과정을 만든다. 그렇지만 사역자 양성을 위해 제공되는 기본교육과정에는 최소한의 일련의 교과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적 차이와 다양한 효용 가능한 자원들로 인해 교과과정 구성의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만들어 지게 한다. 그럼에도 세계목회발전부의 허락받기 원하는 안수목사들을 위한 모든 기본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은 교육 내용, 역량, 성품 및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져야 한다. 인증된 교과과정의 목적은 4개의 모든 요소가 다양한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고, 교역자들로 하여금 국제총회감독회에서 결의한 다음과 같은 나사렛성결교회의 사명 선언문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삼는 것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주요 과제는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보존하고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나사렛성결교회의 중요한 목표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함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죄인의 회개, 신자의 완전 성결, 거룩하게 세움, 그리고 초기 신약교회 안에 나타난 영적 능력과 단순성이다.”

인증된 교과 과정은 4개 범주로 설명할 수 있다.

\* **내용:** 신, 구약 성경 내용에 대한 지식,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 이해, 교회의 역사 및 선교에 대한 지식은 사역의 필수적인 것이다. 성경 해석하는 방법, 성결교리 및 웨슬리 신학의 특징, 그리고 나사렛성결교회의 역사와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등이 이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 **역량:** 말과 글로 소통하는 기술, 관리 및 지도력, 재정관리, 그리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모두 목회를 위해 필수적 요소들이다. 이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에 더하여, 설교, 목회양육과 상담, 성경 해석, 예배, 효과적인 전도, 전인적 삶의 성경적 청지기직, 기독교교육과 교회행정을 위한 기량을 배우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증된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교육제공자와 개교회가 협력하여 교육생들에게 사역실습과 사역역량을 개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품:** 성품, 윤리, 영성, 그리고 개인과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인격적 성장은 목회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기독교 윤리, 영성 확립, 인성 개발, 목회자의 인격, 그리고 결혼과 가정생활의 역동성을 다루는 과정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 **상황:** 사역자는 교회가 증인으로 서있는 곳의 문화의 역사적, 동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세계관과 사회적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 인류학, 사회학, 다른 문화권 사이의 소통, 선교, 그리고 사회에 대한 연구를 다루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529.4.** 나사렛성결교단에 속하지 않은 학교나 나사렛성결교단이 아닌 교회의 후원을 받는 학교에 재학하면서 안수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는 자는 지구/언어별로 마련된 안수지침서에서 요구하는 교과과정에 따라서 총회목회연구부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

**529.5.** 모든 교과 과정, 학사 요건 및 공식 행정규약의 일체의 사항들은 세계목회발전부와 협력하여 지구 및 언어 별로 마련된 안수지침서에 실려 있다. 지구 안수지침서에 필요한 개정은 국제교육과정자문위원회와 목회발전부, 그리고 국제총회이사회 및 국제총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침서는 장정의 규정에 일치해야 하며, 또한 목회발전부와 국제교육과정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수를 위한 표준 교과과정 개발 국제 지침서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국제교육과정자문위원회는 국제총회감독회가 임명한다.

**529.6.** 일단 교역자가 사역에 필요한 인증된 교육과정을 충족하여 마치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사역을 더 발전시



키기 위해 평생 배우는 자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적어도 매년 20시간 평생교육과정에 참여하거나, 지구/언어별로 정해지고 지구 안수지침서에 규정되어 있는 동등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모든 임직 또는 비임직 인정교역자와 안수목사들은 매년 총회연차회의에 제출하는 교역자보고서의 한 부분에 각자의 평생교육과정 수행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평생교육과정의 최근까지의 보고서는 교회/목회자와의 관계점검 과정이나 목회자 청빙과정에 활용된다. 지구/언어별 지구 안수지침서에는 수행 인증 및 보고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529.7.** 평생교육과정의 요건을 2년 연속하여 마치지 못한 안수목회자는 총회목회연구부의 정기회의에 출석하여 목회연구부와 만나야 한다. 목회연구부는 요구되는 평생교육과정을 완수하도록 해당목회자를 지도한다. (115, 123, 515.11, 538.18)

## **제2절 안수목사를 위한 기본교육과정의 문화적 적용**

**530.** 세계 각지의 문화적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한가지의 교과과정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세계 각 지구는 지역 내 교육자원과 기대가 반영된 방식으로 사역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한다. 지구별 상황에 맞게 고안된 교과과정을 적용하기 전에 국제교육과정자문 위원회와 국제총회이사회, 그리고 국제총회감독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계 각 지구 내에서도 문화적 기대와 교육자원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적 민감성과 유연성이 사역을 위해

마련하는 지역별 기본교육과정의 특성을 만든다. 이 교육과정은 총 회목회연구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역을 위한 기본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각 지구의 프로그램의 문화적 적용은 세계목회개발부와 지구교육코디네이터와 협의를 거친 국제교육과정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9.5)

**530.1.** 장로목사, 사역목사, 또는 특정한 분야의 사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인증된 교육과정은 지구 안수지침서에 나와 있다.

**530.2** 모든 인증된 교육과정은 지구 안수지침서에 의해 관리된다. (529.2-529.3, 529.5)

## 제 4 장 인증서와 사역 규정

### 제1절 개교회 전도인

**531.** 개교회 전도인은 개교회 실행제직회가 사역을 위해 자격을 준 나사렛성결교회의 평신도로서,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허락되는대로 사역의 은사와 유용함을 나타내고, 가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는다. 개교회 전도인은 평생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531.1.**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 중에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평생 사역을 추구하는 일에 소명의식을 갖는 자가 있으면 안수목사가 담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담임목사의 추천을 얻어 그 교회 실행제직회가 1년간 개교회 전도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담임목회자가 안수목사가 아닐 경우에는 담임목회자의 추천과 총회감독의 승인이 있으면 개교회 실행제직회에서 이를 인준할 수 있다. 후보자는 먼저 개인의 구원 체험, 성경, 교리와 교회의 질서에 관한 지식을 검증받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소명이 은혜와 은사와 유용한 쓰임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개교회 전도인 후보자는 개교회가 시행하는 적합한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교회 전도인은 개교회의 연차회의에 보고를 해야 한다. (113.9, 129.12, 211.12)

**531.2.** 교회실행제직회는 각 개교회 전도인에게 목회자와 교회실행제직회 서기가 서명한 전도인 증서를 발급한다. 총회의 인정 교역자 증서를 받지 않는 자가 임시로 시무하는 교회의 경우, 총회

감독의 추천을 얻어 총회고문회를 통해 개교회 전도인 증서를 발급 받거나 갱신된다. (211,12, 225,13)

**531.3.** 장로목사가 담임목회자로 시무하고 있는 교회인 경우 개교회 전도인 증서는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실행제직회에서, 장로목사가 아닌 교회의 경우 그 담임목회자의 추천과 총회감독의 승인을 받아 교회실행제직회에서 갱신할 수 있다. (129,12, 211,12)

**531.4.** 개교회 전도인은 총회목회연구부의 지도 아래 교역자를 위한 인증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만약 개교회 전도인이 인증된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과목 중에 적어도 2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총회감독의 서면 승인이 없으면 2년 후에는 그 자격이 갱신될 수 없다.

**531.5.** 개교회 전도인으로서 적어도 만 1년간 시무하고 교역자를 위한 필수교과과정을 통과한 자를 교회 실행제직회는 총회연차회의에 인정교역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만약 추천이 거절될 경우는 종전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129,12, 529, 532.1)

**531.6.** 개교회 전도인으로서 임시목회자로 임명된 자가 임명된 후 열린 총회연차총회 이후에도 계속 시무하려면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12, 231.5, 524).

**531.7.** 개교회 전도인은 성례전인 세례와 성찬식을 집례하거나 결혼을 주례할 수 없다. (532,7)

## 제2절 인정교역자

**532.** 인정교역자는 사역자로 소명과 은사를 받은 자로서 총

회연차회의에서 인정교역자 인증서를 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이다. 인정교역자 인준은 일반적으로 장로목사 또는 사역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사역자에게 개교회 전도인보다 더 광범위한 사역과 더 커다란 권한과 책임을 허락하고 임명한다. 총회의 인정교역자 인증서에는 그 교역자가 장로목사나 사역목사로서의 안수를 준비 중인지, 아니면 안수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총회 인정교역자 인증서인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532.7)

**532.1.**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 중에 평생 목회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면 총회연차회의에 의하여 인정교역자로 인준받을 수 있다.

- (1) 개교회 전도인의 자격을 만 1년간 지내온 자.
- (2) 교역자를 위한 인준된 교육과정의 4분의 1을 이수하고, 인준된 교육과정의 관련 부분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나사렛성결교회의 장정과 역사 그리고 성결교리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 (3) 후보자가 회원으로 있는 개교회의 실행제직회에서 그러한 사역을 위한 추천을 받고, 주의를 기울여 작성한 인정교역자 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한 자.
- (4) 은혜와 은사 및 유용성의 증거가 있는 자.
- (5) 후보자가 회원이 되어있는 교회를 관할하는 총회고문회에서 결정된 대로 적절한 신원조사를 포함하여, 총회의 지도 아래 그러한 사역에 필요한 영적, 지적, 그리고 기타 그러한 사역에 적합성에 관하여 신중히 심사를 받은 자.

- (6) 인정교역자 및 목사 안수를 위한 인증된 교과과정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서약한 자.
- (7) 어느 총회연차회의에 의해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부적격 판단을 한 총회의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서면 해명서를 통해 부적격 상태가 해소된 자. 자신의 결혼 관계가 총회의 인정에 결격 사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자.
- (8) 이전에 이혼했을 경우,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는 추천서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서류를 국제총회감독회에 보냄으로 이혼이 교역자 인증을 받는데 장애사유가 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

교역자 후보는 나사렛성결교회의 인정된 교과과정의 4분의 1과 동등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이 필요조건에 대한 예외는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에 의해 허락될 수 있는데, 후보자가 조직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인정된 연수 과정에 등록되어 있고, 매년 인정 갱신을 위해 장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연수과목을 이수하고, 총회감독이 그 예외에 대해 승인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신원조사에서 그 후보자가 구원받기 이전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540.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에 의해서 그 후보자가 자동적으로 심의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29.14, 207.6, 531.5)

**532.2.**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해서 다른 교파에서

오는 인정교역자는 그들이 전에 회원이었던 교파가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하면 총회연차회의에서 교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들은 다음의 조건들에 부합된 자들이라야 한다.

- (1) 개교회 전도인을 위한 나사렛성결교회의 인증된 교과과정의 4분의 1과 동등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였고, 나사렛성결교회의 장정과 역사 그리고 성결교리에 관련된 인증된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함으로 그것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 (2) 그들이 회원으로 있는 나사렛성결교회 개교회의 실행제 직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 (3) 은혜와 은사 및 유용성의 증거가 있는 자.
- (4) 총회의 지도 아래 그러한 사역에 필요한 영적, 지적,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위한 다른 적합성에 관하여 신중히 심사를 받은 자.
- (5) 인정교역자 및 목사 안수를 위한 인증된 교과과정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서약한 자.
- (6) 어느 총회연차회의에 의해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부적격 판단을 한 총회의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서면 해명서를 통해 부적격 상태가 해소된 자. 자신의 결혼 관계가 총회의 인정에 결격 사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자.
- (7) 이전에 이혼했을 경우, 총회 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는 추천서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서류를 국제총회감독회에

보냄으로 이혼이 교역자 인증을 받는데 장애사유가 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 (532.1)

**532.3.** 교역자 인증서는 차기 총회연차회의 폐회와 함께 그 효력이 종료된다. 다음의 조건 하에서 총회연차회의의 표결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

- (1) 갱신을 원하는 자는 주의를 기울여 작성한 인정교역자 신청서를 총회연차회의에 접수해야 하고,
- (2) 인증된 이수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2개 과목을 수료했어야 하며,
- (3) 회원으로 있는 교회의 담임목회자의 천거를 거쳐 실행제 직회에서 그 갱신을 위해서 추천을 받는다.

하지만 인증된 교과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통과하지 못한 사유서를 총회연차회의에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교역자 자격이 갱신될 수 있다.

그 사유가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에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사회하는 국제총회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회연차회의는 어떤 사유나 임의의 권한으로 교역자 인정 갱신에 부결 투표를 할 수 있다.

인증된 교과과정을 마쳤고 총회연차회의에서 은퇴 신분을 유지해 온 인정교역자들은 총회고문회의의 추천을 받아 “인정교역자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는 일 없이도 자신들의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532.4.** 안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후보자는 처음 총회 인정이 허락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유효한 학과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예외가 생길 경우에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의 허락을 받고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정교역자나 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인준된 교과과정을 못 마친 이유로 안수 자격을 상실한 인정교역자는 총회고문회와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의 추천에 의하여 인정교역자 자격 갱신이 허락된다. 이 추천은 안수 자격을 위해 인증된 교과과정을 마쳤거나, 지난해의 인증된 교과과정 중 최소 두 과목을 마친 인정교역자에 해당한다.

**532.5.** 담임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인정교역자의 경우에는 그 자격 갱신을 위한 추천은 총회고문회에서 한다. 담임목회자로 봉사하고 있는 개교회 전도인의 자격을 인정하는 추천은 총회고문회에서 한다. (225.13)

**532.6.** 관할 국제총회감독은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총회감독 그리고 총회총무가 서명한 인정교역자 인증서를 각 인정교역자에게 발급한다.

**532.7.** 인정교역자들은 말씀을 전파할 권한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여러 사역 속에서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인정교역자가 그들이 교역자 회원권을 갖고 있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부여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회중에게 세례식과 성찬식을 주관할 권한이 주어지며, 법이 금지하지 않는 곳에서는 결혼식을 집례할 수 있다. (511-512, 515, 515.4, 523, 532.8, 533-533.2, 534-534.2, 700, 701, 705)

**532.8.** 모든 인정교역자는 자신이 소속된 교회가 속한 총회 연차회의에 교역자 대의원 자격을 가지며, 매년 총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는 적절한 연례보고서 양식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자격을 갱신할 경우 총회 인정교역자 신청서로 대신한다. (201, 205.3, 521)

**532.9.** 교역자 회원권을 두고 있는 총회의 총회고문회의 승인이나 국제총회감독회의 서면승인없이 나사렛성결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나 교단에 가입하거나, 다른 기독교 사역에 참여한 인정교역자는 즉시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 및 교역자의 자격이 상실된다. 총회연차회의의 총회록에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다른 교회, 교파, 사역에 연합했으므로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과 목회직에서 제명됨” (107, 112)

### 제3절 사역목사

**533.** 사역목사는 교역자로서 그의 기독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 및 그의 은사와 유용성이 입증되고 적절한 교육과 경험을 쌓아 총회연차회의의 표결과 엄숙한 안수 행위에 의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구별되고 기독교 사역의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할 자격이 주어진 자이다.

**533.1.** 사역목사는 설교하는 특정한 소명을 받은 자는 아니다. 교회는 성경과 경험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설교의 특정한 소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평생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한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의해 인정되고

확증되며, 모든 요구 조건을 완비할 때 교회가 설정한 책임들을 부여해야 한다. 이것은 영구적 사역 직제이다.

**533.2.** 사역목사는 교육 규정의 요구 조건을 마쳐야 하고, 적합한 은사와 은혜가 나타나야 하며, 교회에 의해 인정받고 확증되어야 한다. 사역목사는 성례인 세례와 성만찬 집례할 수 있으며, 법이 금지하지 않는 곳에서는 결혼식을 집례할 수 있으며,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권한이 주어진다. 주님과 교회는 다양한 연관된 사역 안에서 이 사역의 은사와 은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서 종의 사역의 상징인 사역목사는 제도권 교회 밖에 있는 역할에서 그의 은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515.4, 515.9)

**533.3.** 사역목사 후보자는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자이다. 후보자는 현재 총회 인정교역자여야 하고, 적어도 한번은 3년 이상을 계속해서 총회 인정교역자였어야 한다. 또한 후보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개교회 실행제 직회나 총회고문회에 의해 자격 인정 갱신을 위해 추천받았어야 한다.

거기에 더하여 후보자는:

1. 회원으로 있는 교회의 모든 요구조건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한다.
2. 인정교역자와 사역목사의 후보자를 위해 지정된 인증된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3.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에 의해 신중하게 고려되고

총회연차회의에 인수에 찬성 의견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총회연차회의의 3분의 2의 찬성투표로 사역목사 직에 선출된다. 단, 표결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계속해서 3년 이상 교역자로 임직된 자여야 한다. 또한 현재 자신이 임직된 교역자로 사역 중이어야 한다. 그들의 사역이 파트타임(시간제 근무)인 경우에는 그들의 개교회 사역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계속 사역연도” 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자기의 간증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사역의 소명이 다른 모든 일들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어느 총회연차회의에 의해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으면, 해당 총회의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에서 서면으로 부적격 상태가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후보자의 결혼 관계가 후보자의 인수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 (205.6, 320, 529)

**533.4.** 인수받은 사역목사가 자신의 사역을 이행해 나가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위한 소명을 받음을 느끼면, 사역목사는 장로목사 자격에 필요한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사역목사 인증서를 반납함으로써 장로목사가 될 수 있다.

#### 제4절 장로목사

**534.** 장로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역자로 말씀선포, 은사와 유용성이 입증되고 적절한 교육과 경험을 쌓아 총회연차회의의 표결과 엄숙한 인수 행위에 의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구별되고 기독교 사역의 모든 기능들을 수행할 자격이 주어진 자이다.

**534.1.** 말씀선포 사역을 위한 유일한 직제는 장로목사 직임을 인정한다. 이 직제는 교회에 있는 영구직이다. 장로목사는 교회의 위대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종하여 교회를 잘 다스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인 세례와 성찬식을 집례하고, 엄숙한 결혼예식을 집례한다. (31, 514-515.3, 515.4, 515.9, 538.15)

**534.2.** 교회는 이 공식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말씀의 종으로 일생 동안 전력을 다해 말씀 선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534.3.** 장로목사 후보자는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자이다. 후보자는 현재 총회 인정교역자여야 하고, 적어도 한번은 3년 이상을 계속해서 총회 인정교역자였어야 한다. 또한 후보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개교회 실행제직회나 총회고문회에 의해 자격 인정 갱신을 위해 추천받았어야 한다.

거기에 더하여 후보자는:

1. 회원으로 있는 교회의 모든 요구조건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한다.
2. 인정교역자와 장로목사의 후보자를 위해 지정된 인증된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3.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에 의해 신중하게 고려되고 총회연차회의에 안수에 찬성 의견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총회연차회의의 3분의 2의 찬성투표로 장로목사 직에 선출된다. 단, 표결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계속해서

3년 이상 교역자로 임직된 자여야 한다. 또한 현재 자신이 임직된 교역자로 사역 중이어야 한다. 그들의 사역이 파트타임(시간제 근무)인 경우에는 그들의 개교회 사역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계속 사역연도” 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자기의 간증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사역의 소명이 다른 모든 일들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어느 총회연차회의에 의해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으면, 해당 총회의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에서 서면으로 부적격 상태가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후보자의 결혼 관계가 후보자의 안수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 (205.6, 320, 529)

### **제5절 타 교단 안수목사 인준**

**535.** 다른 교파의 안수목사가 나사렛성결교회에 연합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제출하면 총회목회심의부나 목회부에서 그 목사의 행실, 개인 신앙 체험과 교리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한 후 그 인증서는 총회연차회의에서 인정될 수 있다. 단,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한다.

- (1) 해당 안수목사는 나사렛성결교회의 장정과 역사 그리고 성결교리에 관련된 인증된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함으로 그것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2) “안수/인증을 위한 조사서”를 신중히 기입하여 총회연차회의에 접수시켜야 한다.
- (3) 장정 533-533.3조나 534-534.3조에 기술된 안수에 필요

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한다.

(4) 그리고 후보자는 현재 사역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205.7, 228, 529, 532.2)

**535.1.** 관할 국제총회감독은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총회감독 그리고 총회총무가 서명한 안수목사 인증서를 발급한다. (538.6)

**535.2.** 다른 교파에서 발행한 안수목사 인증서가 인정되었으면, 그 교파에서 발행된 인증서 뒷면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거나 날 인하여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주후 \_\_\_\_\_년 \_\_\_\_월 \_\_\_\_일 나사렛성결교회 \_\_\_\_ 총회연차회의에 의하여 새로운 인준의 근거로 인정됨.

국제총회감독 \_\_\_\_\_

총회감독 \_\_\_\_\_

총회총무 \_\_\_\_\_

## 제6절 은퇴교역자

**536.** 은퇴교역자란 교역자가 사역자 회원권을 두고 있던 총회 연차회의에서 총회의 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의 제청으로 은퇴 신분을 부여받은 교역자다. 교역자의 신분상의 변화는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의 제청을 받아 총회연차회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36.1.** 은퇴가 사역 활동의 강제적 정지나, 그 사실 만으로 총회회원권을 박탈하지 못한다. 정상적인 은퇴 연령이 되었거나 은

퇴를 요청할 당시에 사역에 재직하고 있던 교역자는 “재직 중 은퇴” 신분이 된다. “재직 중 은퇴” 신분인 교역자는 총회연차회의의 대의원이다. 그러나 위의 두개의 방법으로 은퇴 요청할 당시에 “무임직” 상태였던 교역자는 “무임직 은퇴” 신분이 된다. “무임직 은퇴” 목회자는 총회연차회의의 대의원이 아니다. (201, 538.9)

**536.2.** (재직 혹은 무임직) 은퇴교역자는 매년 총회연차회의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은퇴교역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의 추천으로 총회연차회의는 그 은퇴교역자에게 “면제상태”를 부여하므로 연례 보고서 의무를 평생 수행한 것으로 한다. (538.9)

## 제7절 교역자의 이적

**537.** 성직자회원이 다른 총회로 이적을 원할 때는 교역자 회원권이 있는 총회연차회의의 투표 혹은 총회연차회의의 기간 사이에는, 총회고문회에 의해서 교역자 이적서가 발급된다. 그러한 교역자의 이적서는 총회연차회의의 전에 총회고문회에서 접수하여 상기 교역자에게 목회심의부 및 총회연차회의의 최종 승인을 전제로 이적서가 접수된 총회의 회원으로서의 완전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한다. (205.8-205.9, 226, 231.9-231.10)

**537.1.** 인정교역자의 이적은 이적서를 발급하는 총회목회연구부 서기가 적합하게 인증한 총회 인정교역자를 위한 인증된 교과과정의 상세한 성적표가 접수하는 총회목회연구부 서기에게 보내졌을 때에만 유효하다. 접수하는 총회목회연구부 서기는 해당 인정



교역자의 성적표가 접수되었음을 소속 총회총무에게 알려야 한다. 이적한 교역자는 접수하는 총회에 인증된 교과과정의 성적을 보고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33.1-233.2)

**537.2.** 이적서를 접수한 총회연차회의는 이적서를 발급한 총회연차회의에 이적된 사람의 회원권 접수를 통고한다. 그러나 접수 총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이적서가 수락되기 전까지는 이적 희망자는 발급 총회의 회원이다. 이런 이적요청은 이적서를 발행한 날짜 다음에 열리는 이적요청을 받은 총회연차회의 폐회까지 유효하다. (205.8, 226, 231.10)

## 제8절 일반규정

**538.** 다음의 용어 정의들은 나사렛성결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한 일반 규정에 관계된 것들이다.

**성직자회원** - 장로목사, 사역목사, 그리고 인정교역자.

**평신도** - 교역자가 아닌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

**활동중** - 지정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직자.

**재직** - 성직자회원의 신분으로 장정 505-528조에 열거된 역할 중 어느 한 가지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

**무임직** - 무효한 상태의 성직자회원이 장정 505-528조에 열거된 역할 중 어느 한 가지도 현재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

**재직 중 은퇴** - 은퇴를 요청한 당시에 사역에 재직 중에 있던 성직자.

**무임직 은퇴** - 은퇴를 요청한 당시에 사역에 재직 중이 아니었

던 성직자.

**교역자 명부** - 성직자회원으로서 무효한 상태에 있고 자신의 인증서를 반납하지 않은 총회 인정교역자와 안수목사 명부.

**무효** - 미해결된 고소 건이 없고, 현재 징계를 받고 있지 않은 성직자회원의 상태.

**제적** - 자격증을 반납하였거나, 사직 또는 인증서를 포기한 성직자의 이름 혹은 인증서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성직자의 이름을 사역자 명부에서 퇴출하는 총회연차회의의 조치.

**징계 중** - 징계를 받아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상실한 성직자회원의 상태.

**자격정지** - 성직자자격을 배제함으로 성직자자격 복권을 위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성직자의 회원됨의 권리, 특권, 책임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징계조치의 일부분.

**퇴출됨** - 성직자 자격이 취소되어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권이 제거된 성직자의 상태.

**반납한 인증서** - 사역활동 중단으로 인해 자신의 인증서를 국제총회총무에게 반납함으로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그리고 책임을 포기하는 무효한 상태의 성직자회원의 인증서. 자신의 인증서를 국제총회총무에게 반납한 자는 성직자회원권을 유지하고, 539.10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인증서를 돌려받음으로서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와 특권, 그리고 책임이 회복될 수 있다. (539, 539.1)

**제출된 인증서** - 위법행위, 고소, 진술, 징계위원회로부터의

조치결과, 혹은 사역활동 중지 외에 다른 이유로 인한 자발적 행동 때문에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을 상실한 성직자회원의 인증서 상태. 인증서를 제출한 자는 징계 중인 성직자회원이다.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은 무효한 상태로의 회복과 인증서를 돌려받음으로 복귀된다.

**포기한 인증서** - 교회의 평신도회원이 되기 위해서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을 포기한 성직자회원의 인증서 상태. 무효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성직자회원은 총회고문회의 허락에 의해서만 인증서를 포기할 수 있다. (539.1, 539.5)

**취소된 인증서** -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권과 사역으로부터 퇴출된 성직자회원의 인증서 상태. 교역자 자격인증이 취소된 교역자의 이름은 교역자 명부에서 제적된다.

**인증서 반환** - 본인의 인증서가 반납, 자격정지, 제출, 포기, 혹은 취소된 교역자에게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의 복원이 이루어질 때 함께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회복** -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을 상실한 교역자와 배우자 및 가족의 건강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과정. 회복을 위한 노력은 교역자 자격인증서의 복원이 적절하고 바람직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과는 별개로 수행되어야 한다.

**복원** - 무효한 상태로의 회복과 모든 요구되는 승인들을 조건으로, 인증서 반납, 자격정지, 제출, 포기, 혹은 취소된 목회자

에게 성직자회원으로서의 권리, 특권, 책임을 부여하는 것.

**고발** - 최소한 두 명 이상의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이, 그 사실성이 입증되는 경우, 장정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이 되는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의 행실을 고소하기 위해서 서명한 기록 문서.

**지식** - 자기 자신의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배워서 인식한 사실들.

**정보** -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 사실들.

**신념** -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얻은 선의의 결론.

**조사위원회** - 제기되고 의심되는 부도덕한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장정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

**기소장** - 그 사실성이 입증되면 장정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이 되는 특정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의 행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는 기록문서.

**538.1.** 성직자회원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총회의 고문회와 국제총회감독회의 서면 승낙이 없이 다른 종교단체와 함께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교회활동을 하는 성직자회원은 징계대상이다. (538.13. 606.1)

**538.2.** 성직자회원은 언제나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통일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519)

**538.3.** 장애가 있거나 노년이 된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후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현재 혹은 장차 갖게 된 어떤 대책이나 기금에 대해 성직자회원이나 혹은 목회자의 부양가족의 참여 수혜요

청은 총회연차회의의 승인을 받은 임직된 목회자, 부흥사 혹은 다른 인정된 역할로 교역자가 정기적이고 활발히 사역한 것만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 모든 시간제 혹은 임시로 사역한 자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538.4.** 나사렛성결교회의 담임목회자나 부교역자로 임직되어 활동하는 인정교역자는 투표권이 있는 총회의 대의원이다. (201)

**538.5.** 장로목사 직과 사역목사 직에 피선된 후보자는 의장인 국제총회감독의 주도로 적절한 종교예식을 통해 국제총회감독과 장로목사들에 의해 안수를 받는다. (307.4)

**538.6.** 관할 국제총회감독은 안수받은 자에게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총회감독 그리고 총회총무가 서명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535.1)

**538.7.** 안수목사 혹은 사역목사의 안수증이 분실, 훼손 혹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총회고문회의 제청으로 사본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청은 직접 관할 국제총회감독에게 해야 하며, 그렇게 인가한 권한에 따라서 국제총회총무는 사본을 발급한다. 사본 뒷면에는 “사본”이라는 말과 함께 고유번호가 명기되어야 한다. 원본에 서명한 국제총회감독, 총회감독, 총회총무가 서명할 수 없다면 사본을 요청하는 총회의 관할 국제총회감독, 총회감독과 총회총무가 사본에 서명한다. 그것의 사본 이면에는 아래의 내용이 글씨 혹은 인쇄로 적혀지고 관할 국제총회감독, 총회감독과 총회총무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 증서는 (신청인)이 안수를 받았던 주후 \_\_\_\_\_년 \_\_\_\_월

\_\_\_일에 (안수하는 조직)에 의해서 (신청인)에게 발급되었던 안수증 원본을 대신하여 주어진 것이며, 그 원본은 (국제총회감독), (총회감독)과 (총회총무)가 서명하였다. 안수증 원본은 (분실, 훼손, 파손)되었다.

국제총회감독 \_\_\_\_\_

총회감독 \_\_\_\_\_

총회총무 \_\_\_\_\_

**538.8.** 모든 (임직과 무임직) 목회자는 나사렛성결교회 개교회에서 활동 중인 회원이 되어 출석과 십일조, 그리고 교회 사역에 충실히 참여해야 한다. 이런 요구 사항의 예외는 오직 총회고문회의 허락으로 부여될 수 있다. 본인의 인증자격이 등록되어 있는 총회 내의 나사렛성결교회 개교회 회원권을 보유하지 않고 어떤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성직자회원은 총회고문회의 조치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된다. (522, 538.10)

**538.9.** 모든 장로목사와 사역목사는 그들의 교회 회원권이 등록되어 있는 총회연차회의에 교역자 대의원권을 가지며, 이 총회연차회의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장로목사 혹은 사역목사로서 연속 2년간 직접 또는 서신으로 총회연차회의에 보고하지 않을 때에는 총회연차회의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 회원권을 상실한다. (201, 205.3, 521, 536.1)

**538.10.** 본인의 목회자의 회원권이 등록되어 있는 총회고문

회의 허락을 얻지 않고 나사렛성결교회 외의 교회, 교단, 기독교 사역에 연합하는 성직자회원의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권은 정지된다. 총회연차회의는 회의록에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도록 한다. “다른 교회, 교단 혹은 사역과 연합하였으므로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권과 사역에서 퇴출됨.” (107, 112)

**538.11.** 무효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개교회 회원 탈퇴 혹은 퇴출된 성직자회원은 회원권 탈퇴 혹은 퇴출된 총회의 총회고문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나사렛성결교회에 재가입 할 수 있다.

총회고문회는 이전에 교역자였던 자가 교회의 평신도로 남아 있는 조건으로 동의해 줄 수 있고, 또는 총회감독과 관할 국제총회 감독의 승인을 받아, 징계 상태인 성직자회원이 되어 회복과정에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참여하겠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동의해 줄 수 있다. (539.6)

**538.12.** 총회연차회의의 교역자명부에서 이름이 제적되고 목회자 인증서를 반납하지 않은 장로목사나 사역목사는 교역자명부에서 이름이 제거된 총회연차회의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면,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총회연차회의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 총회고문회는 연차회의의 사이에 요청받는 관할총회 이적 요구를 결정한다. (538.11)

**538.13.** 성직자회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매년 총회고문회의의 서면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 나사렛성결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독립교회 활동을 정규적으로 수행하는 일

- \* 독립선교활동이나 무인가 교회활동을 수행하는 일
- \* 독립교회 혹은 다른 종교단체, 기독교사역, 혹은 교단의 운영자들과 연계하는 일.

성직자회원이 이러한 요구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해당 교역자는 총회목회심의부 혹은 총회목회부 전체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청되고 총회연차회의의 조치에 의해서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권과 사역에서 퇴출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활동이 “독립선교활동” 혹은 “무인가 교회활동”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제총회감독회에서 한다. (112-112.1, 532.9)

**538.14.** 독립적인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성직자회원에게 그 활동을 승인하기 전에, 그 참여활동이 하나 이상의 총회이거나, 성직자회원권이 등록되어 있는 총회와 다른 총회일 때 총회고문회는 국제총회감독회의 서면승인을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국제총회감독회는 관련 총회고문회들에게 상기한 승인요청이 계류 중임을 통고해야 한다.

**538.15.** 임직교역자는 총회감독이나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승낙이 있을 때 개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정식 개교회 조직에 대한 보고는 총회감독에 의해 국제총회총무 사무실에 제출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100, 211.1)

**538.16.** 총회 내의 회원권은 직책에 의해 담임목회자나 다른 사역에 임직된 교역자로서 장정 505-5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직 사역 역할 중에 하나를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그 사역을 자신의 주된 직업으로 유지하는 교역자가 됨으로 인해 가지게 된다.



**538.17.** 상담과 권면, 또는 영적 지도의 과정 중에서 교역자가 알게 된 정보는 가능한 가장 엄격히 비밀로 지켜져야 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 상담자의 사전 고지된 동의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속히 교역자는 비밀유지가 깨어질 수 있는 다음 상황들을 밝혀야 한다.

1.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실제적 위협이 있는 경우.
2.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또는 법에 명시된 취약한 사람에게 범해지는 학대나 방치의 의심이 들 경우. 보고의 정확성을 규명하고 그 보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보고자의 책임이 아니다. 단지 관련 당국에 혐의사항을 보고하는 것뿐이다. 미성년자는 해당 국가의 법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가 더 늦추어지지 않는다면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된다.
3. 증거를 제공하라는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교역자는 내용 공개에 대해 사전고지하고 받은 동의서 기록을 포함해서 회동한 내용의 최소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의 신원과 비밀유지가 확실히 보호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에만, 직업상 접촉으로 알게 되는 지식은 교육, 집필, 설교, 또는 공중 강연에 사용될 수 있다.

미성년자를 상담할 동안, 교역자가 그 미성년자의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있음을 알게 되고, 비밀정보를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이의 건강과 심신의 안녕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경우, 교역자는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

**538.18.** 모든 장로목사나 사역목사들은 총회목회연구부에서 관리하는 평생교육과정에 매년 20시간은 참여하여야 한다. (529.6)

**538.19.** 교역자는 신중한 상담을 통해 자격이 검증된 사람들과 성경에 기초한 결혼관을 가진 자들의 결혼식을 엄숙히 거행한다. 성경적인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31, 515.9)

**538.20.** 각 총회는 성직자답지 않는 행동에 연루된 성직자회원들, 그들의 가족, 그리고 관련된 모든 회중에게 시기적절하고, 동정심을 갖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대응을 하기 위한 서면으로 된 종합 계획을 만들어 해마다 검토해야 한다. 이 총회 계획안은 장정의 지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을 행사할 권리가 중지된 교역자의 사실과 상황에 따른 신분 변화 기록을 만들고 보존하기 위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이 기록은 모든 서신과 문제가 있는 성직자회원의 신분과 관련된 공적 조치들과 540.1조 규정에 따라 회복팀으로 선출된 사람들의 이름과 임명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225.5)

## **제9절 교역자 인증서의 반납, 포기 또는 취소**

**539.** 국제총회총무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역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인증서를 반납해 두고자 하는 무효한 상태의 성직자회원들의 인증서를 받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인증서를 접수할 때 목회자의 소속 총회고문회는 국제총회총무에게 반납되는 인증서가 징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증

해주어야 한다. 인증서를 반납하는 것이 성직자회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국제총회총무에게 자신의 인증서를 반납해 둔 성직자회원은 복직될 수 있다. (539.10)

**539.1.** 은퇴 신분을 부여받지 못하고 4년 이상 연속으로 무임직 상태로 남아있는 무흠 성직자회원은 더 이상 성직자회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되며, 인증서의 반납이 요구된다.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는 “(문제가 있는) 장로목사나 사역목사의 인증서는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에 의해 반납됨”이라고 총회연차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조치는 성격상 아무런 불리한 편견 없이 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인증서를 반납한 자는 복직할 수 있다. (539.10)

**539.2.** 무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안수목사가 나사렛성결교회의 성직자회원이 아닌 다른 소명과 직업을 추구하기 위해 임직 사역을 그만 두면, 그 교역자는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을 포기할 수 있다. 교역자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총회연차회의는 해당 교역자의 인증서를 받아서 그것을 국제총회총무가 관리하도록 한다. 총회 의사록에는 “교역자가 사역직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총회 교역자명부에서 제적함”이라고 기록한다. 이렇게 포기한 성직자회원은 본인의 인증서를 돌려받을 수 있다. (539.11)

**539.3.** 안수목사가 성직자회원으로의 사역 활동을 하지 않고 정규 세속 직업을 갖고 있으면, 2년이 경과한 후 해당 교역자는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에 의해 성직자회원 신분의 포기나 본인의 인증서를 국제총회총무에게 반납할 것을 요청받는다. 이 2년

의 기간은 성직자회원으로의 사역을 멈춘 후 열리는 총회연차회의  
부터 시작된다.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는 이 조치를 총회연  
차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조치는 성격상 아무런 불리한 편견없  
이 된 것으로 여긴다.

**539.4.** 만일 교역자가 총회목회심의부 혹은 총회목회부에 등  
록된 거주지에서 새 주소지로 등록거주지 변경을 1년 이내에 하지  
않거나, 532.8조와 538.9조에서 요구되는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직자회원의 권리, 특권, 책임이 중지되고 그 교역자의 이  
름은 교역자 명부에서 제거될 수 있다. 이러한 중단 조치는 총회목  
회심의부 혹은 총회목회부의 책임이다.

**539.5.** 소속된 개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그 다음 총회연  
차회의까지 또 다른 나사렛성결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성직자회원  
이나, 나사렛성결교회를 떠난다고 서면으로 신고한 교역자나, 다른  
교단의 회원 혹은 교역자로 연합한 자로서 교역자 인증서를 포기하  
지 않은 자는 총회목회심의부 혹은 총회목회부의 제청과 총회연차  
회의의 결의로 나사렛성결교회 사역에서 퇴출되며, 교역자 명부와  
개교회회원 명부에서 이름이 제적될 수 있다. (111.1, 815)

**539.6.** 무효한 상태가 아닌 성직자회원은 총회고문회의의 허락  
을 받아야만 인증서를 포기할 수 있다.

**539.7** 성직자회원은 장정 539.5조와 540.10조의 규정이나  
606-609조에 따른 징계조치를 통하여 나사렛성결교회 사역에서  
퇴출될 수 있다.

**539.8.** 장로목사나 사역목사가 퇴출되면 그 성직자회원의 인

증서는 퇴출당시 장로목사나 사역목사 회원권을 갖고 있던 총회연차회의의 결의에 따라 분류되어 보존되도록 국제총회총무에게 보내져야 한다. (326.5)

**539.9.** 개교회 내에서 임직을 결정하는 목회자, 개교회 실행 제직회 및 관계된 자들은 신뢰와 권한이 있는 어떤 사역이나 직무 (예를 들면 예배인도, 주일학교 교사, 성경공부나 소그룹 인도)에 무흠한 상태가 아닌 성직자회원이 무흠한 상태를 회복할 때까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이런 금지조치의 예외는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을 상실했을 당시에 회원으로 있었던 총회감독과 그 총회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서면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허락된다. (540.4)

**539.10. 인증서를 반납한 교역자 복직:** 무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장로목사 혹은 사역목사가 자신의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역자의 인증서는, 이후 언제든지 장로목사 혹은 사역목사가 무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인증서를 돌려주는 것에 대해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의 추천을 받아서 본인의 인증서를 반납한 총회연차회의의 결의로 장로목사 혹은 사역목사에게 돌려줄 수 있다. 총회연차회의의 사이에는 총회고문회의가 교역자의 인증서를 돌려주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표결할 수 있다.

**539.11. 포기 혹은 취소된 인증서의 복권:** 무흠한 상태에서 자신의 교역자 인증서를 포기하였거나 다른 교회, 교단, 혹은 사역에 연합하므로 교역자 자격이 취소된 장로목사 혹은 사역목사는 총회감독과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사전승인을 얻고, 총회목회심의회

혹은 총회목회부를 통해 사역을 위한 재다짐, 검증 그리고 복직을 위한 추천을 받아서, 안수/인정 질문지를 총회연차회의에 제출함으로써 교역자 인증서를 돌려 받을 수 있다. (539.2)

**539.12.** 사망한 교역자의 안수증은 그 교역자가 안수증을 반납하였고 사망 시 무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국제총회총무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안수증을 반납한 기록이 있는 총회감독의 승인을 받아 그 교역자의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다.

**539.13. 별거/이혼:** 교역자의 이혼 신청 혹은 결혼의 법적 종료/별거신청 후 48시간 내에, 또는 육체적 동거를 중단하기 위해 배우자와 육체적으로 분가한지 48시간 내에, 교역자는 (a) 총회감독에게 일어난 일을 알린다. (b) 총회감독과 한명의 총회고문회 위원과 합의된 장소와 시간에 만날 것을 동의한다. 만일 시간과 장소를 합의할 수 없으면 총회감독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난다. (c) (“b”에서 지정된 만남에서) 목회자는 일어난 일의 정황, 결혼생활의 불화, 그리고 왜 무흠한 상태의 성직자회원으로 계속적인 사역이 허락되어야 하는지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만일 교역자가 상기 요구사항에 불응하였을 경우, 그런 불이행은 곧 징계의 사유가 된다. 모든 교역자들은 활동 중이거나 비활동 중이거나, 은퇴했거나, 재직 중이거나 비재직중이거나, 이 규정의 대상이 되며,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의 통일된 충고를 존중해야 한다. 활동 중이거나 재직 중인 교역자는 총회고문회의의 찬성 득표 없이 어떠한 성직자회원의 역할도 계속할 수 없다.

## 제10절 성직자회원의 회원권 회복

**540.** 나사렛성결교회는 자발적이든 그렇지 않은 교역자답지 않은 행동 때문에 교역자 인증서를 포기하고,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을 상실한 나사렛성결교회 교역자에게 하나님의 구속적이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치료와 소망을 베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나사렛성결교회는 그 교역자의 배우자와 가족, 회중과 공동체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이유로 교역자의 무흠한 상태로의 회복을 향한 과정은 특정한 두 개의 단계로 시행되어야 한다.

1. **회복:** 교역자 위법행위의 엄중함과 관계없이 사역으로의 최종적인 복귀 가능성, 도움을 주기 위한 은혜와 제안에 대한 초기 수용여부, 교역자의 안녕(영적 그리고 다른 면에서도)의 회복과 그 배우자와 가족의 회복은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신실하게 540.1-540.7조에 따라 총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회복이 이 단계의 유일한 목적이다.
2. **복권:** 교역자의 무흠한 상태 회복과 인증서를 돌려주기 위한 추천은 교역자와 배우자 및 가족의 건강과 안녕의 회복을 추구하는 노력이 있는 후에, 그 노력과는 구별된 과정이다. (540.6-540.12)

**540.1. 회복팀 임명:** 교역자의 위법행위가 명백할 때, 동정적이고 시기적절한 특별한 대응은 그 교역자와 배우자, 가족, 회중, 공동체를 위하여 아주 중요하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

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원활한 회복에 도움을 줄 자격을 갖춘 교역자와 평신도를 미리 선발하고 준비하는 것은 총회 대응계획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 사람들은 총회고문회의 자문을 받아 총회감독에 의해서 임명되어야 한다. 교역자의 위법행위 상황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회복팀이 되어서 가능한 한 바로 총회감독에 의해서 그리고 총회 계획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배치된 회복팀은 적어도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11.20, 225.5, 540)

**540.2. 회복팀의 의무:** 회복팀은 위법행위를 범한 교역자, 배우자,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원활히 회복하게 하는 책임이 있다. 회복팀은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이 그 교역자에게 회복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도 권위도 없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회복팀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1. 해당 교역자뿐 아니라 교역자의 배우자와 가족까지 돌보는 일.
2. 회복의 과정과 목적을 교역자와 배우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일.
3. 위법행위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긴급히 일어나는 재정, 주거, 건강, 감정, 영적, 그리고 다른 필요한 것들을 다룰 계획을 만드는 일에 관계된 교역자, 총회와 회중, 모두의 노력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일.
4. 총회 승인 계획안을 시행하면서, 교역자와 배우자,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의 회복계획 안에서 회복팀이 하는 일들과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일.



5. 회복팀의 일이 마칠 때가 되었거나, 진행해야 할 과정이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교역자, 배우자, 총회감독과 적절한 총회부서에 알리는 일.
6. 해당 교역자가 성직자회원의 권리, 특권, 책임의 복권을 요청을 하였을 때, 복권을 고려할 책임이 있는 총회고문회, 총회목회심의회, 총회목회부, 혹은 복권을 다루기 위해 임명된 위원회에게 무효한 상태로의 회복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회복팀의 추천서를 제출하는 일. (540.8)

**540.3.** 징계 중에 있는 교역자가 회복과정에 반응이 없거나 없어지게 될 경우, 교역자가 회복과정에 참여하도록, 혹은 다시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교역자의 배우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 더욱 부지런한 노력해야 한다.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점검하고, 교역자의 배우자와 가족의 안녕에 적절한 고려를 하면서 총회감독은 회복의 노력을 중지, 종료 또는 회복노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교역자가 징계를 받았던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총회가 회복팀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된 회복팀이 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필요하다면 징계받은 교역자는 성직자회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무효한 상태 회복 요청과 성직자회원으로서의 권리, 특권, 책임의 복권여부를 다룰 책무를 다른 총회로 옮기도록 국제총회감독회에 청원할 수 있다. 총회가 무효한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 교역자도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 (540-540.2, 540.4-540.12).

**540.4.** 무흠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성직자회원은 설교, 예배인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성경공부 혹은 소그룹 인도와 같은 권위있고 신뢰할만한 지위를 교회 내에서 가질 수 없다. 이런 교역자는 그 교역자에게 지정된 총회임명 회복팀의 호의적인 추천서와 총회고문회, 총회목회심의부 혹은 총회목회부, 총회 감독과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만 이러한 역할로 섬기거나 사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호의적인 추천은 교역자 개인과 배우자와 가족이 회복 과정에서 충분한 진보를 이루어 권위있고 신뢰할만한 지위에서 사역을 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결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권위있고 신뢰할만한 지위에서 섬길 수 있게 하는 승인은 제한적 혹은 무제한적으로 허락될 수 있으며, 회복팀의 자문을 받아 총회감독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606.1-606.2, 606.5, 606.11-606.12)

**540.5.** 징계를 받은 교역자가 무흠한 상태로의 회복을 요청을 하면(540.6), 회복팀은 그 교역자의 요청이 540.8조의 조항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을 추천하든지, 혹은 해당 교역자가 재신청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기간 동안 회복의 과정을 계속해야 할 것을 총회감독, 적합한 총회 위원회 혹은 임명된 위원회에게 추천할 수 있다.

회복팀이 노력을 끝냈고 징계 중에 있는 교역자가 무흠한 상태로의 회복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교역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없다면 징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 1)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과 사역에서 그 교역자를 퇴출하는

일.

2) 교역자의 자격을 포기하고 나사렛성결교회의 평신도 회원이 되도록 그 교역자를 승인하는 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의 증거가 있는 징계를 받은 교역자가 인증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인정과 축복 속에 이루어지게 한다. (539.5, 540.10)

**540.6. 무흡한 상태 회복신청:**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을 상실한 교역자가 무흡한 상태 회복과 540.7조의 자격요구 조건들에 따라서 자신의 인증서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반드시 다음 총회연차회의 최소 6개월 전에 총회감독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승인된 계획안을 따라야 한다. 총회감독은 30일 이내에 그 요청이 접수된 것을 인가해야 한다.

**540.7. 교역자는 담당 회복팀의 호의적인 지지와 적어도 2년 동안 회복팀의 감독을 받아 회복과정에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참여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무흡한 상태 회복과 자신의 인증서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최소 4년 동안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그런 회복과정에 참여하려고 노력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역자는 담당 회복팀의 호의적인 지지 유무와 상관없이 무흡한 상태로의 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 하에 있는 교역자가 처음부터 회복과정에 참여하기를 추구해왔다면, 무흡한 상태 회복신청 전에 필요한 최소 기간의 시작은 교역자와 회복팀과의 공식적인 처음 만난 날과 교역자에게 담당 회복팀이 정해진 날짜 이후 60일째 되는 날 중에서 빠른 날짜에서

부터 시작한다. 교역자가 회복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경우, 총회감독은 회복팀의 자문을 받아 무흡한 상태 회복 신청 이전에 필요한 최소 기간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538, 540.3).

**540.8. 교역자 자격 유지회복 신청에 대한 대응:** 총회목회연구부, 총회목회부, 혹은 총회감독이 임명한 같은 권한을 갖는 위원회는 총회감독이 접수한 무흡한 상태 회복 신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1. 제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유효한 신청인지 확인한다.
2. 담당 회복팀의 추천을 받아서 평가한다.
3. 무흡한 상태 회복을 원하는 교역자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과 면담한다.
4.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의 회복과 인증서를 반환할 것인지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총회연차회의가 열리기 최소 180일 전에 신청서가 제출될 때, 그 신청 검토가 이루어지고, 총회연차회의 전에 총회감독에게 추천된다. 성적인 위법행위 때문에 자격이 중지된 교역자에게 성직자회원의 권리, 특권, 책임을 회복시키는 추천은 총회고문회의 3분의 2찬성이 필요하다. 그 추천은 교역자가 무흡한 상태 회복신청을 한 최근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총회감독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정하여진 기간의 예외는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사전 서면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540.2, 540.3, 540.6, 540.7, 540.12)

**540.9. 미성년자와 관계된 성적 위법행위를 범한 사람은 성**

직자회원으로 무흠한 상태로 회복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교역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허락되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를 책임지는 어떤 위치 혹은 미성년자와 함께 하는 사역에서 봉사해서도 안 되고, 개교회에서 어떤 지도하는 역할에 선출되거나 임명되어서도 안 된다. 미성년자는 해당 국가의 법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가 더 늦추어지지 않는다면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된다. (129.30, 600, 606.1-606.2, 606.5, 606.11-606.12, 916).

**540.10.** 총회목회심의부나 총회목회부 혹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된 교역자의 무흠한 상태 회복신청을 검토한 후 다음 사항들 중 하나를 총회감독과 적합한 총회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1. 해당 교역자는 무흠한 상태로 회복시키고, 인증서를 돌려주어야 한다.
2. 해당 교역자는 무흠한 상태로의 회복을 재신청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 회복과정을 계속한다.
3. 회복기간이 연장되어야 하고 수정된 회복계획을 실행한다: 관찰을 받으면서 사역에 재참여 시도, 새 회복전담팀 구성, 혹은 개인, 결혼관계, 가정의 문제 해결 등.
4. 해당 교역자의 징계를 유지한다.
5. 해당 교역자는 무흠한 상태로 회복되는 대신에, 적절한 회복의 증거가 인정되고 축복 속에 인증서를 포기하는 것이 허락된다.
6. 해당 교역자는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과 사역으로부터 퇴

출된다.

**540.11.** 징계 중에 있는 교역자의 회복신청이 두번 거절된다면, 문제가 있는 교역자의 무효한 상태 회복여부 요청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총회로의 이적요청을 국제총회감독회에서 허락할 수 있다. 만약 무효한 상태 회복과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의 복권을 위한 세번째 신청이 거절되면, 그 교역자는 총회고문회의 승인으로 평신도가 될 수 있다. (538.13, 539.6)

**540.12.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의 복권:** 무효한 상태의 지위를 상실하였던 성직자회원이 제출한 무효한 상태 회복요청이 성직자회원으로의 권리, 특권, 책임의 복권을 위한 추천으로 결정되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서만 무효한 상태로 회복되고 인증서를 돌려받는다.

1. 총회감독의 승인.
2. 총회목회심의부 혹은 총회목회부의 승인.
3. 총회고문회의의 2/3 찬성.
4. 국제총회감독회의 승인.
5. 무효한 상태의 지위를 잃었던 총회연차회의에서의 승인.

(606.1-606.2, 606.5, 606.11-606.12)

# 제 7 부

# 사 법 행 정

- 제 1 장 과실일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교회의 징계 절차
- 제 2 장 과실일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조치
- 제 3 장 신뢰나 권위를 부여받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과실에 대한 조치
- 제 4 장 평신도 항소 절차
- 제 5 장 목회자 항소 절차
- 제 6 장 절차 규약
- 제 7 장 총회소청부
- 제 8 장 국제총회소청부
- 제 9 장 지구소청부
- 제 10 장 권리 보장





## 제 1 장 과실일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교회의 징계 절차

600. 교회 징계의 목적은 교회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무고한 자들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회가 증거하는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보호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을 경계하며 바로잡고,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회복시키고, 회복된 사람들을 효과적인 봉사자로 다시 세우고, 교회의 명예와 자원을 보존하는데 있다. 교회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일반규약이나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을 위반하는 사람이나 회원의 서약을 고의적이고 계속적으로 범하는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의 정도에 따라 온정을 갖고 그러나 책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마음과 생활의 성결은 신약 성경의 표준이다. 나사렛성결교회는 정결한 사역을 주장하며, 성직자로서의 인증서를 가진 사람에게는 교리적으로는 정통적이고, 생활에서는 성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징계의 목적은 처벌이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다. 교회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징계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제 2 장 과실일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조치

**601.** 분별력있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정보를 거기에 대응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알게 되면 언제든지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별력있는 사람의 판단에 교회 내에서 신뢰받고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과실로 인해 교회나 잠재적 피해자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초래될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601.1.** 분별력있는 사람의 생각에 신뢰할만하고, 분별력있는 사람의 판단에 신뢰받고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잘못된 행위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만한 정보를 대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알게 되면,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대응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교회의 대표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601.2.** 잘못된 행실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과실에 연루된 사람(들)의 교회 내의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연루된 자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
비회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교회의 담임목회자
평신도의 경우	그 평신도가 회원인 교회의 담임목회자
성직자의 경우	해당 성직자가 회원으로 있는 총회의 감독 (총회고문회와 함께), 혹은 해당 성직자가 부교역자로 있는 교회의 담임목회자

총회감독의 경우 | 관할 국제총회감독  
지구장 | 관할 국제총회감독  
필드전략코디네이터 | 관할 국제총회감독  
달리 정의되지 않은 경우 | 국제총회총무

대응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또한 시기적절하게 그 고소에 대해서 총회, 필드, 지구, 그리고(또는) 국제적인 차원의 관련 지도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사실 조사나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는 일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01.3.** 고소가 없다면, 조사의 목적은 피해를 방지하거나, 이미 일어난 피해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다. 분별력있는 사람의 생각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이미 일어난 피해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고소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조사는 계속되지 않는다. 조사 기간 중에 밝혀진 사실들은 고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제 3 장 신뢰나 권위를 부여받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과실에 대한 조치

**602.** 신뢰나 권위를 부여받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잘못으로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알게 되면, 교회로 하여금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라 함은 과실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피해자와 피고소인,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돌봐주는 것을 말한다. 피고소자의 배우자와 가족의 필요를 살피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개교회, 총회 그리고 교단의 대외관계, 법적책임으로부터의 보호와 교회의 도덕성 보호의 필요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교회를 대표해서 응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민법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대응하는 교회의 책무는 기독교적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개교회 실행제직회나 총회고문회의 조치없이 개교회나 총회의 재정적 책임을 인정할 권한은 없다. 어떤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602.1.** 각 개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는 실행제직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실행제직회가 열리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교회마다 비상조치

계획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602.2.** 각 총회의 경우 일련의 위기 대응의 주요 책임은 총회고문회에 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총회고문회가 열리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총회는 비상조치 계획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은 전문 분야별 자격을 가진 상담가, 사회 복지사, 숙달된 의사소통 전문가와 관련법규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총회고문회에서 임명하는 대응팀이 포함될 수 있다.

**603. 교회 내 분쟁 해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의견 충돌은 삶의 한 부분이며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충돌이 회중을 분열시키거나 교회의 교제를 방해하는 분쟁이 될 때, 바른 분별을 위한 비공식적인 노력이 어떤 공식적인 절차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목적은 해결과 화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603.1. 비공식적 과정:** 교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좇아서 바른 판단과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기도도로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기도도로 채워져 가야 한다. 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은 화해의 소망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서로에게 다가가야 한다.

**603.2. 공식적 과정:** 이 비공식 과정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당사자들은 공식적 화해 과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문

제는 교회 내에 성숙하고 편견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의해 중재되어야 한다.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이 그룹은 604조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를 추천할 수 있다.

**604. 징계 문제의 합의에 의한 해결:** 본 장정에 규정된 징계 절차는 피고소자가 고소 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실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해결 절차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징계와 관련된 문제는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계 문제를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가능한 한 모든 경우에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604.1. 개교회의 징계위원회 관련 사안들은** 실행제직회와 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어 피고소인과 담임 목회자가 동의해 작성한 합의서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합의한 조건은 개교회의 징계위원회의 조치와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604.2. 총회 징계위원회의 관련 사안들은** 총회고문회와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동의를 얻어 피고소인과 총회감독이 동의해 작성한 합의서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합의한 조건은 징계위원회의 조치와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 4 장 평신도 항소 절차

**605.** 만일 어떤 평신도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러한 고발은 적어도 6개월 간 교회에 충실히 출석해온 최소 2명의 교회 회원의 작성과 서명이 있어야 접수된다. 목회자는 총회감독의 승인을 얻어 그 교회의 회원 3명을 조사위원회로 임명한다. 이들은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실행제직회에 제출한다.

조사와 이에 준한 절차가 끝나면 교회 무흠한 회원 중 두 사람이 피의자의 혐의에 서명을 하여 실행제직회에 제출한다. 이 때 실행제직회에서는 총회감독의 승인 하에 이 사건을 편견없이 공명정대하게 청취하여 처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 5명을 임명, 개교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만일 총회감독이 생각하기에 교회의 규모나, 고소 내용, 그리고 피고소인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교회에서 5명의 위원을 선정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담임목회자와의 협의를 거쳐 같은 총회 내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서 5명의 평신도를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징계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가능한대로 빨리 청문회를 갖고 관련된 사안들을 결정한다. 증인들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고려하여 징계위원회는 고소를 기각하든지 적합하게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결정은 반드시 만장일치여야 한다. 징계는 견책, 개교회

회원권 정지 또는 제명 등의 형식을 취한다. (516.8)

**605.1.** 개교회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피고소인 혹은 실행제직회는 30일 이내에 총회소청부에 상소할 수 있다.

**605.2.** 평신도가 개교회 징계위원회에 의해 개교회 회원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그는 총회고문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같은 총회 산하 나사렛성결교회에 재입교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허락을 받았으면 그는 정회원 입회식을 위한 소정 형식에 따라 개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진다. (21, 28-33, 112.1-112.4, 704)

**605.3.**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평신도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잘못된 행실이 발생할 때, 그 영향은 종종 매우 심각하다. 미성년자와 관계된 성적 위법행위를 범한 사람은 미성년자를 위한 책임있는 위치에서, 혹은 미성년자와 함께 하는 사역에서 섬기는 것이 허락되어서는 안되며, 개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의 역할에 선출되거나 임명되어서도 안된다. 주 혹은 국가의 법에서 성년에 이르는 나이가 더 늦춰지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된다. (503.1)



## 제 5 장 목회자 항소 절차

**606.** 나사렛성결교회의 영속성 및 효율성의 상당부분은 성직자의 영적 자질과 품성, 그리고 행동 방식에 달려 있다. 성직자는 교회의 신뢰를 부여받은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과 역할을 위해 힘쓰는 자이다. 성직자들은 그들을 부르신 부름을 받아드리는 것은 그들이 사역하는 자들로부터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을 안다. 이런 높은 기대감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성직자들과 그들의 사역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난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경적 지혜와 성숙한 모습으로 다음의 절차들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606.1.** 어느 성직자가 교역자답지 않은 행위나 나사렛성결교회 신조에 위배되는 교리를 가르친다고 고소가 제기되려면, 고소 당시 무흠한 상태인 최소 2명 이상의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이 작성하고 서명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성적인 과실에 대한 고소는 그 잘못된 성적관계에 관련된 사람은 서명할 수 없다. 서면 고소장은 반드시 피고소인이 회원권을 두고 있는 총회의 총회감독에게 접수시켜야 하며 총회감독은 총회고문회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 고소장은 당 사건의 기록의 일부가 된다. 총회고문회는 고소가 접수되면 가능한 속히 피고소인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서면으로 피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마땅한 전달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법적 서류를 전달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고소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피고소인과 변호인은 그 고소 내

용을 검토할 권리가 있고, 요청할 경우 즉시 고소장 사본을 받아 볼 수 있다. (540.4, 540.9, 540.12)

**606.2.** 성직자에 대한 고소장에 서명하는 것은 고소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얻게 된 서명자의 지식, 정보, 그리고 확신이라는 증명서다. (540.4, 540.12)

**606.3.** 서면 고소가 총회감독에게 접수되고 총회고문회에 제출되면 총회고문회는 3명 또는 그 이상의 재직 중인 안수목사와 2명 이상의 평신도로 된 위원회를 임명하여 그 사실과 사실에 얽힌 진상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과반수가 서명하여 서면 보고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한 후 피의 사실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장을 작성하고 안수목사 2명이 서명한다. 총회고문회는 기소장이 접수되면 가능한 속히 피소자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서면으로 피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마땅한 전달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법적 서류를 전달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기소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피소자와 변호인은 그 기소 내용을 검토할 권리가 있고, 요청할 경우 즉시 기소장 사본을 받아 볼 수 있다. 피소자는 상기의 규정에 따라 통고받지 못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죄목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225.3)

**606.4.** 만일 조사가 끝난 후 성직자에 대한 고소가 아무런 사실적 근거없이 악의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고소장이 곧 고소장에 서명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된다.

**606.5.**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총회고문회는 그 총회소속

재직 중인 안수목사 5명과 2명 이상의 평신도를 임명해서 사건을 공청하고 결정을 내리게 한다. 이 사람들은 총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리하며 교회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총회감독은 안수목사나 인정교역자의 고소 시, 기소자 또는 기소자를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징계위원회는 기소된 자에게 피의 사실에 무죄를 선고하거나 방면할 수도, 또는 피의 사실에 응당한 징계를 가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징계의 목적은 징계 대상자로 하여금 구원과 회복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징계의 과정에는 회개, 고백, 보상, 자격 정지 또는 인증서 유예 건의, 사역으로부터 퇴출 혹은 교회 회원권 박탈, 공적이나 사적 견책, 또는 집행 유예 기간 동안 징계의 중단 또는 연기가 포함되는 종류의 적절한 징계를 포함한다. (225.4, 540.4, 540.12, 606.11-606.12)

**606.6.** 피고소인이나 총회고문회가 그렇게하기를 요청할 경우, 징계위원회는 지구 징계위원회가 된다. 각 사건을 위한 지구 위원회는 피소된 교역자가 자신의 회원권을 두고 있는 총회의 관할 국제총회감독이 임명한다.

**606.7.** 어떠한 경우에도 1단계 총회에서는 선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다.

**606.8.** 징계위원회의 판결은 만장일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전 위원의 서명이 필요하고 각각의 고발항목과 구체적 내용에 관해 “유죄” 혹은 “무죄”의 판결을 포함해야 한다.

**606.9.** 본 법이 규정한 징계위원회의 모든 심리는 소청이 제기된 총회 구역 내에서 징계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에서만 집행된다.

**606.10.** 모든 공판 절차는 다음의 조항에 나오는 “절차 규약”에 의하여 집행한다. (225.3-225.4, 532.9, 538.13, 609)

**606.11.** 교역자가 교역자답지 않은 행위로 기소되어 유죄를 시인하거나 혹은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고백하면 총회고문회는 606.5조에 규정된 징계 중 어떤 것도 부과할 수 있다. (540.4, 540.12)

**605.12.** 교역자가 교역자답지 않은 행위로 고소되어 유죄를 시인하거나 혹은 징계위원회 앞에 서기 전에 유죄를 고백하면 총회고문회는 606.5조에 규정된 징계 중 어떤 것도 부과할 수 있다. (540.4, 540.12)

**607.** 징계위원회의 결정 후에 피고소자, 총회고문회 또는 기소장에 서명한 자는 그 판결에 대해 지구 소청부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는 판결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소청부는 그 사건에 관한 모든 기록과 그 사건의 처리를 위해 취해진 모든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소청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잘못을 발견하면, 앞선 절차와 판결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심리를 하도록 하여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

**608.** 징계위원회의 판결이 피소된 교역자의 사역의 정지 또는 인증서의 취소로 결정되면 피소된 교역자는 즉시 모든 사역 활

동을 중단해야 한다. 본인이 이 결정을 거부하면 상소권을 상실하게 된다.

**608.1.** 징계위원회로부터 자격 정지 또는 성직자 인증서 취소 결정이 있고 피소된 교역자가 상소를 원하면, 상소 통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소청부 서기에게 자신의 교역자로서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의 상소권은 그가 이 조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접수된 인증서는 소청부 서기가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소청부의 지시에 따라 인증서를 국제총회총무에게 보내거나 교역자에게 반송한다.

**608.2.** 지구소청부의 판결에 불만족한 피소자나 징계위원회는 국제총회소청부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한 상소의 절차는 국제총회소청부의 다른 상소의 규정 및 절차와 같다.

## 제 6 장   절차 규약

**609.** 국제총회소청부는 모든 산하 징계위원회 및 소청부가 지켜야 할 통일된 절차 규약을 채택한다. 이 규약이 채택, 공포되면 모든 법적 절차의 최고법이 된다. 인쇄된 절차 규약은 국제총회총무에 의해 공급된다. 이 규약에 대한 수정 및 개정은 국제총회소청부가 수시로 채택할 수 있고 채택되고 공포되면 그것은 모든 사건 처리에 효력과 권위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공포된 이후에는 모든 절차를 채택된 개정법이나 수정된 규약에 따라 집행해야 된다. (606.1)

## 제 7 장   총회소청부

**610.** 정식으로 조직된 각 총회는 장정 205.22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2명의 평신도와, 총회감독을 포함하여, 3명의 재직 중인 안수목사로 구성되는 총회소청부를 둔다. 이 소청부는 개교회 징계위원회의 조치와 관련된 개교회 회원의 상소를 심리한다. 상소 통지는 판결이 있는 후 또는 상소인이 판결 결과를 안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 상소장은 총회소청부나 또는 그 위원에게 전달되고 또 그 사본은 해당 개교회 담임목회자와 교회실행제직회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05.22)

**610.1.** 총회소청부는 평신도 징계를 위해 임명된 징계위원회의 판결에 관한 교회나 평신도의 모든 상소를 심리,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제 8 장 국제총회소청부

**611.** 국제총회는 다음 4년간 또는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이 부여되기까지 시무할 5명의 재직 중인 안수목사를 선출하여 국제총회소청부를 구성한다. 국제총회소청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611.1.** 모든 총회 징계위원회 또는 지구소청부의 판결과 처리에 대한 어떠한 상소도 심리하여 판결하는 일. 그러한 상소에 대한 상기 소청부의 판결은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결정이 된다. (305.7)

**612.** 국제총회 사이의 기간에 국제총회소청부에 생긴 결원은 국제총회감독회에 의해 충원 된다. (317.6)

**613.** 국제총회소청부 위원에 대한 경비 지급은 그 위원들이 소청부의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한하여 국제총회재무가 국제총회실행이사회 위원들과 동등한 금액을 지급한다.

**614.** 국제총회총무는 국제총회소청부의 모든 영구 보존해야 할 기록과 판결 결과를 보존하는 관리인이다. (326.4)

## 제 9 장 지구소청부

**615.** 각 지구에는 지구소청부를 둔다. 각 지구소청부는 매 국제총회 이후에 국제총회감독회가 선출한 5명 또는 그 이상의 재직 중인 안수목사로 구성된다. 결원이 생길 경우 국제총회감독회에 의해 충원된다. 지구소청부의 절차 규약은 장정 및 교회 사법규정집에 있는 국제총회소청부의 절차 규약과 같다. 소청부에 회부된 상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족수 5명이 요구된다.

## 제 10 장 권리 보장

**616.** 기소된 목회자나 평신도가 공명정대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부당하게 연기될 수 없다. 무죄자의 허물을 벗겨주고 유죄한 자에게는 징계를 주기 위해서 서면 기소내용을 가지고 사전 심리를 해야 한다. 모든 피고소자는 유죄 판결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기소하는 자는 각 기소 항목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 도덕적으로 분명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죄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616.1.** 국제총회소청부에 상소할 목적으로 교역자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증언의 녹취록을 포함하여 모든 기록을 준비하는 경비는 교역자가 소속되어 있고 징계절차가 진행됐던 총회가 부담한다. 모든 상소하는 교역자는 상소에 대한 서면 주장은 물론 구두 변호를 할 권리가 있다. 단 이 권리는 피고소자의 서면요청으로



포기될 수 있다.

총회소청부에 상소할 목적으로 평신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증인의 녹취록을 포함하여 모든 기록을 준비하는 경비는 그 평신도가 소속되어 있고 징계절차가 진행됐던 총회소속 개교회가 부담한다. 모든 상소하는 평신도는 상소에 대한 서면 주장은 물론 구두 변호를 할 권리가 있다. 단 이 권리는 피고소자의 서면요청으로 포기될 수 있다.

**616.2.** 교역자가 상소할 수 있는 최고의 법정은 국제총회소청부이고 평신도가 상소할 수 있는 최고의 법정은 총회소청부이다.

**616.3** 교역자나 평신도가 잘못된 행위나 교회의 장정을 위반하여 고발되었거나, 기소되어 있는 경우 피고소자는 고소자를 직접 대면하고, 기소하는 증인들에게 반대신문을 할 권리가 있다.

**616.4.** 징계위원회 앞에서 행해지는 증인의 어떠한 증언도 그것이 선서나 엄숙한 언약 아래서 진술한 것이 아니면 증거로 받아들여지거나 고려될 수 없다.

**616.5.** 교역자나 평신도가 사건에 대한 심문을 받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언제나 본인이 선택한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이 경우 변호인은 나사렛성결교회의 무흠한 회원이어야 한다. 정식으로 조직된 교회의 정회원으로서는 서류상 기소가 진행중인 것이 없는 자는 무흠한 자로 간주된다.

**616.6.** 기소되기 전 이미 5년 이상 경과된 사건에 대해서는 교역자나 평신도가 해명할 의무가 없으며, 어떤 청문회에서든 기소장이 접수되기 전 5년 이상 시간이 지난 증거는 효력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한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18세 이하인 경우나, 고발이나 고소를 할 만한 지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5년의 시한은 피해자의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지적 능력을 갖출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미성년자란 그 주나 국가의 민법에서 성년의 나이를 더 늦게 정한 경우가 아니면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만약 어느 교역자가 관할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신의 성직자 인증서를 총회감독에게 반납해야 한다.

해당 교역자의 요청이 있고, 또 사전에 징계위원회가 다루지 않았던 경우에는, 총회고문회는 그 유죄판결의 진상을 조사하여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해당 교역자의 성직자 인증서를 회복시킬 수 있다.

**616.7.** 어느 교역자나 평신도도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내린 처음 판결을 뒤집을 만한 잘못이 상소과정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중처벌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제 8 부

# 성 려

제 1 장 성례전

제 2 장 예 식



## 제 1 장 성례전

### 700. 성찬식\*

[성찬식은 이에 관한 적절한 설교와 성경 고린도전서 11:23-29, 누가 복음 22:14-22, 그 외에 적절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한다. 그런 후 집례하는 교역자는 다음과 같은 초청의 말을 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은 예수님의 삶과, 고난, 대속적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소망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공경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구원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식탁으로 나아옵니다.

우리는 공교회와 하나가 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

\* 주: 성찬식에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가 사용되어야 한다.

[집례자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는 헌신의 기도로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당신의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주린 자들을 먹이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고, 죄사함을 위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 26:27-29, 눅 22:19)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식탁에 놓인 선물들 위에 성령을 부어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피로 구속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세상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를 갖고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서로에게 하나가 되고, 온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떡을 먹기 전에 집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을 흠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전하시기 위해 떼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잔을 마시기 전에 집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전하시기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참여한 후에 집례자는 감사와 헌신의 기도로 마무리 한다.  
(29.5, 515.4, 532.7, 533.2, 534.1)

## 701. 세례식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세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와 하나되는 것을 상징하는 성례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과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듯이,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집례자는 신앙고백의 확증 가운데로 회중들을 안내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



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 이러한 믿음으로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답: 예

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요 구주로 인정하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답: 네, 믿습니다.

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은혜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답: 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례자는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원하는 세례형식 (점수례, 주수례, 침수례)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 702. 유아, 어린이 세례

[보호자들이 아이(들)과 같이 준비되면 집례자는 다음의 말로 예식을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예식은 은혜의 새 언약의 표시와 보증입니다. 우리는 세례가 중생의 은혜를 부여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의 세례가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선행은총에

근거해서 이 어린 아이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후일 이 아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어린이를 세례 받도록 함으로서 보호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독교 신앙과 이 어린이를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지식으로 키워갈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위해서 어린 아이가 배움을 시작할 때부터 어린아이에게 이 거룩한 예식의 본질과 목적을 가르치고, 어린아이의 교육을 살피면서 저가 탈선하지 않도록 하고, 저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도록 지도하고, 저가 악한 사람들과 습관들을 떠나고, 할 수 있는 한 어린아이를 주님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문: 당신(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답: 예

[집례자는 부모 혹은 후견인에게 어린이의 이름을 묻고, 어린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래와 같이 세례를 베푼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집례자: 세례는 또한 이 아이를 기독교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이제 회중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양

육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일을 돕고 격려해 주고, 이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도록 그의 양육을 도와 주시겠습니까?

회중: 예

[그 후 집례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거나 즉석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를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기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린 시절의 유혹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자가 되게 하옵시고, 끝까지 저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님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현명한 교훈과 거룩한 본으로 그들이 아이들과 주님께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제 2 장 예 식

### 703. 헌아식

[어린이(들)와 부모나 후견인(들)이 함께 준비되면 집례자는 아래와 같이 예식을 시작한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 19:13-14)

이 어린이(들)를 바치는 일은 여러분이 믿는 이로서의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어린이(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고, 영원한 축복에 이르기를 원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은 일찍부터 이 어린이(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며 어린아이의 교육을 살피면서 저가 탈선하지 않도록 하고, 저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도록 지도하고, 저가 악한 사람들과 습관들을 떠나고, 할 수 있는 한 어린아이를 주님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문: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답: 예

[집례자는 회중을 향하여 묻기를]

저는 이제 회중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일을 돕고 격려해 주고, 이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도록 그의 양육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회중: 예

[집례자는 어린이(들)를 안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서 ○○○를 바치나이다. 아멘.

[그 후 집례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리거나 즉석의 기도를 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를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기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린 시절의 유혹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자가 되게 하옵시고, 끝까지 저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님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현명한 교훈과 거룩한 본으로 그들이 아이들과 주님께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704. 정회원 입회식

[정회원 후보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행동규범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그들이 회중 앞으로 나와 서면 집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 특전과 축복은 성스러우며 소중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는 알 길이 없는 거룩한 교제와 보살핌과 권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일과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유익한 감화와 함께 목회자의 경건한 보살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는 섬기는 협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교회의 교리들과 행동규범들에 대해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은혜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통해 마음의 정결함 혹은 완전성결하게 하는, 보다 깊은 역사가 따른다는 것과, 이 각각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 성령께서 증거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께서 재림하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상과 벌을 주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목회자는 장정 20조에 있는 다음의 신앙공동선언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나사렛성결교회의 신앙공동선언을 다시 확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는다.

사람은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러므로 악에 지속적으로 기울어진다고 믿는다.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없이 영원히 버려진 존재가 됨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하심을 받고 거듭나며 죄의 지배 하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중생하고 뒤이어 온전히 성결하게 되어야 함을 믿는다.

거듭난 것과 신자의 완전성결 됨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심을 믿는다.

우리 주께서 재림하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다. (교리와 장정 20.1-20.8)

문: 당신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모든 진리를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예'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답: 예.

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며 그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지금 믿습니까?

답: 예.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함에 있어서 당신(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인성 규약”에 나온 바대로 주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당신(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까?

당신(여러분)은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교제와 사역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겠습니까?

당신(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사렛성결교회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교회의 증거가 강화되도록,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에 자라가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당신(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겸손히 행동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거룩한 섬김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자원을 헌신적으로 드림과 은혜의 수단에 신실하게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당신(여러분)은 삶의 모든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모든 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과 생활의 온전한 거룩함을 성실히 추구하시겠습니까?

답: 예.



[집례자는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나사렛성결교회와 우리 교회의 거룩한 교제에 특혜와 책임을 갖고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바라는 교회의 위대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고, 모든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증거를 통해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 705. 결혼식

결혼에 관한 다양한 세계적, 문화적 상황을 인식하기에, 나사렛성결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다.

- \* 남편과 아내의 평등
  - \*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반영하는 언약적 관계
  - \*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 예식은 특정 국가의 법적인 요구 사항을 없애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 다음 예식은 하나의 자료로 제공된다.

[당사자들이 법률과 목회자의 세심한 권고 및 지도 내용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엄숙한 결혼예식을 하기로 정한 날, 시간에 두 사람은 함께 주례자를 바라보고, 주례자는 회중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신랑(의 이름)와 신부(의 이름)의 거룩한 혼례를 올리

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혼인이란 우리 인간들이 순결하였던 에덴동산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비로운 연합을 상징하는 고귀한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이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셔서 행하심으로 이 거룩한 연합을 축복하셨으며,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 제도를 모든 사람에게 영예로운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은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안되며, 경건하고도 신중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이 성스러운 혼인으로 연합되기 위해 여기에 나왔습니다.

[주례자는 결혼하는 당사자들을 향해서 말한다.]

○○○군과 ○○○양,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있는 두 사람에게 혼인 서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혼인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며, 오직 죽음으로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사람이 주고받는 언약이 어김없이 지켜지지만 한다면, 그리고 두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것을 추구한다면 두 사람의 삶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복되고, 두 사람의 가정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주례자는 신랑에게 묻는다.]

먼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그대는 이 여자를 혼인한 아내로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 법도에 따라 함께 살며, 이 여자가 병들거나 건강할 때를 막론하고 그녀를 늘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경하고 보호하며, 두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다른 모든 유혹에서 이 여자만을 위하여 그대 몸을 지키겠습니까?

답: 예

[목사는 다음에 여자에게 묻는다.]

다음은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그대는 이 남자를 혼인한 남편으로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 법도에 따라 함께 살며, 이 남자가 병들거나 건강할 때를 막론하고 그를 늘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경하고 보호하며, 두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다른 모든 유혹에서 이 남자만을 위하여 그대 몸을 지키겠습니까?

답: 예.

[목회자는 다음의 질문을 한다.]

여러분은 (신부와 신랑의 부모, 가족의 구성원 또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결혼을 축복하겠습니까?

답: (신부와 신랑의 부모, 가족 구성원 또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 예.

[서로 마주 보며 오른 손을 잡고 신랑 신부는 다음과 같은 서약을 교환한다.]

신랑은 주례자를 따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나 ○○○는 ○○○을 나의 혼인한 아내로 맞아 오늘부터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 때를 막론하고 사랑하고 아껴서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따라 살 것을 서약합니다.

**신부는 목사를 따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나 ○○○는 ○○○을 나의 혼인한 남편으로 맞아 오늘부터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 때를 막론하고 사랑하고 아껴서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따라 살 것을 서약합니다.

[원하면 반지교환(예물교환)식을 여기에 삽입한다. 주례자는 신랑의 들러리로부터 반지를 받아서 신랑에게 건네준다. 신랑은 반지를 신부의 손가락에 끼우면서 주례자를 따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이 반지를 나의 항상 순결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로써 드립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반지를 줄 경우, 여기서 한다.**

[두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주례자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거나 즉석 기도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보존자가 되시고, 모든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주님의 종된 이 두 사람, (신랑 이름)과 (신부 이름)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저들이 오늘 서로에게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사랑과 평안 가운데 항상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이제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거룩한 혼인을 이루기로 동의하여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손을 마주 잡고 서약하였으므로, 나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짝이므로 사람의 뜻으로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축복의 기도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이 두사람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자비로 굽어 살피시고 모든 신령한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함께 살고,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는 즉석 기도 후 축도로 예식을 끝낸다.] (532.7, 533 .2, 534.1, 538.19)

## 706. 장례식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사랑했고 가까이 지냈던 분의 죽음 앞에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분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에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진심어린 애도를 전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족들과 함께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11:25-26)

[다음의 기도를 하거나 집례자가 적절히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슬픔의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 밖에 의지할 곳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또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침의 빛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경외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다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고통스러울 때에 항상 우리의 도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 위에 아버지의 풍성한

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슬픔에 잠겨 있는 무리들이 아버지의 붙잡아주시는 은혜 안에서 위로와 치유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간구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 또는 특송]

[성경 봉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 1:3-9)

[또는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마 5:3-4, 6, 8; 시 27:3-

5, 11, 13-14; 46:1-6, 10-11]

[설교]

[찬송 또는 특송]

[축도]

### 하관식

[사람들이 다 모이면 집례자는 다음의 성경 구절들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를 봉독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욘 19:25-27)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



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앞이라.” (고전 15:51-58)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 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 14:13)

[이어서 집례자는 다음의 식사 중 하나를 읽는다.]

[고인이 신자일 경우]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원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형제(또는 자매)의 시신을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며 다시 올 세상에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의 몸을 닮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무덤에 묻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고인이 불신자일 경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난 분(친구)의 육신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대로 매장하려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의 영혼을 온 세상의 자비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맡깁니다. 이제 살아남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여서, 하늘나라의 풍요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얻어야 합니다.

### [고인이 어린이일 경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몸을 무덤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신 동안 어린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하는 어린이를 받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기도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이별의 시간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분들의 무겁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사 저들의 앞날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 13:20-21)

### 707. 임직식

[적절한 찬송을 부른 후 실행제직회 서기가 취임하는 직분자의 이름과 직분을 읽는다. 호명된 자들은 앞으로 나와 강단 앞에 집례자를 향해서

선다. 각자를 위한 서약서가 준비되었으면 집례자는 다음의 말로 시작한다.]

기독교 사역의 특별한 영역을 위한 일꾼들을 따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해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도록 적절히 선택된 직분자(혹은 교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5)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 3:1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 6:6)

여러분들은 이제 강단 앞에 서서 이 교회와 교회에 속한 나사렛국제선교회(NMI), 나사렛청년연합회(NYI),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SDMI)의 일을 돌보기 위해 직책을 받게 되는 중대한 순간에 지

금 임해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부과된 임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특별한 기회라 생각하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실 때, 기쁨과 영적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여러 영혼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배양은 여러분의 책임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이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과업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쇄된 서약서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서약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 스스로 헌신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임원서약 =

지금 맡겨진 지위에 나를 선택한 교회가 내게 부여한 신뢰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사렛성결교회의 이상과 표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본을 유지한다.
2. 매일 기도와 성경읽는 일정한 시간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체험을 개인적으로 키워간다.
3. 정규 주일학교, 주일 아침과 오후 예배, 그리고 주중 기도모

임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꼭 출석한다.

4. 내게 배정됐거나 혹은 앞으로 배정받을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임원회 등의 모든 회의에 충실히 출석한다.
5. 지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또는 나의 직분에 부과된 임무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위에 있는 직분자에게 통보한다.
6. 교단의 출판물을 광범위하게 읽고 나의 직분에 부과된 임무 수행에 유익한 기타 서적이나 인쇄물을 읽는다.
7. 기회가 주어지면 평신도 평생교육 과정에 참가하여 나 자신과 나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8. 다른 사람들의 영적 행복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교회의 모든 전도집회에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집례자는 적절한 기도를 하고 헌신을 위한 특송을 한다. 그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은 맡겨진 각자의 직책을 가지고 본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을 마음을 모으고 손을 들어 서약하였으므로, 나는 여러분을 선출 또는 지명을 통해 받은 각 직책에 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교회의 조직구조의 중요한 부분을 맡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범으로, 교훈으로, 열심있는 봉사로, 주님의 포도원에 유능한 일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회중을 일어서도록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 해 동안 교회 일꾼으로 일할 지도자들의 선서와 서약을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교회 회원으로서 이들의 충성된 후원자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들에게 부과한 짐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들의 문제를 이해해 주고 그들의 표면적인 실수에 대해 인내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수고하여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효율적인 도구가 되도록, 요청이 올 때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폐회 기도를 하거나 전 교인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한다.]

## 708. 교회조직

총회감독: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의 날에 ( ) 나사렛성결교회를 공식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는 나사렛성결교회의 헌법과 장정에 따라서 조직교회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과 의무를 가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사렛가족을 대신하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모아 여러분의 비전과 믿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형을 이루기 위

해 함께 열심히 수고한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 교회를 조직하면서 여러분은 국제 나사렛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사명,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삼으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데 있어서 우리의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서나 전통적인 삼위일체 신조를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아울러 ‘웨슬리안-성결 전통’ 안에 있는 우리의 특별한 유산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기본 진리의 원천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을 통해 우리는 성결하게 되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능력도 덧입게 됩니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화해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 구제와 의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제자를 세웁니다.

총회감독이 담임목회자에게: ( ) 목사님! ( ) 나사렛성결교회의 창립회원이 되시는 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담임목회자: 존경하는 ○○○ 감독님, 저희 ( ) 나사렛성결교회의 창립회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나사렛성결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공동된 사명에 헌신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분들로 기쁨으로 감독님께 추천합니다.

[목회자는 창립회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창립회원과 가족을 소개한다.]

총회감독: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회원의 서약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지금 믿습니까?

답: 예

나사렛성결교회의 신앙공동선언을 믿으십니까?

답: 예

총회감독: 여러분은 자신을 나사렛성결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의 인성규약과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교제와 사역에 바치시겠다고 성약을 맺으시겠습니까? 겸손히 행동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거룩한 섬김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자원을 헌신적으로 드리시고, 은혜의 수단에 신실하게 참여하고, 모든 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과 생활의 온전한 거룩함을 성실히 추구하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답: 예

총회감독: 이제 나사렛성결교회 ( ) 총회의 감독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 ) 나사렛성결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세계 나사렛교회의 한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크신 자비의 주께서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매일 모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 709. 성전 봉헌식

목회자: 주님의 손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건물을 완공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건물을 주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봉헌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빛과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을 찬양하기 위해

회중: 우리는 지금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이 건물을 봉헌합니다.

목회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섬기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유산을 남겨 주셨고, 지금은 이긴 자들의 교회의 일원이 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회중: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건물(예배당, 교육관, 친교실 등)을 봉헌합니다.

목회자: 기도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말씀의 선포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성도의 교제를 위해

회중: 이 하나님의 집을 엄숙히 봉헌합니다.

목회자: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며, 시험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회중: 우리는 이 교제와 기도의 장소를 봉헌합니다.

목회자: 죄로부터 구원받는 기쁜 소식을 나누고, 성경적 성결을 전파하고, 의로운 교훈을 가르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회중: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건물을 봉헌합니다.

다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건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높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새롭게 봉헌합니다. 우리는 이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끝까지 열심히 봉사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아멘.

# 제 9 부

## 기관의 현장, 사역방안 및 규칙

제 1 장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NYI)

제 2 장 나사렛국제선교회(NMI)

제 3 장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SDMI)



## 제 1 장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NYI)

### 810.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 헌장 및 사역방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딤후 4:12)

#### 810.1. 우리의 사명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의 사명은 우리 세대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동적인 삶으로 이끄는 것이다.

#### 810.2. 우리의 회원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의 회원권은 우리가 표방한 비전과 가치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들로서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810.3. 우리의 비전

나사렛성결교회는 청년들이 교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됨을 믿는다.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는 청년들로 하여금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도록 이끌고, 그들이 기독교적 섬김을 실천하는 제자들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 810.4. 우리의 가치들

1. 우리는 청년들을 존중히 여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요한 자들이다.
2. 우리는 성경을 존중히 여긴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위한 불변하

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3. 우리는 기도를 존중히 여긴다.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의 생명력 있는 상호 대화이다.
4. 우리는 교회를 존중히 여긴다. 교회는 문화적으로는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세계적인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이다.
5. 우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긴다.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다.
6. 우리는 제자도를 존중히 여긴다.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7. 우리는 공동체를 존중히 여긴다. 공동체는 우리 서로가,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돕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
8. 우리는 사역을 존중히 여긴다. 사역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9. 우리는 전도를 존중히 여긴다. 전도는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10. 우리는 거룩함을 존중히 여긴다. 거룩함은 우리의 존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이 가치들은 거룩한 생활의 중요한 특징들이며, 교회의 모든 수준에서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 생활과 사역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나사렛성결교회의 교리와 장정 안에 있는 신조편을 참고하기 바람.) 이 가치관들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되는 원칙들을 표명한다.

## 810.5. 지침이 되는 원칙들

1.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는 청년들을 위해 존재한다.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는 청년들을 이끌고, 양육하고, 능력을 부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하고, 나사렛성결교회 안에서 그들의 통합을 촉진하는 일을 한다.
2.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는 그리스도에 초점을 둔다.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권위있는 원천이며, 성결함은 우리 삶의 방식이 된다.
3.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는 개교회 청년과의 관계적 사역을 토대로 한다.  
개교회 청년들을 향한 효과적인 사역은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의 건강성과 역동성에 있어서 중대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숙함으로 청년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관계 및 실제화 된 사역은 나사렛 청년사역의 근간을 이룬다.
4.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는 청년 지도자들을 개발하고 후원한다.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는 새롭게 떠오르는 지도자들이 나사렛성결교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들과는 확신을 갖고, 양육과 후원의 환경 안에서 그들의 은사들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지도력 훈련, 책임감, 평가 과정, 사역의 조절 등은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의 중대한 기능들이다.
5.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는 이끌어갈 권한을 부여받았다. 적절한 청년사역을 위해서 사역에 대한 책임과 조직에 대한 결정권이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 지도자와 각 수준의 해당 기관에 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속감과 소유의식, 섬김의 열정, 결정권의 행사는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를 통해 청년들이 권한을 행사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6.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과 일치를 모두 포용한다.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는 언어, 피부색, 인종, 사회 계층, 그리고 성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즐긴다. 우리의 차이는 일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과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문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은 항상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

7.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는 네트워킹과 협력관계를 만들어 간다.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 내 모든 수준에서의 우리의 관계는 협조적 분위기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교회 내에서의 네트워킹은 섬김을 위해 청년들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일을 증대시킨다.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는 그러한 협조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810.6. 사역의 골격**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 현장은 나사렛성결교회 모든 수준의 청년 사역을 조직하고, 계획하며 이행하는데 그 기초를 제공한다. 한편, 표준 사역방안은 개교회, 총회, 지구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가 그들 자신의 사역 상황에 따라 청년사역의 필요에 맞게 채택할 것을 권면하면서 제공되었다. 모든 수준의 사역방안은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 현장과 나사렛성결교회 장정과 일치해야 한다.

#### **810.7. 개정**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 현장은 세계 사역방안에 따라, 세계 NYI연합대회에서 승인된 결의안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 A. 개교회 사역방안의 모형

### 사역

#### 810.100. 전도

청년회는 청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여러 사역들과 특별 행사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시행한다.

#### 810.101. 제자화

청년회는 청년들을 양육하고 도전하여 개인의 경건시간, 예배, 교제, 사역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되는 여러 사역들과 특별 행사들을 개발 및 시행한다.

#### 810.102. 지도자 개발

청년회는 청년들을 지도하고 준비시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여러 사역들과 특별행사들을 개발 및 시행한다.

### 개정

#### 810.103. 규정

1. 개교회 사역방안은 개교회 차원의 청년회의 조직, 기능, 그리고 지도력을 위한 표준 양식을 제공한다. 개교회 청년회는 나사렛 국제청년연합회 헌장과 나사렛성결교회 장정에 일치하여 개교회 청년사역의 필요에 맞게 사역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2. 이 사역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은 개교회 청년협의회의 권한에 놓인다.

#### **810.104. 과정**

1. 청년협의회는 개교회 사역방안을 채택 및 수정하는 과정을 설정 및 공포하고, 제출된 수정안들을 청년회연차회의에 내놓기 전에 그것들을 승인해야 한다.
2. 개교회 사역방안에 대한 수정안들은 청년회연차회의 전에 청년회원들에게 서면으로 배부되어야 한다.
3. 수정안들은 청년회연차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모든 청년회원들의 3분의 2이상 표결로 승인되고, 교회실행제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개교회 사역방안의 모든 변경은 청년회연차회의 이후 최대 30일 이전에 효력을 나타내야 한다. 개정된 사역방안은 효력 발생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공고되어야 한다.

#### **회원 및 사역의 중심대상**

##### **810.105. 구성 및 책임**

1. 개교회 청년회는 청년회에 가입하고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2. 개교회 청년회는 활동적인 회원들의 정확한 명단을 보존해야 한다.
3. 개교회 청년회는 회원들, 개교회 실행제직회, 그리고 담임목회자에 대해 책무를 가진다.
4. 개교회 청년회는 교회실행제직회와 교회연차회의에 보고한다.

##### **810.106. 사역의 중심대상**

1. 개교회 청년회의 전통적인 사역의 중심대상은 담임목회자 및 개교회 실행제직회의 승인 하에 12세 이상의 청소년들, 대학생

- 들, 그리고 청장년들에게 둔다.
2. 대표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목적을 위해 개교회 청년협의회는 개교회 청년사역의 필요에 따라 연령별로 구분한다.

## 지도자

### 810.107. 임원들

1. 개교회 청년회의 임원들은 회장, 그리고 개교회의 필요에 따르는 직책을 맡은 최소 3명의 피선출인들이며 이들로 임원회를 구성한다.
2. 개교회 청년회 임원들은 그들이 섬기는 개교회의 회원들이어야 하고 개교회 청년사역에 활동적이며 개인적으로 본이 되는 생활과 섬김에 있어서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3. 청년회 조직이 없는(개교회 청년협의회가 없는) 교회에서는 교회실행제직회의 승인을 얻어 담임목회자가 청년회장을 임명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께로 청년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요를 채우는 일을 착수토록 할 수 있다.

### 810.108. 선거

1. 임원들은 청년회연차회의에서 개교회 청년회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그들의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사역을 맡을 때까지 봉사한다.
2. 추천위원회는 청년회 임원들을 추천한다. 추천위원회는 담임목회자에 의해 임명되는데 담임목회자와 청년회장을 포함하여 청년회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피추천인들은 담임목회자와 교회실행제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교회 청년회장으로 추천받은 자는 선거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임원들은 연차회의에 출석한 청년회원들의 과반수 찬성 표결로 선출된다. 하나의 직위에 추천받은 자가 단 1명일 경우,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받아 “찬반”의 투표 방법이 사용된다. 또한 개교회 청년회 회원인 자들만이 회장 선출을 위해 투표할 수 있다.
4. 현직 임원들은 청년협의회에 의해 추천위원회에 천거되고, 담임목회자와 교회실행제직회의 승인을 받은 후, 청년회연차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표결로 승인되면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재선될 수 있다.
5. 임원이 그[녀]의 회원권을 이적, 사임, 혹은 의무 등한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협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에 의해 제직될 경우 공석이 생긴다. 임원 중 공석이 생겼을 경우, 청년협의회는 1명이 추천되었을 때에는 3분의 2 이상의 표결로, 2명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에는 과반수의 표결로 공석을 채운다. 청년회장 직에 공석이 생겼을 경우, 선거를 위한 회의는 담임목회자나 청년목회자 혹은 그[녀]가 지명한 자가 의장이 된다.

### 810.109. 책임

1. 청년회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교회의 청년사역을 위한 비전을 기획하는 청년협의회 의장을 맡는 일.
  - b. 청년사역 발전을 돕고, 청년협의회와 함께 일하면서 개교회 청년들의 필요에 맞게 사역의 중심 대상을 규정하는 일.
  - c. 교회실행제직회의 일원이 되고, 실행제직회에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 개교회 실행제직회는 선거 전에 실행제직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청년회장의 최소 연령을 규정할 수 있다. 회장이 그 연령보다 더 어릴 경우, 청년협의회는 교회실행제

직회의 승인을 얻어, 실행제직회에서 청년회를 대표할 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 d. 사역 및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교회연차회의에 제출하는 일.
  - e. 청년협의회가 승인한 대로 개교회 청년회 예산을 교회실행제직회에 천거하는 일.
  - f. 직책상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하면서 교회의 청년 주일학교를 조정하는 일.
  - g. 나사렛국제선교회(NMI) 회장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선교 의식을 발전시키는 일.
  - h. 총회 청년연합회연합대회와 총회연차회의의 대의원으로 봉사하는 일. 회장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청년협의회가 선출하여 담임목회자와 교회실행제직회의 승인을 얻은 대표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2. 청년회의 다른 임원들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개교회 청년회의의 여러 사역을 위한 지도자들을 개발 및 지명하는 일.
  - b. 교회 내외의 청년들을 위해 본보기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일.
  - c. 개교회 필요에 맞게 직책과 청년사역 책임들을 규정하고 일임하는 일.
  - d. 책임성과 효과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다음의 책임들을 나누는 일.
    - (1) 청년협의회회의의 모든 회의들을 정확히 기록하고 개교회 청년회를 위한 모든 서신에 관한 것들을 돌보는 일.
    - (2) 교회실행제직회의의 정책에 따라 청년회 자금을 입금, 지급, 그리고 기록하는 일.

- (3) 교회연차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모든 거출 및 지급된 금액에 대한 연간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 (4) 연간 예산을 세워 협의회와 교회실행제직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기 위해 청년회 회장과 동역하는 일.
- e. 개교회 청년회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에 있어서 회장과 협력하는 일.
- f. 청년협의회가 일임한 다른 사역들을 수행하는 일.

### 810.110. 유급 청년목회자

1. 청년목회자가 교회에 의해 고용될 경우, 담임목회자는 교회실행제직회와 청년협의회와 상의하여 청년회를 위한 책임을 청년목회자에게 일임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개교회 청년회장에게 맡겨진 다른 의무들 중 일부도 청년목회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하지만 평신도 지도력을 제공하고, 개교회 청년사역을 돕고 청년들을 대표하는 면에서 청년회장의 중대성은 여전하다. 담임목회자, 청년목회자, 그리고 청년협의회는 함께 일하면서, 두 직위의 역할들과 책임들 및 교회 청년사역의 유익을 위해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다.
2. 청년목회자는 청년회장으로 시무할 수 없다.
3. 청년목회자는 직책상 청년협의회, 청년회 실행위원회, 청년회 추천위원회에서 일한다.
4. 청년목회자는 청년회와 관련된 책임에서 담임목회자의 대리자로 섬길 수 있다.
5. 한 교회가 청년회 내의 특별 연령그룹들을 위해 사역하는 여러 유급 목회자들을 두고 있을 경우, 교회는 유급 목회자의 지도력 아래 각 연령그룹을 위한 임원들을 선발하고 실행제직회에 참

석할 대표자를 그 임원들 중에서 결정한다.

## 협의회

### 810.111. 구성

1. 개교회 청년협의회는 청년회 임원들, 선출 혹은 임명된 일반 청년회원들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역 지도자들, 개교회 청년 사역을 위한 비전을 집합적으로 심어주는 담임목회자 혹은 청년목회자로 구성된다.
2. 청년협의회 회원들은 개교회 청년회 회원들이어야 한다. 또한 개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아직 교회 정회원이 아닐 경우 정회원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

### 810.112. 선거

1. 청년회 추천위원회는 청년협의회의 일원으로 선출될 개교회 청년회 회원들을 추천한다.
2. 그 다음 청년회원들은 추천된 인물들 중에서 과반수의 표결에 의해 청년협의회 회원들을 청년회연차회의에서 선출한다.
3. 협의회 회원이 교회를 옮겼거나 사임했을 경우, 혹은 의무 등한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협의회의 3분의 2이상의 표결에 의해 제적되었을 경우 공석이 생긴다. 협의회 회원가운데 공석이 생겼을 경우 청년협의회는, 1명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표결로, 2명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과반수의 표결로 공석을 채운다.
4. 7명 미만의 회원이 있는 개교회의 경우, 담임목회자는 청년협의 회원들을 임명하여 청년사역이 개발되고 청년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될 수 있게 한다.

### **810.113. 책임**

1. 청년협의회는 개교회 내의 청년을 위한 사역 전체를 계획 및 조직할 책임이 있으며 청년회의 임원들과 사역부장들을 통해 청년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들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역들과 활동들을 개교회 지도자와 조화를 이루면서 시작하고 지도한다.
2. 청년협의회는 개교회 청년사역의 필요에 맞게 개교회 청년회 사역의 대상을 규정하고, 사역부장들의 직함과 직무내용들을 개발하고 임명한다.
3. 개교회 청년협의회는 청년들의 등록과 출석의 증가를 장려하고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청년 주일학교 교사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며, 사용될 커리큘럼과 자료들을 추천함으로써, 주일학교의 청년부서에 지도력을 발휘한다.
4. 청년협의회는 교회 청년들을 위한 총회, 지구, 세계 나사렛국제 청년연합회 사역들을 홍보하는 일에 있어서 총회 청년협의회와 협력한다.
5. 청년협의회는 개교회 사역 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설정하고 의사소통한다.

### **810.114. 위원회**

1. 청년회 실행위원회는 선출된 청년회 임원들과 담임목회자 혹은 청년회목회자로 구성된다.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청년협의회와의 업무를 실행한다. 실행위원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협의회의 나머지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협의회의 차기 회의 때 전체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청년협의회는 청년사역의 필요에 따라 특별사역 혹은 연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810.115. 유급 청년목회자**

1. 담임목회자는 교회실행제직회 및 청년협의회와 상의하여 청년 목회자의 책임들을 규정한다.
2. 청년협의회와 청년목회자는 서로 협력 및 일치를 이루며 일한다.
3. 한 교회가 청년회 내의 특별 연령그룹을 위해 사역하는 여러 청년목회자를 두고 있을 경우, 교회는 이 연령그룹들의 각 그룹을 위한 청년협의회 혹은 위원회들을 만들어 각 청년목회자의 지도하에 둘 수 있다. 여러 그룹들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둘 것인지의 여부는 교회가 결정할 수 있다.

### **회의**

#### **810.116. 개교회 청년회 모임**

1. 개교회 청년회의 다양한 모임은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사역을 제공토록 돕는다.
2. 개교회 청년회 그룹은 교회의 청년사역을 더 강화하는 총회, 지구, 그리고 세계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 모임들에 참여한다.

#### **810.117. 청년협의회 회의**

1. 청년협의회는 청년회의 사명과 비전을 실현키 위해 정기적으로 모인다.
2.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혹은 담임목회자에 의해 일정이 정해지거나 소집될 수 있다.

### **810.118. 연차회의**

1. 개교회 청년회의 연차회의는 장정과 조화되어 총회 청년연합대회 전 60일 이내에 열린다.
2. 청년회 임원들과 협의회 회원들 그리고 총회 청년연합대회 대의원들은 청년회연차회의에서 선출된다.
3. 청년회 개교회 사역방안은 청년회연차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표결로 개정될 수 있다.

## **B. 총회 사역방안의 모형**

### **사역**

#### **810.200. 전도**

총회 청년연합회는 청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여러 사역들과 특별행사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시행한다.

#### **810.201. 제자화**

총회 청년연합회는 청년들을 양육하고 도전하여 개인의 경건시간, 예배, 교제, 사역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되는 여러 사역들과 특별행사들을 개발 및 시행한다.

#### **810.202. 지도자 개발**

총회 청년연합회는 청년들을 지도하고 준비시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여러 사역들과 특별행사들을 개발 및 시행한다.

## 개정

### 810.203. 규정

1. 총회 사역방안은 총회 차원의 청년연합회의 조직, 기능, 그리고 지도력을 위한 표준 양식을 제공한다. 총회 청년연합회는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 현장과 나사렛성결교회 장정에 일치하여 총회 청년사역의 필요에 맞게 사역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2. 이 사역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은 총회 청년협의회의 권한에 놓인다.

### 810.204. 과정

1. 총회 청년연합대회는 총회 사역방안을 채택 및 수정하는 과정을 설정 및 공포하고, 제출된 수정안들을 총회 청년연합대회에 내놓기 전에 그것들을 승인해야 한다.
2. 총회 사역방안에 대한 수정안들은 총회 청년연합대회 전에 총회 청년그룹들에게 서면으로 배부되어야 한다.
3. 수정안들은 총회 청년연합대회에 참석하고 투표한 모든 대의원 과 회원들의 3분의 2이상 표결로 승인되고,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총회 사역방안의 모든 변경은 청년연합대회 이후 최대 60일 이전에 효력을 나타내야 한다. 개정된 사역방안은 효력 발생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배부되어야 한다.

## 회원 및 사역 대상

### 810.205. 구성 및 책임

1. 총회 경계내의 모든 개교회 청년회 그룹들과 청년회 회원들은 총회 청년연합회를 이룬다.

2. 총회 청년연합회는 청년연합회 회원들, 총회감독, 그리고 총회 고문회에 대해 책무를 가진다.
3. 총회 청년연합회는 매년 총회 청년연합회장을 통해 총회 청년 연합대회 및 총회연차회의에 보고한다.

#### **810.206. 사역 대상**

1. 총회 청년연합회의 전통적 사역 대상은 12세 이상의 청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청장년들에게 있다. 총회 청년협의회는 총회 감독 및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얻어 사역 대상을 알맞게 변경할 수 있다.
2. 총회 청년협의회는 대표하는 일과 프로그램을 위해 총회의 청년사역 필요에 따라 청년들을 연령별로 구분한다.

#### **지도자**

##### **810.207. 임원들**

1. 총회 청년연합회의 임원들은 회장, 부회장, 총무 그리고 재무이다.
2. 총회 청년연합회 임원들은 선출 당시 총회에 소속된 개교회의 회원들이어야 하고 개교회 및 총회 청년사역에 활동적이며 개인적으로 본이 되는 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3. 총회 청년연합회 임원들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총회 청년연합회 임원들의 행정비를 위한 재정은 총회 청년연합회 예산의 일부로 할당된다.
4. 총회가 아직 청년연합회 조직이 없는(총회 청년연합대회가 없는) 경우, 총회감독은 총회 청년연합회 회장을 임명하므로, 개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청년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요를 채우는데 도움을 받도록 한다.

### 810.208. 선거

1. 총회 청년연합회 임원들은 총회 청년연합대회에서 선출되는데, 연합대회 종료시부터 그들의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사역에 임할 때까지 1년간 시무한다. 총회 청년연합회 추천위원회가 천거하고 총회감독이 승인하면 임원은 2년 임기로 피선될 수 있다.
2. 총회 청년연합회 추천위원회는 총회 청년연합회 임원들을 추천한다. 추천위원회는 총회 청년협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최소 4명의 총회 청년연합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총회감독 및 총회 청년연합회장도 포함된다. 모든 피추천인들은 총회 청년협의회 및 총회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원들은 총회 청년연합대회에서 과반수의 표결로 선출된다. 한 직위를 위해 한 사람만 추천되었을 경우, “찬반”의 투표방법을 사용하여 3분의 2 이상의 표결로 승인받는다. 추천위원회가 천거할 경우, 총회 청년협의회로 하여금 총회 청년연합회 총무와 재무를 임명토록 대의원들이 투표하여 허락할 수 있다.
4. 총회 청년협의회에 의해 추천되어 총회감독의 승인과 더불어 총회 청년연합대회의 3분의 2이상의 표결로 승인될 경우 현 임원은 “찬반”의 투표에 의해 재선될 수 있다.
5. 임원이 총회 회원권을 이적하거나, 사임, 혹은 의무 등한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협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로 제적될 경우 공석이 생길 수 있다. 총회 청년연합회 회장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부회장이 차기 총회 청년연합대회 때까지 회장의 책임들을 맡는다. 다른 임원들 중 공석이 생길 경우, 총회 청년협

의회는 1명이 추천되었을 경우 3분의 2 이상의 표결로, 2명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과반수의 표결로 공석을 채운다.

### 810.209. 책임

1. 총회 청년연합회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청년연합회와 총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일하면서 총회 청년연합회를 지도 및 감독하는 일.
- b. 총회의 청년 사역을 위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총회 청년협의회 의장의 의장을 맡는 일.
- c. 총회의 청년사역 개발을 돕고, 총회 청년협의회와 함께 일하면서 필요에 따라 총회 청년연합회 사역의 대상을 규정하는 일.
- d. 총회 청년연합대회를 사회하는 일.
- e. 총회 내의 각 개교회 청년사역의 발전을 권장하는 일.
- f. 총회 내의 해당되는 각 위원회들과 분과위원회에 청년연합회의 관심사를 대표하는 일.
- g. 총회 청년연합대회 및 총회연차회의에 매년 보고하는 일.
- h. 총회 재정위원회(혹은 해당 총회 조직체)와 총회 청년연합대회에 1년 예산을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일.
  - i. 세계 나사렛청년연합회 연합대회에 대의원으로 봉사하는 일.
  - j. 회장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총회 청년협의회에 의해 피선되어 총회감독과 총회고문회의 승인을 받은 대표가 후보 대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k. 지구 사역방안에 규정되었으면 지구 청년협의회 의회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

2. 부회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총회의 청년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회장과 협력하는 일.
  - b. 회장의 부재 시 그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
  - c. 총회 청년협의회와 연합대회가 위임한 다른 의무들을 수행하는 일.
  - d. 총회 청년연합회장 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후임자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 까지 회장의 기능을 이행하는 일.
3. 총무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총회 청년협의회, 실행위원회 그리고 총회 청년연합대회의 모든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는 일.
  - b. 총회 청년연합회의 모든 문서에 관련된 일을 돌보는 일.
  - c. 세계 NYI사무소와 지구 NYI회장에게 총회 청년연합회 임원들과 사역부장들의 이름과 주소를 선거후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하는 일.
  - d. 총회 청년협의회와 연합대회가 위임한 다른 의무들을 수행하는 일.
4. 재무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총회 청년연합회 자금의 입금, 지불 및 기록하는 일.
  - b. 총회 청년연합회 연합대회에 제출하기 위해 재정에 대한 연례 보고를 작성하는 일.
  - c. 회장과 함께 일하면서 해당 조직체에 제출할 년간 예산을 짜는 일.
5. 총회 청년사역의 필요에 따라 다른 책임들이 임원들에게 맡겨질 수 있다.

### **810.210. 유급 청년목회자**

1. 청년목회자가 총회에 의해 고용될 경우, 총회감독은 총회고문회와 총회 청년협의회와 상의하여 총회 청년연합회를 위한 책임들을 총회 청년목회자에게 일임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총회 청년연합회장에게 맡겨진 다른 의무들 중 일부는 총회 청년목회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하지만 총회 청년사역을 위해 추가적인 지도력과 도움을 제공하고, 총회 청년사역을 대표하는 총회 청년연합회 회장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총회 청년협의회와 총회감독은 함께 일하면서, 두 직위의 역할들과 책임들 및 총회 청년사역의 유익을 위해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다.
2. 총회 청년목회자는 총회 청년연합회 회장으로 일할 수 없다.
3. 총회 청년목회자는 직책상 총회 청년협의회, 총회고문회, 그리고 총회 청년연합회 추천위원회에서 봉사한다.
4. 총회 청년목회자는 총회감독의 대리인으로서 청년회와 관련된 책임들을 맡을 수 있다.

### **협의회**

#### **810.211. 구성**

1. 총회 청년협의회는 총회 청년연합회 임원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의회에 의해 선출되었거나 임명된 청년 대표들 및 청년 지도자들 그리고 총회감독 및 혹은 총회 청년목회자로 구성된다.
2. 총회 산하의 교회 정회원으로서는 청년회원들만이 총회 청년협의회 회원들로 봉사할 수 있다.



### 810.212. 선거

1. 총회 청년연합회 추천위원회는 총회 청년협의회에 선출될 총회 청년연합회 회원들을 추천한다.
2. 총회 청년연합대회에서는 제출된 피추천인들중에서 과반수의 표결에 의해 총회 청년협의회 회원들을 선출한다.
3. 협의회 회원이 총회를 떠남으로 그[녀]의 회원권을 이적했거나 사임, 혹은 의무 등한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협의회의 3분의 2이상의 표결에 의해 제적될 경우 공석이 생긴다. 협의회 회원 중 공석이 생길 경우 총회 청년협의회는 1명이 추천되었을 경우 3분의 2이상의 표결로, 2명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과반수의 표결로 공석을 채운다.
4. 추천위원회는 총회 청년협의회에게 총회 사역부장들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810.213. 책임

1. 총회 청년협의회는 총회 내의 청년을 위한 사역전체를 계획 및 조직할 책임이 있으며 청년연합회의 임원들과 부장들을 통해 청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역들과 활동들을 총회 지도자들과 일치 를 이루면서 시작하고 지도한다.
2. 총회 청년협의회는 총회 청년사역의 필요에 맞게 총회 청년연합회 사역의 대상을 규정하고, 총회 청년연합회 사역부장들의 직함과 책임들을 개발하고 임명한다.
3. 총회 청년협의회는 효과적인 청년사역을 위해 총회 전역의 개교회를 격려하고 준비시킨다.
4. 총회 청년협의회는 청년들을 위해 등록과 출석의 증가를 장려

하고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와 협력하여 청년주일학교 교사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총회 주일학교의 청년부서에 지도력을 제공한다.

5. 총회 청년협의회는 개교회 청년회 그룹들에게 지구 및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사역들과 프로그램들을 권장한다.
6. 총회 청년협의회는 청년연합회 사역에 관한 것을 총회 청년연합대회에 추천한다. 연합대회는 이 추천들을 채택 전에 수정할 수 있다.
7. 총회 청년협의회는 총회 사역방안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설정하고 의사소통한다.

#### **810.214. 위원회**

1. 청년연합회 실행위원회는 투표로 선출된 청년연합회 임원들과 총회감독 및/혹은 총회 청년목회자로 구성된다. 임명이 된 총무와 재무가 임원일 경우, 협의회는 과반수의 표결에 의해 다른 2명의 총회 청년협의회 회원을 선출하여 실행위원회에서 봉사토록 할 수 있다. 실행위원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협의회의 나머지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협의회의 차기 회의 때 전체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회 청년협의회는 총회 청년사역의 필요에 따라 특별사역 혹은 연령별 위원회들을 둘 수 있다.

#### **810.215. 지역별 청년연합회**

1. 총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총회 청년협의회는 총회의 헌 구조 내에 여러 지역을 조직하고 청년연합회 지도력을 부여함으로써 총회의 청년연합회 사역을 조정하고 활성화하게 할 수 있다.

2. 지역의 특별 사역 및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역회 청년협의회를 창설할 수 있다.
3. 각 지역회의 회장 또는 대표는 총회 청년연합대회가 구체적으로 결정했을 경우 총회 청년협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 **810.216. 유급 청년목회자**

1. 총회감독은 총회고문회와 총회 청년협의회와 상의하여 총회 청년목회자의 책임들을 지정한다.
2. 총회 청년협의회와 총회 청년목회자는 서로 협력 및 일치를 이루며 일한다.

### **회의**

#### **810.217. 총회 청년연합회 모임**

1. 총회 청년연합회의 여러 모임은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사역을 제공토록 돕는다.
2. 총회 청년연합회는 또한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자료를 공급하기 위해 총회 전역의 개교회 청년회 그룹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개교회 청년회 사역을 권장 및 강화한다.
3. 총회 청년연합회는 총회 전역의 효과적인 사역을 더 강화시키는 지구 및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모임들에 참여한다.

#### **810.218. 총회 청년협의회 회의**

1. 총회 청년협의회는 총회 청년연합회의 사명과 비전을 실현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인다.
2. 협의회 회의는 총회 청년연합회장 혹은 총회감독에 의해 일정이 정해지거나 소집될 수 있다.

### 810.219. 총회 청년연합대회

1. 총회 청년연합회 연합대회는 총회 전역의 청년사역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감동적인 회의 시간들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보고들이 접수되고, 지도자들이 선출되며, 청년연합회 사역에 관련된 입법적 업무는 어떤 것이든 연합대회에서 처리된다. 세계 NYI연합대회 대의원들도 청년연합회 세계 사역방안에 의거하여 선출된다.
2. 총회 청년협의회는 총회감독과 협력하여 총회 청년연합대회를 조정하고 관리한다. 연합대회는 총회감독의 승인을 얻어, 총회 연차회의의 전 90일 이내에 총회 청년협의회가 지정한 때와 장소에서 열린다.
3. 총회 청년연합대회는 총회 청년협의회 회원들, 총회감독, 개교회 목회자들, 총회내에서 청년사역에 참여하는 안수목사, 그리고 개교회 청년회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4. 모든 개교회 청년회의 총회 청년연합대회 대의원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교회의 회원들이어야 한다.
5. 각 교회를 위한 개교회 청년회 대의원 수는 총회연차회의의 전 가장 최근의 개교회 목회자 보고에 나타난 회원 수에 의해 결정된다. 총회 청년연합회 지도자는 개교회로 하여금 총회 청년연합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비용을 적절히 분담해 주도록 격려한다.
6. 30명 이하의 청년회원을 가진 개교회 청년회의 총회 청년연합대회 대의원들은 다음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 a. 담임 목회자와 청년목회자 혹은 청년회 사역에 참여하는 전임 목회자
  - b. 새로 선출된 개교회 청년회장

- c. 최다 4명의 선출된 대의원들로 그 중 최소한 절반은 총회 기준 청년회 사역의 대상 그룹에 들어야 한다.
  - d. 개교회들은 매 30명의 개교회 청년회원당 1명의 대의원을 추가할 수 있고 또한/혹은 남은 회원수가 30명의 과반수가 될 경우에 (즉 16-29명) 1명의 대의원을 추가할 수 있다. 최소한 추가 대의원들 중 절반은 총회 기준 청년회 사역의 대상 그룹에 들어야 한다.
7. 청년회 조직이 없는 개교회 목회자 혹은 인정된 나사렛 구제사역센터 부장은 한 명의 대의원을 지명할 수 있다.

(표)

회원수	대의원수*	회원수	대의원수*
5-45	4	136-165	8
46-75	5	166-195	9
76-105	6	196-225	10
106-135	7	226-255	11

---

\* 개교회 청년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수에는 직책상의 대의원들(개교회의 청년회 회장, 담임목사, 청년목사, 총회 청년협의회 회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C. 지구 사역방안

### 사역

#### 810.300. 전도

지구 NYI는 청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여러 사역들과 특별행사들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810.301. 제자화

지구 NYI는 청년들을 양육하고 도전하여, 개인의 경건시간 예배 교제, 사역,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여러 사역들과 특별행사들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810.302. 지도자 개발

지구 NYI는 청년들을 지도 및 준비시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여러 사역들과 특별행사들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개정

#### 810.303. 규정

1. 지구 사역방안은 지구 차원의 청년연합회 조직과 기능, 그리고 지도력을 위한 표준 양식을 제공한다. 지구 NYI는 나사렛청년회 현장과 나사렛성결교회 장정에 일치하여 지구의 청년 사역의 필요에 맞게 계획을 채택 및 수정할 수 있다.
2. 이 사역방안에 들지 않는 영역은 어떤 것이든지 지구 청년협의회의 권한에 놓인다.

#### **810.304. 과정**

1. 지구 NYI협의회는 지구장과 협력하여 지구 사역방안을 채택 및 수정하는 과정을 설정 및 공포하고 수정안들을 지구별 청년 회의에 내놓기 전에 그것들을 승인해야 한다.
2. 지구 사역방안에 대한 수정안들은 세계 NYI연합대회의 지구별 청년회의 전에 총회 청년협의회에 서면으로 배부되어야 한다.
3. 수정안들은 지구별 청년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모든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3분의 2이상의 표결로 승인되고, 지구장과 지구자문협의회(적용되는 곳이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구 사역방안의 모든 변경은 세계 NYI연합대회 이후 90일 이전에 효력을 나타낸다. 개정된 문서는 효력 발생 전 서면으로 배부되어야 한다.

#### **회원 및 사역 대상**

##### **810.305. 구성 및 책임**

1. 지구 경계내의 모든 개교회 청년회 그룹들, 총회 청년연합회 사역, 그리고 청년회 회원들은 지구 청년연합회를 형성한다.
2. 지구 NYI는 그들의 회원, 지구장, 세계 NYI디렉터, 지구 청년협의회 및 세계 나사렛청년협의회에 책무가 있다.
3. 지구 NYI는 세계 NYI협의회에 매년 보고한다.

##### **810.306. 사역 대상**

1. 지구 NYI의 전통적인 사역 대상은 12세 이상의 청년들, 대학생들, 청장년들에게 둔다. 지구 NYI협의회는 지구 산하의 총회들의 승인을 거치고 지구장의 승인을 얻어 사역 대상을 사역에 맞도록 변경시킬 수 있다.

2. 대표하는 일과 프로그램 짜는 일을 위해 지구 NYI협의회는 지구의 청년사역 필요에 따라 연령별로 구분을 정할 수 있다.

## 지도자

### 810.307. 임원들

1. 지구 NYI협의회 임원들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총무이다. 이 임원들과 지구 NYI코디네이터는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
2. 지구 NYI 임원들은 그들이 선출될 당시 지구 경계내의 거주자 및 나사렛성결교회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청년사역에 활동적이며 개인적 본이 된 생활과 함께 사역에 있어서 지도자들로 보여져야 한다.
3. 지구 청년연합회 임원들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지구 NYI 임원들의 행정비를 위한 재정은 지구 자금의 일부로 할당된다.

### 810.308. 선거

1. 지구 NYI 임원들은 세계 NYI연합대회 동안 특별회의로 모이는 지구별 청년회의에서 선출된다. 지구의 임원들은 세계 NYI연합대회 종료시부터 다음 세계 NYI연합대회 종료시까지 봉사한다.
2. 지구 NYI 추천위원회는 지구 NYI의 임원들을 추천한다. 그 추천위원회는 지구 NYI협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지구 청년회 의장과 지구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의 지구 청년회 회원들로 구성된다. 각 직위를 위해 최소 두 명의 이름을 지구 청년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추천 받은 자들은 지구 NYI협의회와 지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두 번째 임기에 선출될 자격이 있는 현직 지구 NYI 의장은 지구 NYI협의회에 의해 '찬반' 투표방식이 추천되고, 지구장에 의



해 승인을 얻어 세계 NYI연합대회 동안 지구별 청년회의에서 3분의 2이상 표결로 승인될 경우, “찬반”의 투표에 의해 재선될 수 있다.

4. 임원이 지구의 회원권을 이적하거나 사임, 혹은 의무 등한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세계 NYI협의회의 3분의 2이상의 표결로 제적될 경우, 공석이 생긴다. 임원들 중 공석이 생길 경우, 추천받은 자가 1명이면 3분의 2이상의 표결로, 추천 받은 자가 2명 이상이면 과반수의 표결로 공석을 충원한다. 지구 NYI 의장 직에 그러한 공석이 생길 경우, 그 지구는 청년회 세계 사역 방안에 의거하여 새 의장을 선출한다.

#### **810.309. 책임**

1. 지구 NYI 의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세계 NYI와 지구 NYI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일하면서 지구 NYI에 지도력을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
- b. 지구 NYI협의회의 의장직을 맡아 지구의 청년사역을 위해 최선을 심어주는 일.
- c. 지구 청년사역 개발을 돕고, 지구 NYI협의회와 함께 일하면서 필요에 맞게 지구 NYI 사역 대상을 정하는 일.
- d. 세계 NYI연합대회 동안 지구별 청년회의를 사회하는 일.
- e. 지구내의 각 총회와 필드 NYI 사역의 개발을 격려하는 일.
- f. 해당 지구의 각종 위원회들에서 지구 NYI의 이익을 대표하는 일.
- g. 지구 NYI협의회, 지구장, 지구자문협의회(적용되는 곳이면), 그리고 세계 NYI협의회에 연례 보고를 하는 일.
- h. 지구 NYI협의회 및 지구사무소에 연간 예산을 천거하는 일.

- i. 세계 NYI연합대회의 대의원으로 봉사하는 일.
  - j. 지구 NYI와 지구의 나사렛 고등교육기관들 사이에 중개인으로 봉사하면서, 홍보, 협력, 사역 파트너 정신을 장려하는 일.
2. 지구 NYI 임원들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지구의 여러 청년사역을 위한 지도자들을 개발 및 지명하는 일.
  - b. 지구 필요에 따라 명칭과 청년사역 책임들을 규정하고 위임하는 일.
  - c. 책임성 및 효과성을 확실케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들을 분담시키는 일.
    - (1) 지구 NYI협회의 모든 회의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고 지구 NYI의 모든 문서수발에 관한 것들을 돌보는 일.
    - (2) 세계 NYI협회, 국제총회이사회, 지구 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지구 NYI 자금의 지출 및 입금을 기록하는 일.
    - (3) 지구 NYI협회와 다른 해당 조직체들에 제출하기 위해, 모든 모금액과 지급액에 대한 연례 재정보고를 작성하는 일에 의장을 돕는 일.
    - (4) 의장과 함께 일하면서 지구 NYI협회와 지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연간 예산을 세우는 일.
    - (5) 지구 NYI 임원들과 사역코디네이터들의 이름과 주소를 선출 혹은 임명된 후 가능하면 빨리 세계 NYI 사무소와 지구 사무소에 알리는 일.
  - d. 지구 청년사역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의장을 돕는 일.
  - e. 지구 NYI협회 혹은 지구별 청년회의에서 위임한 다른 사역들을 수행하는 일.

### **810.310. 유급직원들**

1. 지구 NYI코디네이터가 지구에 의해 채용될 경우, 지구장은 지구 자문협의회와 지구 NYI협회의와 상의하여 지구 NYI에 대한 책임을 지구 NYI코디네이터에게 맡긴다. 그럴 경우, 지구 NYI코디네이터는 지구 NYI 의장에게 지정된 임무들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 청년사역을 위해 추가적인 지도력과 도움을 제공하고, 지구 청년사역을 대표하는 지구 NYI 의장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지구 NYI협회의와 지구장은 같이 일하면서 그 두 직위의 역할들과 책임들을 규정하고 그들이 지구 청년사역의 유익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규명한다.
2. 지구 NYI코디네이터는 지구 NYI 의장으로 시무할 수 없다.
3. 지구 NYI코디네이터는 직책상 지구 NYI협회의 실행위원회 그리고 지구 NYI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지구 NYI코디네이터는 NYI와 관련된 책임들을 위해 지구장의 지명인으로 봉사할 수 있다.

### **협의회**

#### **810.311. 구성원**

1. 지구 NYI협회의는 지구 NYI 임원들과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피선되었거나 임명되는 청년 대표들 및 사역 지도자들, 그리고 지구장 및 지구 NYI코디네이터로 구성된다.
2. 지구 산하의 나사렛성결교회 회원들로서 청년회 회원인 자들이 지구 NYI협회의 회원들이 될 수 있다.
3. 적용되는 곳이면, 지구 NYI와의 공동사역 책임이 있는 나사렛 대학의 대표들이 지구 NYI협회의의 일원이 될 수 있다.

### 810.312. 선거

1. 지구 NYI 추천위원회는 지구 NYI 회원들 중에서 지구 NYI협의회에 선출될 수 있는 후보들을 추천한다.
2. 그 다음 세계 NYI연합대회의 지구별 청년회의는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 제출된 후보들 중에서 지구 NYI협의회 회원들을 선출한다. 지구별 청년회의는 지구 NYI협의회에게 지구 사역부장들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회원이 지구를 떠나 이적했거나 사임, 혹은 의무 등한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3분의 2이상의 표결에 의해 제적될 경우 공석이 생긴다. 협의회에 의해 피선되었거나 임명된 협의회 회원들 중 공석이 생길 경우 지구 NYI협의회는 추천된 자가 1명일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표결로, 추천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과반수의 표결에 의해 공석을 채운다. 만일 지구 산하의 총회를 대표하는 회원들 중 공석이 생길 경우, 공석은 그 총회의 사역방안에 따라 채워진다.

### 810.313. 책임

1. 지구 NYI협의회는 지구 내의 청년들을 위한 전체사역을 계획 및 조직하는 책임이 있으며, 지구 임원들과 부장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청년들에게 그들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역 및 활동들을 지구 지도자들과 일치를 이루면서 착수하고 지도한다.
2. 지구 NYI협의회는 지구 청년사역 필요에 따라 지구 NYI 사역의 대상을 규정하고 지구 NYI 사역부장들의 직함과 책임들을 개발하고 임명한다.
3. 지구 NYI협의회는 효과적인 청년사역을 위해 지구 산하의 총

- 회들을 격려하고 준비시킨다.
4. 지구 NYI협의회는 청년들의 등록 및 출석 증가를 권장하고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와 협력하여 청년 주일학교 교사들과 지도자들을 교육시킴으로서 지구 청년 주일학교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한다.
  5. 지구 NYI협의회는 지구 회원들에게 세계 NYI 사역 및 프로그램들을 홍보한다.
  6. 지구 NYI협의회는 청년회 행사 및 협력관계를 통해 지구에 공급되는 자금의 지출을 권장한다.
  7. 지구 NYI협의회는 세계 NYI연합대회의 지구 청년회의에 청년회 사역에 관한 것을 추천하는 일을 한다. 협의회는 또한 세계 사역방안과 일치하여 세계 NYI연합대회 때 결의안위원회 위원들로 지구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최대 2명까지 임명한다.
  8. 지구 NYI협의회는 세계 NYI협회에서 봉사할 대표 한 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구장과 협의하여 사역한다.
  9. 지구 NYI협의회는 지구 사역방안 수정 과정을 설정하고 의사소통 한다.

#### **810.314. 위원회**

1. 청년회 실행위원회는 피선된 지구 NYI 임원들과 지구장 및/혹은 지구 NYI코디네이터로 구성된다.  
실행위원회는 전체 협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할 경우 지구 청년협의회의 업무를 시행한다. 실행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협의회와 나머지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협의회 전체 차기 회의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2. 지구 NYI협의회는 지구 청년사역의 필요와 그 나라에서의 청

- 년사역 촉진을 위해 특별사역위원회들을 둘 수 있다.
3. 여러 총회들이 있는 나라의 경우, 지구는 국가 NYI 지도자를 두고 그 나라의 청년사역을 촉진하게 할 수 있다.

#### **810.315. 필드 NYI**

1. 적용되는 곳이면 지구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지구 NYI협의회는 지구 전역의 청년회 사역을 조정하고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총회들을 묶어서 만든 필드의 청년회 조직을 지구의 현 체제 내에서 만들 수 있다.
2. 필드의 특별 사역과 활동들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필드 NYI협의회를 창설할 수 있다.
3. 각 필드의 대표는 지구별 청년회의에서 그렇게 규정했으면 지구 NYI협의회의 일원이 된다.

#### **810.316. 유급직원**

1. 지구장은 지구 자문협의회와 지구 NYI협의회와 상의하여 지구 NYI코디네이터의 책임들을 규정한다.
2. 지구 NYI협의회와 지구 NYI코디네이터는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일한다.

### **회의**

#### **810.317. 지구 NYI 모임**

1. 지구 NYI의 다양한 모임들은 그 지구의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사역을 제공하도록 돕는다.
2. 지구 NYI는 또한 효과적인 사역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기 위해 지구 전역의 총회 청년연합회 그룹들과 모임들을 가지면서

총회 청년연합회 사역을 격려하고 강화한다.

3. 지구 NYI는 지구 전역의 효과적인 청년사역을 더 강화하는 세계 NYI 모임들에 참여한다.

#### **810.318. 지구 NYI협의회 회의**

1. 지구 NYI협의회는 지구 NYI의 사명과 비전을 실현키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
2. 협의회 회원들은 지구 NYI의장, 지구장, 지구 NYI코디네이터, 혹은 세계 NYI디렉터에 의해 스케줄이 정해지거나 소집될 수 있다.

#### **810.319. 지구별 회의**

1. 지구별 회의는 세계 NYI연합대회 중에 열린다. 지구별 회의는 지구 전역의 청년사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들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보고들이 접수되고, 지도자들이 선출되며 지구의 청년회 일과 관계된 입법적 업무는 어떤 것이든 지구별 회의에서 처리된다.
2. 지구 NYI협의회는 세계 NYI디렉터와 협력하여 지구별 청년회의를 조정하고 판리한다.
3. 지구별 청년회의는 지구 NYI협의회 회원들, 지구장 및/혹은 지구 NYI코디네이터, 그리고 세계 사역방안에 일치하여 지구에서 세계 NYI연합대회에 피선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4. 지구별 회의는 세계 NYI디렉터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세계 NYI연합대회 중에 소집된다. 지구 청년협의회와 지구장 및 세계 나사렛청년협의회가 승인하면, 과반수의 피선된 대의원이 세계 NYI연합대회에 참석지 못할 상황일 경우, 지구 NYI 업

무를 다루기 위해 세계 NYI연합대회 6개월 전에 우편 또는 전자기기를 통해 지구별 회의를 가질 수 있다.

## D. 세계 사역방안

### 사역

#### 810.400. 전도

세계 NYI는 청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여러 사역들과 특별행사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 810.401. 제자화

세계 NYI는 청년들을 양육하고 도전하여 개인의 경건시간, 예배, 교제, 사역, 그리스도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성장케 할 수 있는 지속성있는 여러 사역들과 특별 행사들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810.402. 지도자 개발

세계 NYI는 청년들을 지도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지속성있는 여러 사역과 특별 행사들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개정

#### 810.403. 규정

1. 나사렛청년회 현장 및 세계 사역방안은 세계 NYI의 조직, 기능, 지도력을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세계 NYI연합대회는 제출된 결의안들을 통해 세계 전역의 청년사역의 필요에 맞추어 나



사렛청년회 현장 및 세계 사역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세계 사역방안의 모든 수정은 나사렛국제청년회 현장과 나사렛성결교회의 장정과 일치해야 한다.

2. 나사렛청년회 현장이나 세계 사역방안이 다루지 않는 분야는 세계 NYI협의회 및 NYI디렉터의 권한 하에 둔다.

#### **810.404. 과정**

1. 세계 NYI협의회는 NYI디렉터와 협력하여, 제출된 결의안들을 통해 세계 사역방안 및 나사렛청년회 현장에 대한 개정 과정을 설정 및 공포한다.
2. 이 결의안들은 총회 청년협의회, 지구 NYI협의회, 세계 NYI협의회, 혹은 지지를 받는 최소 6명의 세계 NYI연합대회 대의원들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결의안들은 적절한 결의안 양식에 기재되어 설정된 마감일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3. NYI 사무소는 세계 NYI연합대회가 열리는 연도에 개최되는 세계 NYI협의회 연차회의 최소 30일 전까지 결의안들을 접수해야 한다.
4. 결의안들은 세계 NYI연합대회 이전에 세계 NYI연합대회 대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배부되어야 한다.
5. 결의안들은 먼저 세계 NYI협의회와 세계 NYI연합대회의 결의안위원회에 의해 고려되는데 이 결의안위원회는 지구 NYI협의회에 의해 임명된 각 지구 당 2명까지의 청년회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두 조직체 중 어느 한 조직체의 과반수 투표를 받은 결의안들은 세계 NYI연합대회에 상정되어 심사 대상이 된다.
6. 결의안들은 세계 NYI연합대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모든 대의원들의 3분의 2이상의 표결로 통과된다.

7. 나사렛청년회 현장 및 세계 사역방안의 모든 승인된 수정은 세계 NYI연합대회 이후 90일 이내에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그 개정된 문서는 효력발생 전에 서면으로 보급되어야 한다.

## 회원 및 사역 대상

### 810.405. 구성 및 책임

1. 모든 개교회 청년회 그룹들, 총회, 필드 및 지구 청년연합회 사역 그리고 그들의 회원들은 세계 나사렛청년회를 구성한다.
2. 세계 NYI는 청년회 회원, 청년회 관할 국제총회감독, 세계선교국장, 국제총회이사회, 국제총회감독회에 책무가 있다.
3. 세계 NYI는 매년 국제총회이사회에 보고하며 나사렛성결교회의 세계 NYI연합대회 및 국제총회에 보고한다.
4. NYI디렉터는 나사렛국제청년회를 통해 나사렛성결교회의 청년 사역 개발을 총 조정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5. 세계 전역의 나사렛청년회 사무소들은 나사렛성결교회가 청년 사역을 효과있게 이행하기 위해 세계 NYI협의회와 함께 일한다.

### 810.406. 사역 대상

1. 나사렛청년회 사역대상은 12세 이상의 청소년,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청장년들에게 둔다. 지구, 필드, 총회, 개교회 청년협의회들은 그 수준의 사역 계획에 따라 알맞게 사역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2. 대표하는 일과 프로그램 짜는 일을 위해 나사렛청년회는 세 부서 - 초기 청소년, 청소년, 대학생/청장년 - 를 둔다.

## 지도자

### 810.407. 임원들

1. 세계 NYI의 선출된 임원들은 의장과 부의장이다.
2. 나사렛성결교회의 유급직원이거나 나사렛성결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들을 포함한 기관들의 유급직원은 세계 NYI협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 나사렛성결교회로부터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총회나 기관에 속한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3. 세계 NYI 임원들은 청년회 및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이어야 하고 청년사역에 활동적이고 개인적 본이 되는 삶과 사역에 있어서 지도자들이어야 하고, 세계 NYI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4. 세계 NYI 임원들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세계 NYI 임원들의 행정비용을 위한 재정은 나사렛청년회 자금의 일부로 할당된다.
5. 세계 NYI 임원은 한 번의 온전한 임기 이상 그 직에 시무할 수 없다.

### 810.408. 선거

1. 세계 NYI 의장은 세계 NYI연합대회에서 선출되며 차기 국제총회의 종료시까지 또는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무한다.
2. 각 지구는 세계 NYI 의장을 위해 1명의 이름을 세계 NYI연합대회 중 열리는 지구 회의에서 추천한다.
3. 세계 NYI 부의장은 차기 국제총회 첫 회의 시에 열리는 세계 NYI협회에서 선출되며 차기 국제총회의 종료시까지 또는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무한다.
4. 세계 NYI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임했거나 혹은 의무 태만이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세계 NYI협회의 3분의 2이상의 투표

에 의해 제적됨으로 공석이 생길 수 있다. 세계 NYI 임원들 중에 공석이 생길 경우, 세계 NYI협의회는 회원들 중에서 선발하여 그 공석을 대신한다.

#### **810.409. 책임**

1. 세계 NYI 의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세계 NYI연합대회와 세계 NYI협의회 회의에서 의장을 맡는 일.
  - b. 국제총회이사회와 국제총회에서 이사와 대의원이 되어 NYI를 대표하는 일.
  - c. 세계 NYI협회 및 NYI연합대회에 의해 맡겨진 다른 의무들을 수행하는 일.
2. 세계 NYI 부의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가능한대로 모든 일에 의장과 협력하여 세계적으로 청년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일.
  - b. 세계 NYI연합대회의 모든 진행 과정과 세계 NYI협회의 모든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 보관하여 국제총회이사회에 제출하는 일.
  - c. 세계 NYI 의장의 부재 시 세계 NYI협회의 의장을 맡고, 모든 회의나 위원회에 대신 참석하며 의장 부재 시 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일.
  - d. 세계 NYI협회와 NYI연합대회가 맡긴 다른 의무들을 수행하는 일.

#### **810.410. 유급직원**

1. 나사렛국제청년회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국제총회이사회는 세

- 계 NYI의 책임을 NYI디렉터에게 맡긴다. NYI디렉터는 국제총회감독회의 감독하에 놓인다.
2. 국제총회감독회가 국제총회이사회의 선거 절차를 따라 NYI디렉터를 선출한다.
  3. 그 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충원된다:
    - a. 관할 국제총회감독은 세계 NYI협의회와 국제총회감독회와 의논하여 NYI디렉터를 추천한다.
    - b. 세계 NYI협의회에 추천안을 내놓아 과반수의 득표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제총회이사회의 선거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나사렛국제청년회 관할 국제총회감독에 의해 추천이 된 이후, 현직 NYI디렉터는 국제총회 후 첫 예정된 회의에서 과반수의 득표에 의해 승인되며 국제총회이사회의 선거 절차를 따라야 한다.
  5. NYI디렉터는 세계 NYI 선출직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6. NYI디렉터는 직책상 세계 NYI협의회, NYI실행위원회, 지구 NYI협의회, 그리고 다른 세계 NYI 위원회들에서 임명된 대로 봉사한다.

## 협의회

### 810.411. 구성

1. 세계 NYI협의회는 NYI디렉터, 세계 NYI 의장, 그리고 지구장과 협의하여 각 지구 NYI협의회에서 선출한 대표 한 명으로 구성된다.
2. 세계 NYI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임명된 다른 사람들은 협의회의 투표권이 없는 회원으로 삼길 수 있다.
3. 모든 세계 NYI협의회 회원들은 나사렛국제청년회 및 나사렛성

결교회의 회원들이어야 한다.

#### 810.412. 책임

1. 세계 NYI협의회는 NYI디렉터와 NYI 임직원들과 협력하여, 세계 NYI를 위한 절차를 설정하고 나사렛국제청년회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국제총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나사렛국제청년회의 모든 연령층을 위해 청년사역자료 개발을 지도하고 후원한다. 나사렛청년회 사역은 청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설계되는데, 이것들은 NYI 디렉터 및 세계 전역의 나사렛국제청년회 지도자들을 통해 활성화된다.
2. 세계 NYI협의회는 나사렛국제청년회의 사명과 비전에 일치하는 지구 차원의 효과적인 청년사역 프로그램, 행사, 자료 지원과 개발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3. 세계 NYI협의회는 협의회 회원들을 통해 지구, 필드, 총회, 개교회 차원의 청년회 대표성을 NYI 임직원들에게 제공한다. 협의회 회원들은 또한 세계 NYI협회 및 세계 NYI 임직원을 대표하여 그들의 지구, 총회, 개교회들과 솔선하여 연락을 취함으로써 세계 NYI를 대표한다.
4. 세계 NYI협의회는 세계 NYI연합대회 계획 및 집행을 돕는다.
5. 세계 NYI협의회는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와 협력하여 주일학교/성경공부/소그룹의 청년부문에 의견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등록 및 출석 증가를 독려하고, 전 세계적으로 청년 주일학교/성경공부/소그룹 교사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을 장려하는 일을 돕는다.
6. 세계 NYI협의회는 국제총회이사회를 통해 제공된 나사렛국제

청년회의 연간 예산 및 지출을 검토한다.

7. 세계 NYI협의회는 관할 국제총회감독의 승인 대상인 나사렛국제청년회 행사 및 제반 협력 관계를 통해 얻은 자금의 지출을 지도하고 검토한다.

#### **810.413. 위원회**

1. 실행위원회는 선출 직인 세계 NYI 임원들과 NYI디렉터로 구성된다. 실행위원회는 세계 NYI협회의 전체 협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할 경우 세계 NYI협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행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협의회 다른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그 협의회 차기 회의 때 전체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NYI협회는 그들의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대로 필요한 특별 사역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다.

#### **810.414. 유급 임직원**

1. NYI디렉터는 세계선교국장국과 국제총회감독회의 감독을 받는다. 세계 NYI협회는 관할 국제총회감독에게 이 의무들의 수정을 천거할 수 있다.
2. NYI디렉터는 세계 NYI협회와 상의하여 나사렛 청년국의 유급 임직원들의 책임을 지정한다. 세계 NYI협회와 세계 NYI의 유급 임직원들은 서로 협력 및 조화를 이루며 일한다.
3. NYI디렉터는 세계 NYI 의장으로 시무할 수 없다.

#### **회의**

#### **810.415. 세계 NYI 회의**

1.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사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 NYI 사역은 예배, 전도, 교육, 훈련, 친교를 위해 여러 모임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세계 NYI 지도자는 특별 그룹들과 관련되고 여러 지구들에 알맞는 세계적 사역을 계획하기 위해 지구, 필드, 총회, 개교회 청년회 지도자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나사렛성결교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청년사역이 되도록 한다.
2. 세계 NYI 지도자들과 임직원들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자원으로 모든 차원의 청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810.416. 세계 NYI협의회 회의**

1. 세계 NYI협의회는 나사렛국제청년회의 사명과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모인다. 그 회의의 일정은 국제총회이사회의 연례회의와 연관되어 정해진다.
2. 세계 NYI 임원들이나 NYI디렉터는 나사렛국제청년회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상의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810.417. 세계 NYI연합대회**

1. 세계 NYI연합대회는 세계의 청년사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감동적인 회의들을 제공한다. 나사렛국제청년회 일에 부합한 모든 입법 업무는 세계 NYI연합대회에서 처리된다.
2. 국제총회감독회는 세계 NYI협의회가 국제총회 프로그램위원회에 추천한 것에 비추어 대회 기간 및 소집시간을 정한다. 세계 NYI 임원들, NYI디렉터는 세계 NYI협회의 도움을 받아 대회를 진행한다.
3. 세계 NYI연합대회의 모든 대의원들은 세계 NYI연합대회 시 나



사렛성결교회 및 청년회의 회원들로서 12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 각 총회 청년연합회 대의원은 대회 시 그[녀]가 대표하는 총회의 거주자 및 회원이어야 한다.

4. 세계 나사렛청년연합대회는 세계 NYI협의회, NYI디렉터, 지구 NYI 임원들(3명 이하), 지구, 필드, 국가, 그리고 총회 청년회 코디네이터, 그리고 다음과 같은 총회 청년연합회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 a. 1,000명 이하의 청년회 회원을 둔 총회는 다음과 같은 대의원들을 파송한다.:
    - (1) 세계 NYI연합대회시 시무중인 총회 나사렛청년연합회 회장.
    - (2) 현재 안수목사나 사역목사, 인정교역자로서 나사렛청년회에 적극적인 지도력을 행하는 1명의 목회자 대의원.
    - (3) 세계 NYI연합대회시 23세 이상으로서 청년회에 적극적인 지도력을 행하는 평신도 대의원.
    - (4) 세계 NYI연합대회시 12-23세 사이의 청년회에 활동적인 1명의 청년 대의원.
  - b. 그 외에 총회는 매 1,500명의 청년회 초과회원 및 혹은 나머지 1,500명 회원의 절반 이상의 회원(751-1,499명의 회원)당 각 1명의 목회자 대의원, 평신도 대의원, 세계 NYI연합대회시 12-23세인 청년 대의원을 추가로 보낼 수 있다.
  - c. 총회 대의원 규모는 세계 NYI연합대회 바로 전의 총회연차회의에 보고된 총회 청년회 회원에 기초한다.
  - d. 모든 총회 대의원들은 세계 NYI연합대회 전 18개월 이내 혹은 여행 비자를 요한다든지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24개월 이내에 열리는 총회 청년연합대회에서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후보 대의원들은 대의원들을 선출

한 후 남은 추천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투표용지에 투표하여 다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데 집계된 득표순에 따라 제1후보 대의원, 제2후보 대의원, 제3후보 대의원등으로 정한다. 대의원들과 후보 대의원들은 세계 NYI연합대회가 열리는 그 해 3월 31일까지는 선출되어야 한다.

- e. 각 나사렛대학교 혹은 신학교 학생회장은 청년회와의 파트너 관계인 그(녀)의 학교의 대표로서 대의원이 될 수 있다. 그(녀)가 대의원으로서 봉사 혹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학생회장단이 선출한 대표가 대리 대표자가 될 수 있다.
5. 청년회 조직이 없는(총회 청년연합대회가 없는) 총회일 경우 세계 NYI연합대회 대표의원은 청년회 연령을 가진 자로서 총회연합회의가 선정한 1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이 연합대회 전에 그만둘 경우 총회고문회가 자격있는 대의원을 임명한다.
6. 적절하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세계 NYI연합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하여 세계 NYI연합대회의 구역을 설정한다. 투표는 NYI연합대회 사무위원회가 설정한 투표 과정에 의해 실시된다.
7. 각 지구별 회의는 세계 NYI연합대회 중에 갖게 되며, 지구 NYI협의회, 지구장, 지구 NYI코디네이터 그리고 그 지구의 선출된 총회 청년회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표)

회원수	대의원수*	회원수	대의원수*
4-1750	3	4751-6250	12
1751-3250	6	6251-7750	15
3251-4750	9	7751-9250	18

---

\* 총회 나사렛청년연합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수에는 직책상의 대의원들(총회 청년연합회장, 지구 NYI 의장과 코디네이터들, 국제 임원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제 2 장 나사렛국제선교회(NMI)

### 811.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칙

#### 제1조 명칭

본회의 이름은 나사렛성결교회의 나사렛국제선교회(NMI)이다.

####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기도하기, 드리기, 교육하기, 다음세대 양육하기를 통하여 나사렛성결교회를 선교에 동원하는데 있다.

#### 제3조 조직

##### 제1항 개교회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는 개교회의 구성 기관이며,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를 통하여 목회자와 교회실행제직회와 협력하여 일한다.

##### 제2항 총회

총회 국제선교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도자들은 총회감독, 총회고문회, 이와 관련된 총회 임원들과 협동하여 일한다. 총회의 관할 안에 있는 모든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들은 총회 나사렛국제선교회를 구성한다.

##### 제3항 세계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도자들은 세계선교국, 국제총회이사회의 세계선교위원회 그리고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협력하여 일한다.

모든 총회 및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들은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를 구성한다.

#### **제4조 회원권**

A. **정회원:** 나사렛 교단의 회원이며 나사렛국제선교회의 목적을 지지하는 사람은 본인이 속한 개교회의 국제선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1. 투표권 및 임원 피선거권은 유/초등 및 청년 분회를 제외하고는 만 15세 이상의 정회원에 국한한다.
2. 본 회칙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회원"은 국제선교회 회원을 의미한다.

B. **준회원:** 나사렛교단의 등록 교인이 아닌 자로, 국제선교회의 목적 달성을 지지하는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제5조 협의회와 임원**

##### **제1항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

A. **목적:**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는 개교회에서 1) 기도하기 2) 드리기 3) 교육하기 4) 다음세대 양육하기를 통해 국제선교회의 목적을 장려한다.

##### **B. 구성**

1. 동 협의회는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또는 교회의 형편에 맞도록 회장과 담임목회자 간에 합의한 수로 구성된다.
2.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는 회장과 담임목회자(당연직), 그리고 개교회국제선교협의회가 정하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추가되는 협의회 위원들은 기도하기, 드리기, 교육하기, 다음

세대 양육하기를 포함하지만 제한을 받지 않는 특별 영역의 책임을 진다.

4. 협의회 위원은 한 가지 이상의 직책을 맡을 수 있지만, 단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총회 국제선교협의회 위원은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회의의 승인을 얻어 직책상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회의의 위원이 된다.

### C. 추천, 선출, 임명, 공석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회는 협의회에 적당한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회 추천위원회가 아닌 자체 추천위원회 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 만일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로 한다면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회장이 임명한다.

#### a. 회장

- (1) 교회 회기 마지막에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회는 1명 이상의 회장 후보자 명단을 제출할 추천위원회에 여러 사람을 추천한다. 최종 후보자들은 개교회 실행제직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회장은 정회원들이 참석한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의 득표를 한 자가 선출되며 교회 회기년 1년이나 2년 동안 봉사하게 된다. 개교회의 국제선교협의회회와 담임목회자는 회장의 봉사기간을 제안할 수 있다.
- (3) 현직 회장의 재선 여부는 세계선교협의회회의의 추천과 담임목회자 및 실행제직회의의 승인 하에 가부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 (4) 아직 조직이 안 된 교회이거나 조직된지 5년 미만인 교회의 경우, 또는 35명 미만의 회원이 있는 교회의 경우 담임목회자가 실행제직회와 논의 및 승인을 거쳐 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 b. 협의회

- (1) 현직 회장의 추천과 담임목회자의 동의에 의해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의 나머지 위원들은 국제선교회원들의 다수결 투표로, 혹은 교회연차회의에서, 혹은 교회실행제직회의 승인을 얻어서 회장과 담임목회자가 임명할 수 있다.
- (2) 봉사 기간은 1년 내지 2년이거나, 다음 후임자가 국제선교회 협의회의 추천에 의해, 혹은 실행제직회와 담임목회자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될 때까지이다.
- (3) 선출된 후 임기는 교회 회기의 첫째날부터 시작된다.
- (4) 만일 그 개교회가 국제선교회 재정을 포함한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통합재무 (unified treasurer)를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국제선교회 재무가 되며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의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갖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c. 총회 연합대회를 위한 대의원

- (1) 대의원 및 후보대의원은 연차회의에서 무기명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 (2) 만일 선출이 가능하지 않다면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의에 의하거나 그것도 안되면 교회실행제직회에 의해 다수결로 선정한다. (대의원 수의 결정에 관해서는 제 6조 3항 A.3을 참조).

#### d. 공석

- (1) 회장: 회장 직이 공석일 경우에는 국제선교협의회의가 실행제직회에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실행제직회는 그중 1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장정의 규정에 의해 소집된 국제선교회회의에서 과반수 표결로 선출한다. 협의회가 없는 교회일 경우 실행제직회가 다수결로 선정하여 공석을 채운다.

- (2) 다른 협의회 위원들: 국제선교회협의회 또는 부재시 실행제 직회가 임명한다.

#### D. 협의회 임원들의 임무

##### 1. 회장

- a. 개교회의 국제선교회의 사역을 지휘하고 촉진한다.
- b. 국제선교회의 정규 또는 특별 모임을 주도한다.
- c. 때때로 요구되는 각종 업무를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탁한다.
- d. 직책상 교회실행제직회와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이 되며 총회 국제선교회연합대회 및 총회연차회의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e. 직무해설서에 열거된 임무들을 수행한다.
- f. 만일 개교회 국제선교회 회장의 배우자가 개교회 실행제직회 회원일 경우, 또는 목회자일 경우, 개교회 국제선교회 회장이 실행제직회에서 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국제선교회협의회에서 결정한 대표자가 회장을 대신하여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갖고 실행제직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 2. 실행위원회

- a. 협의회 회의들 간 사역들을 수행한다.

### 제2항 총회 국제선교협의회

#### A. 목적

총회 국제선교협의회는 총회 내에서 기도하기, 드리기, 교육하기, 다음세대 양육하기를 통하여 나사렛성결교회를 선교에 동원하는 국제선교회의 목적을 장려한다.

#### B. 구성



1. 3단계 총회의 협의회는 4명의 임원들로 구성된다: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NMI 임원들), 여기에 총회의 필요와 규모에 따라 3명 이상의 위원을 둔다.
2. 협의회 위원들은 한 가지 이상의 직책을 맡을 수 있지만, 단 1표의 투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3. 실행위원회는 회장과 다른 국제선교회 임원들로 구성한다. 원한다면 최소한 3명의 협의회 위원들이 총회 국제선교회협의회에 의해서 실행위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어 한 회기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섬긴다. 총회감독은 실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개척, 1단계, 2단계 총회의 경우 아래 제2조 C.3를 참조하라.

#### C. 추천, 선출, 임명, 공석

1. 추천: 협의회 위원들은 그 총회에 있는 개교회 국제선교회 회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다.
  - (a) 총회 국제선교회실행위원회는 추천위원회를 임명하고 선출될 협의회 인원을 결정한다.
  - (b) 총회감독은 총회 국제선교회 회장의 추천을 위한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한다. 총회 국제선교회 회장은 총회감독의 승인 하에 다른 추천들을 위한 추천위원회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선출: 회장과 적어도 3명의 추가 협의회 위원들은 연합대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이 3명의 추가 협의회 위원들은 부회장, 총무와 재무가 된다. 봉사 기간은 총회감독의 승인을 받아서 총회 국제선교회협의회에 의해 결정되는데 연합대회 1회기년 혹은 2회기년, 아니면 다음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다. 새로운 회장은 연합대회가 마친 후 30일 이내에 임직한다.

다. 연합대회 1회기년은 연합대회의 휴회로부터 다음 연합대회의 휴회까지를 말한다. 이 4명은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외에 협의회 위원들 중 3명 이상을 협의회를 통해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a. 회장

- (1) 추천위원회는 협의회 회장 직을 위해 1명 또는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 국제선교협의회가 현직 회장의 연임을 위한 가부투표를 추천할 경우는 예외이다.
- (2) 현직 회장의 재선 여부는 총회 국제선교협의회가 추천과 총회감독의 승인 하에 가부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의 3분의 2표를 득표해야 한다.
- (3) 회장이 단수로 추천된 경우 출석하고 투표한 대의원의 3분의 2표를 득표한 자가 선출되며, 2명 이상이 추천된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선출된다.

기간은 연합대회 1회기년 혹은 2회기년 동안, 또는 후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할 수 있다. 총회의 국제 선교협의회와 총회감독은 그 임기를 정한다.

- (4) 두 총회간 통합에 있어서, 두 총회 국제선교회 회장은 공동회장으로 섬길 수 있다. 공동회장은 총회 국제선교회 실행위원회가 총회고문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한사람의 총회 국제선교회 회장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 총회 국제선교회연합대회에서 계속해서 선출된다. 공동회장은 합의에 의해 기관을 이끈다. 만일 해결할 수 없는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총회 국제선교회 실행위원회의 투표로 결정한다. 오직 한명의 공동회장만 총회연합회의, 각종 총회위원회,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연합대회에서 총회 국제선교회를 대표하며 총

회 국제선교회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b. 부회장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된다.
- (1) 총회 국제선교회협의회가 총회감독의 승인을 얻어서 현직 부회장의 임기 연장을 가부 투표로 하기로 추천하지 않는 이상 추천위원회가 1명 이상의 이름을 부회장 후보로 추천한다.  
또는,
  - (2) 협의회 임원 중 한명으로 선출하되, 구체적인 직책은 협의회가 결정한다.
- c. 총무와 재무는 다음에 의해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 (1) 총회 국제선교회협의회가 총회감독의 승인을 얻어서 현직 총무와 재무의 임기 연장을 가부 투표로 하기로 추천하지 않는 이상 추천위원회가 1명 이상의 이름을 총무와 재무 후보로 추천한다. 또는,
  - (2) 만약 총회가 국제선교회 기금을 포함한 총회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 재무를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총회 국제선교회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총회 협의회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총회 국제선교회 재무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d. 추가 협의회 회원: 임원들 이외에 3명의 협의회 회원은 연합대회 1회기년 또는 2회기년 동안의 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이들의 직무는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되며, 추천위원회와 총회감독은 이들의 임기를 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협의회 회원들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실행위원회에서 혹은 총회 협의회에서 임명될 수 있다.
- e. 총회 나사렛국제청년연합회로부터 청년 대표의 추천이 요청될 수도 있다.

3. 개척, 1단계, 2단계 총회: 개척, 1단계, 2단계 총회는 총회 국제선교회연합대회, 또는 연합대회가 없는 곳에서는 총회감독이 국제선교회의 목적을 총회 안에서 촉진시킬 총회 국제선교회 회장을 임명한다. 회장은 혼자 섬기든지, 혹은 총회감독과 상의하여 총회 내 다른 교회들의 회원들을 임명하여 회장을 도울 총회 국제선교회협의회를 구성한다.

#### 4. 공석

- a. 회장: 실행위원회는 1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출석하고 무기명으로 투표한 총회 국제선교회협의회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선출된 사람은 다음 총회 연합대회의 휴회까지, 혹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한다.
- b. 다른 협의회 회원들: 실행위원회 또는 총회 협의회는 임명으로 모든 공석을 채운다. 새로 임명된 협의회 회원들은 다음 총회 연합대회의 휴회까지 혹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한다.
- c. 통합 재무: 총회가 통합 재무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공석은 총회고문회에 의해 채워진다.

### D. 협의회 임원들의 직무

#### 1. 회장

- a. 총회 국제선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회 협의회를 지휘하고 촉진한다.
- b. 총회협의회, 실행위원회, 그리고 총회 연합대회의 모든 모임을 사회한다.
- c. 총회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연간 예산안을 준비한다.
- d. 총회 국제선교회연합대회와 세계 NMY협의회의 지구대표에

게 매년 서면보고를 제출한다. 또한 적용이 가능한 지구에서는 지구 NMI 코디네이터에게도 보고한다.

- e. 때때로 요구되는 일들을 협의회 회원들에게 임무 부여하는 일.
- f. 장정 239조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총회 위원회의 직책상 당 연직 위원으로 봉사한다.
- g. 직무해설서에 나와 있는 임무를 행하는 일.

## 2. 부회장

- a. 회장의 부재시, 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 b. 총회 국제선교협의회에 의해 지정된 다른 모든 일들을 수행한다.
- c. 직무해설서에 나와있는 다른 임무를 행하거나 혹은 때때로 총회 국제선교회회장으로부터 부여되는 일들을 행한다.

## 3. 총무

- a.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b. 매년 개교회 국제선교회 회장들에게 보고서 양식을 발송한다.
- c. 통계적 자료들을 보존하고 총회 국제선교회회장,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디렉터, 세계협의회 대표, 그리고 해당되는 곳에서는 세계 선교 지구들에서의 국제선교회 지구코디네이터에게 연합대회 보고서를 제출한다.

## 4. 재무

- a. 모든 기금의 입출금에 관한 내역들을 상세히 기록한다.
- b. 모든 현금이 적절한 시기에 지정된 재무들에게 송금되도록 한다.
- c. 고정 항목을 유지하는 보고서를 총회 협의회에 제출하며 총회연합대회를 위한 보고를 준비한다.

- d. 관련 총회 임원과 함께 총회 국제선교회 재정 장부에 대한 연차 회계 감사를 준비한다.
- e. 직무해설서에 기록된 대로, 또는 총회 국제선교회회장에 의해 때때로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한다.

#### 5. 실행위원회

- a. 추가 총회 협의회 임원을 임명하거나 협의회의 공석을 채운다.
- b. 협의회 회의간 사역들을 수행한다.
- c. 다음 연합대회까지 회장이 공식인 경우, 2명 이상의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 6. 기타 협의회 임원

- a. 총회 국제선교회회장이나 총회 국제선교회협의회에 의해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3항 세계 NMI협의회

**A. 목적:**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협의회는 교단 내 지구, 필드, 총회, 개교회의 관계망을 사용하여 기도하기, 드리기, 교육하기, 다음세대 양육하기를 통하여 나사렛성결교회를 선교에 동원하는 국제선교회의 목적을 장려한다.

#### B. 구성

1. 세계 NMI협의회는 세계 NMI회장, 세계 NMI디렉터, 나사렛성결교회의 각 지구당 1명의 대표자들, 그리고 세계선교국장으로서 구성한다.
2. 세계 NMI실행위원회는 세계 NMI회장, 세계 NMI디렉터, 세계 NMI부회장, 세계 NMI총무, 한명의 협의회 회원, 그리고 세계선교국장으로서 구성한다.

#### C. 추천, 선출, 공석

1. 세계 NMI디렉터 추천과 선출.
  - a. 세계 NMI실행위원회와 관할 국제총회감독은 세계 NMI디렉터 직을 수행할 후보자를 찾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최대 2명의 이름을 후보자로 국제총회이사회 세계선교위원회에 제안한다.
  - b. 국제총회이사회 세계선교위원회는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함께 제안된 후보자들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국제총회감독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최대 2명의 후보자를 승인한다.
  - c. 국제총회감독회는 국제총회이사회에서 올린 이름들 중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사람을 선출한다.
2. 세계 NMI회장에 대한 추천과 선출
  - a. 추천위원회는 세계 NMI디렉터를 의장으로 하고 6, 7, 또는 8명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구성에 있어서 세계 NMI를 대표하는 협의회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 b. 추천위원회는 세계 NMI회장 후보자로 1명 이상의 명단을 제출한다. 후보자(들)는 국제총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들은 국제총회이사회의 고용인이 아니어야 한다.
  - c.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세계 NMI연합대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3분의 2를 득표한 자가 세계 NMI회장으로 선출된다.
  - d. 세계 NMI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국제총회의 휴회부터 다음 국제총회 폐회까지, 혹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다.
  - e. 세계 NMI회장은 3회까지 연임이 허용된다. 1회의 재직 기간은 4년이다. 세계 NMI회장 직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경우에도 3회의 온전한 임직을 수행할 수 있다.

3. 세계 NMI협의회 회원에 대한 추천과 선출

- a. 각 총회 국제선교협의회는 지구 대표의 후보 투표를 위하여 대표 1명 또는 2명의 이름을 지구를 통하여 세계 NMI 사무실에 상정해야 한다.
  - (1) 추천된 자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지구의 회원이며 거주하여야 한다.
  - (2) 이 조항은 등록된 교회의 지구가 주거지의 지구와 경계선에 접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국제총회이사회의 고용인은 추천될 수 없다.
- b. 후보 투표에 오른 이름들 가운데, 세계 NMI연합대회의 각 지구별 모임에서 투표로 두 후보를 선택한다. 가장 높은 득표를 한 2명이 후보자로 지목되지만 이 2명은 동일한 총회에서 나올 수 없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두 번째 득표자는 다른 총회로부터 온 세 번째 득표자에 의해 대체된다.
- c. 지구회의는 세계 NMI협의회를 위한 지구 대표 1인을 과반수 표결로 선출한다.
- d. 세계 NMI협의회 회원들의 임기는 4년으로, 국제총회의 휴회부터 차기 국제총회의 휴회까지이다.
- e. 세계 NMI협의회 회원 시무 임기는 2회의 연임에 국한한다. 1회의 임기는 4년이다. 세계 NMI협의회 회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경우에도 2회 연속 온전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적어도 1회의 온전한 임기를 시무하지 않은 자는 다시 시무하도록 선출될 수 있다.

4. 실행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과 선출

- a. 세계 NMI협의회는 국제총회가 마치고 전에 모이는 첫 번째



모임에서 1명의 부회장, 1명의 총무, 그리고 실행위원회를 위한 1명의 추가 위원을 선출한다.

- b. 선출은 출석자들의 무기명 다수결 투표로 행해진다.
5. 국제총회이사회를 위한 국제선교회 대표의 추천과 선출.
- a. 세계 NMI협의회는 나사렛성결교회의 국제총회이사회에 국제선교회를 대표할 1명의 협의회 회원을 추천한다.
  - b. 국제총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국제선교회의 대표를 선출한다.
6. 공석
- a. 차기 세계 NMI연합대회 이전에 세계 NMI회장 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새로운 세계 NMI회장은 실행위원회가 관할 국제총회감독과 상의하여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 3분의 2의 득표한 자로 선출된다. 그는 차기 국제총회의 휴회까지 세계 NMI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 소집은 담당 국제총회감독과 상의하여 세계 NMI협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 b. 만일 차기 세계 NMI연합대회 이전에 실행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하면, 세계 NMI협의회는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공석은 세계 NMI협회의 무기명 다수결 투표로 채워진다.
  - c. 만일 차기 세계 NMI연합대회 이전에 세계 NMI협의회에 공석이 발생하면, 해당 지구내 각 총회 국제선교회실행위원회는 세계 NMI실행위원회에 한명씩 추천하고 세계 NMI실행위원회는 두명의 후보자를 지명하여 상정하며 해당 지구내 각 총회 국제선교회회장들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 득표로 공석이 채워진다.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 소집은 담당 국제총회감독과 상의하여 세계 NMI실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 d. 세계 NMI디렉터의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세계 각 기관 디렉터 추천 및 선출과 동일한 과정을 밟는다. (제 5조 3.C.1항 참조)
- e. 국제선교회를 대표하는 국제총회이사회의 이사 직에 공석이 발생하면 세계 NMI실행위원회는 담당 국제총회감독과 상의하고 국제총회감독회의 승인을 얻은 후 1명의 후보자를 지목할 수 있다. 세계 NMI협의회는 다수결 투표로 국제총회이사회 이사를 선출한다.

#### D. 직무

##### 1. 세계 NMI회장

- a. 세계협의회, 실행위원회, 세계 NMI연합대회의 회의들을 주재한다.
- b. 국제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봉사한다.
- c. 때때로 요구되는 일들을 다른 협의회 회원들에게 부여한다.
- d. 직무해설서에 나오는 임무들을 수행한다.

##### 2. 부회장

- a. 회장의 부재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b. 기타 직무해설서에 나오는 다른 업무나 세계 NMI회장이 때때로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3. 실행위원회

- a. 협의회 모임 간 사역들을 수행한다.

##### 4. 세계협의회 회원들

- a. 국제선교회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서 세계 NMI회장 및 디렉터와 협력한다.
- b. 그들이 대표하는 지구내 국제선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장려

한다.

- c. 지구의 국제선교회 사역에 관한 보고서를 세계 NMI협회의 모든 모임에 제출한다.
- d. 국제총회에서 통과된 법규 중 해당 지구 대표자와 관련된 모든 규정들을 수행한다.
- e. 기타 직무해설서에 나오는 다른 업무나 세계회장이 때때로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2. 세계 NMI디렉터

- a. 국제선교회의 실행위원으로 봉사한다.
- b. 세계협의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세계의 모든 총회들에게 국제선교회의 선교적 관심사를 전달한다.
- c. 국제선교회 지침서와 회칙의 의미를 해석한다.
- d. 세계 NMI사무국의 인사와 사역을 주관한다.
- e. 모든 국제선교회 출판물의 주편집자로 봉사한다.
- f. 세계 NMI협의회, 세계 선교위원회, 국제총회이사회를 위해, 연례 재정 및 통계 보고서를 제출한다.
- g. 세계 NMI회장과 함께 세계 NMI협의회와 공조하여 세계 NMI연합대회의 조직과 프로그램을 지휘한다.
- h. 세계 NMI연합대회에 재정 및 통계보고서를 제출하되 세계선교국을 통해서 국제총회에 보고할 압축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 i. 직책상 국제총회의 대의원으로 봉사한다.
- j. 직무해설서에 나오는 다른 임무들을 수행한다.

## 제6조 회의

### 제1항 개교회 회의

#### A. 회의

모든 국제선교회 연합대회, 협의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그리고 특별전문위원회는 모든 회원들이 동시에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면 전화 회의나 전자통신 미디어를 통해서 회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B. 회원들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본 현장이 요구하는 모든 의사소통은 전자상으로 송신되어 질 수 있다.**

## 제2항 개교회 활동과 회의

### A. 지속적인 활동들

1. 선교 정보, 영감, 기도를 위해 매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선교 활동을 한다.
2. 이 활동은 모임, 선교 봉사, 선교 관련 강사 초빙, 선교 학습, 선교 활동 및 행사, 선교 경험, 그리고 국제선교회 강조 사역 등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3. 국제선교회 회장과 협의회는 담임목회자와 협력하여 개교회의 선교 교육과 선교 동원을 계획한다.
4. 개척교회에 있어서는 총회에서 임명한 지도자가 회중들로 하여금 선교 교육과 선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B. 국제선교회연차회의

1. 개교회 국제선교회연차회의는 총회 국제선교회연합대회 개최 전 늦어도 30일 이전에 열려야 한다.
2. 개교회 협의회를 위한 투표 및 선출은 만 15세 또는 그 이상의 국제선교회 회원으로 제한한다.

### C. 협의회 회의

개교회 협의회는 적어도 1년에 4회 이상 모여서 개교회 조직의 사역을 계획하고, 보고하고,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영감을 주고, 실

행에 옮겨야 한다. 협의회 회원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 제3항 총회 회의

#### A. 총회 연합대회

1. 총회 국제선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 보고하고, 기도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부여하며, 계획들을 발표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총회 연합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2. 연합대회의 시기와 장소는 총회감독과 상의하여 총회 국제선교회협의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3. 회원자격
  - a. 오직 해당 총회의 회원만이 직책상 또는 선출된 대의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
  - b. 연합대회의 직책상 회원은 총회 국제선교회협의회, 총회감독, 개교회의 모든 임직교역자들과 사례비를 받는 모든 전임 부교역자, 총회고문회의 평신도 위원, 총회가 끝난 당 해년의 개교회 국제선교회 회장, 새로 선출된 국제선교회 회장 또는 새로 선출된 회장의 불참 시 새로 선출된 부회장, 세계 국제선교회협의회 회원, 은퇴 교역자, 은퇴 선교사, 자국 선교 보고 중인 선교사, 선교사 피임명자, 자신들이 봉사했던 총회에 회원권을 둔 국제선교회 증경회장 등이다.
  - c. 각 개교회나 개척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은 국제선교회 회원들이어야 한다 (만 15세이거나 그 이상). 선출되는 대의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한다: 25명 또는 그 이하의 정회원을 가진 개교회 국제선교회는 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이 수를 넘는 경우 각 25명당 1명 혹은 초과 과반수에 1명의 대의원을 추가한다. 정회원은 선출이 이루어질 당시 개교회

국제선교회 연차회의에 보고된 회원수를 근거로 한다.

4. 출석한 대의원들이 정족수를 구성한다.

## B. 협의회

총회 협의회는 총회 연합대회 사이에 적어도 연 2회의 모임을 가져야 한다. 추가로 회장에 의해 특별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협의회 회원들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이룬다.

## 제4항 세계 회의

### A.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 연합대회

1.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에서 진행 중인 사역을 보고하고, 기도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부여하며, 계획들을 발표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총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 연합대회를 개최한다. 등록된 대의원들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이룬다.
2. 연합대회의 시기와 장소는 담당 국제총회감독과 상의하여 세계 NMI협의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세계 NMI협의회는 공식 장소를 승인한다.
3. 회원자격
  - a. 세계 NMI연합대회의 직책상 회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의 조직된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총회 국제선교회회장, 또는 회장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부회장이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갖고 해당 총회를 대표할 수 있다.
  - b. 세계 국제선교회연합대회를 위한 대의원과 후보 대의원들은 총회 국제선교회연합대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후보 대의원들은 또 다른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거나, 총회협의회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을 선출한 무기명 투표와 같은 투표에

서 선출할 수 있다. 대의원과 후보 대의원들은 총회협의회의 추천이 있을 경우 총회 연합대회에서 무기명 투표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을 얻은 후 무기명 투표에서 다수결로 선출될 수 있다. (대의원 수와 선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3.c 참조)

- c. 세계 NMI연합대회를 위해 선출되는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준회원을 제외한 국제선교회 정회원이 1,000명 또는 그 이하인 3단계와 2단계 연회에서는 각 2명씩의 대의원들을 선출하되, 매 700명의 회원 증가시 한 명의 대의원을 추가한다. 정회원수는 선거가 이루어진 총회 연합대회에서 보고된 국제선교회 회원수에 근거한다. 총회 국제선교회 추천위원회는 대의원들을 추천할 수 있다. (총회 단계의 정의에 관해서는 장정 제200.2조를 참조) 총회 국제선교회협의회의 총회 연합대회에서 선출할 후보 대의원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 d. 50명 이하의 선교사가 있는 세계 선교 지구는 1명의 선교사 대의원을, 51명 이상의 지구에서는 2명의 선교사 대의원들을 각 지구에서 사역하고 있는 국제선교사들에 의해 추천하고 선출하며, 투표용지는 세계 NMI디렉터 사무국이 발행한다.

- e. 대의원들은 세계 NMI연합대회 개최 16개월 이내에 혹은 여행 비자나 다른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곳은 24개월 이내에 총회 연합대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다수결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첫 번째 투표는 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이며 두 명의 후보자가운데 과반수 투표로 선출한다.

- f. 선출된 세계 NMI연합대회 대의원은 선출 당시의 소속 총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선출된 대의원이 해당 총회 외의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 이전 총회 대의원권은 상실하게 된다. 이 조항은 등록된 교회의 총회가 주거지의 총회와 경계선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g. 총회 회장, 총회 부회장, 선출된 대의원들, 정식 선출된 후보 대의원, 또는 지명된 후보 대의원들이 세계 NMI연합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이러한 사실이 총회 연합대회가 폐회한 후 그리고 세계 NMI연합대회 개최 이전에 확인된 경우에는 총회 국제선교협의회가 임명한 후보 대의원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 총회 국제선교협의회의 부재 시에는 총회감독의 승인 하에 총회 국제선교회 회장이 임명한 후보 대의원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

#### B. 세계 NMI협의회 회의

1. 세계 NMI협의회는 조직의 각종 사역을 집행하기 위해서 4개년 회기 중 매년 1회 회의를 갖는다. 회의 정족수는 협의회 회원의 과반수이다.

### 제7조 기금

#### 제1항 개교회에서 조달된 기금

##### A. 세계전도기금

1. 세계전도기금으로 드러진 모든 기금은 국제총회재무(General Treasurer)에게 송금되어야 한다.
2. 세계전도기금(WEF)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된다: 모든 교회는 교회 수입의 5.5%를 전도기금으로 기부해야 한다.
3. 교회들은 세계전도기금을 위해 믿음의 약속(Faith Promise), 부활절 헌금과 추수감사절 헌금, 정규 세계전도기금 헌금, 기



도와 금식 헌금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B. 승인된 특별 선교헌금**

1. 세계전도기금 외에 승인된 특별 선교헌금을 드리게 되는 기회들이 주어진다.
2. 추가의 승인된 특별 선교헌금은 나사렛세계 사역센터의 해당 인사에 의해 승인 및 권한을 받을 수 있다.
3. 세계 NMI협의회는 세계 차원에서 국제선교회를 통하여 장려되고 모금되는 모든 승인된 특별 선교헌금을 재가한다.

#### **C. 기금의 예외 사항**

1. 세계전도기금과 개교회나 총회에 의해 마련한 승인된 특별 선교헌금은 나사렛 선교 이외에 개교회나 총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D. 개교회 경비**

개교회 실행제직회는 국제선교회 회장의 지출 환급을 비롯한 국제선교회 경비를 위한 적절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 **제2항 총회에서 조달된 기금**

총회 재정위원회는 총회 국제선교회 회장의 지출 환급을 비롯한 총회 국제선교회 경비를 위한 적절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 **제3항 사례비**

국제선교회의 사역은 교회를 위한 사랑의 봉사이다. 개교회, 총회, 세계 중 어느 단계에서나 임원들에게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 단 나사렛성결교회에 의해 고용된 세계 NMI디렉터는 예외이다.

개교회, 총회, 세계 모든 단계에서 협의회 회원들의 경비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제공될 수 있다.

### **제8조 정책과 수행과정**

세계 NMI협의회는 국제선교회를 위한 정책 수행 과정, 업무 내용에 관한 추가 항목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제선교회 회칙과 함께 국제선교회 지침서에 수록된다.

### **제9조 제정법의 권위**

현 개정판 로버트의 의사진행 법칙(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에 실린 규칙(관련법과 상충되지 않는 한), 나사렛 교단의 법인 규정, 국제선교회 회칙, 그리고 국제선교회가 채택한 기타의 의사진행 법칙 모두로 국제선교회 조직이 운영된다.

### **제10조 수정**

본 회칙은 세계 NMI연합대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표결로 수정될 수 있다.

## 제 3 장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SDMI)

### 812.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세칙

#### 사명 선언문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사명은 어린이와 청년 그리고 장년들에 대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전 생애 동안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한다.

#### 목 적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목적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말씀과 연결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2.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발전시켜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로 만드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게 하는 것.
3. 어린이, 학생, 청년, 그리고 장년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온전히 성결하며 그리스도인의 체험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 구제, 전도, 기독교 교육, 제자삼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4. 주일학교나 성경공부, 소그룹, 그리고 다른 제자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독려하는 것.

#### 제1조 회원권

##### 책임 리스트(책임 목록)

개교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교회 주위의 사람들을 찾아 나설 책

임이 있다. 개교회는 책임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책임 리스트에는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책임 리스트에 오르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이 교회의 교제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 각종 사역의 교사와 지도자는 그룹의 구성원들과 책임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간에 정기적인 소통을 하도록 촉진한다. 책임 리스트에 있는 개인들의 총계는 담임목회자 연례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책임 리스트에는 주일학교, 제자화 모임, 성경공부와 모든 SDMI사역의 연령별 그룹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 다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책임 리스트에 포함된다.

- a. 영아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사역에 출석하지 않는 만4세 이하의 어린이는 영아반으로 책임 리스트에 올린다.
- b. 가정반: 신체적 혹은 직업적 사정으로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사역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가정반에 등록될 수 있고 책임 리스트에 등재된다.
- c. 양로원/요양원/의료시설: 위의 시설에 살고 있으며 승인된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매주 참석하는 사람.
- d. 개척교회: 나사렛 교회를 조직할 것을 목표로 개교회 혹은 총회의 후원을 받으며, 성경적인 원리들과(또는) 승인된 공과를 별도의 장소에서 일주일에 30분 이상 공부하는 모임.
- e. 어린이집/학교: 나사렛 개교회가 후원하거나 운영하는 나사렛 어린이 집/학교에 있는 학생들
- f. 아동개발센터(CDC): 나사렛 개교회가 후원하거나 운영하는 아동개발센터

## 제2항: 제명

책임 리스트에서의 제명은 오직 담임목회자의 승인으로 다음의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 a. 그 사람이 다른 도시로 이사갔을 경우
- b. 그 사람이 다른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혹은 교회에 등록된 경우
- c.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 d. 그 사람이 죽은 경우

## 제2조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출석인원

개교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출석인원 집계 목적은 그 교회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만들기 사역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사역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와 교회의 구성원이 되며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출석인원에는 주일학교 수업과 제자사역 그룹으로 포함한다. 이 범주들은 아래에 열거한 지침과 위의 1조 1항에 명시된 기준들에 의거해 매주 개교회에 의해서 계수되어야 한다.

지구의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사무실은 각 총회의 월간 책임 리스트 보고와 주간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출석인원 보고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매년 교단내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사역의 성장의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다.

## 제1항 정의와 보고

모든 제자사역 그룹의 출석이란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로 정의한다.

- a. 대부분의 교회의 경우에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모임의 수는 52회이며 그렇게 보고한다.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는 총회감독과 상의하여 타당한 예외와 보고횟수를 결정한다.
- b. 하나 이상의 제자사역 그룹을 가지고 있는 개교회는 매 주 참석 통계를 합해야 하며 단일한 평균출석 계수를 매년 목회자 보고에 넣어야 한다.
- c. 제자사역은 연중 아무 때나 착수 또는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평균은 총계를 그 사역을 행한 주일의 수로 나눔으로써 결정해야 한다.

### 제3조 개교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

개교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SDMI) 집행위원회의 책무는 장정 145-145.10조에 나와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를 조직/발전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목회자 및 교회실행제직회와 일한다.
2. 목회자와 협력하여 나사렛성결교회의 시명과 교단 총회의 전략/목적에 맞춰진 개교회 제자화의 전략적 계획을 발전시키고 적용한다.
3. 나사렛 교단 신학 및 사명과 일치하는 커리큘럼의 연구, 제작, 개발, 조율 및 후속 조치를 한다: 의도적 제자 훈련 프로그램, 교회 발전을 위한 모든 교회 회원을 위한 지도력 개발, 모든 연령대 부서와 특별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
4. 개교회 연차회의에서 현재 교회 교육과 제자사역/프로젝트의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보고한다.
5. 개교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사역에 사용할 수 있는, 나사렛

성결교회의 신학과 사명/자료/교재와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승인한다.

#### **제4조 주일학교 학급 및 부서들**

제1항: 주일학교는 학년 혹은 나이를 근거로 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학급을 나눈다. 장년을 위한 학급은 공통의 관심, 사명 주제 등을 기초로 해서 결정해야 한다. 적절한 곳에서는 나이 제한없는 통합반을 고려할 수 있다.

제2항: 어린이, 청소년, 장년의 학급수가 많아지면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책임자와 함께 부서를 만드는 것을 숙고하여야 한다.

제3항: 각 부서 책임자의 임무는 개교회 SDMI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안된 책임들에 관한 목록은 SDMI 핸드북에 나와있다.

#### **제5조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교사와 인도자**

제1항: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사역은 모든 연령의 주일학교, 소그룹, 결혼자사역, 남성사역, 여성사역, 어린이사역, 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취미그룹 등을 포함한다. 부서장과 교사/인도자들은 장정 145.8에 따라서 매년 임명된다.

제2항: 담임목회자와 협의하여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는 불건전한 교리, 불미스러운 행위 또는 임무 태만을 입증한 경우가 발생하면 임원 또는 교사/인도자를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3항:** 모든 교사/인도자와 대행자들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한다.

### **제6조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지도자의 의무**

**제1항:**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은 장정 113.10-113.11조와 127조에 의하여 매년 임명된다.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담임목회자의 지도하에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를 조직화한다.
- b. 사역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한다.
- c. 현직 교사/인도자들 및 후보 교사/인도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 d. 책임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제자화 전략을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와 함께 매년 평가하고 발전시키며 실행한다.
- e. SDMI의 통계를 정기적으로 지방회, 총회 또는 필드 사무실에 보고한다.
- f. 개교회, 지방회, 총회, 필드, 지구, 세계 SDMI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제2항:** 연령 그룹의 지도 디렉터들의 임무는 장정 147.1-147.9; 148.2조에 열거되어 있다.

**제3항:**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는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기록을 담당할 사람을 선출한다. 그(녀)는 전체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사역을 위해 책임 리스트, 출석자, 방문자 그리고 기타 필요 사항



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확보해 둔다.

**제4항:** 적절한 경우에 재무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매주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에 의해 거출된 모든 금액을 정확히 집계하고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도록 한다. 매월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항:**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사역에 사용하는 모든 커리큘럼과 자료들은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나 부장과 담임목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 행정과 감독**

**제1항:**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는 교회실행제직회에 책임을 지면서 목회자의 보살핌 아래에 있으며,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의 전반적인 감독 및 부장과 연령그룹 디렉터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다.

**제2항:** 만약 전임 기독교교육 디렉터를 채용한 교회가 그 사람을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교회는 다른 평신도를 SDMI를 대표하는 투표권을 가진 실행제직회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우리는 SDMI 지도자의 자리에 개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자원을 배양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한다.

**제3항:** 개교회에 아동, 청년, 성인을 위한 목회자나 디렉터가 고용되어질 때, 담임목회자는 교회실행제직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 그리고/또는 청년협의회와 상의하여 연령별 목회자들에게

아동, 청년, 장년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이 경우, 아동, 청년, 장년들을 위한 목회자는 개교회의 어린이사역(CM) 디렉터, 나사렛청년회(NYI) 회장, 또는 장년사역(AM) 디렉터에게 부여된 책임을 맡게 된다. 하지만 개교회 어린이사역 디렉터, 청년회장, 또는 장년사역 디렉터는 필수적인 평신도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하며 각 연령별 사역을 대표한다. 담임목회자는 아동과 청년, 장년을 위한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 및 청년회협의회와 함께 공조하여 이 세 위치의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며, 그들이 개교회의 연령별 사역의 유익과 관련하여 어떻게 함께 일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 **제8조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연합대회**

### **제1항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연합대회**

모든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사역자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불어넣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총회가 매년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연합대회를 계획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와 소그룹 제자삼기 사역의 증진이 매 연합대회의 강조점이 되어야 한다.

- a. 직책상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연합대회의 대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총회감독, 모든 담임목회자들, 재직 중인 안수목사들, 총회 인정전도사, 재직 중 은퇴한 사역자들, 전임 부교역자들, 그리고 총회 및 개교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 총회 및 개교회의 아동부 디렉터, 장년부 디렉터, 개교회 청년회장, 총회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의 피선된 집행위원, 총회고문회의 평신도 위원들, 총회의 대의원으로서 기독교 교육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나사렛 교수들, 필드, 지구와 국제총회 SDMI 임원들
- b. 위에 언급된 대의원들에 더하여, 각 개교회 연차회의에서 주

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대의원들을 선출한다. 숫자는 주일학교및제자사역에 종사하는 임원들과 교사와 인도자들의 25%여야 하고 만일 선출된 대의원이 연합대회에 참석을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득표 순에 따라 후보 대의원을 지정한다.

- c.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회는 총회 SDMI 부장과 다수결에 의해 선출될 3명의 집행위원들을 위해 두배수로 추천할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연합대회에서 선출될 이 후보들은 나사렛성결교회의 회원임은 물론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사역 중 어느 하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각 연령 그룹(아동부, 청년부, 장년 교사/사역자들) 가운데서 선정되어야 한다.
- d.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연합대회에 파송된 대의원들은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을 선출하고(장정 242조) 3명의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집행위원, 그리고 4년마다 개최될 세계 SDMI연합대회에 파송할 대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

## 제2항 세계 SDMI연합대회

매 국제총회와 연계하여 세계 SDMI연합대회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소에서 개최한다. 선출된 대의원들(과 방청객들)은 영감과 동기부여 그리고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사명과 목적을 전세계적으로 완수함에 관여하도록 준비하고 강화하는 훈련을 위해 모인다.

세계 SDMI연합대회는 지구 SDMI협의회, 지구장, 지구 SDMI코디네이터, 그리고 그 지구의 각 총회에서 선출된 SDMI 대의원들로 지구 포럼을 포함한다.

포럼에서는 국제총회실행이사회에 SDMI 대표로 파송할 후보자를 1명 선출한다. 세계 SDMI협의회와 세계 SDMI디렉터는 후보자들 중

한명을 선정하여 승인을 위해 국제총회에 제출한다. (장정 332.6)

- a. 직책상 세계 SDMI연합대회의 대의원들이 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총회감독,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 총회 아동부 디렉터와 장년부 디렉터,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지구코디네이터, 지구 아동부와 장년부 코디네이터, 그리고 국제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디렉터 및 임원들. 추가로 나사렛 신학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대의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 b. 총회는 총회의 직책상 대의원 수와 동일한 수인 4명 또는 그 총회의 조직교회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수의 추가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 c. 세계 SDMI의 대의원 선출에는 다음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 (1) 추천위원회는 총회감독,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장, 그리고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집행위원회가 임명한 최소 3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그들은 실제로 선출될 대의원 숫자의 3배되는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 (2) 총회 연합대회에서는 모든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사역 분야 (청소년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교사들과 봉사자들 포함)에서 동등수의 대의원과 후보 대의원을 선출한다. 피선인들은 그들이 대표하여 선출된 사역분야에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라야 한다. 선출된 후보 대의원 수는 직책상 대의원의수도 포함해야 한다. 국제총회 나사렛국제선교연합대회나 국제총회 나사렛국제청년연합대회의 대의원으로 봉사할 자들은 선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이들 세 연합대회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 (3) 대표들은 국제총회가 개최되기 전 16개월 이내 또는 여행

비자 발급과 관련한 준비 작업이 지체되는 지역 혹은 다른 특별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24개월 내에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연합대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 (4) 가능하면 동수의 평신도와 목회자를 선출해야 한다. 즉 50%의 평신도와 50%의 전임 현역 목회자, 안수목사, 혹은 인정전도사들을 선출해야 한다. 만약 전체 숫자가 홀수인 경우 1명의 추가대의원은 평신도이어야 한다.
- (5) 국제총회 개최 전에 새로 선출되고 연합대회 개최 당시 현장에서 사역하는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지도자들은 직책상 연합대회 대의원들이 된다.
- (6)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연합대회에서 피선된 모든 대의원 및 직책상 대의원은 세계 SDMI연합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이 있다.
- (7) 선출방법으로는 최다 득표에 의한 것으로 한다.
- (8)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치 못할 경우 다음 무기명 투표에서 득표 차순에 따라 후보 대의원들을 지정한다.
- (9) 세계 SDMI연합대회에서 각 대의원은 그(녀)를 뽑은 총회의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이며, 그 총회 내에 거주해야 한다.
- (10) 연합대회에 참가하는 대의원들은 총회가 나사렛국제청년 연합회와 나사렛국제선교회 연합대회의 대의원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를 총회로부터 보조받아야 한다.
- (11) 만약 총회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연합대회가 세계 SDMI 연합대회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을 때는 총회연차회의에서 대의원들을 선출한다.

## 제9조 세계 SDMI협의회

### 제1항. 목적

효과적인 제자만들기를 위한 국제적 전략들을 지구, 필드, 총회, 개교회 SDMI지도자들과 연결하여 함께 일함으로써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의 모든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함.

### 제2항. 구성

- a. 세계 SDMI협의회는 직접 혹은 전자기기를 통해 매년 만나야 하며 각 지구 SDMI 코디네이터들과 의장으로 수고할 세계 SDMI 디렉터로 구성한다.
- b. 각 지구의 SDMI 코디네이터는 해당 지구의 지구장이 세계 SDMI 디렉터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3항. 지구 SDMI 코디네이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a. 자신의 지역 SDMI의 목적을 옹호하고 대표하는 일.
- b. 지구의 비전과 일치하는 전략과 수단의 실행과 연관된 비전과 영감을 제공하는 일
- c. 교회의 모든 사역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과업과 연결시켜 지구, 필드, 총회의 발전을 위한 의도적 제자화 지도력 개발을 위한 연구, 제작, 개발, 조율 및 후속 훈련 조치를 하는 일
- d. 세계 SDMI협의회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를 하는 일
- e.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각 지구 포럼에서 선출된 대표자를 국제총회이사회의 SDMI 대표 후보자로 천거하는 일. 세계 SDMI협의회는 그 중 1명을 SDMI를 대표하는 국제총회이사회의 일원으로 국제총회에 상정한다. (장정 332.6)

### 제10조 수정

본 세칙들은 국제총회이사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표결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 제 10 부

# 서 류 양 식

제 1 장 개교회

제 2 장 총 회

제 3 장 기소장



## 제 1 장 개교회

\* 주 : 아래 양식들은 필요에 따라 개교회에서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813. 개교회 전도인 증명

본 증서는 \_\_\_\_\_ 가 심령과 행실이 기독교적인 복음에 부합하고 또한 그의 가르침이 본 교회에서 준수하는 확립된 성경적 교리와 일치한다는 조건 하에서 1년간 나사렛성결교회 개교회 전도인으로 인정함을 증명함.

\_\_\_\_\_ 나사렛성결교회 실행제직회의 명에 의함.

장 소

일 시

실행제직회 의장

실행제직회 서기

### 814. 총회연차회의에 추천하는 추천서

(매년 총회 인정교역자들을 위해 사용함)

(적당한 곳에 체크하시오.)

( ) \_\_\_\_\_ 나사렛성결교회 실행제직회

( ) \_\_\_\_\_ 총회고문회 (장정 225.13)

는 \_\_\_\_\_ 을(를) \_\_\_\_\_ 을(를) 위해 (총회목회심의회) 총

회연차회의에 다음을 위해 추천합니다.

- ( ) 총회 인정교역자
- ( ) 총회 인정교역자 갱신
- ( ) 여성사역전도인 인정 갱신
- ( ) 기독교 교육 디렉터 인정 갱신

사역 역할 증명서 (장정 503-528)

CED-Christian Education Minister

(개교회 학교에 의해 고용된 사역자)

EDU-Education

(나사렛성결교회의 교육기관들 중 한 곳에서 교수나 행정직  
원으로 봉사하기 위해 고용된)

EVR-Evangelist, Registered

(이 사람은 그/그녀의 주된 사역이 복음을 위해 여행을 하며  
설교하는 것이고 부흥을 독려하고 해외에까지 복음을 전하  
는 사람이다.)

GA-General Assignment, Missionary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일을 위해 세계선교위원회를 통하  
여 국제총회이사회에서 임명된)

GA-General Assignment, Other

(국제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선출되거나 고용된)

PAS-Pastor

PSV-FT-Pastoral Service Full-Time

PSV-PT-Pastoral Service Part-Time

(부교역자, 교회 내에서 인증된 특별한 영역에서 목회적 봉사를 하는)

SER-Song Evangelist, Registered

(시간 대부분을 그/그녀의 주된 사역으로서 음악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SPC-Special Service/Interdenominational

(별도의 활동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총회고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연차회의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초교파 특별사역. SPC에 지명된 자들은 나사렛성결교회와의 관계유지를 위해서 매년 총회고문회에 자신이 나사렛성결교회와 계속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STU-Student

U-Unassigned

인수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장정 533.3, 534.3)과 유급, 무급과 상관없이 관계형성 절차를 점검할 것. (장정 159-159.3) 이 절차는 후보자의 사역기록을 확실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만약 새로운 해에 PSV-FT나 PSV-PT로 사역임무가 지명되어 추천되었다면, 총회감독의 서면 승인서를 받았습니까?  
(129.27; 159-159.2)

예 아니오

---

---

만약 위에 있는 “STU”나 “U”외에 다른 사역임무가 지정되었으면, 개교회 실행제직회와 총회감독의 승인된 내용대로 후보자와의 공식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

---

우리는 \_\_\_\_\_가 \_\_\_\_\_(날자)에 행한 실행제직회의 투표와 \_\_\_\_\_(날자)에 받은 총회감독의 승인서에 의해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합니다.

\_\_\_\_\_의장  
\_\_\_\_\_서기

추천됨    보고됨    배치\_\_\_\_\_

비고: 교역자인증 추천서와 개인 사역임무 인증 추천서 두 곳 모두에 표시하십시오.

### 815. 추천서

\_\_\_\_\_는 \_\_\_\_\_ 나사렛성결교회의 정회원으로서  
이 추천서가 제시되는 분에게 성도의 확신을 가지고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목사 \_\_\_\_\_

\* 주: 추천서가 발행되면 추천서를 발행하는 교회에서의 회원  
권은 즉시 중지된다. (111.1)

### 816. 제적서

본 증서는 \_\_\_\_\_가 당일까지 \_\_\_\_\_ 나사렛성결교회  
정회원으로 속해 있었으나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본 제적서를 발행  
함.

20   년   월   일

담임목사                   인

\* 주: 제적서가 발행되면 제적서를 발행하는 교회에서의 회원  
권은 즉시 소멸된다. (112.2)

### 817. 이명 증명

본 증서는 \_\_\_\_\_가 \_\_\_\_\_나사렛성결교회의 모범적인 회원으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총회의 \_\_\_\_\_나사렛성결교회로 이명하오니 받아주시고 이명 확인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명증명서가 전달된 것이 확인되면, 이 교회의 회원권은 정지됩니다.

20   년   월   일  
담임목사                   인  
주 소 \_\_\_\_\_

\* 주: 이 이명증명서는 3개월간 유효하다. (111)

### 818. 이명확인서

본 증서는 \_\_\_\_\_가 20   년   월   일자로 \_\_\_\_\_나사렛성결교회 정회원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담임목사  
주 소



## 제 2 장 총 회

**819.** 총회 공식 서류 양식은 17001 Prairie Star Parkway, Lenexa, KS 66220, U.S.A에 사무소를 둔 국제총회 총무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 제 3 장 기소장

- 제1항 교회 회원의 재판
- 제2항 안수 교역자의 재판
- 제3항 인정 교역자 재판

**820.** 기소장은 17001 Prairie Star Parkway, Lenexa, KS 66220 U.S.A에 사무소를 둔 국제총회 총무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 제 11 부

# 부 록

제 1 장 국제총회 임원

제 2 장 행정위원회, 협의회, 교육 기관

제 3 장 운영정책

제 4 장 현행 도덕 및 사회 문제



## 제 1 장 국제총회 임원

### 900. 국제총회감독

Eu nio R. Duarte  
David W. Graves  
David A. Busic  
Gustavo A. Crocker,  
FiliM o Chambo,  
Carla D. Sunberg

### 900.1. 은퇴 및 명예 국제총회감독

Eugene L. Stowe, Emeritus  
Jerald D. Johnson, Emeritus  
Donald D. Owens, Emeritus  
Jim L. Bond, Emeritus  
W. Talmadge Johnson, Emeritus  
James H. Diehl, Emeritus  
Paul G. Cunningham, Emeritus  
Nina G. Gunter, Emerita  
Jesse C. Middendorf, Emeritus  
Stan A. Toler, Emeritus  
Jerry D. Porter, Emeritus  
J. K. Warrick, Emeritus

### 900.2. 국제총회총무

David P. Wilson

### 900.3. 국제총회재무

Keith B. Cox

CHURCH OF THE NAZARENE  
GLOBAL MINISTRY CENTER  
17001 PRAIRIE STAR PARKWAY  
LENEXA, KS 66220, USA

## 제 2 장 행정위원회, 협의회, 교육 기관

### 901. 국제총회이사회

지구별 이사 명단

교역자 / 평신도

### 아프리카 지구

Arsenio Jeremias / Manjate Sibongile Gumedze

Solomon Ndlovu / Benjamin Langa

Stanley Ushe / Angela M. Pereira B. D. V. Moreno

### 아시아-태평양 지구

Kafoa Muaror / Leonila Domen

Min-Gyoo Shin / Joung Won Lee

### 캐나다 지구

D. Ian Fitzpatrick / David W. Falk

### 미중부 지구

Ron Blake / Judy H. Owens

### 미 중동부 지구

D. Geoffrey Kunselman / Carson Castleman

### 미 동부 지구

Samuel Vassel / Larry Bollinger

### 유라시아 지구

Sanjay Gawali / David Day  
David Montgomery / Vinay Gawali  
Mary Schaar / Christoph Nick

###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구

Elias Betanzos Carmen L. Checo de Acosta  
Walliere Pierre Abraham Fernandez Gamez  
Antonie St. Louis Plinio E. Urizar Garcia

### 미 중북부 지구

Jim Bond / Larry McIntire

### 미 북서부 지구

Randall J. Craker / Joel K. Pearsall

### 남 아메리카 지구

Adalberto Herrera Cuello / Galdina Arrais  
Fernando Oliveira / Jacob Rivera Medina  
Amadeu Teixeira / Emerson Natal

### 미 중남부 지구

Terry C. Rowland / Cheryl Crouch

### 미 남동부 지구

Larry D. Dennis / Michael T. Johnson

Dwight M. Gunter II / Dennis Moore

**미 남서부 지구**

Ron Benefiel / Daniel Spaite

**교육**

John Bowling / Bob Brower

**나사렛국제선교회**

Philip Weatherill

**나사렛국제청년회**

Adiel Teixeira

**주일학교및제자사역부**

Milon Patwary

**902. 국제총회 소청부**

Hans-Güter Mohn, *Chairperson* / Janine Metcalf, *Secretary*

D. Ian Fitzpatrick, Donna Wilson,

Brian Powell

**903.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협의회**

Gary Hartke, NYI 디렉터

Adiel Teixeira, 협의회 의장



Ronald Miller, Africa  
Janary Suyat de Godoy, Asia–Pacific  
Diego Lopez, Eurasia  
Milton Gay, Mesoamerica  
Christiano Malta, South America  
Justin Pickard, USA/Canada

#### **904.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 협의회**

Lola Brickey, 세계 디렉터  
Philip Weatherill, 회장  
Dawid De Koker, Africa Region  
Pauline Sheppard, Asia–Pacific Region  
Penny Ure, Canada Region  
Carla Lovett, Central USA Region  
Kathy Pelley, East Central USA Region  
Sharon Kessler, Eastern USA Region  
Cathy Tarrant, Eurasia Region  
Blanca Campos, Mesoamerica Region  
Rhonda Rhoades, North Central USA Region  
Debra Voelker, Northwest USA Region  
Antonio Carlos, South America Region  
Mary Runion, South Central USA Region  
Teresa Hodge, Southeast USA Region  
Martha Lundquist, Southwest USA Region

Verne Ward, 세계 선교국장  
The General Superintendent in Jurisdiction(Adviser)

**905. 나사렛 고등 교육기관**  
세계 나사렛 교육 컨소시엄

**아프리카 지구**

Africa Nazarene University  
Nairobi, Kenya—Serving Eastern Africa  
Nazarene Bible College of East Africa  
Nairobi, Kenya—Serving the East Field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Honeydew, South Africa—Serving the South Field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of Central Africa  
Malawi, Central Africa—Serving the South East Field  
Nazarene Theological Institute  
Serving the Central and West Fields  
Seminário Nazareno de Cabo Verde  
Santiago, Cape Verde  
Seminário Nazareno em Moçambique  
Maputo, Mozambique—Serving the Lusophone Field  
Southern Africa Nazarene University  
Manzini, Swaziland—Serving Southern Africa

아시아-태평양 지구

Asia-Pacific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Rizal, Philippines

Indonesia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Yogyakarta, Indonesia

Japan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Tokyo, Japan

Korea Nazarene University

Choong Nam, Korea

Melanesia Nazarene Bible College

Mount Hagen, Papua New Guinea

Melanesia Nazarene Teachers College

Mount Hagen, Papua New Guinea

Nazarene College of Nursing

Mount Hagen, Papua New Guinea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Thornlands, Queensland, Australia

Philippine Nazarene Bible College

Baguio City, Philippines

South Pacific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Suva, Fiji

Southeast Asia Nazarene Bible College

Bangkok, Thailand

Taiwan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Peitou, Taiwan

Visayan Nazarene Bible College

Cebu City, Philippines

### **유라시아 지구**

Eastern Mediterranean Nazarene Bible College

Karak, Jordan—Serving the Eastern Mediterranean

European Nazarene College

Serving Europe and the Eurasia Fields

Nazarene Nurses Training College

Washim, Maharashtra, India

Nazarene Theological College—Manchester

Manchester, England

South Asia Nazarene Bible College

Bangalore, India—Serving India and South Asia

###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구**

Caribbean Nazarene College

Santa Cruz, Trinidad—Serving the English, Dutch and  
French Antilles

Instituto Bíblico Nazareno

Coban, Alta Verapaz, Guatemala—Serving Northern  
Guatemala

- Sénaire Théologique Nazarén d'Haiti  
 Petion-Ville, Haiti—Serving the country of Haiti
- Seminario Nazareno de las Américas  
 San José Costa Rica—Serving Latin America and the  
 Central Field
- Seminario Nazareno Dominicano  
 Santo Domingo, Dominican Republic—Serving the  
 country of Dominican Republic
- Seminario Nazareno Mexicano  
 Mexico City D.F., Mexico—Serving Mexico North and  
 South Fields
- Seminario Teológico Nazareno  
 Guatemala City, Guatemala—Serving the Central  
 America Field
- Seminario Teológico Nazareno Cubano  
 La Lisa, La Habana, Cuba—Serving the country of Cuba

### 남 아메리카 지구

- Faculdade Nazarena do Brasil  
 São Paulo, Brazil—Serving the country of Brazil
- Seminario Bíblico Nazareno Chile  
 Santiago, Chile—Serving the country of Chile
- Seminario Nazareno Boliviano  
 La Paz, Bolivia—Serving the country of Bolivia

Seminario Teológico Nazareno del Cono Sur  
Buenos Aires, Argentina—Serving the South Cone Field

Seminario Teológico Nazareno del Perú  
Chiclayo, Peru—Serving the country of Peru

Seminário Teológico Nazareno do Brasil  
São Paulo, Brazil—Serving the country of Brazil

Seminario Teológico Nazareno Sudamericano  
Quito, Ecuador—Serving the North Andean Field

#### 미국/캐나다 지구

Ambrose University College  
Calgary, Alberta, Canada

Eastern Nazarene College  
Quincy, Massachusetts, USA

MidAmerica Nazarene University  
Olathe, Kansas, USA

Mount Vernon Nazarene University  
Mount Vernon, Ohio, USA

Nazarene Bible College  
Lenexa, Kansas, USA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Kansas City, Missouri, USA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Nampa, Idaho, USA

Olivet Nazarene University  
Bourbonnais, Illinois, USA  
Point Loma Nazarene University  
San Diego, California, USA  
Southern Nazarene University  
Bethany, Oklahoma, USA  
Trevecca Nazarene University  
Nashville, Tennessee, USA

## 제 3 장 운영정책

### 906. 개인연금

국제총회이사회와 교회의 기관들은 개인연금 수혜자가 사망하여 기증된 개인연금이 그들의 합법적인 소유가 될 때까지 기증된 개인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기증된 개인연금은 보통 법정에 의해 신탁기금의 형식으로 인정되는 기금에 조심스럽게 투자되어야 한다. (2017)

### 907. 채무

어떤 기관도 약정헌금(기부금)을 채무보증을 위한 담보로 이용하면 안 된다. (2017)

### 908. 성서공회

1. **공인된 성서공회:** 나사렛성결교회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로 성경을 특별히 강조하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자들을 얻는 주요한 매개체임을 믿고, 또한 더 많은 성경이 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제총회는 전 세계에 있는 성서공회 연합회 사업에 우리의 진심을 담은 승인과 공감을 표명한다.

둘째, 우리는 한 날을 세계성서주일로 정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필수적인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세계성서주일을 지키는 것을 지지한다.



2. **성서공회 헌금**: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나사렛성결교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지정하여 이 중요한 사업을 알리고 각 나라의 성서공회를 위하여 헌금을 거둔다. 선택된 성서공회는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정구 혹은 준회원이어야 하고, 만약 그러한 공회가 없는 경우, 총회에 의해 지정된 공회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헌금에 참여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교회들은 해당 국가의 성서공회에 헌금을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회의 자문을 구하여 시행한다. (2017)

### 909. 장정편집에 대한 결의사항

아래와 같이 결의했다: 국제총회감독회는 제29차 국제총회에서 채택된 기록 가운데 장정 변경과 관련된 사항 중에 상충되는 것들을 일치되게 조정하는 장정편집위원회를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한다. 장정편집위원회는 그 의미를 바꾸지 않는 범주 내에서 편집상 필요한 기존 장정의 문구수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의미를 바꾸지 않는 범주 내에서 편집상 필요한 새로 의결된 항목의 문구수정도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장정편집위원회는 혼돈되는 단어나 표현 대신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 제29차 국제총회에서 채택된 조치에 일치하도록 장정의 장, 절, 항목과 기타 구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제29차 국제총회에서 채택된 조치에 일치하도록 색인을 마련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모

든 장정 번역본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장정편집위원회의 임무로 둘 것을 결의한다. (2017)

**910. 장정 부록 검토:** 4년마다 열리는 국제총회가 3번 열리는 동안(12년) 장정 부록 제3장과 제4장에 재검토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항목들은(906-933항) 안전심의위원회에 의해 국제총회의 적절한 위원회에 보내져서 국제총회에 제출되는 결의안과 같이 동일한 검토를 받도록 한다. (2013)

**911. 위원회의 임기:**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모든 특별 위원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국제총회에 맞추어 임기를 마친다. (2017)

## **912. 국제총회 업무(2017 국제총회 회의법에서)**

### **결의안 및 청원안**

**규칙 14. 국제총회에 결의안 제출:** 총회연차회의, 총회연차회의가 인준한 위원회, 지구협의회, 국제총회이사회 또는 그 산하의 공인 부서들, 국제총회의 공식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세계 나사렛국제선교회연합대회,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연합대회 혹은 국제총회 대의원 5명 이상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결의안이나 청원안을 국제총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1) 결의안과 청원서는 국제총회총무에 의해 준비된 공식양식에 프린트를 하거나 타이핑으로 작성해야 한다.

- (2) 제출된 각 결의안 또는 청원안은 그 안의 제목과 제출하는 대의원들의 이름이나 기관의 명칭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재정지출이 필요한 결의안은 그것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안을 포함해서 제출해야 한다.
- (4) 교회 장정 변경 제안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안이 채택되면 바뀌게 되는 장정의 조항과 변경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 (5) 그 안들은 총회 개최 직전 해의 12월 1일 이전에 국제총회총무에게 제출되어 접수번호가 주어진 다음 규칙 24와 305.1조에 따라 안전심의위원회로 송부되어야 한다.
- (6) 장정에 없는 안건의 결의안은 어떤 부서가 법제화하는 책임이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

**규칙 15. 연차 결의안 및 청원안:** 결의안, 청원안 및 기타 안건들을 국제총회총무에게 제출하여 적어도 6월 1일 이전까지 입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국제총회 직전에 개최되는 세계연합대회의 결의안들은 고려대상으로 접수된다.

**규칙 16. 장정 변경:** 국제총회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들은 장정의 다른 규정들과 일치되게 조정되도록 장정 편집위원회에 보내진다.

### 913. 역사적 장소와 역사기념물 지정

총회, 또는 지구총회에서 해당 구역 내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

장소를 선정하여 역사적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어떤 장소가 역사적 장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 있은 후 최소한 50년의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다. 역사적 장소로 지정받기 위해서 꼭 원래의 건물이나 구조물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총회총무는 새로 지정된 역사적 장소에 대해 국제총회총무에게 그 제청의 절차와 결의과정, 그곳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곳의 중요한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함께 보고한다.

각 총회와 지구는 국제총회에 교단적 차원의 역사기념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제안은 역사적인 장소로 이미 지정된 곳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국제총회감독들이나 추천된 장소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검토할 목적으로 임명된 위원회는 국제총회의 인준을 요청하기 전에 이 지명요청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국제총회총무는 역사적 장소와 역사기념물의 등록명부를 보관하고, 그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327.2) (2009)

## 제 4 장 현행 도덕 및 사회 문제

### 914. 신체장기기증

나사렛성결교회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생명에 대한 유언을 작성해서 신체장기를 기증하는 일과 기증을 받는 것에 참여할 것을 권면한다.

우리는 또한 장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장기를 수여받을 수 있게 할 것을 호소한다. (2013)

### 915. 인종 차별

모든 인종에 대한 기독교적인 박애에 관한 우리들의 역사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심과 모든 인간들은 한 혈통으로 태어났음을 믿는다. 우리는 각 사람은 인종이나 피부 색, 혹은 신조에 관계없이, 투표권, 공평한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공공시설을 사용할 권리, 직업이나 경제적인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생계에 필요한 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해서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인종간의 이해와 조화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그리고 강화시켜갈 것을 권고한다. 우리들은 또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고 한 성경

적 교훈을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교회와 전체 공동체의 삶 속에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나사렛성결교회 각 회원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

마음과 생활의 성결이 올바른 삶의 기초라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강조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인간의 마음이 변화될 때 인종이나 성별의 차이가 있는 곳에 기독교적인 박애 정신이 깃들게 된다는 것과 참기독교의 본질적 요소는 자기의 영과 혼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데 있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인종적, 민족적 무관심, 배척, 차별, 혹은 억압은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중대한 죄로 선언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유전에 대해 탄식하며, 회개와 화해, 그리고 성경적 정의를 통해 이 유산에 맞서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인종 차별의 죄에 명백하게 또는 은밀하게 연루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회개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고백과 탄식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인종적, 민족적 모욕과 억압에 책임이 있는 모든 개인적, 제도적, 구조적 편견을 반대하고 극복하려는 인간의 투쟁이 없이는 화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편견의 행위와 구조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일,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행동을 촉진시키는 일, 소외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할 것을

전 세계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요청한다.

### 916. 노, 유약자 학대

나사렛성결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나 성별로 인해 학대받는 것을 반대하며, 우리의 간행물을 통해 적절한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나사렛성결교회는 교회에서 부여된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에게 부당한 성적행위와 그 외에 어떤 유형의 학대도 금한다는 우리의 역사적 입장을 재확인한다. 신뢰와 권위를 갖는 지위에 누군가를 임명할 때, 나사렛성결교회는 과거의 행실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도록 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표지가 된다고 믿는다. 교회는 과거에 자신에게 부여된 신뢰와 권위의 지위를 악용하여 힘이 없는 자에게 부당한 성적행위나 학대를 한 사람이 잘못을 예방할만한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권위가 주어지는 지위에 임명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충분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친 변화된 모습을 보임으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잘못된 자가 고백한 뉘우침만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미래의 있을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극복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2009)

### 917.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

나사렛성결교회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라고 명령했음을 믿는다. 즉, 그

리스도의 교회는 첫째 그 자체가 검소하며 부와 사치에 대한 강조에서 떠나야 하며 둘째,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를 마련하는 일에 헌신하여야 한다. 성경과 예수의 본이 되는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의 권익을 주창할 수 없는 약자들과 같이 하며 돕고 계신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가난한 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여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가난한 자에 대한 구호 사역은 자신 행위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기회, 평등 그리고 정의가 주어지도록 함께 투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추구하는 모든 신자의 삶에 필수적인 면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결함은 개인의 완전함을 넘어서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와 세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게 하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역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한다. 성결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세계 속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물질을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여가는 봉사를 하게 한다. (2013)

(출 23:11; 신 15:7; 시 41:1; 82:3; 잠 19:17; 21:13; 22:9; 렘 22:16; 마 19:21; 눅 12:33; 행 20:35; 고후 9:6; 갈 2:10)



### 918. 성별의 포괄적인 언어 사용

나사렛 교단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성별의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장정을 포함한 출판물들과 공적인 언어는 제 501조에 표현된 대로 성별의 평등성에 관한 이 약속을 반영해야 한다. 언어의 변경은 성경을 인용할 때나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2009)

### 919. 교회와 인간의 자유

우리의 위대한 기독교적 유산으로 이해되고 지켜져 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모든 신도들에게 정치와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각 사람의 양심의 신성함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한 것임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신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성서적 개념을 지지하는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것과 우리들의 고귀한 자유에 대한 위협을 항상 경계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자유가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단계의 정부 공직자를 선출할 때에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이런 원칙을 믿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을 선출하여 준 자들 앞에 책임지는 사람들을 선출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집단에 의해 상기원칙들이 침해받는 것을 배격한다. 우리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제약에 의해 그러한 자유를 박탈당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대한다.

우리는 교회의 역할은 예언자적이어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잠 14:34)”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2017)

## 920. 인간의 자유에 대한 확증과 선언

나사렛 사람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곳에 거룩함과 온전함, 그리고 회복시키는 삶으로 부르시는 신성한 소명을 받아들인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회복 될 때까지, 소외되고, 억압받고, 깨지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죄에 의해 야기된 부당함들을 바로잡고 이기적인 영향력을 중단시키는 정의를 가져다 준다.

웨슬리안-성결의 유산과 특징에 따라 현대판 노예제도, 불법 또는 강제 노동, 인신 및 장기 매매와 같은 당대의 재앙에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이 확증에 따라, 세계나사렛성결교회 회원들과 교회 회중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성결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의를 추구할 때, 우리는 과거의 불의를 회개하고 현재를 수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창조하라는 부름을 인식한다.
2.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다.
3. 불법 혹은 강제 노동, 장기 매매 및 성 노예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억압과 함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한 공헌적 보살핌에 참여한다.
4. 억압받는 사람들의 외침을 적극적으로 듣고 확산한다.

5. 불의를 비판하고 불의의 원인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항한다.
6. 억압하는 것에 대항하여 자유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형제자매와 연대하여 행동한다.
7. 구속, 회복, 치유, 자유를 가져다주는 경건한 행위로부터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 (요일 3:8)

웨슬리안-성결 교회의 전통과 성결로 부르심에 입각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증을 한다.

1. 우리는 정의와 화해와 자유 추구가 사람들 안에서 반영된 하나님의 거룩함의 핵심이라고 확언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인신매매, 억압을 폐지하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의도적인 네트워크, 대화 및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자신과 교회의 자원을 투입한다.
2.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충동에 충실히 응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정치적, 이기적이고 사악한 제도와 사람에 의해 억압받고, 투옥되고, 인신매매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듣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충실한 증인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과 공의로 응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3. 우리는 공의로운 행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적 돌봄과, 또한 불의를 인식하고 그것을 야기하는 권

력을 비판할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한다. 공의로운 행동과 공흠을 사랑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날의 권력과 공중의 권세들과 충돌되게 했다. 하나님의 공의는 동등한 대우, 서로의 차이점에 대한 관용, 또는 단순히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역할을 뒤집을 것 이상을 요구한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본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기꺼이 내어 주는 공의를 위해 부름받았다.

4. 우리는 기독교 공의가, 필요한 단계로서, 개인적 고백과 공동체적 고백, 회개, 용서에 대한 깊은 헌신을 요구한다고 확증한다.
5.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의롭고 희망적인 행동들을 옹호해야 한다고 확증한다.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소망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반영하여 우리는 비인간적인 환경을 가져 오는 조건을 파악한다. 우리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고 구속, 회복, 치유 및 자유를 가져 오는 행위를 제공함으로써 취약 계층과 함께 할 것이다.
6. 우리는 억압과 불의에 대해 희망적인 대안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확증한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삶에 반영하여 사람들의 동기, 행동에 공의를 심어주고 환경과 체제와 국가에 공의를 불어 넣으라고 부름받았다. 우리가 모든 고통을 끝내지는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치유의 형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

- 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구속 사업을 행하도록 부름받았다.
7. 협력하는 네트워크로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일해야 하며, 지역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확증한다. 복잡한 문제로 인해 현대판 노예가 탄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해결책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구조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개인적이든 기관으로서든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일한다. 웨슬리안 성결의 정체성에 따라 공허함으로 섬기며 억압받는 시스템에 예언자적으로 도전한다.
2. 효과적이고 현명하며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며, 계획하고, 함께 참여한다.
3.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예배 공동체로서 소망 운동으로서의 성령의 능력에 주입되어 일한다.
4.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용기있게 행동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기”까지 살고 일한다. (2017)

## 921.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가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도록” 명령한다(잠 31:8). 쉼마 구절은 (신 6:4-7; 11:19)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도록 권고한다. 시편 78:4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8:16에서 확인한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한 반응으로써 나사렛교단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이며 그의 나라에서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사랑, 양육, 보호, 옹호, 인도 그리고 지지에 유념하도록 우리에게 지시하셨음을 믿는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구원의 삶과 은혜 안에 자라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구원과 거룩과 제자도는 어린이들의 삶에서 가능하고 긴요한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한 참여자임을 인정한다.

어린이들은 대기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훈련을 받는 제자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개교회에서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역은 우선사항이 될 것이며 다음의 것들로 입증되어야 한다:

- 모든 어린이에게 효과적이고 힘을 주는 사역을 제공하기 -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현재의 사회정의의 문제들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기
- 어린이들을 믿음의 공동체의 의무와 사역의 핵심에 연결시키기
- 어린이들을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제자화하고 훈련하기
-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도록 준비시키기

교단의 교육기관들은(신학교, 대학, 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리더십을 준비시키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가치를 전하는 비전과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한다. 교육기관들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다음세대를 성경적 신학적으로 양육하고 전도와 제자삼기와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있어 예측되거나 예측되지 않은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준비시키는 개교회와 가정들의 책임에 동참한다.

나사렛교단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사랑받고 가치를 인정받으며, 그들이 여러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 돌봄을 받고 교회 가족으로 합류되며, 그들의 나이와 발달단계와 능력과 영적인 은사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기회를 갖는 세대 간의 믿음 공동체를 소망한다. (2009)

## 922. 전쟁 및 군복무

나사렛성결교회는 우리들의 이상적인 세계 상태가 평화 상태라는 것을 믿고 교회는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을 찾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의 모든 기관을 동원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헌신해야 하는 것을 개신교 교회의 완전한 의무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악한 세력과 철학이 이러한 기독교적인 이상과 적극 대치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과 한 국가가 자기의 이념, 자유 및 존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쟁에까지 호소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국가 간의 비상사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나사렛성결교회는 평화 유지에 전력할 것을 서약하는 한편,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충성은 하나님께서 그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과 따라서 본 교회는 그 회원으로 하여금 전쟁의 경우 군복무에 가담하는 것에 관해서 신도의 양심을 구속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개개인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기독교적인 신앙과 생활양식에 조화를 갖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국가에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들은 또한 지상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기독교적인 염원의 발로로서 우리 회원 가운데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군복무에 관해서는 양심에 입각한 반대자들이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나사렛성결교회는 군복무에 관하여 회원 중 양심에 입각하여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전쟁에 불참하고 있는 공인된 종교단체들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한 고려와 면제 혜택을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나사렛성결교회는 국제총회총무를 통해서 등록 명부를 작성하여 거기에 나사렛성결교회 회원임을 입증하는 자들로 하여금 양심에 입각한 반대자라는 그들의 확신을 기록하도록 한다. (2017)



### 923. 창조

나사렛성결교회는 창조에 관한 성경의 기술(“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1:1)을 믿는다. 우리는 창조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설명에 개방적이지만,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한 해석은 반대한다. (히 11:3). (1, 5.1, 7) (2017)

### 924. 창조세계의 돌봄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깊은 감사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가 그의 작품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청지기로서의 자질을 보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믿는다. 환경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인식하며, 우리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받아들인다. (2009) (창 2:15, 시 8:3-9; 19:1-4, 148)

### 925. 성령 세례의 증거

나사렛성결교회는 성령의 내적 충만을 통한 중생과 마음의 정결, 곧 완전성결의 역사에 대해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심을 믿는다.

우리는 완전성결, 곧 성령의 내적 충만에 대한 성령의 한 증거는 사도행전 15:8-9에 진술된 대로 믿음에 의해 원죄로부터 마음이 정결하게 씻음 받는다는 것임을 확증한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라 분간치 않으셨느니

라.” 그런데 이 정결은 성결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입증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 5:22-24)

어떤 특별하거나 근거없는 육체적 증거 혹은 “기도의 언어”가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본 교회의 성경적 및 역사적 입장에 상반하는 것이다. (2009)

## 926. 음란물

음란물은 사회의 도덕을 저해시키는 악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저하시키고 결혼의 신성 및 성의 건전성에 대한 성경적 견지에 상반하는 인쇄물 및 시청 자료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음란물은 남자, 여자 및 어린이들을 훼손, 착취, 학대하게 한다고 믿는다. ‘음화업’은 그 동기가 탐욕으로서 가정생활의 적이며 위법을 초래하고 마음을 악독하게 만들며 몸을 불결하게 만든다.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써서 음란물을 적극 배격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이러한 악에 젖은 자들을 찾아 구하기에 힘껏 노력할 것을 강권한다. (2009)

## 927. 그리스도인의 정숙한 의복

공공장소에서의 정숙하지 못한 의복을 입는 경향에 대하여 우

리는 정숙함이 성결의 한 표현임을 상기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숙을 모든 공공장소에서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2017)

### 928. 건강

성경은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 균형과 건강과 온전할 것을 요청한다. 과식은 몸과 공동체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손상을 주는 소비습관이다. 비만은 유전적 요인, 문화적 제약, 혹은 신체적 한계 등의 이유로 생길 수 있는 한편, 과식은 음식, 자원, 그리고 사람들과 공동체 둘 다를 해치는 관계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를 소비하는 삶의 한 방식을 반영한다. 성도의 청지기의 삶은 건강과 우리 몸의 상태를 성령의 전으로서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모든 자원과 관계에 있어 절제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 (2009)

(잠 23:19-21; 마 11:19; 23:25; 고전 9:27; 갈 5:23; 빌 3:19; 딤후 1:8; 2:12; 히 12:16; 벧후 1:6)

### 929. 약물 남용

나사렛성결교회는 사회악인 약물남용을 계속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교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분명한 역할을 통해서 약물남용은 그리스도인의 체험과 성결의 삶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알리는 교육과 재화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2013)

### 930. 술(알코올) 비사회화

나사렛성결교회는 공공연히 알코올 소비 비사회화를 지지한다. 우리는 시민, 노조, 사업적, 전문적, 사회적, 자원적, 그리고 개인적 기관이나 조직 단체들로 하여금 이러한 비사회화 운동을 도와 “술(알코올) 문화”에 대한 사회의 용인을 장려하는 광고 및 미디어를 배격하도록 권면한다. (2013)

### 931. 담배 사용 및 광고

나사렛성결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건강의 위험과 사회 악덕을 초래하는 담배 사용에 담대히 반기를 들도록 권면한다. 우리의 역사적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으니, 그 말씀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지속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고전 3:16-17; 6:19-20).

어떤 형태의 담배 사용이든지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은 전 세계를 통한 우수한 사회 및 정부 그리고 보건기관들에 의해서 서류화된 의학적 증거가 또한 강력히 뒷받침해 준다. 그들은 담배 사용이 건강을 해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며 정상적인 신체 생리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수백만 불의 돈을 들여 행해지는 담배광고와 그것에 대등한 알코올, 주류 광고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잡지, 게시판, 그리고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및 기타 대중 매체를 통한 담배 및 알코올 류의 모든 광고를 반대한다. (2013)

### 932. 후천적면역결핍증후군(HIV/AIDS)

1981년 이래로 세계는 에이즈로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질병에 직면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들에게 간절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긍휼한 마음으로 HIV/AIDS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나 이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 주실 것이다.. (2013)

### 933. 소셜 미디어 사용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유하는 콘텐츠는 존중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소셜 미디어의 내용이 우리가 노력하는 성화된 마음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 소셜 미디어에서의 활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역 사회에서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의 활동은 생명을 주고 확신을 주어야 하며 모든 사람을 고양시키기를 구해야 한다. (2017)

(잠언 15:4, 15:28, 16:24; 전도서 5:2-4; 마 15:11; 갈 5:13-15; 엡 4:29; 골 4:6; 딤후 2:16; 약 3:1-3)

## 교리와 장정

---

12판 발행 | 2020. 4

발 행 |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총회

발행처 | 도서출판 나사렛

등 록 | 제 20-14호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57(목동)

전 화 | 02-2643-8591

팩 스 | 02-2653-3223

값 20,000원